2010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용자를 위하여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하 연차보고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로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기록 확보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67년 「농업기본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 · 경영 · 가격 · 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정책 및 농업동향을 내용으로 하여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첫 발간되었습니다.

농업기본법이 「농업 · 농촌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연차보고서는 '99년부터 농업 · 농촌기본법에 따라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동향 및 정책을 포함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08년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정부조직개편 및 농업 · 농촌기본법 개정으로 '09년부터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기존 농업 · 농촌을 포함하여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동향 · 정책이 추가된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는 ▲1편 2010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동향 ▲2편 2010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3편 2010년 수산업 동향 ▲4편 2010년 수산업 정책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 3편에서는 '10년 농어업 · 농어촌 경제동향, 국내 · 국제 농식품 수급동향 등의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를 제시하고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2편, 4편은 '10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수산업에 대한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내용 및 성과, 평가 및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농업분야도 선진국입니다. 그 만큼 농업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가 이러한 농어업의 국내외 환경과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농어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 · 통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목 차

제1편 2010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 · 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03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03
2. 농경지 04

제2절 농가경제 06
1. 소득 동향 06
2. 가계지출 동향 10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11
4. 농가자산 동향 11
5. 농가부채 동향 12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12
7. 주 · 부업별 지표 13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14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15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15
11. 지역별 주요지표 16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16
1. 개 황 16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7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8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20
1. 농업생산성 20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1
3. 농림어업 부가가치 22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24
1. 식량작물 24
2. 원예 · 특용작물 26
3. 축산물과 사료작물 32

제2절 식품 수급동향 36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36
2. 식품 수요현황 40
3. 식품산업 동향 47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52
1. 농식품 수출입동향 52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56

제3장 국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59
1. 국제곡물 수급동향 59
2. 국제곡물 가격동향 62

제2절 주요국가 농업 동향 및 양자 간 통상협력 65
1. 주요국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65
2. 주요국가 통상협력 79

제2편 2010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장 농가 경영안정 · 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 소득 증대 96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 96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98
3.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운영 100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104

제2절 농가 경영안정 105
1. 농지은행 활성화 105
2.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109
3. 재해농가 지원 확충 111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113
5. 농 · 어업부문 세제지원 114
6.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제도 개선 118
7.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19
8.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120
9. 농기계 임대 활성화 122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24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24
2. 농업벤처 육성 127
3. 농어업법인 활성화 128
4. 농어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131
5.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134
6. 귀농 · 귀촌 종합대책 추진 136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38
1.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 138
2.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접거래 활성화 140
3.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142
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144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145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49
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 149
2. 쌀 공공비축 제도 운영 151
3. 비축수입농산물 관리 154
4. 논 소득기반 다양화 156
5.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158

제4장 녹색성장 및 미래 신 성장 동력 확충

제1절 녹색성장 및 농식품분야 에너지 및 비용절감 160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160
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165
3.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시설 확충 167

제2절 미래 신 성장동력 확충 170
1. 농협 개혁 170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72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175
4. 농림수산식품 R&D 효율성 제고 178
5. 종자산업 육성 182
6. 곤충산업 육성 185
7. 농지제도 개선 188

목 차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90
1. WTO DDA 협상대응 190
2. 한 · 미 FTA 비준 194
3. 한 · EU FTA 협상 195
4. 한 · 페루 FTA 협상 197
5. 한 · 콜롬비아 FTA 협상 198
6. 한 · 호주 FTA 협상 198
7. 한 · 뉴질랜드 FTA 협상 200
8. 한 · 인도 CEPA 협상 201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강화 202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202
2. 해외농업개발 204
3. OECD 활동 207
4. FAO 활동 212

제6장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및 인증표시제 확대 216
1.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216
2. 농식품 안전성검사 확대 218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220
4. GMO 표시제도 및 안전관리 222
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223
6.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226
7. 쇠고기 이력제 추진 229

제2절 축산 질병예방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231
1. 가축질병 방역강화 231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234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 관리 236
4. 동물보호 · 복지추진체계 확립 238

제3절 친환경농업 육성 240
1.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40
2. 친환경 비료 지원 242
3. 친환경농업직불제 244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246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248

제7장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250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250
2. 전통 ·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252
3. 천일염산업 육성 255
4. 전통주산업 육성 256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259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61
7. 식생활 교육 추진 265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267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267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270

제8장 농업인 복지지원 및 농촌지역 개발 · 농업생산기반 조성

제1절 농업인 복지지원 274
1.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 274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277
3.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278
4.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81
5. 여성 · 취약농가 지원 확대 283
6.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286
7. 농지연금 도입 287

제2절 농촌 통합형 지역개발 289
1. 농어촌 종합개발 289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294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295
4. 농업 · 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298
5.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지원 301
6.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304
7. 농공단지 조성 306

제3절 농업생산기반 조성 308
1. 대구획 경지정리 308
2. 밭 기반 정비 309
3.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311
4.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312
5. 수리시설 개보수 313
6. 농촌용수 개발사업 315
7. 대단위농업개발 및 간척 317

제3편 2010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323
1. 어가인구 323
2. 어업 총생산 325
3. 어선등록 현황 326
4. 이용어장 328
5. 어업 경영체 332

제2절 어가 경제 336
1. 어가소득 336
2. 어가 가계지출 338
3. 어가자산 338
4. 어가부채 339

제2장 국내 · 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340
1. 생산동향 340
2. 연근해어업 341
3. 양식어업 347
4. 내수면어업 348
5. 원양어업 349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 · 수입 350
1. 수 출 350
2. 수 입 353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357
1. 수 급 357

목 차

2. 소 비 357
3. 가 격 358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359
1. 어 황 359
2. 자원동향 361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362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364
1. 세계 수산물 생산 364
2. 세계 수산물 교역 365

제4편 2010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374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374
2. 유어산업 육성 379
3. 내수면산업 육성 382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385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385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386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389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389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391
3. 연근해어업 총조사 393
4.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395
5.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396

제2절 어업질서 확립 398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398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400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401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403

제4장 수산업 · 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1절 수산업 경영지원 405
1.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405
2. 수산보전제도 추진 408
3.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409

제2절 어업활동 지원 413
1. 어업보험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413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415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416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423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살기 좋은 어촌개발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426

1. 어업인후계자 육성 426
2.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지원 428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428

제2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431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431
2.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432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434
4. 어항시설 확충 437
5. 어촌 · 어항 관광개발 439
6. 어촌 · 어항 관광 기반 조성 442

제6장 수산물 생산 · 관리 · 공급체계 개선

제1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444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444
2. 수출 · 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446
3. 수출 · 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447

제2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448
1. 친환경 양식 생산 448
2.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450
3. 양식어장 환경 개선 451

제3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453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453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456
3.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457
4. 민간 가격안정사업 459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

제1절 국제협상 강화 461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461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464
3.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466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강화 468
5. 한 · 일 어업협정 472
6. 한 · 중 어업협정 475
7. 한 · 러 어업협정 478
8.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481

제2절 해외 수산자원 확보 484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484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486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488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489
5. 수산물 수출 진흥 490
6.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491

표목차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4
〈표 1-1-2〉 경지면적 변동추이 5
〈표 1-1-3〉 농경지 증감내역 5
〈표 1-1-4〉 농경지 이용현황 5
〈표 1-1-5〉 휴경면적 6
〈표 1-1-6〉 농가소득 6
〈표 1-1-7〉 농가소득 구성비 7
〈표 1-1-8〉 농업소득 7
〈표 1-1-9〉 농업총수입 8
〈표 1-1-10〉 농업총수입 구성비 8
〈표 1-1-11〉 농업경영비 9
〈표 1-1-12〉 농외소득 9
〈표 1-1-13〉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10
〈표 1-1-14〉 가계비 지출 10
〈표 1-1-15〉 가처분소득 / 잉여금 11
〈표 1-1-16〉 농가자산 11
〈표 1-1-17〉 농가부채 12
〈표 1-1-18〉 2010년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13
〈표 1-1-19〉 2010년 주 · 부업별 지표 13
〈표 1-1-20〉 주 · 부업농가 기준 14
〈표 1-1-21〉 2010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14
〈표 1-1-22〉 2010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15
〈표 1-1-23〉 2010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15
〈표 1-1-24〉 2010년 지역별 주요지표 16
〈표 1-1-25〉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16
〈표 1-1-26〉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8
〈표 1-1-27〉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
〈표 1-1-28〉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20
〈표 1-1-29〉 농업생산성 지표 21
〈표 1-1-30〉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22
〈표 1-1-31〉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23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24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25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26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27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28
〈표 1-2-6〉 화훼산업 현황 29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30
〈표 1-2-8〉 버섯류 수급동향 30
〈표 1-2-9〉 버섯종류별 수출액 31
〈표 1-2-10〉 인삼류 생산동향 31
〈표 1-2-11〉 쇠고기 수급동향 32
〈표 1-2-12〉 사료 수급 추이 35
〈표 1-2-13〉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35
〈표 1-2-14〉 초지조성 실적 36
〈표 1-2-15〉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 (도시가구평균) 37
〈표 1-2-16〉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09년 도시가구평균) 38
〈표 1-2-17〉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39
〈표 1-2-18〉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40
〈표 1-2-19〉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42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44
〈표 1-2-21〉 주요국별 1인당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45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46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47
〈표 1-2-24〉 식품제조업체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09년) 48
〈표 1-2-25〉 식품제조업체 규모 연도별 추이 49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49

〈표 1-2-27〉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수 및 매출액(2009년) 50
〈표 1-2-28〉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09년) 51
〈표 1-2-29〉 음식점업 사업체 수 연도별 추이 52
〈표 1-2-30〉 농식품 수출실적 53
〈표 1-2-31〉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54
〈표 1-2-32〉 품목별 농식품 수입실적 55
〈표 1-2-33〉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56
〈표 1-2-34〉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57
〈표 1-2-35〉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57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58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61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64
〈표 1-3-3〉 미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66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66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66
〈표 1-3-6〉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폭(2010년) 69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72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76
〈표 1-3-9〉 한-미간 농산물 교역 동향 80
〈표 1-3-10〉 대미 주요 수출 품목 81
〈표 1-3-11〉 대미 주요 수입 품목 81
〈표 1-3-12〉 한 · 캐나다 농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84
〈표 1-3-13〉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출 농축수산물 85
〈표 1-3-14〉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85
〈표 1-3-15〉 한국의 대두 수입국 순위 87
〈표 1-3-16〉 한국의 옥수수 수입국 순위 88
〈표 1-3-17〉 한국의 오렌지 수입국 순위 88
〈표 1-3-18〉 한국의 포도 수입국 순위 88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103
〈표 2-2-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06
〈표 2-2-3〉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107
〈표 2-2-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108
〈표 2-2-5〉 20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108
〈표 2-2-6〉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110
〈표 2-2-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114
〈표 2-2-8〉 농어업부문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115
〈표 2-2-9〉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116
〈표 2-2-10〉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6
〈표 2-2-11〉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7
〈표 2-2-12〉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7
〈표 2-2-13〉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7
〈표 2-2-14〉 2010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25
〈표 2-2-15〉 제9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128
〈표 2-2-16〉 농어업법인 현황 129
〈표 2-2-17〉 농업법인 현황 130
〈표 2-2-18〉 어업법인 현황 130
〈표 2-2-19〉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135
〈표 2-3-1〉 2010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147
〈표 2-3-2〉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152
〈표 2-3-3〉 정부비축미 물량 153
〈표 2-3-4〉 국가별 쌀 약정 현황 153
〈표 2-3-5〉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내역 155
〈표 2-3-6〉 시 · 도별, 품목별 타작물재배 약정현황 157
〈표 2-4-1〉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162
〈표 2-4-2〉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50대 실천과제와 '10년 주요 추진과제 163
〈표 2-4-3〉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166
〈표 2-4-4〉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현황 174

표목차

〈표 2-4-5〉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0년) 176
〈표 2-4-6〉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실적 177
〈표 2-4-7〉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83
〈표 2-4-8〉 2010년 작물별 품종보호 등록현황 184
〈표 2-4-9〉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185
〈표 2-5-1〉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2010년) 205
〈표 2-5-2〉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실적 및 성과(2010년) 206
〈표 2-6-1〉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안전한 먹을거리 취식 기여도 218
〈표 2-6-2〉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221
〈표 2-6-3〉 수출입 동 · 축산물 검역 · 검사 추진 현황 235
〈표 2-6-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08년 기준) 243
〈표 2-6-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243
〈표 2-6-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245
〈표 2-6-7〉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단가 249
〈표 2-6-8〉 2011년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단가 249
〈표 2-7-1〉 분야별 17개 신성장동력 251
〈표 2-7-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주요경과 262
〈표 2-7-3〉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요추진활동 263
〈표 2-7-4〉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내용 265
〈표 2-7-5〉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268
〈표 2-7-6〉 농림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269
〈표 2-8-1〉 도시 · 농어촌 공공서비스 비교 274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275
〈표 2-8-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279
〈표 2-8-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280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280
〈표 2-8-6〉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282
〈표 2-8-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284
〈표 2-8-8〉 농어업인 영농, 가사도우미 지원실적 285
〈표 2-8-9〉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287
〈표 2-8-10〉 농지연금 모형결정 288
〈표 2-8-1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 · 군 290
〈표 2-8-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291
〈표 2-8-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292
〈표 2-8-14〉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 · 도별 예산 내역 293
〈표 2-8-15〉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295
〈표 2-8-16〉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296
〈표 2-8-1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율 297
〈표 2-8-18〉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299
〈표 2-8-19〉 농림수산정보망 현황 300
〈표 2-8-20〉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305
〈표 2-8-21〉 2010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306
〈표 2-8-22〉 부처별 농공단지 지원현황 307
〈표 2-8-2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309
〈표 2-8-24〉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310
〈표 2-8-25〉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현황 311
〈표 2-8-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313

〈표 2-8-2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314
〈표 2-8-2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314
〈표 2-8-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316
〈표 2-8-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16
〈표 2-8-31〉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16
〈표 2-8-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317
〈표 2-8-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318
〈표 2-8-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319
〈표 2-8-3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320
〈표 3-1-1〉 어가호수와 인구 323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 · 연령별 구성 324
〈표 3-1-3〉 전업 · 겸업별 어업가구 324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325
〈표 3-1-5〉 어업 생산량 현황 325
〈표 3-1-6〉 어업 생산액 현황 326
〈표 3-1-7〉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326
〈표 3-1-8〉 어선등록 현황 327
〈표 3-1-9〉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327
〈표 3-1-10〉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328
〈표 3-1-11〉 품목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30
〈표 3-1-12〉 종류별 · 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31
〈표 3-1-13〉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333
〈표 3-1-14〉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334
〈표 3-1-15〉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335
〈표 3-1-16〉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35
〈표 3-1-17〉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336
〈표 3-1-18〉 어가소득 337
〈표 3-1-19〉 어업소득 337
〈표 3-1-20〉 어업외소득 337
〈표 3-1-21〉 어가 가계지출 338
〈표 3-1-22〉 어가자산 338
〈표 3-1-23〉 어가부채 339
〈표 3-2-1〉 어업별 생산현황 341
〈표 3-2-2〉 부류별 생산현황 342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 342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346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347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349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350
〈표 3-2-8〉 수산물 총수출현황 351
〈표 3-2-9〉 품목별 수산물 수출현황 351
〈표 3-2-10〉 국가별 수산물 수출현황 352
〈표 3-2-11〉 어종별 수산물 수출현황 353
〈표 3-2-12〉 수산물 총수입현황 354
〈표 3-2-13〉 품목별 수산물 수입현황 354
〈표 3-2-14〉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355
〈표 3-2-15〉 어종별 수입현황 356
〈표 3-2-16〉 수산물 수급동향 357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358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358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동향 359
〈표 3-2-20〉 세계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365
〈표 3-2-21〉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366
〈표 3-2-22〉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367
〈표 4-2-1〉 2010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376
〈표 4-2-2〉 시 · 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377
〈표 4-2-3〉 국내 낚시 인구 현황 379
〈표 4-2-4〉 낚시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380
〈표 4-2-5〉 낚시어업권 현황 382
〈표 4-2-6〉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현황(2010년) 385
〈표 4-2-7〉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387
〈표 4-2-8〉 2011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현황 388

표목차

〈표 4-3-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소요 391
〈표 4-3-2〉 유실률이 높은 어업별 평균 어구사용량 392
〈표 4-3-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393
〈표 4-3-4〉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399
〈표 4-3-5〉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399
〈표 4-3-6〉 2010년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현황 402
〈표 4-3-7〉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404
〈표 4-3-8〉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404
〈표 4-4-1〉 2010년 수산보전제도 관련 예산 및 주요 성과 409
〈표 4-4-2〉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410
〈표 4-4-3〉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현황 411
〈표 4-4-4〉 2010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412
〈표 4-4-5〉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 413
〈표 4-4-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416
〈표 4-4-7〉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현황(2009년) 417
〈표 4-4-8〉 수산분야 세부업종별 신고내역 418
〈표 4-4-9〉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0년 기준) 419
〈표 4-4-10〉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접수, 사정 및 지급 추이 419
〈표 4-4-11〉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424
〈표 4-5-1〉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427
〈표 4-5-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요 431
〈표 4-5-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2010) 432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433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433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434
〈표 4-5-7〉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현황 436
〈표 4-5-8〉 어항지정 현황 437
〈표 4-5-9〉 시 · 도별 국가어항 현황 438
〈표 4-5-10〉 시 · 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438
〈표 4-5-11〉 시 · 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 438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439
〈표 4-5-13〉 시 · 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440
〈표 4-5-1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40
〈표 4-5-15〉 어촌관광모델개발 사업내용 441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42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443
〈표 4-6-1〉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2010년 기준) 445
〈표 4-6-2〉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445
〈표 4-6-3〉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누계) 452
〈표 4-6-4〉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품목 455
〈표 4-6-5〉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455
〈표 4-6-6〉 2010년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실적 458
〈표 4-7-1〉 양국 간 수산협력 약정 체결현황 468
〈표 4-7-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471
〈표 4-7-3〉 2010년 한 · 일 EEZ 입어실적 473
〈표 4-7-4〉 2010년 한 · 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474
〈표 4-7-5〉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474
〈표 4-7-6〉 일본어선의 한국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474
〈표 4-7-7〉 한 · 중 · 일 어업협정 개요 476
〈표 4-7-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479
〈표 4-7-9〉 남북수산협력 사업 주요 추진경과 483
〈표 4-7-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487

그림목차

〈그림 1-2-1〉 업체당·1인당 및 건물 연면적당 매출액 50
〈그림 1-3-1〉 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개요 73
〈그림 2-3-1〉 양곡관리 시스템 152
〈그림 2-4-1〉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173
〈그림 2-4-2〉 제1회 생명산업대전 곤충산업 체험관 186
〈그림 2-6-1〉 농림수산용 LMO 안전관리체계 222
〈그림 2-7-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266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383
〈그림 4-2-2〉 논 생태 양식 개념도 384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391
〈그림 4-3-2〉 어업 분쟁조정 절차 397

제1편

2010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 · 농촌 경제동향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3장 국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 · 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2010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177천가구로 전년의 1,195천가구보다 18천가구(1.5%)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063천명으로 전년의 3,117천명보다 54천명(1.7%)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53.3%인 627천가구로 전년의 693천가구(58.0%)보다 가구수는 66천 가구가 감소하고 비중은 4.7%p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46.7%인 550천가구로 전년의 502천가구(42.0%)보다 48천가구가 증가하였다.

전체인구(48,875천명)중에서 농가인구(3,063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전년수준이며,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2010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이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31.8%로 2009년 34.2% 보다 2.4%p 감소하였다(전국 고령화율 2009년 : 10.7% 041 → 2010년 : 11.3%)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01천명(49.0%), 여자가 1,562천명(51.0%)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분 \ 연도		단위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383	1,273	1,212	1,195	1,177	△18	△1.5
전 업 농 가 (비 중)		천호 (%)	902 (65.2)	796 (62.5)	707 (58.3)	693 (58.0)	627 (53.3)	△66	△9.5
겸 업 농 가 (비 중)		천호 (%)	481 (34.8)	477 (37.5)	505 (41.7)	502 (42.0)	550 (46.7)	48	9.6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031 (8.6)	3,434 (7.1)	3,187 (6.6)	3,117 (6.4)	3,063 (6.4)	△54	△1.7
호당농가인구		명	2.91	2.70	2.67	2.61	2.60	0.01	△0.4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		%	32.7	43.2	48.1	49.7	46.4	△3.3	△6.6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		%	21.7	29.1	33.3	34.2	31.8	△2.4	△7.0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1,971 (48.9)	1,677 (48.8)	1,542 (48.4)	1,510 (48.4)	1,501 (49.0)	△9	△0.6
	여 자 (구성비)	천명 (%)	2,060 (51.1)	1,757 (51.2)	1,645 (51.6)	1,607 (51.6)	1,562 (51.0)	△45	△2.8

자료 : 통계청 2008 · 2009년은 농업조사결과, 2000 · 2005 · 2010년은 농업총조사 결과임

2.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22천ha 줄어든 1,715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984천ha로 전년에 비하여 26천ha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731천ha로 4천ha가 증가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 · 건축(8.4천ha), 공공시설(9.3천ha), 기타사유(13.3천ha)로 인하여 총 31.0천ha가 감소한 반면, 개간(7.9천ha), 복구 등(1.6천ha)으로 총 9.5천ha가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21.5천ha가 감소하였다.

2010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820천ha로 전년보다 53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10.8%에서 104.8%로 낮아졌다.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093천ha로 전년보다 32천ha 감소, 채소는 206천ha로 10천ha 감소, 과수는 156천ha로 5천ha 증가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50.5천ha로 전년보다 5.1천ha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한 2.9%로 나타났다.

〈표 1-1-2〉 경지면적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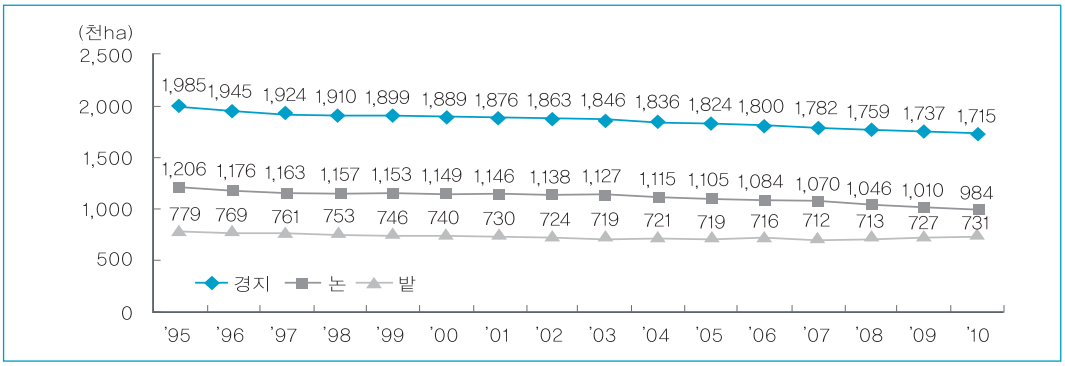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1년

〈표 1-1-3〉 농경지 증감내역

(단위 : 천ha)

구분 / 연도	증 가				감 소				증감면적
	계	개간	간척	기타	계	건물건축	공공시설	기타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2007	4.3	3.4	0.6	0.4	23.2	10.2	4.1	8.9	△18.9
2008	5.6	4.6	0.4	0.5	28.4	9.8	5.2	13.4	△22.8
2009	26.7	23.0	2.7	1.0	48.7	15.2	13.9	19.6	△22.0
2010	9.5	7.9	0.4	1.2	31.0	8.4	9.3	13.3	△21.5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1년

〈표 1-1-4〉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21	1,834	1,873	1,820	△53	△2.8
식 량 작 물	1,346	1,318	1,234	1,143	1,125	1,093	△32	△2.8
(미 곡)	(1,056)	(1,072)	(980)	(936)	(924)	(892)	(△32)	(△3.5)
(맥 류)	(90)	(68)	(61)	(56)	(54)	(51)	(△3)	(△5.6)
(두류 등)	(200)	(177)	(193)	(151)	(147)	(125)	(△22)	(△15.0)
경 제 작 물	851	780	689	691	748	641	△107	△14.3
(채 소)	(322)	(296)	(240)	(223)	(216)	(206)	(△10)	(△4.6)
(과 수)	(172)	(169)	(150)	(149)	(151)	(156)	(5)	(3.3)
(기 타)[1]	(357)	(315)	(299)	(319)	(381)	(279)	(△102)	(△26.8)
경 지 면 적	1,985	1,889	1,824	1,759	1,737	1,715	△22	△1.3
경지이용률(%)	108.1	110.5	104.7	107.1	110.8	104.8		
(논)	(104.1)	(106.3)	(102.9)	(107.9)	(112.0)	(106.2)		
(밭)	(114.7)	(116.9)	(107.3)	(105.9)	(109.0)	(102.7)		

주 : 1) 특 · 약용작물, 뽕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5〉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4.2	38.0	45.4	50.5	5.1	11.2
논	33.5	4.3	24.1	14.3	13.9	20.1	6.2	44.6
밭	31.1	12.5	20.1	23.7	31.5	30.4	△1.1	△3.5
휴경률(%)	3.2	0.9	2.4	2.2	2.7	2.9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1년

제2절 농가경제

1. 소득 동향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농가소득

2010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2,121천원으로서 전년(30,814천원)에 비해 4.2%(1,307천원)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1.2% 감소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6.7%, 2.4% 증가하였다.

〈표 1-1-6〉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1]	21,803	30,503	31,967	30,523	30,814	32,121	1,307	4.2
경 상 소 득	21,803	25,778	26,462	26,296	27,306	28,654	1,348	4.9
농 업 소 득	10,469	11,815	10,406	9,654	9,698	10,098	400	4.1
농 외 소 득	6,931	9,884	11,097	11,353	12,128	12,946	818	6.7
이 전 소 득	4,403	4,078	4,959	5,289	5,481	5,610	129	2.4
비경상소득[2]	–	4,725	5,506	4,227	3,507	3,467	△40	△1.1

주 :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31.4%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1-1-7〉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 상 소 득	84.8	84.5	82.8	86.2	88.6	89.2
농 업 소 득	41.6	38.7	32.6	31.6	31.5	31.4
농 외 소 득	32.9	32.4	34.7	37.2	39.4	40.3
이 전 소 득	10.4	13.4	15.5	17.3	17.8	17.5
비경상소득	15.2	15.5	17.2	18.0	11.4	10.8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은 2.3% 증가하고 농업경영비 또한 1.2% 증가하였으나 농업총수입 증가금액이 농업경영비의 증가금액보다 많아 농업소득은 10,098천원으로 전년(9,698천원)에 비해 4.1%(400천원) 증가하였다.

농업총수입은 27,221천원으로 전년(26,621천원)에 비해 2.3%(600천원) 증가하였다. 미곡과 축산은 각각 17.7%, 15.5% 감소하고, 채소, 과수는 각각 17.0%, 23.6% 증가하였다.

〈표 1-1-8〉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1] (농업소득률)	10,469 (65.4)	11,815 (44.6)	10,406 (39.9)	9,654 (37.4)	9,698 (36.4)	10,098 (37.1)	400	4.1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6,102	25,843	26,621	27,221	600	2.3
농업경영비	5,543	14,681	15,696	16,189	16,924	17,123	199	1.2

주 : 1)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표 1-1-9〉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7,322	26,102	25,843	26,621	27,221	600	2.3
미 곡 수 입	5,450	7,264	7,578	7,296	7,364	6,522	5,368	△1,154	△17.7
축 산 수 입	3,981	6,386	6,403	5,145	5,336	6,972	5,892	△1,080	△15.5
채 소 수 입	3,386	6,388	6,758	6,817	5,755	6,198	7,251	1,053	17.0
과 수 수 입	1,542	2,945	2,915	3,192	3,398	3,355	4,147	792	23.6
기 타 수 입[1)]	1,653	3,513	3,668	3,652	3,990	3,574	4,563	989	27.7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채소수입(26.6%), 축산(21.7%), 미곡(19.7%) 및 과수수입(15.2%), 기타(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0〉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곡 수 입	34.0	27.4	28.0	28.5	24.5	19.7
축 산 수 입	24.9	24.1	19.7	20.6	26.2	21.7
채 소 수 입	21.1	24.1	26.1	22.3	23.3	26.6
과 수 수 입	9.6	11.1	12.2	13.2	12.6	15.2
기 타 수 입	10.4	13.3	14.0	15.4	13.4	16.8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농업경영비는 17,123천원으로 전년(16,924천원)에 비해 1.2%(199천원) 증가하였다. 수선 및 농구비, 노무비, 비료 · 농약비는 각각 13.8%, 6.4%, 1.9% 증가하였으나, 양축비는 사료비 감소 등으로 15.0% 감소하였다.

〈표 1-1-11〉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4,681	15,696	16,189	16,924	17,123	199	1.2
수선및농구비	807	318	326	329	327	372	45	13.8
노 무 비	441	913	958	886	843	897	54	6.4
양 축 비	1,261	2,747	2,440	3,340	3,676	3,125	△551	△15.0
비료·농약비	695	1,624	1,822	1,806	2,078	2,117	39	1.9
임 차 료	1,070	1,096	1,133	992	905	912	7	0.8
기 타 비 용 [1]	1,269	7,983	9,017	8,836	9,095	9,700	605	6.7

주 :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잡비용, 보험료 및 수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농업외소득

농업외소득은 12,946천원으로 전년(12,128천원)에 비해 6.8%(818천원) 증가하였다. 겸업소득은 5.2% 증가하고, 사업이외소득도 7.3% 증가하였다.

* 겸업소득은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12〉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농 외 소 득	6,931	9,884	11,097	11,353	12,128	12,946	818	6.8
겸 업 소 득	1,527 (22.0)	2,531 (25.6)	2,959 (26.7)	2,900 (25.5)	3,296 (27.2)	3,467 (26.8)	171	5.2
사업외소득	5,404 (78.0)	7,353 (74.4)	8,138 (73.3)	8,453 (74.5)	8,832 (72.8)	9,480 (73.2)	648	7.3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이전소득은 2.4%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1.2% 감소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89천원(1.0%) 증가한 9,07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3〉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8,803	10,465	9,516	8,988	9,077	89	1.0
이 전 소 득	–	4,078	4,959	5,289	5,481	5,610	129	2.4
비 경 상 소 득	–	4,725	5,506	4,227	3,507	3,467	△40	△1.2

주 :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2. 가계지출 동향

2010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7,67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1,264천원으로 전년(20,017천원)에 비해 6.2%(1,247천원), 비소비지출은 6,408천원으로 전년(6,557천원)에 비해 2.3%(149천원) 감소하였다.

〈표 1-1-14〉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가계비	14,782	26,649	28,048	27,102	26,574	27,672	1,098	4.1
소 비 지 출	14,782	19,378	20,510	20,328	20,017	21,264	1,247	6.2
비 소 비 지 출[1]	–	7,271	7,538	6,773	6,557	6,408	△149	△2.3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4.3	37.1	35.6	36.5	36.5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2])	68.3	83.4	84.0	85.6	82.5	82.7	–	–

주 :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 · 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10년 25,712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4,449천원으로 전년(4,240천원)에 비해 4.9%(209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소비지출 증가액보다 처분가능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5〉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처분가능소득[1]	21,629	23,232	24,429	23,749	24,257	25,712	1,455	6.0
소 비 지 출 (분가지출)	14,782 (548)	19,378 –	20,510 –	20,328 –	20,017 –	21,264 –	1,247	6.2
잉 여 금[2]	6,299	3,854	3,919	3,421	4,240	4,449	209	4.9

주 :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 · 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4. 농가자산 동향

2010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372,476천원으로 전년(358,029천원)에 비해 4.0%(14,447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자산은 전년 수준이나, 예 · 저금 및 미처분 농산물 등 유동자산이 21.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6〉 농가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8,171	298,178	395,981	341,227	358,029	372,476	14,447	4.0
고 정 자 산[1]	134,334 (84.9)	238,399 (80.0)	315,569 (79.7)	283,826 (83.2)	289,539 (80.9)	289,435 (77.7)	△104	0.0
유 동 자 산[2]	23,837 (15.1)	59,779 (20.0)	80,412 (20.3)	57,401 (16.8)	68,490 (19.1)	83,041 (22.3)	14,551	21.2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 · 기구 · 비품, 대동 · 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5.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10년 말 현재 가구당 27,210천원으로 전년(26,268천원)에 비해 3.6%(942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용 부채는 1.7% 감소하였으나, 가계용 및 겸업용 부채 등 농업용 이외 부채가 8.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당좌자산)은 35.0%로 전년(41.4%)에 비해 6.4%p 개선되었다.

〈표 1-1-17〉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9,163	27,210	29,946	25,786	26,268	27,210	942	3.6
농 업 용 부 채 (구 성 비)	6,351 (69.3)	16,315 (60.0)	16,486 (55.1)	13,600 (52.7)	13,150 (50.1)	12,930 (47.5)	△220	△1.7
농업용이외부채[1] (구 성 비)	2,812 (30.7)	10,895 (40.0)	13,460 (44.9)	12,186 (47.3)	13,118 (49.9)	14,280 (52.5)	1,162	8.9
당 좌 자 산 (B)	19,739	54,354	74,634	52,118	63,493	77,668	14,175	22.3
단기상환능력[2] [(A/B)×100)]	46.4	50.1	40.1	49.5	41.4	35.0	-	-

주 :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 · 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9,08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 소득의 68.5% 수준이었다.

〈표 1-1-18〉 2010년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1] (B)	겸업농가[2]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소 득	32,121	26,793	33,824	39,086	83.4	105.3	121.7
가 계 지 출	27,672	22,456	27,807	35,317	81.2	100.5	127.6
자 산	372,476	344,561	394,404	401,962	92.5	105.9	107.9
부 채 (부채 / 자산)	27,210 (7.3)	23,305 (6.8)	34,281 (8.7)	28,177 (7.0)	85.6 –	126.0 –	103.6 –

주 : 1) 전업농가 : 농가내의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2) 겸업농가 :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평균 농가자산은 372,476천원이며 「제2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401,962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는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34,281천원으로 나타났다.

7. 주 · 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43,308천원으로 자급농가(29,362천원)의 1.5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477,019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가는(254,142천원) 전문농가의 53.3%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3ha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9.5%로 가장 높았다.

〈표 1-1-19〉 2010년 주 · 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소 득	32,121	43,308	17,493	38,275	29,362
가 계 지 출	27,672	31,072	17,663	35,241	27,141
자 산	372,476	477,019	254,142	430,547	268,153
부 채 (부채 / 자산)	27,210 (7.3)	45,301 (9.5)	10,442 (4.1)	32,183 (7.5)	14,063 (5.2)

주 : 1) 농업총조사결과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표 1-1-20〉 주 · 부업농가 기준

(단위 : %)

구 분	기 준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문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ha 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2,179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특작농가가 39,127천원으로 나타났다. 논벼농가의 소득은 20,628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2,121원)의 64.2%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화훼농가의 자산이 597,064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농가(468,973천원), 과수농가(397,907천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특작농가가 20.7%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논벼 농가는 4.1%로 가장 낮았다.

〈표 1-1-21〉 2010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농가구성비[1)]	100.0	26.5	15.2	32.6	4.8	2.6	4.3	12.0	2.0
농가소득	32,121	20,628	34,991	28,625	39,127	27,408	27,252	42,179	40,772
가계지출	27,672	21,112	25,656	24,593	27,134	36,743	21,843	26,534	26,190
자 산	372,476	343,219	397,907	322,073	315,101	597,064	250,546	468,973	404,837
부 채 (부채/자산)	27,210 (7.3)	14,167 (4.1)	32,757 (8.2)	23,737 (7.4)	65,105 (20.7)	36,139 (6.1)	17,656 (7.0)	61,036 (13.0)	14,702 (3.6)

주 : 1) 농업총조사결과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7.0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6,000만원 이상인 반면, 2.0ha미만은 3,000만원대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2〉 2010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7.0	7.0~10.0	10.0ha 이상
농가소득	32,121	28,194	30,691	28,864	28,362	31,632	41,946	39,196	64,054	77,355
가계지출	27,672	26,315	25,984	25,319	26,601	28,927	32,835	35,765	38,534	40,333
자 산	372,476	281,626	324,790	328,648	365,390	428,796	517,876	679,977	714,704	856,082
부 채 (부채/자산)	27,210 (7.3)	18,462 (6.6)	23,661 (7.3)	20,345 (6.2)	22,051 (6.0)	25,651 (6.0)	42,212 (8.2)	83,858 (12.3)	83,478 (11.7)	79,950 (9.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40대 연령층의 소득이 50,202천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0,88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50대가 4억8,000만원, 40대가 4억3,000만원, 60대가 4억원 순이다. 농가부채는 30대가 78,131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65,222천원, 50대가 52,454천원이나 70세 이상은 9,117천원으로 경영주 연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23〉 2010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 가 소 득	32,121	48,881	50,202	46,946	32,619	20,888
가 계 지 출	27,672	37,127	40,891	39,686	28,148	18,794
자 산	372,476	403,125	434,525	475,055	400,217	285,556
부 채 (부채 / 자산)	27,210 (7.3)	78,131 (19.4)	65,222 (15.0)	52,454 (11.0)	25,096 (6.3)	9,117 (3.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11. 지역별 주요지표

제주와 경기지역 농가소득이 가구당 3,800만원~4,100만원 내외 수준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전남과 충북지역이 2,800~2,900만원 내외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7억원대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경기(42,585천원), 제주(40,539천원)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4〉 2010년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소득	32,121	38,350	35,077	28,650	33,220	31,105	27,635	29,888	30,442	41,089
가계지출	27,672	38,763	26,671	26,716	29,026	25,243	23,209	22,797	27,469	30,199
자 산	372,476	715,150	347,087	301,415	388,785	294,210	231,257	299,921	292,107	440,956
부 채 (부채/자산)	27,210 (7.3)	42,585 (6.0)	30,108 (8.6)	22,965 (7.6)	24,073 (6.2)	26,040 (8.9)	20,216 (8.7)	22,078 (7.4)	27,897 (9.6)	40,539 (9.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1. 개 황

2010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1로 전년에 비해 7.1%p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도 122.2로 전년대비 1.8%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88.5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이 100 이하인 것은 농가채산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25〉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5=100)

구분 \ 연도	2005	2007	2008	2009	2010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00.0	101.4	99.4	101.0	108.1
농가구입가격지수(②)	100.0	104.8	115.3	120.4	122.2
농가교역조건지수 (①/②×100)	100.0	96.8	86.2	83.9	88.5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0011년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0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1로 청과물(17.8%↑), 축산물(4.1%↑)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곡물(1.5%↓), 유란(1.0%↓)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7.0%p 상승하였다.

곡 물

2010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8.5로 전년에 비해 1.5%p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미곡(△7.3%), 겉보리(△3.0%), 쌀보리(△6.0%), 맥주맥(△4.9%) 등은 전년보다 하락하고, 콩(44.4%), 팥(40.5%) 등은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청과물

2010년도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0로 전년대비 17.1%p 상승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21.1%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배추(59.8%), 상추(53.1%), 등 엽채류가 전년보다 24.9%p 상승하고, 무(115.4%) 등 근채류도 81.9%p 상승하였다.

건고추(3.2%), 마늘(27.9%), 양파(△1.8%)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17.3%p 상승하였으며, 참외(18.0%), 수박(△8.9%), 토마토(13.8%) 등 과채류는 14.0%p 상승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사과(후지 △5.1%)는 하락하였으나, 사과(쓰가루 4.8%, 홍로 20.4%), 복숭아(49.3%), 감(12.3%), 배(24.0%)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9.2%p 상승하였다.

축산물

2010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5로 돼지(△2.9%), 새끼돼지(△2.4%)는 하락하였으나, 한우암소(5.4%), 한우송아지 암컷(18.5%), 한우 송아지 수컷(16.1%)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2%p 상승하였다.

기타농산물

특용작물 · 화훼 · 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10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2.7로서 전년대비 10.6%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깨(19.8%), 인삼(△2.2%), 들깨(11.7%), 땅콩(△9.1%), 송이버섯(△3.9%)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5.7%p 상승하고, 국화(38.6%), 장미(6.7%) 등 화훼류는 26.4%p 상승하였다.

〈표1-1-26〉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총 지 수	1,000	100.0	99.4	101.0	108.1	1.6	7.0
곡 물	338.3	100.0	107.8	100.0	98.5	△7.2	△1.5
미 곡	277.3	100.0	104.4	97.7	90.4	△6.4	△7.5
맥 류	9.1	100.0	95.0	89.1	84.7	△6.2	△4.9
잡 곡	6.2	100.0	117.5	114.3	122.6	△2.7	7.3
두 류	19.5	100.0	112.9	109.1	150.0	△3.4	37.5
서 류	26.2	100.0	142.3	117.4	145.6	△17.5	24.0
청과물	339.9	100.0	92.3	95.9	113.0	3.9	17.8
채 소	226.0	100.0	96.9	101.4	122.5	4.6	20.8
(엽채류)	45.1	100.0	56.0	66.4	91.3	18.6	37.5
(근채류)	12.1	100.0	110.0	104.3	186.2	△5.2	78.5
(조미채)	83.5	100.0	111.6	132.4	149.7	18.6	13.1
(과채류)	85.3	100.0	102.3	89.2	103.2	△12.8	15.7
과 실	113.9	100.0	83.1	84.9	94.1	2.2	10.8
축산물	249.5	100.0	93.0	103.3	107.5	11.1	4.1
가 축	168.1	100.0	87.0	97.4	104.2	12.0	7.0
유 란	81.4	100.0	105.6	115.5	114.4	9.4	△1.0
기타농산물	72.3	100.0	115.3	122.1	132.7	5.9	8.7
특용작물	48.5	100.0	95.0	94.3	100.0	△0.7	6.0
화 훼	20.6	100.0	162.3	189.7	216.1	16.9	13.9
부산물	3.2	100.0	119.1	108.5	91.2	△8.9	△15.9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011년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0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2.2로 가계용품(3.2%), 농업용품(△2.2%), 농촌 임료금(1.2%)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1.8%p 상승하였다.

가계용품

2010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7.6로 식료품(4.7%), 피복 및 신발(2.2%), 보건의료(2.0%), 교육(2.4%) 등이 올라 전년보다 3.7%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가구집기 · 사무용품(△2.4%)비가 하락하였다.

농업용품

2010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5.4로 가축(10.0%), 영농광열비(9.1%)등이 올랐으나, 비료(△11.1%), 사료(△7.4%) 등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3.0%p 하락하였다.

농촌임료금

2010년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17.8로 전년보다 1.4%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5.5%)과 여자노임(4.7%)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6.0%p 올랐으며 쌀 도정료는 7.2%p 하락하였다. 농기계임차료는 전년보다 3.3%p 하락하였다.

〈표 1-1-27〉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총 지 수	1,000	100.0	115.3	120.4	122.2	4.4	1.5
가계용품	660.4	100.0	110.7	113.9	117.6	2.9	3.2
농업용품	255.9	100.0	128.5	138.4	135.4	7.7	△2.2
종 자	18.0	100.0	96.9	105.3	106.5	8.7	1.1
비 료	23.5	100.0	207.5	241.0	214.2	16.1	△11.1
농 약	22.0	100.0	104.2	120.8	124.8	15.9	3.3
농기구	49.1	100.0	114.1	119.1	120.0	4.4	0.8
영농광열	16.8	100.0	148.7	110.6	120.7	△25.6	9.1
가 축	34.6	100.0	69.3	74.8	82.3	7.9	10.0
사 료	66.3	100.0	155.5	179.5	166.2	15.4	△7.4
영농자재	25.4	100.0	123.3	117.6	123.9	△4.6	5.4
농촌임료금	83.7	100.0	111.7	116.4	117.8	4.2	1.2
농업노동임금	44.5	100.0	113.1	119.3	125.3	5.5	5.0
도정료	3.6	100.0	107.3	110.8	103.6	3.3	△6.5
농기계임차료	35.6	100.0	110.3	113.2	109.9	2.6	△2.9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011년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1. 농업생산성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10년 호당 노동시간은 1,103시간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3,323천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6ha로 전년 수준이었다.

〈표 1-1-28〉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영 농 시 간	1,376	1,253	1,487	1,229	1,171	1,103	△68	△5.8
농 업 자 본 액	21,323	31,425	49,721	53,931	52,517	53,323	806	1.5
호당경지면적	1.32	1.37	1.43	1.45	1.45	1.46	-	-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2010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5,698원으로 전년 14,061원보다 11.6%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2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1시간/10a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3,920천원/10a으로 전년 수준이었다.

〈표 1-1-29〉 농업생산성 지표

구분 \ 연도	단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1]	원/시간	9,387	11,778	12,297	13,157	14,061	15,698	1,637	11.6
토지생산성[2]	천원/10a	954	1,051	1,141	1,178	1,229	1,273	44	3.6
자본생산성[3]	원/원	0.61	0.47	0.36	0.30	0.31	0.32	0.01	3.2
노동집약도[4]	시간/10a	102	89	93	90	87	81	△6	△6.9
자본집약도[5]	천원/10a	1,575	2,237	3,138	3,929	3,921	3,920	△1	0.0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년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2010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614천원으로 전년 625천원보다 1.8% 감소하였으며, 마늘은 1,811천원으로 전년 1,676천원보다 8.1% 증가하고, 양파는 1,422천원으로 전년 1,372천원보다 3.6% 증가하였으며, 고추 또한 1,908천원으로 전년 1,848천원보다 3.2% 증가하였다.

2010년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1,091천원으로 가장 많고, 양파가 936천원, 고추 929천원, 논벼가 388천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마늘이 3,117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파 2,308천원, 고추 1,523천원, 논벼 43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생산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추가 69.3%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파 54.4%, 마늘 47.7%, 논벼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0〉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879	1,013	944	822	△122	△12.9
	생산비(B)	412	538	588	630	625	614	△11	△1.8
	경영비(C)	198	280	334	389	395	388	△7	△1.8
	순수익(A-B)	325	503	292	384	319	208	△111	△34.8
	소 득(A-C)	539	761	546	624	549	434	△115	△20.9
마 늘	조수입(A)	2,001	1,427	2,007	2,129	2,201	4,268	2,067	93.9
	생산비(B)	1,067	1,226	1,423	1,677	1,676	1,811	133	8.1
	경영비(C)	582	683	798	983	999	1,091	92	9.2
	순수익(A-B)	934	201	584	452	525	2,457	1,932	368.0
	소 득(A-C)	1,420	744	1,209	1,146	1,202	3,177	1,975	164.3
양 파	조수입(A)	1,178	1,519	1,908	3,148	2,936	3,244	308	10.5
	생산비(B)	733	921	1,048	1,286	1,372	1,422	50	3.6
	경영비(C)	414	485	610	803	892	936	44	4.9
	순수익(A-B)	445	598	860	1,862	1,564	1,822	258	16.5
	소 득(A-C)	764	1,034	1,298	2,345	2,043	2,308	265	13.0
고 추	조수입(A)	1,613	1,837	2,209	2,636	2,857	2,452	△405	△14.2
	생산비(B)	937	1,127	1,497	1,732	1,848	1,908	60	3.2
	경영비(C)	347	428	638	814	855	929	74	8.7
	순수익(A-B)	676	711	712	904	1,009	544	△465	△46.1
	소 득(A-C)	1,266	1,410	1,572	1,822	2,001	1,523	△478	△23.9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2011년

3. 농림어업 부가가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석호, 위촉연구원 신성철

2010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28조 4,75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4%, 어업은 6.3% 감소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대비 6.8%감소하였으나, 축산업은 8.5% 증가하였다. 이는 재배

업 중 채소류와 과실류의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식량작물의 생산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부가가치 증가는 주요 가축(한육우, 돼지, 닭 등)의 생산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어업 부가가치는 어류, 갑각류, 패류 등 일반 해면어업과 원양어업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천해양식 생산액 감소로 인하여 어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6.3% 감소하였다[1].

〈표 1-1-31〉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단위 : 10억원, %, 2005년 기준가격)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 림 어 업		25,512	25,853	26,240	27,294	28,827	29,759	28,475
실 질 증감률	농림어업	9.1	1.3	1.5	4.0	5.6	3.2	△4.3
	재 배 업	11.4	0.0	△0.6	1.2	5.0	2.1	△6.8
	축 산 업	5.5	0.7	3.4	9.1	10.6	4.8	8.5
	임 업	4.6	4.4	7.7	11.0	2.8	15.4	△7.2
	어 업	△2.4	11.1	11.3	12.7	1.9	2.2	△6.3
	농림어업 서 비 스	14.0	11.2	△3.2	△1.1	3.5	7.3	0.8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1) 단, 농업부문 생산액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증가율을 이용하여 농림부 공표자료의 2009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식량정책과 사무관 강동윤

식량 수급 동향

식량 공급

2010 양곡년도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5,507천톤(정곡)으로 2009양곡년도 5,470천톤보다 37천톤 증가하였다. 이는 곡물생산량의 약90%를 차지하는 쌀이 2009년에 큰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쌀이 전년 4,844천톤에 비해 72천톤 증가한 4,916천톤이 생산되었으며, 밀의 경우도 전년 19천톤보다 16천톤 많은 35천톤이 생산되었다. 옥수수, 콩의 경우는 작년 수준인 77천톤, 139천톤이 생산되었다. 반면, 보리쌀의 경우는 전년 149천톤에 비해 68천톤 감소한 81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단위 : 천톤)

구분 / 양곡연도	합계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08	5,031	4,408	157	10	84	114	230	28
2009	5,470	4,844	149	19	77	132	224	25
2010	5,507	4,916	81	35	77	139	232	2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011년

●● 식량 수요

소비량은 20,617천톤으로 전년에 18,538천톤에 비해 2,079천톤 증가하였다. 식량용이 전년 대비 411천톤 증가하여 10,034천톤이 소비되었고, 사료용이 전년대비 1,668천톤이 증가하여 10,583천톤이 소비되었다. 사료용 작물 중 밀, 옥수수, 콩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량의 연말재고는 3,006천톤으로 전년 2,404천톤에 비해 602천톤이 증가하였다. 이는 쌀의 연말재고가 1,509천톤으로 2009년 993천톤에 비해 516천톤이 증가한 것에 영향이 크다.

2010년도 전체 곡물자급도는 26.7%로 2009년 29.5%보다 2.8%감소되었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54.9%로 2009년 56.9%에 비해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의 자급률이 상승(101.1→104.6%)했음에도 보리쌀(48.4→27.8%), 옥수수(4.7→3.8%), 콩(33.7→31.7%)의 식량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9년 125.4kg과 유사한 125.8kg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74kg에서 1.2kg 줄어든 72.8kg으로 나타났으며, 밀은 전년보다 0.4kg 줄어든 31kg으로 나타난 반면, 보리는 전년보다 0.1kg 늘어난 1.3kg으로 나타났고, 옥수수, 콩, 서류, 기타는 각각 0.6kg, 0.9kg, 0.1kg, 0.3kg이 늘어나서 전체 양곡소비는 0.4kg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월	2,676	2,509	2,904	3,019	2,031	2,706	24,28	2,189	1,975	26,50	2,404
생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720	5,433	5,315	5,031	5,470	5,507
수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860	14,099	13,852	13,769	12,822	15,712
소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9,779	19,771	19,382	18,125	18,538	20,617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892	10,479	10,487	9,721	9,623	10,034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887	9,292	8,895	8,404	8,915	10,583
연말재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507	2,189	1,975	2,650	2,404	3,006
자급률(%) (사료용 제외시)	56.0 (69.6)	48.4 (71.6)	43.1 (70.3)	29.1 (55.7)	29.7 (55.6)	29.4 (54.0)	27.7 (52.7)	27.2 (51.6)	27.8 (51.8)	29.5 (56.9)	26.7 (54.9)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7.5	134.4	131.9	127.3	125.4	125.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011년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4.4	78.8	1.2	33.3	4.6	8.9	3.5	4.12
2007	131.9	76.9	1.1	33.7	4.5	8.5	3.3	3.9
2008	127.3	75.8	1.1	30.9	4.5	7.6	3.5	3.9
2009	125.4	74.0	1.2	31.4	4.0	7.6	3.4	3.8
2010	125.8	72.8	1.3	31.0	4.6	8.5	3.5	4.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011년

2. 원예 · 특용작물

채소류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도범

2010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7% 감소한 245.3천ha이었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15.2% 감소한 8,381천톤이었다. 봄무 · 배추 재배면적은 22.1천ha로 전년에 비해 22.0%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25.8% 감소한 969천톤이었다. 고랭지 무 · 배추는 재배면적이 7.1천ha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92천톤으로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 28.9% 감소하였다. 가을무 · 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21.0천ha이었고, 생산량도 작황이 불량하여 24.7% 감소한 2,661천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44.6천ha로 전년보다 0.5%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전년 117천톤보다 18.7% 감소한 95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2.4천ha로 전년보다 14.9%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24.0% 감소한 272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20.3% 증가한 19.4천ha가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2.9% 증가한 1,412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내 수	8,677	10,611	11,461	10,104	10,658	10,155	10,658	10,450	9,139
	수 출	20	59	41	89	72	69	95	107	96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생 산	8,677	10,586	11,282	9,605	9,994	9,394	9,935	9,889	8,381
	수 입	20	84	220	588	736	830	818	668	854
1인당소비량(kg)		132.6	160.6	165.9	145.5	153.8	149.2	153.6	152.5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1년

과실류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기주

과수 총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162.5천ha로 전년에 비해 5.4천ha가 증가하였다. 과종별로는 배 0.9천ha, 포도 0.4천ha, 감귤 0.3천ha가 감소한 반면, 사과 0.5천ha, 복숭아 0.9천ha, 단감 0.5천ha, 기타 과실 등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2010년 과실 생산량은 2,489천톤으로 전년의 2,881천톤에 비해 13.6% 감소하였다.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과수 생육기에 저온과 동해피해, 일조시간 부족으로 착과량 감소와 생육이 부진하였고, 수확기에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낙과피해를 입는 등으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감귤의 경우에는 착과량 감소와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이 138천톤(18.3%)이나 크게 감소하였다.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62.6kg에 그쳤으며, 전년에 비해 5.1kg이 감소하였다. 과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크기가 작은 것 보다는 큰 과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과실류 수출은 주로 사과, 배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0년 수출실적은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84천불을 기록하여 전년도 89천불 대비 5.6% 감소하였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3,028.5	3,030.1	3,294.4	3,181.9	3,298.5	3,058.4
	수출	13.0	10.9	20.2	36.1	24.8	30.5	39.0	51.0	40.3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593.0	2,504.1	2,749.8	2,697.7	2,881.0	2,489.2
	수입	37.2	183.5	338.2	471.6	550.8	575.1	523.2	468.5	609.5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62.7	62.8	67.9	65.5	67.7	62.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2011년

화훼류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명남

유류가격 상승, 경기위축,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2010년도 재배농가는 10,347호, 생산판매액은 8,510억원으로, 2009년도 10,685호, 8,640억원 대비 각각 3.2%와 1.5%가 감소되었다. 재배면적은 수도권에서 화훼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009년 6,639ha에서 2010년에는 6,829ha로 2.9% 증가되었다.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2009년도 16,749원보다 3.9% 하락한 16,098원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증·개축 등 규모화지원,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지열, 목재펠릿 등) 난방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상품 개발 및 선도 조직을 통한 안정적 물량공급으로 주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주요 절화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0년도 수출은 전년보다 33.5% 증가한 103,067천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수입금액도 전년보다 17.4% 증가한 44,744천불을 기록하였다.

〈표 1-2-6〉 화훼산업 현황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배농가(호)	8,945	12,509	13,080	12,859	12,440	12,021	11,588	10,685	10,347
재배면적(ha)	3,674	5,343	6,047	7,950	7,688	7,509	7,073	6,639	6,829
생산액(억원)	2,628	5,090	6,650	10,105	9,411	9,237	8,969	8,640	8,510
수출액(천불)	1,443	6,363	28,888	52,142	40,414	58,089	76,222	77,179	103,067
수입액(천불)	5,907	26,738	19,472	28,845	35,819	40,974	42,757	38,107	44,7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2011년

특용작물

원예산업과 사무관 이영길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생산량은 2009년 대비 0.6% 감소한 12.7천톤, 2010년 자급률은 14% 수준이다.

* 생산량 : (1997) 33천톤 → (2000) 32천톤 → (2005) 23.5천톤 → (2010) 12.7천톤

참깨 수입은 연간 약 70~8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으로 도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 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0년 생산량은 2009년 대비 37% 증가한 13.9천톤으로 자급률은 26% 수준이다.

* 생산량 : (1998) 14천톤 → (2000) 9천톤 → (2005) 6.6천톤 → (2010) 13.9천톤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깨					땅 콩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수요	계	57.8	88.9	101.6	100.6	94.0	44.2	29.7	42.9	40.8	38.9
	당년소비	56.8	86.3	94.6	90.7	87.5	40.1	25.1	41.0	39.9	38.4
	수 출	0.4	–	–	–	–	–	2.3	0.4	–	–
	차년이월	0.6	2.6	7.0	9.9	6.5	4.1	2.3	1.5	0.9	0.5
공급	계	57.8	88.9	101.6	100.6	94.0	44.2	29.7	42.9	40.8	38.9
	전년이월	4.7	19.0	7.5	13.1	5.6	8.1	3.3	2.7	1.1	–
	생 산	38.1	27.9	24.1	20.9	12.8	28.7	16.8	12.4	8.3	10.2
	수 입	15.0	42.0	70.0	66.6	75.6	7.4	9.6	27.8	31.4	28.7
자급률(%)		67	32	30	23	14	72	67	30	21	26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1년

버섯 생산량은 소득 향상과 식품의 고급화에 따라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2009년 대비 12% 증가한 173.6천톤이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 등 4품목 생산량이 165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7%를 차지한다.

* 생산량 : (1997) 114천톤 → (2000) 117 → (2005) 162 → (2010) 174

〈표 1-2-8〉 버섯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수요	계	58.4	103.3	126.8	174.2	182.9
	당년소비	55.4	103.2	126.6	173.7	161.8
	수 출	3.0	0.1	0.2	0.5	21.2
	차년이월	–	–	–	–	–
공급	계	58.4	103.3	126.8	174.2	182.9
	전년이월	–	–	–	–	–
	생 산	55.3	95.8	117.6	162.1	154.4
	수 입	3.1	7.5	9.2	12.1	9.3
자급률(%)		100	93	93	93	95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1년

수출은 팽이, 새송이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에 의한 가격 · 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0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수출액은 2009년 대비 18% 상승한 38,886천불이다.

〈표 1-2-9〉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불)

구분 \ 연도	2000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천불)	5,562	8,633	23,185	33,038	38,886
팽 이	62	3,448	11,259	21,276	26,296
새송이	-	3,455	7,298	9,667	11,267
느타리	23	693	1,347	224	311
기 타	5,477	1,037	3,281	1,871	1,0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1년

인삼류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영만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인삼 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1996년 홍삼 전매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2009년의 19,702ha에 비해 3.5% 감소한 19,010ha이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9년 23,285호, 2010년 23,857호로 전체농가의 2%에 불과하나, 인삼수출액은 2009년 109백만불, 2010년도 124백만불로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3.3%를 차지하였다.

〈표 1-2-10〉 인삼류 생산동향

(단위 : ha, 톤, 호, 백만 불)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면 적	12,184	9,375	12,445	14,153	17,831	19,408	19,702	19,010
생 산 량	13,889	11,971	13,664	14,561	21,818	24,613	27,460	26,944
농 가 수	36,404	23,172	23,011	15,793	19,850	24,298	23,285	23,857
수 출	165	140	79	82	92	97	109	1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1년

3. 축산물과 사료작물

축산경영과 서기관 조병임, 사무관 권의성 · 박홍식 · 이인섭

축산물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0년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431천톤이었다.

2010년도 소비량 중 수입산은 245천톤으로 전년보다 23.7% 증가한 반면, 국내산은 186천톤으로 6.1%가 감소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8kg으로 전년보다 0.7kg이 증가하였다.

〈표 1-2-11〉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소 비 량	390	328	317	330	369	365	396	431
국 내 산	142	145	152	158	171	173	198	186
수 입 산	248	183	164	172	198	191	198	245
1인당 소비량(kg)	8.1	6.8	6.7	6.8	7.6	7.5	8.1	8.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1년

산지 소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5년 465만원, 2006년 425만원, 2007년 475만원대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여파로 2008년 8월 344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월) 및 쇠고기이력제 전면 시행('09.6월), 한우산업발전대책('08.12월) 추진 등으로 소비가 회복하며 2009년 12월에 579만원, 2010년에 523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5년에

는 1,819천두, 2006년에는 2,020천두, 2007년에는 2,201천두, 2008년에는 2,430천두, 2009년에는 2,635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도 사육두수는 2,922천두로 전년보다 10.9%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8년 12월 181천호, 2009년 12월 175천호에서 2010년 12월 172천호로 1.7%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8년 12월 13.4두, 2009년 12월 15.1두에서 2010년 12월 17.0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 규모화는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10년 총 소비량은 2009년 932천톤보다 1.3% 증가한 944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09년 19.1kg에서 2010년 19.2kg으로 비슷하게 소비되었다. 한편 돼지 사육두수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서코백신 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2009년 12월 9,585천두에서 2010년 12월에는 9,881천두로 3.0% 증가하였다. 2010년 12월 모돈 수는 976천두로 2009년 12월 966천두보다 1.0% 증가하였다.

사육 가구수는 2009년 12월 8천가구에서 2010년 12월 7.3천가구로 0.4%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9년 1,204두에서 2010년 12월 1,344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및 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9년 연간 평균가격이 332천원/110kg이었으나 2010년은 322천원/110kg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 닭고기

2008년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2010년 8월 배달용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이후 국산 닭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2010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52.2만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10.7kg으로 2009년도 총 소비량 46.9만톤, 1인당 소비량 9.6kg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2% 감소하여 연 평균 1,912원/kg이었으며, 2010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15.9% 증가한 78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수는 2010년 1.8천호로, 호당 평균 사육수는 44,169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9년보다 15.8% 증가한 1,248호로 규모화 · 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계 란

계란의 2010년 총 소비량은 57.9만톤으로 2009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0.8% 감소한 11.8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1,134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 우 유

2010년 원유 총 생산량은 2,073천톤으로 2009년 대비 1.8%(37천톤) 감소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포함)은 3,249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9년 3,110천톤보다 4.5% 증가였고, 시유 소비량은 2010년 1,541천톤으로 2009년보다 1.8%(28천톤)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4.9kg으로 2009년 62.3kg보다 4.2% 증가하였다. 음용유 소비량은 33.6kg으로 전년 34.9kg보다 1.3kg 감소하였는데, 저출산,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이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도 국산원유 2,073천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량은 1,930천톤(백색시유 1,383, 가공시유 158, 기타 유제품 389)으로서 전년도 투입량 1,1,889천톤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잉여량(분유가공량)은 전년 221천톤에 비해 35.3% 감소한 143천톤 수준이었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와 국내 소비 감소로 전년에 비해 4.1% 감소한 65.4%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전년 614원/ *l* 보다 4.4% 높아진 641원/ *l* 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10년 430천두로 지난해 445천두 보다 3.4%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도 2009년 6,767호에서 2010년 6,347호로 6.2%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10년 67.7두로 2009년 65.7두보다 3.0% 증가하였다.

사료작물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흥철, 사무관 우만수

2010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5,157천톤으로 전년(24,547천톤) 보다 2.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20,124천톤, 조사료가 5,033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7,710천톤으로 전년(16,665천톤)보다 6.3% 증가하였다.

〈표 1-2-12〉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6	2009 (A)	2010 (B)	증감률 (B/A)
합 계	17,116	23,302	19,289	21,271	24,547	25,157	2.5
농 후 사 료	11,173	15,700	15,897	17,049	19,344	20,124	4.0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6.3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1,356	2,679	2,414	△9.9
조 사 료	6,003	7,763	3,392	4,222	5,203	5,033	△3.3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326	2,101	2,776	32.1
산야초, 볏짚 등	3,171	5,265	2,400	2,896	3,102	2,257	△27.2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이며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1년

축종별로는 양계용 4.4%, 양돈용 3.8%, 한육우용이 10.5% 증가한 반면, 젖소용은 1.4%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젖소를 제외한 전 축종의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2010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기타 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17.2% 증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0년 배합사료 가격은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환율인하로 인하여 2009년 대비 7.9% 인하되었다.

〈표 1-2-13〉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6	2009 (A)	2010 (B)	증감률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6.3
양 계 용	3,274	3,766	3,867	4,267	4,463	4,658	4.4
양 돈 용	3,551	4,725	5,215	5,175	5,332	5,535	3.8
젖 소 용	1,790	2,905	1,891	1,539	1,311	1,292	△1.4
한육우용	1,667	3,681	3,340	3,574	4,310	4,761	10.5
기 타	247	589	792	1,138	1,249	1,464	1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1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지개발과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10년에 신규로 145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4〉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분 \ 연도	1995	1999	2000	2006	2009 (A)	2010 (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413	430	253	25	147	145	△1.4
관 리 면 적	66,301	53,783	51,870	42,114	40,057	39,371	△1.7
목초생산량	462	371	364	294	280	273	△2.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1년

2010년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39천ha으로 273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보다 2.5%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 · 관광산업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제2절 식품 수급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윤재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4~2010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2.3%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 3.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빵 및 떡류(8.0%), 기타식품(7.9%), 육류 및 육류가공품

(5.4%)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1.3%), 외식비(1.8%)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2010년 4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9.0%), 곡류 및 곡류가공품(5.6%),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5.6%)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지류(0.5%), 해조 및 해조가공품(0.7%), 기타식품(1.6%)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1-2-15〉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및 곡물 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채소 및 채소 가공품	해조 및 해조 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차, 음료, 주류	외식비
2004	1,848.7	541.3 (100)	41.4 (7.6)	12.8 (2.4)	40.9 (7.6)	32.2 (5.9)	23.2 (4.3)	2.2 (0.4)	31.2 (5.8)	32.6 (6.0)	6.0 (1.1)	17.5 (3.2)	12.1 (2.2)	6.3 (1.2)	22.1 (4.1)	260.7 (48.2)
2005	1,925.6	546.6 (100)	39.2 (7.2)	12.9 (2.4)	43.5 (8.0)	32.1 (5.9)	24.8 (4.5)	2.3 (0.4)	32.2 (5.9)	31.8 (5.8)	6.2 (1.1)	17.6 (3.2)	11.6 (2.1)	7.7 (1.4)	21.8 (4.0)	262.7 (48.1)
2006	2,000.4	552.6 (100)	36.6 (6.6)	13.7 (2.5)	45.0 (8.1)	33.4 (6.0)	24.0 (4.3)	2.4 (0.4)	33.9 (6.1)	32.9 (5.9)	6.3 (1.1)	16.4 (3.0)	11.7 (2.1)	8.5 (1.5)	22.6 (4.1)	265.2 (48.0)
2007	2,074.4	564.8 (100)	35.5 (6.3)	14.9 (2.6)	46.1 (8.2)	34.0 (6.0)	23.8 (4.2)	2.3 (0.4)	34.1 (6.0)	33.9 (6.0)	6.5 (1.2)	16.7 (3.0)	10.2 (1.8)	8.8 (1.6)	22.7 (4.0)	275.3 (48.7)
2008	2,183.3	606.1 (100)	39.3 (6.5)	17.6 (2.9)	50.6 (8.3)	35.3 (5.8)	27.0 (4.5)	2.8 (0.5)	36.4 (6.0)	33.4 (5.5)	6.9 (1.1)	18.7 (3.1)	10.9 (1.8)	9.4 (1.6)	24.8 (4.1)	293.1 (48.4)
2009	2,187.8	591.1 (100)	37.2 (6.3)	18.6 (3.1)	52.4 (8.9)	34.3 (5.8)	28.8 (4.9)	2.9 (0.5)	36.2 (6.1)	32.1 (5.4)	3.9 (0.7)	19.8 (3.4)	10.9 (1.8)	9.0 (1.5)	24.4 (4.1)	280.8 (47.5)
2010	2312.5	619.0 (100)	34.5 (5.6)	20.3 (3.3)	56.0 (9.0)	34.9 (5.6)	29.3 (4.7)	2.8 (0.5)	38.5 (6.2)	39.2 (6.3)	4.1 (0.7)	22.0 (3.6)	10.9 (1.8)	9.9 (1.6)	26.3 (4.2_	290.9 (47.0)
04-10	3.8	2.3	-3.0	8.0	5.4	1.3	3.9	4.0	3.6	3.1	-6.4	3.9	-1.7	7.9	3.0	1.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년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09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소득계층(3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과일 및 과일가공품, 빵 및 떡류, 기타식품, 당류 및 과자, 유제품 및 알, 육류 및 육류가공품, 차 · 음료 · 주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조미식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 등이다.

〈표 1-2-16〉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09년 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구 분	1 · 2분위		3분위		4 · 5분위	
소비지출	1,482	(66.4)	2,233	(100)	3,182	(142.5)
식료품	444	(71.3)	622	(100)	794	(127.5)
곡류 및 곡류가공품	33	(97.4)	33	(100)	37	(110.4)
빵 및 떡류	14	(68.3)	21	(100)	26	(128.6)
육류 및 육류가공품	43	(79.6)	55	(100)	69	(127.0)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0	(88.9)	34	(100)	40	(117.4)
유제품 및 알	22	(74.0)	30	(100)	37	(123.6)
유지류	2	(89.6)	3	(100)	3	(113.6)
과일 및 과일가공품	28	(76.9)	36	(100)	50	(139.1)
채소 및 채소가공품	30	(102.5)	37	(100)	42	(113.9)
해조 및 해조가공품	4	(88.1)	4	(100)	5	(116.6)
당류 및 과자	16	(70.1)	23	(100)	27	(120.0)
조미식품	11	(107.4)	10	(100)	11	(110.5)
기타식품	7	(71.1)	10	(100)	13	(125.1)
차 · 음료 · 주류	20	(74.4)	27	(100)	32	(119.0)
외식비	176	(58.5)	300	(100)	401	(133.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방과 비타민C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883kcal, 단백질 67.6g, 지방 40.5g, 철 13.4mg, 비타민C 100.2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7〉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구분 / 연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2007	1,810	65.4	37.7	462	12.9	711	1.24	1.05	14.7	92.8
2008	1,838	65.8	38.8	476	12.9	721	1.22	1.11	14.9	96.3
2009	1,883	67.6	40.5	492	13.4	766	1.26	1.20	15.4	100.2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 2007년도는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6)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 영양조사, 2010년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67.4%로 매우 낮았다. 철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48.9%), 철(123.7), 비타민A(118.7%), 티아민(117.5%), 나이아신(108.6%), 비타민 C(108.5%)는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1.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18〉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 영양소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에너지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87.5	89.0	91.1
단백질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142.9	143.8	148.9
칼슘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63.4	65.4	67.4
철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119.8	119.4	123.7
비타민 A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108.4	110.9	118.7
티아민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114.4	113.1	117.5
리보플라빈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82.5	87.0	94.9
나이아신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102.6	104.1	108.6
비타민 C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99.3	103.3	108.5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100g에서 0.5㎎/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7년도는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5)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 영양조사』, 2010년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당질 62.2%, 단백질 13.7%, 지방 24.2%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식품 수요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윤재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9년 곡류와 채소류는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조건 악화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반적

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식용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육류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실시와 생산량 증가로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서류는 기후의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고, 어패류와 해조류는 양식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쌀 생산량이 800천톤 감소하고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1인당 식용공급량이 83.22kg에서 81.26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밀 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전년대비 9천톤, 301천톤 증가하고 사료용 수요가 1,295천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31.81kg에서 30.68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감자는 전년도 고가 형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신품종 육성과 씨감자 품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산량이 10천톤 증가하고, 사료용 수요량은 9천톤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3천톤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은 전년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구마는 전년도 가격 호조로 전년대비 재배면적인 7.5% 증가하였으나, 일조량 부족, 냉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22.9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5.02kg에서 4.63kg으로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배추(56천톤), 무(146천톤), 파(58천톤) 등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38.5천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54.20kg에서 151.51kg으로 1.1% 감소하였다. 배추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시행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김치 수입량도 전년대비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33.75kg에서 36.35kg감소하였다. 무의 재배면적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145.8천톤 감소하였다.

〈표 1-2-19〉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08년 (확정)	2009년 (잠정)	증가율(%)
곡 류	145.26	139.28	▽0.42
– 쌀	83.22	81.26	▽2.36
– 보 리	1.11	1.23	△10.81
– 밀	31.81	30.68	▽3.55
– 옥수수	26.41	23.55	▽10.83
– 기 타	2.72	2.56	▽5.88
서 류	14.04	13.70	▽2.42
– 감 자	9.02	9.07	△0.55
– 고구마	5.02	4.63	▽7.77
설탕류	23.69	23.79	△0.42
두 류	9.69	9.75	△0.62
– 콩	7.69	7.80	△1.43
– 팥	0.62	0.57	▽8.06
– 기 타	1.38	1.38	0.00
견과류	1.38	1.53	△10.87
종실류	0.69	0.81	△17.39
– 참 깨	0.32	0.38	△18.75
– 기 타	0.37	0.43	△16.22
채소류	154.20	152.51	▽1.10
과실류	46.92	47.67	△1.60
육 류	40.66	43.28	△6.44
– 쇠고기	7.27	9.30	△27.92
– 돼지고기	18.49	18.22	▽1.46
– 닭고기	7.01	7.52	△7.28
– 부산물	7.90	8.25	△4.43
계란류	9.43	10.04	△6.47
우유류	52.77	53.30	△1.00
– 우 유	51.77	52.30	△1.02
어패류	39.05	35.40	▽9.35
어 류	24.31	21.29	▽12.42
패 류	14.74	14.10	▽4.34
해조류	15.83	14.43	▽8.84
유지류	12.31	13.33	△8.29
– 식물성	11.93	12.83	△7.54
– 동물성	0.38	0.50	△31.58
주 류	76.22	75.41	▽1.0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식품수급표, 2010년

파는 2009년 재배면적이 전년도의 가격하락으로 전년대비 13%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58천톤 감소하였다.

과실의 생산량은 사과, 복숭아, 귤은 증가하였으나, 배, 단감 등은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대비 0.75kg 증가하였다. 사과는 지속적인 가격 호조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성목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23천톤 증가하였다. 배는 도시개발, 노령화 등으로 인한 폐원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7% 감소하여 생산량이 52천톤 감소하였다. 귤은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태풍 및 병충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서 생산량이 전년대비 116천톤 증가하였다. 단감은 2009년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21천톤 감소하였다. 이밖에 복숭아는 성목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생산량이 9천톤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2008년 12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2009년 6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등으로 인한 한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정육점형 식당이 확산되어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24천톤 증가하고 이입량도 327.9천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7.27kg에서 9.30kg으로 증가하였다. 돼지는 사육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재고가 누적되어 수입량이 4.5천톤 감소하였다. 또한 이입량이 13.5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닭고기는 2009년 국내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종계도태가 지연되면서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7.01kg에서 7.52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어류는 2009년도 생산량, 수입량, 이입량이 각각 전년대비 21.7천톤, 32.7천톤, 31.2천톤 감소한 반면, 수출량이 167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패류는 양식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90.5천톤 감소하고, 전년도 이입량과 수입량도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4.74kg에서 14.10kg로 다소 감소하였다. 해조류는 양식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65.4천톤 감소하고, 수입량도 14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5.83kg에서 14.43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식물성 유지는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며(0.5천톤) 수입이 약61천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1.93kg에서 12.83kg으로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는 어유의 생산이 전년대비 0.4천톤으로 다소 증가하고 수입량도 4.2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0.38kg에서 0.50kg으로 증가하였다.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곡류자급률은 1990~2009년간 43.8%에서 30.2%, 채소류는 98.9%에서 92.6%, 과실류는 102.5%에서 89.5%, 육류는 92.9%에서 77.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70.5%, 어패류는 121.7%에서 74.8%, 유지류는 8.0%에서 3.1%로 하락하였다.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단위 : %)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급 영양 자급률	칼로리	62.6	50.6	50.6	45.4	44.9	44.1	48.3	50.1
	단백질	67.8	57.2	52.8	47.0	46.3	46.5	49.4	50.3
	지 방	30.3	26.8	21.4	18.1	17.6	17.7	22.6	21.8
물량 기준 자급률	곡 류	43.8	30.0	30.8	29.4	27.8	27.4	28.4	30.2
	쌀	108.3	91.1	102.9	96.0	95.3	98.3	94.4	101.1
	두 류	24.5	11.7	8.2	10.7	14.2	11.6	9.3	10.7
	채소류	98.9	99.2	97.7	94.5	92.2	90.4	91.0	92.6
	과실류	102.5	93.2	88.7	85.6	82.7	83.5	84.8	89.5
	육 류	92.9	89.2	83.9	81.6	78.4	78.2	78.6	77.5
	쇠고기	53.6	50.8	53.2	48.1	47.8	46.4	47.6	42.2
	돼지고기	100.3	96.6	91.6	83.7	77.4	75.8	76.5	78.9
	닭고기	100.0	98.1	79.9	84.3	82.6	87.7	86.4	87.1
	계란류	100.0	99.9	100.0	99.3	99.4	99.4	99.7	99.8
	우유류	92.8	93.3	81.2	72.8	72.4	70.8	72.3	70.5
	어패류	121.7	100.4	87.7	60.0	64.0	72.3	72.4	74.8
	유지류	8.0	4.8	3.2	2.8	1.9	1.7	3.3	3.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식품수급표, 2010년

칼로리 자급률[2]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09년 50.1%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9년 50.3%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9년 21.8% 수준이다.

2)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간 식품 공급량(조식품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48.4kg), 채소류(172.7kg), 어패류(74.7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두류(13.8kg), 과실류(59.3kg), 육류(46.2kg), 우유류(53.3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48.8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73.4kg)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대만(91.1kg)이나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당 1년간 공급량은 13.8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적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09년에 172.7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6.2kg으로 일본, 파키스탄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계란류(11.7kg), 우유류(53.3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74.7kg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2-21〉 주요국별 1인당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9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곡 류	148.4	173.4	91.1	177.2	137.7	153.7
서 류	13.0	38.4	21.4	57.4	74.1	13.8
설탕류	14.4	119.3	24.6	173.9	205.7	224.7
두 류	13.8	73.7	26.1	86.9	63.5	54.4
채소류	172.7	130.7	113.2	125.5	133.6	29.6
과실류	59.3	58.4	138.6	122.8	135.1	31.0
육 류	46.2	34.8	78.2	93.7	77.3	15.0
계란류	11.7	18.7	18.0	14.8	11.8	2.1
어패류	74.7	64.8	31.0	23.4	14.3	1.8
우유류	53.3	75.5	21.5	256.5	308.0	151.4
유지류	0.5	0.5	24.0	1.4	2.6	0.9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3)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4)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식품수급표, 2010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당 1일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09년도에는 2,782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1인당 1일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09년 현재 에너지원의 54.9%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6.8%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구 분	한 국[1]	일 본	대 만[1]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9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에너지(kcal)	2,782	2,837	2,955	3,690	3,584	2,422
전 분 질(%)	54.9	65.4	41.2	57.1	48.6	64.8
설 탕(%)[2]	9.0	7.6	9.0	8.0	10.9	13.0
동 물 성(%)	16.8	20.5	21.4	27.7	32.0	17.8
유 지 류(%)[3]	11.8	0.4	19.6	0.9	1.8	0.9
기 타(%)	7.4	6.0	8.9	6.4	6.7	3.5
1인당GNI($)	17,193	38,950	16,067	43,560	34,870	690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2)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3)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과 한국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식품수급표, 2010년

3. 식품산업 동향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병우

식품제조업

2009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4,169개로 2000년(3,431개)보다 21.5%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67천명으로 2000년(158천명) 보다 5.7%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09년 60.7조원으로 2000년 34.0조원 대비 51.8% 증가하였다.

2009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46억원으로 2000년 99억원보다는 50.5%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3억원으로 2000년(0.95억원) 대비 36.8%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09년 35.9%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수(A)	3,431	3,932	4,057	4,257	4,061	4,169
종사자수(B)	158	158	157	163	161	167
출하액(C)	34,071	43,668	44,381	48,149	55,211	60,771
업체당 출하액(C/A)	9,931	11,106	10,939	11,311	13,596	14,557
1인당 부가가치	95.3	112.9	113.1	119.5	128.3	130.6
부가가치율	44.2	40.9	40.0	40.4	37.4	35.9

주 :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100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10년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16.3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6.6%), 사업체수 1,416개(34.0%)로 전체 식품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09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53개(6.0%), 출하액 7.9조원(13.0%) 수준을 보였다.

2007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수산물 가공 · 저장 처리업(806개), 도축, 육류 가공 · 저장처리업(608개), 과실 및 채소 가공 · 저장처리업(406개), 곡물가공품, 전분 · 전분제품 제조업(279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 · 저장처리업(8.9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8.2조원),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6.6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 · 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3.7%가 경기지역(990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충남(407개, 9.8%)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5.2조원), 충남(6.4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인천 297.8억원, 전남:58.4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4〉 식품제조업체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09년)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식품 제조업	4,169	165,538	60,771,327	100.0
식료품 제조업	3,916	153,429	52,878,879	87.0
– 도축, 육류 가공 · 저장처리업	608	27,650	8,956,252	14.7
– 수산물 가공 · 저장처리업	806	24,101	3,481,556	5.7
–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06	14,357	1,968,353	3.2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60	2,450	2,209,357	3.6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03	9,235	6,628,821	10.9
– 곡물 가공품, 전분 · 전분제품제조업	279	7,672	5,129,004	8.4
– 기타 식품제조업	1,416	60,802	16,332,829	26.9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19	7,162	8,172,707	13.4
음료 제조업	253	13,109	7,892,448	13.0
– 알콜 음료 제조업	94	6,662	4,524,327	7.4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159	6,447	3,368,121	5.5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10년

2009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1.0%이고 2000년 이후 79.5%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 33개소 → 2009년 : 28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1.0%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0.3%, 출하액 비중은 23.3%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9.4%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77.1%,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5%에 그쳤다.

〈표 1-2-25〉 식품제조업체 규모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

구분 \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3,431	3,932	4,507	4,257	4,061	4,169
종사자규모별						
50인 미만	79.5	82.0	82.4	82.6	81.5	81.0
50~300인	18.9	16.9	16.6	16.4	17.5	18.0
300인 이상	1.6	1.1	1.0	0.9	1.0	1.0
출하액규모별						
10억원 미만	39.1	29.3	26.7	26.9	22.9	19.4
10~100억원	45.6	53.3	55.9	55.1	56.6	57.9
100~1,000억원	13.1	14.9	15.2	15.6	17.3	19.2
1,000억원 이상	2.1	2.5	2.2	2.3	3.2	3.5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대상), 2010년

외식산업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문지인

2009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580.5천개로 지난 10년간 55만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601천명으로 1997년 1,279천명보다는 25.2%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69.9조원으로 1999년 33.3조원에 비해 109.9%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09년 123.5백만원으로 1999년 58.9백만원에 비해 109.7%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09년 43.6백만원으로 1999년 25.0백만원에 비해 74.4% 증가하였다. 건물 연면적(㎡)당 매출액(매출액/건물연면적)은 1,145.9천원으로 1999년 740.7천원에 비해 54.7% 증가하였다.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

구분 \ 연도	1999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수(A)	564.7	570.6	531.9	546.5	577.3	577.0	580.5
종사자수(B)	1,333	1,430	1,445	1,450	1,567	1,578	1,601
매출액(C)	33,259	35,472	46,253	50,892	56,365	64,712	69,865
업체당 매출액(C/A)	58.9	62.2	87.0	93.1	97.6	112.2	123.5
1인당 매출액(C/B)	25.0	24.8	32.0	35.1	36.0	41.0	43.6
건물 연면적(㎡)당 매출액	740.7	780.3	936.1	954.5	993.1	1,105.0	1,145.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2010년

〈그림 1-2-1〉 업체당 · 1인당 및 건물 연면적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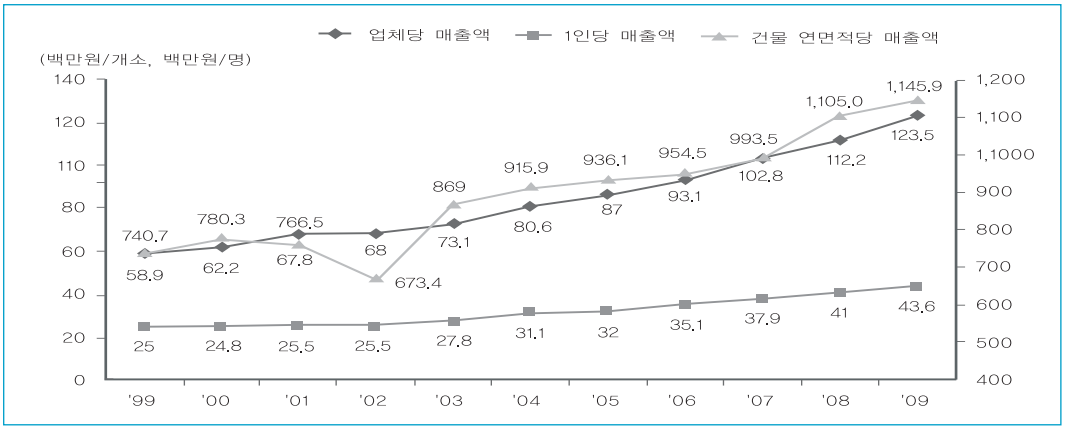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79천개, 매출액은 33.8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서양식, 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식당 사업체 수는 2008년 대비 0.3% 감소했으나, 매출액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7〉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수 및 매출액(2009년)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구 분	사업체수(A)	매출액(B)	업체당매출액(B/A)
음식점 및 주점업	580,505	69,865	120.4
음식점업	421,856	56,121	133.0
일반 음식점업	316,183	41,719	131.9
한식	278,978	33,770	121.0
중식	21,466	3,097	144.3
일식	6,268	1,752	279.5
서양식	8,610	2,840	329.8
기타 외국식	861	258	299.7
기관구내식당업	4,566	2,833	620.5
출장 및 이동음식업	469	139	296.4
기타 음식점업	100,638	11,430	113.6
제과점업	13,223	2,831	214.1
피자,햄버거,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12,102	2,754	227.6
치킨 전문점	26,156	2,208	84.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5,454	2,722	5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3,703	915	247.1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58,649	13,745	86.6
주점업	130,881	11,626	88.8
비알콜 음료점업	27,768	2,119	76.3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2010년

지역별로는 경기(111.9천개)와 서울(107.3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7.8%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8억원), 경기(1.4억원), 인천(1.3억원), 대전(1.2억원), 충북(1.1억원), 제주(1.1억원), 부산(1.0억원), 대구(1.0억원), 전북(1.0억원) 지역이 1억원 이상이고, 경북(76.4백만원) 지역이 8천만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28〉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09년)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당매출액	1인당매출액	건물연면적(㎡)당매출액
전 국	580.5	100.0	1600.7	69,865.2	120.4	43.6	1145.9
서 울	107.3	18.5	363.3	19,183.9	178.7	52.8	1801.7
부 산	46.1	7.9	122.9	4,581.0	99.3	37.3	1107.0
대 구	30	5.2	77.8	3,028.0	100.9	38.9	969.6
인 천	27	4.7	73.3	3,381.7	125.5	46.2	1176.0
광 주	15.8	2.7	43.5	1,575.1	99.5	36.2	1014.4
대 전	16.2	2.8	46	1,971.0	121.5	42.9	992.7
울 산	15	2.6	37.4	1,306.3	87.3	34.9	817.2
경 기	111.9	19.3	329.9	15,543.0	138.9	47.1	1314.4
강 원	27	4.7	62.3	2,232.3	82.6	35.9	741.2
충 북	20.1	3.5	48.6	2,202.9	109.4	45.3	974.8
충 남	26	4.5	62.8	2,410.2	92.6	38.4	875.1
전 북	20.2	3.5	52.8	2,034.3	100.8	38.5	921.4
전 남	23.4	4.0	54.8	1,943.6	83.2	35.5	798.1
경 북	39	6.7	87.2	2,978.8	76.4	34.2	734.1
경 남	46	7.9	111.3	4,414.5	95.9	39.7	796.0
제 주	9.4	1.6	26.8	1,078.5	114.9	40.3	1133.7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2010년

2009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89.6%이고, 지난 10년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5% 수준이다. 사업체수의 89.6%에 달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68.0%, 매출액 비중은 68.9% 수준인 반면, 사업체 중 1.9%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대규모 음식점업체는 매출액 비중이

12.9%로 나타났다.

2009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66.7%로 1999년 89.1%에 비해 22.4%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인 업체는 전체의 32.1%이고 1999년 10.7%에 비해 21.4% 증가하였다.

〈표 1-2-29〉 음식점업 사업체 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

구분 \ 연도	1999	2000	20005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564.7	570.6	531.9	546.5	550.8	577.0	580.5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94.7	95.3	89.6	90.4	89.9	89.8	89.6
5~10인	4.8	3.9	8.5	7.9	8.2	8.2	8.4
10인 이상	0.5	0.8	2.0	1.8	1.9	1.9	2.5
매출액규모별							
100백만원 이상	89.1	86.2	79.1	75.0	71.3	70.5	66.7
100~1,000백만원	10.7	13.7	20.4	24.3	27.9	28.5	32.1
1,000백만원 이상	0.2	0.1	0.5	0.7	0.7	1.0	1.2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2010년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수출진흥팀 사무관 김상진

1. 농식품 수출입동향

수출동향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5,880백만불로, 냉해(4월), 태풍(8월)으로 인한 작황 부진 및 구제역 발생(1, 4, 11월) 등 열악한 수출여건 속에서도 농 · 축 · 임 · 수산물 전 부류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9년(4,809.3백만불) 대

비 10억불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과거 10억불 돌파에 20년(1988년→2008년) 정도 소요된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김, 음료의 신규추가로 연간 1억불 이상 수출품목이 담배, 참치, 설탕, 커피조제품, 라면, 인삼, 소주, 오징어를 포함하여 10개로 증가하는 등 주력품목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시설원예 신선농산물, 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소득 증대효과가 높은 전략상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화훼는 전년대비 33.5 증가하며 1억불을 돌파하였고, 딸기(26.1%), 팽이버섯(23.6%), 굴(56.4%), 넙치(36.4%)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류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로 우리나라 전통식품 수출도 선전하였다. 막걸리는 전년대비 204.2% 급증하였고, 유자차(21.5%), 고추장(15.1%), 인삼(14.0%), 김치(10.0%)도 안정적 증가세를 이어갔다.

〈표 1-2-30〉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증감률 (B/A)
		물 량	금액(A)	물 량	금액(B)	
농림수산식품	3,759.0	2,634.3	4,809.3	3,104.0	5,880.0	22.3
농 식 품	3,048.2	1,982.1	3,298.1	2,311.0	4,081.8	23.8
(신선농식품)	(675.0)	(309.2)	(739.3)	(328.5)	(873.8)	18.2
(가공농식품)	(2,373.2)	(1,672.9)	(2,558.8)	(1,982.5)	(3,208.0)	25.4
농 산 물	2,714.6	1,753.7	2,990.8	2,079.2	3,721.7	24.4
축 산 물	215.1	59.7	139.6	59.2	146.1	4.7
임 산 물	185.5	168.7	167.7	172.6	214.0	27.7
수산식품	1,448.3	652.2	1,511.2	793.0	1,798.2	19.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1년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중국(39.3%), 아세안(38.1%), 대만(36.4%)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은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20%를 상회하며 일본에 이은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일본(19.1%), 미국(11.0%) 등 선진시장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EU(28.4%), 홍콩(24.2%), 러시아(4.2%) 등 주요국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최대 수출국

일본은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2007년 이후 엔고와 한류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수출증가를 지속하며 제1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시장개척 노력에 힘입어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진척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국 177개국 중 1억불 이상 수출국은 2010년 이라크, 필리핀의 추가로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1개로 증가하였다.

전체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3.9%로 전년(82.6%)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아세안, EU 등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상위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일　본 : 참치(전년대비 165.5%), 소주(101.7), 제3맥주(96.5), 김치(82.8), 파프리카(58.3)
- ○중　국 : 설탕(96.6), 펄프(47.9), 커피조제품(43.2), 오징어(40.4), 라면(28.3)
- ○미　국 : 담배(31.3), 배(25.4), 김(25.1), 라면(23.5), 굴(19.8)
- ○러시아 : 커피조제품(48.5), 담배(44.8), 마요네즈(32.1), 음료(14.2), 우유조제품(9.3)
- ○홍　콩 : 설탕(68.3), 인삼(27.8), 맥주(24.9), 담배(19.2), 굴(8.8)
- ○대　만 : 배(24.3), 인삼(23.6), 사과(15.2), 옥수수전분(15.0), 커피조제품(9.7)
- ○아세안 : 참치(106.2), 담배(47.8), 커피조제품(36.5), 설탕(33.7), 과당(21.0)
- ○E　U : 참치(50.5), 라면(9.2), 오징어(8.3), 바지락(6.6), 어류제품(5.1)

〈표 1-2-31〉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 연도	2009(A)		2010(B)		증감률(B/A)		점유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634.3	4,809.3	3,104.0	5,880.0	17.8	22.3	100.0
일 본	687.5	1,580.4	961.9	1,882.6	39.9	19.1	32.0
중 국	414.8	565.2	474.3	787.4	14.3	39.3	13.4
미 국	175.5	467.3	188.8	518.8	7.6	11.0	8.8
러시아	100.8	226.3	116.7	235.7	15.7	4.2	4.0
홍 콩	177.5	196.2	194.0	243.7	9.3	24.2	4.1
대 만	86.4	154.8	118.0	211.3	36.5	36.4	3.6
아세안	486.9	521.1	529.8	719.8	8.8	38.1	12.2
E U	133.2	259.1	161.6	332.7	21.3	28.4	5.7
기 타	371.7	838.9	358.9	948.0	?3.4	13.0	16.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1년

수입동향

2010년도 농식품 수입은 저온현상 및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1.4% 증가한 25,787백만불이 수입되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과실류는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945.1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곡류는 전반적인 국제 곡물가 상승 및 옥수수, 밀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4.9% 증가한 3,445.0백만불이 수입되었고, 채소류는 고추, 김치, 마늘, 배추 등 전반적인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6.7% 증가한 719.5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쇠고기 및 양고기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921.5백만불이 수입되었고, 임산물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한 5,219.1백만불, 수산물은 19.5% 증가한 3,457.3백만불이 수입되었다.

〈표 1-2-32〉 품목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 연도	2009(A)		2010(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43,519.0	21,249.9	47,177.8	25,787.2	8.4	21.4
곡 류	11,730.7	3,005.8	13,593.7	3,455.0	15.9	14.9
박 류	4,715.9	1,243.1	5,095.4	1,307.0	8.1	5.1
과실류	645.7	717.1	821.1	945.1	25.4	31.8
채소류	668.2	490.6	853.9	719.5	27.8	46.7
두 류	1,169.6	645.0	1,318.4	651.7	12.7	1.0
주 류	297.1	509.9	323.9	600.1	9.0	17.7
커피류	106.1	312.3	117.7	418.1	11.0	33.9
연초류	64.8	346.6	66.4	381.0	2.4	9.9
화훼류	9.1	38.1	12.0	44.7	31.6	17.4
인삼류	0.2	3.1	0.2	4.0	3.1	31.2
육류(포유가축)	557.1	1,588.5	601.8	1,921.5	8.0	21.0
어 류	762.6	1,567.4	806.3	1,891.0	5.7	20.7
갑각류	106.2	478.2	101.3	503.6	△4.6	5.3
기 타	22,676.7	10,295.3	23,465.7	12,944.9	3.5	2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1년

〈표 1-2-33〉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연도 / 구분	2009(A)		2010(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43,519.0	21,240.9	47,177.8	25,787.2	8.4	21.4
미 국	10,895.2	4,590.9	13,223.8	5,959.7	21.4	29.8
중 국	6,834.5	3,676.0	6,955.3	4,323.2	1.8	17.6
호 주	4,832.9	1,703.1	5,278.8	2,212.7	9.2	29.9
브라질	2,983.9	1,471.1	2,554.0	1,518.4	△14.4	3.2
캐나다	1,277.0	749.1	1,889.3	1,062.8	47.9	41.9
뉴질랜드	2,592.4	658.9	2,473.5	845.9	△4.6	28.4
러시아	890.9	616.8	894.6	738.5	0.4	19.7
ASEAN	5,823.4	2,758.1	6,474.6	3,422.5	11.2	24.1
E U	1,096.4	1,713.1	1,533.1	1,955.8	39.8	14.2
기타국가	6,460.1	3,339.7	5,900.8	3,747.7	△6.2	13.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1년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류와 쇠고기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한 5,959.7백만불이 수입되었고, 중국은 문어, 조기 등의 수산물과 고추, 김치, 마늘 등의 채소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4,323.2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호주는 사탕수수당, 쇠고기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한 2,212.7백만불이 수입되었다.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배은정

농식품 교역규모

2010년도 남북한 전체 교역실적은 1,912.2백만불로 전년도 1,679.1백만불에 비해 13.9%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식품 교역실적은 129.5백만불로 전년대비 45.5%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1,912.2백만불의 6.8%를 차지하였다.

〈표 1-2-34〉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 연도	연도별 교역실적		
	2009	2010	증감률(%)
전 체	1,679.1	1,912.2	13.9
농림수산식품	237.7	129.5	-45.5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2011년

농식품 교역동향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10년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41.3백만불로서 전년도 35.7백만불보다 15.6% 증가하였고, 반입은 88.2백만불로서 전년도 202백만불 보다 56.3%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 품목수는 130여개 품목이며, 이중 농산물은 쌀, 밀가루, 마늘, 대두유, 빵, 곡류가공품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수목류 등이며, 수산물은 미역, 새우 등이고 건조수산물 및 기타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표 1-2-35〉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 연도	2009(A)		2010(B)		증감률(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9,448	35,723	30,423	41,292	3.3	15.6
쌀	381	491	5,775	3,827	1,415.7	679.4
감 자	1,069	1,978	0.7	1	-100	-100
밀가루	1,996	1,374	5,135	2,054	157.3	49.5
마 늘	9,424	8,955	4,163	6,503	-55.8	-27.4
대두유	4,860	5,162	3,225	3,385	-33.6	-34.4
곡류가공품	1,036	2,321	859	2,707	-17.1	16.6
빵	356	1,264	1,005	3,935	182.3	211.3
면 류	562	1,228	797	2,663	41.8	116.8
기타농산가공품	792	1,326	1,972	3,970	149.0	199.4
축산물	205	1,055	305	1,513	48.8	43.4
임산물	1,396	1,398	532	794	-61.9	-43.2
수산물	2,612	3,144	3,062	2,661	17.2	-15.4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2011년

•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 품목수는 60여개 품목이며, 이중 농산물은 마늘, 들깨,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이고, 수산물은 새우, 문어, 조개류 및 건조수산물 등이다. 반입실적은 88백만불로 전년대비 56.3% 감소하였다. 지난해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 발표(5.24)에 따라 농식품 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 연도	2009(A)		2010(B)		증감율(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97,503	201,994	49,361	88,255	-49.4	-56.3
대 두	1,736	1,462	-	-	-100	-100
녹 두	1,400	1,313	-	-	-100	-100
마 늘	8,069	13,828	3,589	8,287	-55.5	-40.0
고사리	1,500	11,345	93	653	-93.8	-94.2
표고버섯	614	5,697	290	2,973	-52.8	-47.8
밤	633	1,038	401	1,613	-36.6	-55.4
식물성한약재	702	1,318	111	178	-84.2	-86.5
새 우	3,316	20,964	883	6,904	-73.4	-67.1
문 어	2,221	7,885	601	2,302	-72.9	-70.8
기타조개	42,617	52,514	27,676	31,622	-35.1	-39.8
미 역	1,679	1,629	2,590	2,250	54.3	38.1
기타연체동물	15,722	18,071	7,527	9,518	-52.1	-49.1
건조수산물	2,126	21,245	210	2,476	-90.1	-88.3
기타수산 가공품	4,180	16,249	873	3,323	-79.1	-79.5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2011년

제3장 국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전호

개 요

2011/1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된 22억 6,908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22억 8,487만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4억 2,769만톤, 기말재고율은 2010/11년도보다 1.2%p 낮은 18.7%가 될 전망이다.

쌀

2011/12년도 쌀 생산량은 2010/11년보다 1.4% 증가된 4억 5,632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4억 5,627만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0.1% 증가된 9,628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21.1%로 전년도보다 0.4%p 낮아질 전망이다.

밀

2011/12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6억 6,242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2010/11년보다 2.1% 증가한 6억 7,02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1억 8,219만톤으로 전년보다 4.1%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22.1% 줄어들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지난해보다 1.7%p 하락한 27.2%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2011/12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6.4% 증가된 8억 7,239만톤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3,480만톤 정도 늘어난 8억 7,761만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EU와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3.7%, 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4.3% 감소된 1억 1,56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520만톤 줄어든 수준이다.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1%p 하락한 13.2%가 될 전망이어서 낮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대 두

2011/12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145만톤으로 전년대비 0.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2010/11년 2억 5,419만톤보다 약 850만톤 늘어난 2억 6,26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6,197만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588만톤과 비교하여 5.9% 감소,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3%p 하락한 23.6%가 될 전망이다.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단위 : 백만톤)

구분	연도	2009/2010(A)	2010/2011(B)	2011/2012(C) 2011.7월전망	증△감(%) (C/B)
전체곡물	생 산	2,234.0	2,188.4	2,269.1	3.7
	소 비	2,198.7	2,232.2	2,284.9	2.4
	교 역	290.0	274.0	278.1	1.5
	재 고	487.3	443.5	427.7	-3.6
	(재고율%)	(22.2)	(19.9)	(18.7)	
쌀	생 산	440.1	450.2	456.3	1.4
	소 비	437.7	447.9	456.3	1.9
	교 역	31.1	31.7	32.1	1.3
	재 고	93.9	96.2	96.3	0.1
	(재고율%)	(21.5)	(21.5)	(21.1)	
밀	생 산	684.3	648.2	662.4	2.2
	소 비	652.5	656.6	670.2	2.1
	교 역	135.9	127.9	130.0	1.6
	재 고	198.3	190.0	182.2	-4.1
	(재고율%)	(30.4)	(28.9)	(27.2)	
잡 곡	생 산	1,109.6	1,089.9	1,150.3	5.5
	소 비	1,108.5	1,127.8	1,158.4	2.7
	교 역	123.1	114.4	115.9	1.3
	재 고	195.1	157.3	149.2	-5.1
	(재고율%)	(17.6)	(13.9)	(12.9)	
옥수수	생 산	813.0	820.0	872.4	6.4
	소 비	816.6	842.8	877.6	4.1
	교 역	97.0	90.2	94.9	5.2
	재 고	143.6	120.9	115.7	-4.3
	(재고율%)	(17.6)	(14.3)	(13.2)	
대 두	생 산	260.8	263.7	261.5	-0.9
	소 비	238.3	254.2	262.7	3.3
	교 역	92.7	92.8	97.6	5.2
	재 고	59.4	65.9	62.0	-5.9
	(재고율%)	(24.9)	(25.9)	(23.6)	

자료 : USDA, 2011년

2. 국제곡물 가격동향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전호

쌀값 동향

미 농무부(USDA)가 2011년 7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19.6% 상승한 톤당 871불,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4.9% 상승한 톤당 581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불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불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불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불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불, 하반기에는 580불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부터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불, 9월에는 1,119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약간 하락하여 2009년 2월까지 1,075불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톤당 1,208불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5월에는 톤당 719불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톤당 871불로 전년 동월대비 19.6% 상승하였다. 2011년 미국의 중 · 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태국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불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불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불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불, 3월 615불, 4월에는 929불, 5월에는 949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여 12월에는 548불까지 하락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615불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태국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6월에는 463불까지 하락하였다가 반전되어 2011년 7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24.9%, 전월대비 9.4% 상승한 톤당 581불이다. 2011년 태국 장립종 쌀가격은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값 동향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불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불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불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불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불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226불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다. 2010년 7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25일 현재 2011년 9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83불로 전년 동월대비 31.6%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6.0% 하락하였다.

2011/12년도 미국, 호주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은 이상기후와 파종지연으로 감소하고 재고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불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불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불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불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불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불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145불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154불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8월에는 톤당 129불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선물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25일 현재 2011년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7불로 전년 동월대비 79.2%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6.0% 하락하였다.

2011/12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되나 재고율이 낮아 2010/11년도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

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 값 동향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불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불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불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불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불, 6월에는 553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319불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365불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332불로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다시 톤당 445불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9년 9월에는 톤당 342불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6월에는 348불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25일 현재 2011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6.8%, 전월대비 0.4% 상승한 톤당 502불이다.

2011/12년도 대두 소비량이 늘어나서 재고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단위 : 불/톤)

구분 \ 연도		2008/09	2009/10	2010.7	2011.6	2011.7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쌀 (미국)	CA 중립종[1]	1,119	791	728	871	871	19.6	0.0
	남부장립종[1]	610	506	427	522	529	23.9	1.3
쌀(태 국)[2]		609	532	465	531	581	24.9	9.4
쌀(베 트 남)[3]		456	397	356	463	493	38.5	6.5
밀		247	192	215	301	283	31.6	-6.0
옥 수 수		155	145	149	284	267	79.2	-6.0
대 두		373	359	367	500	502	36.8	0.4

주 : 1)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남부 장립종은 2등급,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s.

자료 : USDA, Rice Outlook, July 13, 2011년

제2절 주요국가 농업 동향 및 양자 간 통상협력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홍기옥

1. 주요국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미 국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국으로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밀이나 면화의 생산량도 많다. 축산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생산이 왕성하다. 2009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액 141,193억불 중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1,534억불이다.

미국의 농경지 규모는 전체 토지면적(98,315만ha)의 41.8%인 41,120만ha가 농용지이며, 이중 17,050만ha가 경지로, 270만ha는 영년생작물용지로, 23,800만ha는 방목지 등으로 이용된다. 2007년 미국 농업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 호 수는 220만호로 2002년 대비 4% 증가하였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57.1세로 2002년 55.3세에 비해 높아졌는데 특히, 2002년 대비 75세 이상의 농장주는 20% 증가, 75세 이하 농장주는 30% 감소하였다.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170ha로 2002년 176ha보다 감소하였다. 농림수산업인구는 548만명으로 전체 인구(31,167만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농업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산물판매액은 2,972억불로서 농가 호 당 판매액은 평균 134,807천불이었으며, 경종분야와 축산분야 판매액이 각각 1,437억불과 1,5365억불을 차지하였다.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2,500불인 농가수가 90천호, 50만불 이상인 농가수가 11.6천호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25만불 이상인 대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 수의 9%이나 전체 농산물판매액의 63%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로서는 밀, 옥수수, 콩,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가 있다.

〈표 1-3-3〉 미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만톤)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밀	5,724	4,922	5,582	6,802	6,031
옥수수	28,226	26,750	33,118	30,714	33,301
콩	8,350	8,700	7,286	8,075	9,142
우유	8,025	8,246	8,419	8,616	8,586
쇠고기	1,120	1,186	1,198	1,184	1,189
돼지고기	938	955	995	1,060	1,044
닭고기	1,604	1,622	1,663	1,700	1,633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며, 옥수수, 콩, 밀, 면화의 수출액은 세계 1위,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2위이다. 특히 옥수수는 전 세계 수출액의 5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FAO, 2008).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수 출	수출액(억불)	점유율(%)	수 입	수입액(억불)	점유율(%)
캐나다	162	14.0	캐나다	179	22.6
멕시코	156	12.5	EU	158	19.9
일본	131	11.3	멕시코	108	13.6
중국	112	9.7	중국	34	4.3
EU	107	9.3	인도네시아	27	3.4
총액	1,155	100	총액	793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2008년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수 출	수출액(억불)	점유율(%)	수 입	수입액(억불)	점유율(%)
콩	155	13.1	음료	55	6.8
옥수수	139	11.8	와인	46	5.7
밀	113	9.6	원재료	38	4.7
면화	48	4.1	커피원두	38	4.7
조정식료품	48	4.1	맥주(보리)	37	4.6
총액	1,179	100	총액	804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2008년

●●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 대상, 지원 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Farm Bill)은 2008년 5월 14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 상원에 서 가결된 후 2008년 6월 18일 정식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며, 소요 예산은 2002년 농업법보다 370억불 증가한 5년간 총 3,050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국 농업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보존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policy + Program)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1965년 농업법 이후 4~5년 주기로 개정 · 보완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청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 및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행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 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였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회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정책방향 즉, ① 농산물 수출증대 ② 바이오연료 및 재생가능 연료 생산 촉진 ③ 지역 농업생산과 지역 소비의 연계 ④ 미국 농촌에 초고속 통신망(broadband) 설치 ⑤ 야외 여가 시설에 투자 ⑥ 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s)의 활용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중 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윤숙

종합(농업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39조 798.3억위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액은, 1차산업 40,497억위엔(4.3%↑), 2차산업 186,481억위엔(12.2%↑), 3차산업 171,005억위엔(9.5%↑)이다. 1차산업 부가가치 증가액이 국내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2%, 2차산업 46.8%, 3차산업은 43.0%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3% 상승, 그중 1/4분기 2.2%, 2/4분기 2.9%, 3/4분기 3.5%, 4/4분기 4.7% 상승하였다. 식품가격은 7.2% 상승하였다. 고정자산투자 가격 3.6% 상승하였다. 공업품 출하가격 5.5% 상승하였다. 원재료, 연료, 동력구매가격은 9.6% 상승하였다. 농산품 생산가격은 10.9% 상승하였다.

〈표 1-3-6〉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폭(2010년)

(단위: %)

지 표	전 국		
		도 시	농 촌
소비자물가	3.4	3.2	3.6
식 품	7.3	7.1	7.5
양식	11.8	11.5	12.3
가금육 및 제품	2.9	2.6	3.5
유지	3.8	3.4	4.4
계란	8.3	8.4	8.2
채소	18.7	17.8	21.3
과일	15.6	15.0	17.5
비 식 품	1.4	1.3	1.8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0.0	-0.1	0.1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3.2	3.2	3.2
교통, 통신	-0.4	-0.6	0.3
거주	4.5	4.5	4.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011년

●● 2010년 농업 개황

작물 경작면적은 10,987만ha(89만ha↑), 면화 경작면적 485만ha(10만ha↓), 유료(油料) 경작면적은 1,397만ha(32만ha↑), 당료(糖料) 경작면적은 192만ha(3만ha↑)이다.

작물 생산량은 54,641만톤, 전년대비 1,559만톤 증가(2.9%↑), 그중 하곡 생산량 12,310만톤(0.3%감산), 조도(早稻) 3,132만톤 생산(6.1% 감산), 추곡 39,199만톤 생산(4.8% 증산)하였다.

면화 생산량 597만톤(6.3%↓), 유료 생산량은 3,239만톤(2.7%↑), 당료생산량은 12,045만톤(1.9%↓), 잎담배는 271만톤 생산(3.9%↓), 차 145만톤 생산(6.4%↑)되었다.

육류 총생산량은 7,925만톤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그중 돼지고기 5,070만톤(3.7%↑), 쇠고기 653만톤(2.7%↑), 양고기 398만톤(2.2%↑)이다. 연도말 돼지사육두수는 46,440만두(1.2%), 돼지출하두수는 66,700만두(3.3%↑), 계란생산량은 2,765만톤(0.8%↑), 우유생산량은 3,570만톤(1.5%↑)이다.

수산물 생산량은 5,366만톤으로 4.9% 증가하였고, 그 중 양식수산물생산량은 3,850만톤(16.3%↑), 어획수산물생산량은 1,516만톤(1.4%↑)이다. 목재 생산량은 7,284만㎥로 3.1% 증가하였다.

신규 유효 관개면적은 163.4만ha, 신규 용수절약 관개면적은 197.5만ha이다.

•• 인구, 주민생활, 사회보장 (농업인구, 농민소득, 의료 및 보험)

전국 총 인구는 13억 4,100만명이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5,919위엔, 가격상승요인을 제외하면, 실제성장율 10.9%,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109위엔, 실제성장률은 7.8%이다. 농촌주민가정의 엥겔지수는 41.1%, 도시주민가정의 엥겔지수는 35.7%이다. 농촌 최하빈곤층 표준은 1,274위엔 미만을 기준으로 추정계산, 연말 농촌 빈곤인구는 2,688만명으로 전년 말대비 909만명 감소하였다.

연말까지 전국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2억 5,673만명, 전년대비 2,123만명 증가하였다. 그중 재직자 1억 9,374만명, 퇴직자 6,299만명이다.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4억 3,206만명으로, 3,059만명 증가하였다. 그중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2억 3,734만명, 주민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 1억 9,472만명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은 4,583만명으로 249만명 증가하였다. 실업보험 가입인구는 1억 3,376만명으로, 660만명 증가하였다. 공업상해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1억 6,173만명으로 1,278만명 증가하였다. 그중 농민공이 6,329만명(741만명 증가)이다. 출산보험 가입자는 1억 2,306만명으로 1,430만명 증가하였다.

2,678개현(시,구)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작업을 시작, 신형농촌합작의료작업 참가율은 96.3%이다. 신형농촌합작의료기금의 총 누계 지출액은 832억원으로 누계 7.0억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가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지역 보험 참가인수는 10,277만명이다. 연말까지 전국의 실업 보험금 수령인수는 209만명이다.

한 해 동안 2,311.1만명(전년대비 34.5만명 감소)의 주민이 정부의 최저생계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 5,228.4만명(전년대비 468.4만명 증가)의 농촌주민이 정부의 최저생계보장 혜택을 받고, 554.9만명(전년대비 1.5만명 증가)의 농촌주민이 정부의 5가지 보험(五保救濟) 구제를 받는다.

•• 자원, 환경과 안전생산 (경지, 수자원, 조림, 해수, 자연재해)

한 해 동안의 건설점유경지는 42.8만ha(전년대비 18.4% 증가)다. 그 중 광공업 비축용지는 15.3만ha(전년대비 7.9% 증가), 상업서비스용지는 3.9만ha(40.4% 증가), 주택용지는 11.4만ha(40.3% 증가), 인프라시설 등 기타 용지는 12.2만ha(10.2% 증가)이다. 한 해 동안 전국 105개 중점 모니터링도시의 종합 토지가격은 전년대비 8.6% 인상하였다. 그중 상업토지가격, 주택토지가격, 공업토지가격은 각각 10.0%, 11.0%, 5.3% 인상하였다.

한 해 동안의 수자원 총량은 28,470억㎥로, 전년대비 17.7% 증가한 수치이다. 한 해 동안 평균 강수량은 682mm로, 15.4% 증가하였다. 연말의 전국 대형 저수지 물은 모두 2,091억㎥로, 전년말 대비 284억㎥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의 총 용수량은 5,990억㎥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그 중, 생활용수 2.9% 증가, 공업용수 1.4% 증가, 농업용수 0.6% 감소, 생태보수 6.8%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 완성된 조림면적은 592만ha로 그 중 인공조림이 389만ha이다. 임업(林業)중점 공정 조림면적이 346만ha로 모든 조림면적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 구역은 2,588개에 이르렀으며, 그중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319곳에 이르렀다. 신규 토지유실 면적은 4.2만㎢, 신규 토지유실지역 보호면적은 2.5만㎢이다. 권한이 확인된 집단임지 면적은 16,204만ha이며 그중 林業 배포 면적은 13,396만ha이다.

평균 기온은 9.5℃, 한 해 동안 태풍이 총 7회 상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지역 298개 해수수질측정에서, 국가 1,2 등급 수질에 합격한 곳은 전체의 62.8%로 전년대비 10.1% 감소하였다. 3급 해수가 14.1%로 8.1% 증가하였다. 4등급 및 그 이하의 해수는 23.2%로 2.1% 증가하였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은 5,340억위엔으로, 전년대비 1.1배 증가하였다. 농작물 수해면적은 3,743만ha로, 20.7% 감소하였다. 그중, 수확이 전혀 없는 면적은 486만ha, 1.1% 감소하였다. 홍수와 침수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은 3,505억위엔(4.4배 증가), 3,101명이 사망하였다. 가뭄으로 인한 재해의 직접 경제손실은 757억위엔으로 31.2% 감소하였다. 저온 냉동과 폭설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은 318억위엔이며 51명이 사망하였다. 해양재해의 직접 경제손실은 149.4억위엔으로 49.1% 증가하였다. 누적 적조면적은 10,892㎢, 22.8% 감소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진도 5급 이상 지진발생은 17건으로, 그중 10건을 재해로 간주하였다. 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은 235.7억위엔, 사망 2,705명. 한 해 동안 삼림화재 7,723건 발생했으며 12.8% 감소하였다.

* 자료원 : 2010년 국민경제사회 발전 통계 공보(중국 국가 통계국, 2011년)

일 본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윤숙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9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5%(2008년 5.7%)인 6,979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37,795천ha의 약 12.2%(2008년 12.2%)인 4,609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85ha로 한국의 1.45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45,609억엔으로 2008년 59,821억엔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수출액 2,637억엔보다 약 17.3배 가량 많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008년 기준)은 열량 기준으로 41%이며, 생산액 기준 65%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5%이다.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농가 인구(2009년) 총 인구 대비	천명 %	6,979 5.5	쌀 생산량(2009년)	백만톤 (현미 기준)	8.82
농가 호수(2008년) 총 가구 대비	천호 %	2,521 4.8	맥류 재배면적(2008년) 과실류 재배면적(2008년)	천ha 천ha	266 287
GDP(2008년)	억엔	4,941,987	농산물 수출(2009년)	억엔	2.637
경지면적(2009년) 호당 (2009년)	천ha ha	4,609 1.85	농산물 수입(2009년)	억엔	45.609

자료 : 1.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년
2. 일본 농림수산통계, 2010년

●●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2007년을 '농림수산 새로 태어나는 원년' 으로 설정하고,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계획」에 의거한 농업 · 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인 고령화, 농지면적 감소 등 식료 · 농업 · 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61년 제정된 구 「농업기본법」을 대체하여 '99.7월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농업정책 ②농촌정책 ③식료정책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농업정책의 주요 골자는 「품목 횡단적(농가 단위) 경영안정대책」을 '07년부터 실시하여 농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둘째, 농촌정책의 경우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다원적 기능발휘를 위해 '자원보전' 과 '환경보전'

정책을 통합한 「자원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를 '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위의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과 자원 · 환경 직불제는 일본농정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식료정책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식품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세 가지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

'05.3월 발표한 기본계획 중 정책개혁의 하나로 개정된 쌀 생산조정 대책이 본 대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시장개방에 대한 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되, 정책대상을 극히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며, 농산물의 고품질화 등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림 1-3-1〉 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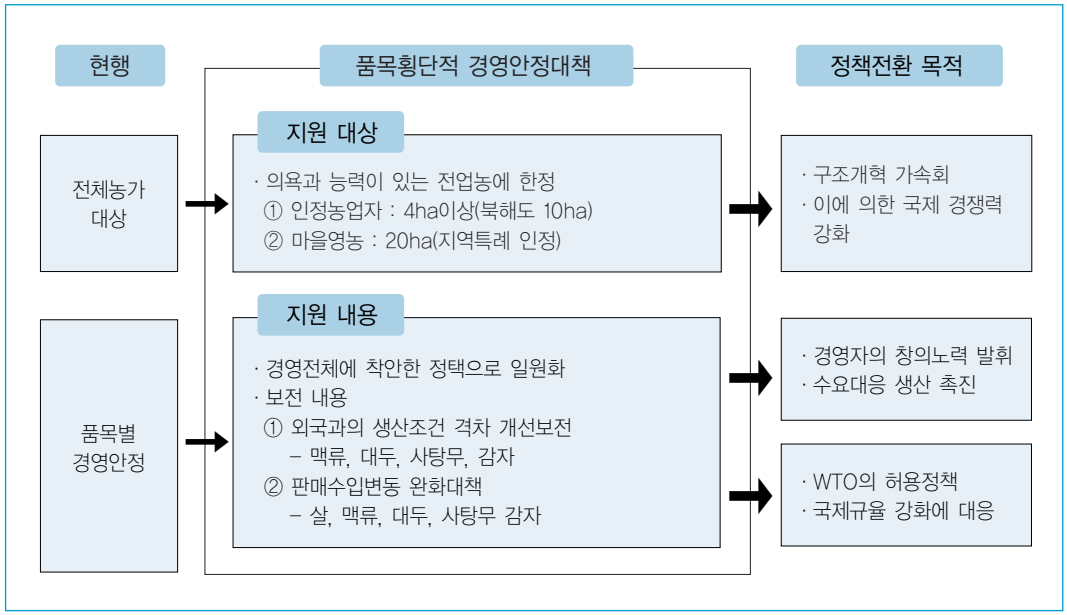

* 채소, 과일, 축산 등은 품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품목별 실시

• 쌀 정책 개혁(품목 횡단적 경영안정 대책과 연동)

농림수산성은 쌀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쌀 정책 개혁 대강'과 '논 농업정책 · 쌀 정책 재구축 기본방향'을 2002.12월에 결정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재고증가와 가격하락, 전업농

을 중심으로 논 농업 경영이 곤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한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쌀 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은 수급조정, 생산구조 및 조성체계를 조정한 데 있다. 수급조정의 경우 과거 일률적인 생산 조정, 획일적인 전작 유도에서 '07년부터 농업인 및 농업단체가 수급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판매실적을 기초로 수량배분 방식을 도입하였다. 생산구조의 경우 과거 지역담당이 불확실하였으나, 이를 개혁하여 지역 논 농업 비전을 책정하는 지역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조성체계의 경우, 과거 일률적인 요건 및 단가에서 산지 만들기 대책, 집하 원활화 대책, 벼농사 소득기반 확보대책, 담당자 경영안정 대책으로 전환하였다.

유통제도도 적정표시제도, 추적가능성 시스템 도입, 식생활 지침의 보급 및 식육(食育) 추진 등 광범위한 국민운동 전개,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100만톤 정부비축 적정수준 설정 등을 주요내용을 개혁하였다.

• 자원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본 제도는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과 농업생산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자원 보전 활동과 친환경 농업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내용은 농지, 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공동 활동', 농가단위의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적인 '영농활동', 공동 활동과 영농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추가활동' 등이다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10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 · 정치적 연합체로서 1인당 GDP 23,600유로(2009), 인구 499,700천명(2009), 면적 432,527천ha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78,443천ha(2009), 농업분야 취업자 수는 11,120천명(2009)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총생산액은 3,342억유로(2009) 정도이다. 2009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0.5%, 돼지고기 9.3%, 쇠고기 8.8%, 신선채소 8.8%, 신선과일 6.4%, 포도 및 포도액 5.0% 순이었다. 농업생

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2009)을 보면 프랑스(18.8%), 독일(13.1%), 이탈리아(13.0%), 스페인(11.2%), 네덜란드(6.8%), 영국(6.4%), 폴란드(5.4%), 루마니아(4.0%), 그리스(3.0%), 덴마크(2.6%), 벨기에(2.1%), 포르투갈(2.1%), 헝가리(1.8%), 오스트리아(1.8%), 아일랜드(1.5%), 스웨덴(1.2%), 핀란드(1.1%), 체코(1.1%), 불가리아(1.0%), 슬로바키아(0.5%), 리투아니아(0.5%),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2%),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은 5.1%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1%), 몰타(1.4%), 룩셈부르크(1.4%), 벨기에(1.5%), 독일(1.7%)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29.1%), 폴란드(13.3%), 그리스(11.9%), 포루투갈(11.2%), 리투아니아(9.2%)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다. 농업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은 룩셈부르크(0.2%), 스웨덴(0.3%), 영국(0.5%), 독일(0.5%), 벨기에(0.6%)는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5.4%), 불가리아(3.8%), 그리스(2.4%), 리투아니아(2.2%), 폴란드(2.1%) 등의 국가도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2009)은 수출이 7.0%(총 11,239억유로 중 785억유로)이며, 수입은 6.5%(총 12,216억유로 중 794억유로)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1,829백만유로), 러시아(6,953백만유로), 스위스(5,593백만유로), 일본(3,946백만유로)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15,438백만유로), 낙농품, 달걀 및 벌꿀(5,727백만유로), 육류(5,2210백만유로),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5,101백만유로)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1,783백만유로), 미국(5,883백만유로), 아르헨티나(5,793백만유로), 스위스(3,310백만유로) 등이며, 주로 과실 및 너트류(11,863백만유로), 유지종자류(7,444백만유로), 커피 · 차 및 향신료(6,377백만유로), 동물 또는 채소 지방 및 기름(5,754백만유로)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9년도에 912백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출처: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0. 2011.3월)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국 가 (27개국)	경지면적 (천ha)	농장수[1] (천개)	농장당 경지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 업 생산액 (백만유로)	농 업 부가가치 (백만유로)	GDP 대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료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 역 수 지 (백만유로)	
연도	2009	2007	2007	2009	2009	2009	2007	2007	2007	2007	2007	2008
EU_27	178,443	13,700	12.6	11,120	5.1	334,274	129,312	1.1	7.7	6.8	-1,251	16.4
벨기에	1,365	48	28.6	66	1.5	6,899	2,162	0.6	9.5	10.3	3,313	16.7
불가리아	5,101	493	6.2	231	7.1	3,777	1,314	3.8	10.3	17.6	289	-
체코	3,546	39	89.3	154	3.1	3,697	717	0.5	6.8	4.8	-1,257	23.9
덴마크	2,695	45	59.7	71	2.5	8,546	1,535	0.7	12.3	18.2	4,835	14.7
독일	16,890	371	45.7	649	1.7	42,439	12,844	0.5	8.9	6.2	-10,010	14.6
에스토니아	802	23	38.9	24	4.0	570	178	1.3	12.1	8.7	-321	28.3
아일랜드	4,190	128	32.3	96	5.0	4,995	925	0.6	12.5	14.2	6,149	14.7
그리스	3,819	860	4.7	537	11.9	10,106	5,653	2.4	13.6	25.0	-2,291	20.2
스페인	23,105	1,044	23.8	786	4.2	37,593	21,395	2.0	9.7	15.5	3,734	16.8
프랑스	29,385	527	52.1	752	2.9	62,772	22,227	1.2	9.0	12.9	8,278	16.4
이탈리아	13,338	1,679	7.6	849	3.7	43,488	22,619	1.5	10.1	8.6	-4,925	17.3
사이프러스	148	40	3.6	15	3.9	665	360	1.8	14.2	24.0	-613	22.7
라트비아	1,833	108	16.5	85	8.7	869	218	1.2	17.6	16.7	-322	24.5
리투아니아	2,689	230	11.5	130	9.2	1,866	594	2.2	13.4	17.9	349	31.1
룩셈부르크	131	2	56.8	3	1.4	270	80	0.2	9.2	5.4	-809	17.3
헝가리	5,783	626	6.8	174	4.6	5,870	1,702	1.8	6.1	8.6	1,688	27.1
말타	10	11	0.9	2	1.4	131	61	1.0	15.4	4.0	-339	20.4
네덜란드	1,921	77	24.9	218	2.8	22,465	7,245	1.3	11.7	17.2	23,855	14.4
오스트리아	3,169	165	19.3	214	5.3	6,113	2,370	0.9	8.3	8.0	-668	13.8
폴란드	15,625	2,391	6.5	2,107	13.3	17,466	6,661	2.1	8.3	10.9	1,828	26.8
포루투갈	3,169	275	12.6	565	11.2	6,761	2,070	1.2	12.3	11.1	-2,773	-
루마니아	13,745	3,931	3.5	2,689	29.1	14,134	6,375	5.4	9.8	7.8	-1,563	31.4
슬로베니아	469	75	6.5	89	9.1	1,052	384	1.1	9.8	5.7	-810	19.4
슬로바키아	1,930	69	28.1	85	3.6	1,858	290	0.5	7.0	4.5	-991	22.5
핀란드	2,296	68	33.6	113	4.6	3,914	1,204	0.7	8.2	3.2	-2,148	17.4
스웨덴	3,067	73	42.9	98	2.2	4,229	991	0.3	8.8	3.7	-4,073	15.9
영국	17,709	300	53.8	321	1.1	21,729	7,193	0.5	11.0	6.5	-21,655	12.6

주 : 1)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 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자료 : Agriculture in the EU –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0년

●●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2008.11.20.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지난 1년 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 온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하였다.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 중간평가개혁(Midterm Review) 이래 현재 중기재정개혁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동 개혁방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 소규모 개혁조치로 2007.11.20. 집행위가 정책구상(communication)을 발표하고 회원국 반응을 감안하여 2008.5.20.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농업정책개혁은 2009년 재정중간평가 기간 중 공식 논의될 예정인 바,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보조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를 강화하였다. 밀, 올리브, 호프, 쇠고기, 쌀, 땅콩, 종자, 감자전분 등 현재 남아있는 생산연계성 직불금은 늦어도 2012년까지 생산 비연계 직불금으로 전환하여 단일농가직불금에 통합한다. 단, 송아지, 양, 염소에 지급되는 생산연계 보조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농가직불금 지급과 연계하여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품질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중 농가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기준은 폐지하는 등 간소화한다. 대신 강제휴경으로 유지되었던 환경이익유지, 물 관리 개선 등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농가지불금은 최소 250유로, 경작면적 1ha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별로는 EU 평균 농가규모 및 지급수준과 비교한 상관계수를 적용하며, 에너지작물 지원금(45유로/ha)은 폐지된다.

둘째, 민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회원국이 직접지불금 국가예산상한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 조치, 품질개선, 유통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69조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재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동일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렵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우유, 쇠고기, 염소, 닭고기, 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사용이 가능(WTO 감축대상보조)하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보험 등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동물질병 발생에 대비한 상호부조기금 지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규 회원국도 적용 가능하며, 단일농가지불제도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68조 정책수단을 위해 국가재정할당(national envelope)된 재원 중 불용이 발생할 경우 농촌개발기금으로 전환된다.

셋째, 신규회원국(EU-12)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SAPS)를 운영하는 신규 회원국가는 2010년까지 단일농가직불제도(SPS)로 전환해야 하나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국 농가들은 보조금지급에 따른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의무 적용이 연장된다.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폐지하고, 불용되는 9,000만유로를 신규 회원국이 기존 회원국 수준으로 농가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지원하여 68조에 명시된 어려운 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넷째, 농촌개발예산 확대 및 직불금 역진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5,000유로 이상 직불금을 지원받는 모든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가직불금의 5%(2012년부터 10%)를 농촌개발예산으로 강제 전용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30만유로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로 4%를 더 삭감하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용한다.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물 관리, 생물 다양성, 혁신, 낙농분야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EU집행위는 회원국이 재정을 공동부담(EU 75%, GDP가 낮은 어려운 국가의 경우 90%)한다. 젊은 후계농을 위한 투자지원액을 현행 55천유로에서 70천유로로 증액한다.

다섯째, 농산물 시장관리수단을 대폭 폐지한다. 농지의 10%를 강제휴경(set-aside)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2015년 우유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2009/10년 - 2013/14년 기간 중 매년 1%씩 우유쿼터를 증량한다(단, 이태리의 경우 2009/10년에 5% 우유쿼터를 증량). 2009/10년 - 2010/11년 자신의 우유쿼터보다 6% 더 생산한 농가의 경우 정상 벌금보다 50% 높은 중벌금을 부과한다. 돼지고기, 쌀 시장관리제도는 폐지한다. 보리, 수수에 대한 수매량을 '0' 으로 설정하고 밀은 300만톤까지만 101.31유로/톤의 가격으로 수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매한다. 버터 3만톤, 탈지분유 10만9천톤 범위에서 수매하며 그 이상은 공매한다.

EU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법안은 당초 EU 집행위가 밝힌 구상

과 법안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이나 이는 회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셔보엘 농업담당집행위원과 EU 집행위의 구상인 ① 단일농가직불금 생산비연계(De-coupling) 강화, ② 수매, 쿼터 등 농산물 시장관리 수단 대폭 폐지, ③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관리는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한 농촌개발정책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EU는 농가에 지불하는 대부분의 직접지불금을 WTO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Blue Box)에서 허용대상 보조(Green Box)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농가보조금의 부농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농촌개발예산 확대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동농업정책 시행 이래 계속되어온 수매, 쿼터 등 농산물 생산관리 제도를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이 정부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단 건전성 평가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2012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 틀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국가 통상협력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홍기옥

미 국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한국은 캐나다 · 멕시코 · 일본 · 중국에 이어 제5위 수출시장이다. 2010년에 옥수수 · 대두 · 밀 등 곡물류, 돼지고기 · 닭고기 · 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 · 건포도 · 아몬드 · 양파 · 주류 · 과일 및 채소쥬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60억불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액은 연초, 배, 조제품, 기타 등 약 5억불 수준으로 저조하나,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 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4월초에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에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시작하여 2008.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을 맺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강화와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의무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재개,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 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 · 미 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 · 미 동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 및 수의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 · 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9〉 한-미간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0/2008(%)
수 출	합 계	449.2	467.3	518.8	15.5
	농산물	295.0	313.9	348.2	18.0
	축산물	32.4	15.3	15.6	△51.9
	임산물	8.0	9.1	12.8	60.0
	수산물	113.8	128.9	142.2	25.0
수 입	합 계	6,401.0	4,590.9	5,959.7	△6.9
	농산물	5,026.7	3,264.5	4,333.3	△13.8
	축산물	889.2	702.2	926.7	4.2
	임산물	345.2	500.8	573.5	66.1
	수산물	139.9	123.4	126.2	△9.8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0〉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불)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궐련	1.2	29.3	궐련	1.1	28.1	궐련	1.2	31.3
배	9.2	21.8	배	11.0	24.7	배	10.2	25.4
김	3.5	20.5	라면	6.7	20.1	음료	31.6	25.1
라면	6.3	20.0	김	4.1	19.3	김	3.7	23.5
굴	3.8	16.8	굴	3.2	15.5	라면	6.2	19.8
비스킷	3.3	13.3	비스킷	3.3	13.1	굴	3.3	17.4
국수	4.5	10.6	곡류조제품	2.7	10.5	비스킷	3.8	16.3
곡류조제품	2.5	10.4	소주	6.2	9.1	오징어	6.0	11.6
소주	5.5	8.9	오징어	6.5	9.0	곡류조제품	2.7	10.8
오징어	6.8	8.7	국수	4.2	8.3	국수	5.1	10.1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1〉 대미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불)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옥수수	8,497.8	2,651.3	옥수수	5,929.7	1,324.4	옥수수	7,282.0	1,684.1
밀	1,505.4	722.7	밀	1,057.8	310.4	쇠고기	92.6	421.6
대두	512.6	283.5	쇠고기	61.5	285.5	밀	1,430.7	376.7
돼지고기	106.4	250.3	대두	409.5	213.1	대두	733.8	355.8
사료용근채류	732.8	217.5	돼지고기	95.9	201.9	혼합조제식료품	15.0	229.6
쇠고기	32.4	197.1	펄프	357.4	195.3	펄프	296.4	223.1
침엽수원목	722.5	168.9	혼합조제식료품	10.6	173.7	사료용근채류	718.6	195.8
로얄제리	6.8	135.5	사료용근채류	653.9	153.9	돼지고기	81.9	184.0
오렌지	106.2	116.1	침엽수원목	805.9	152.6	대두박	385.6	167.6
양조박	311.7	86.0	면	71.1	98.1	침엽수원목	530.8	156.4

주 :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중 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윤숙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2년 8월 한 · 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10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농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0년 양국 간 농식품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787백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4,323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식품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 · 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 · 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대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 수입문제 등 경제 · 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 · 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 · 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간 한 · 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2010년 6월 과천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2년 제7차 회의시 한 · 중 농수산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 · 중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 · 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의체' 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4차 회의가 201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의체를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식품, 농식품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 본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윤숙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1,883백만불로 총 수출액 28,180백만불의 6.7%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 · 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 · 일 고위경제협의회' 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제8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농업 분야의 고위급 대화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03년 3월 21일 동경에서 제4차 한 · 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 합의 및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시적으로도 각종 채널을 통해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 · 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43차 회의를 2010년 12월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 · 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06.5.29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홍기옥

캐나다산 농산물은 2010년 11억불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 · 돼지고기 · 치즈 · 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 · 김 · 비스킷 · 음료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10년 약 0.5억불에 그쳐 양국 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캐나다와는 한 ·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측은 2003년 5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현재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물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산포도를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 ·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표 1-3-12〉 한 · 캐나다 농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수출	33,602	35,800	32,268	34,936	39,089	44,471	52,586	18.2%
수입	313,887	536,030	493,359	536,382	587,017	749,131	1,062,794	41.9%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3〉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출 농축수산물

(단위 : 천불)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계	33,602	35,800	32,268	34,936	39,083	44,471	52,586	18.2%
라면	8,012	8,070	4,680	3,947	4,000	3,780	4,164	10.2%
김	1,594	1,834	1,758	1,661	2,412	3,090	3185	3.1%
기타음료	250	637	1,230	1,527	1,614	1,853	2423	30.8%
국수	825	974	989	1,502	1,720	1,535	226	43.7%
기타 파스타	981	978	1,271	1,427	1,911	1,801	2267	25.9%
기타 식물성점질물	607	1,359	1,183	1,425	1,504	1,303	1253	-3.9%
기타 베이커리제품	794	349	417	1,104	877	901	813	-10.0%
미역	457	710	776	898	627	457	635	39.0%
배	1,398	1,186	618	768	667	963	1,211	25.7%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4〉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단위 : 천불)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계	313,887	536,030	493,359	536,382	587,017	749,131	1,062,794	41.9%
돼지고기	39,022	84,545	104,636	117,386	126,610	102,705	101,488	-1.2%
침엽수 원목	36,950	43,228	56,607	70,666	58,607	60,882	116,220	90.9%
침엽수 제재목	32,653	25,807	35,167	47,230	43,668	39,620	56,943	43.7%
밀	38,861	197,240	100,006	41,181	101,018	62,650	186,450	197.6%
유채유	12,527	13,164	13,871	30,682	46,599	26,762	32,301	20.7%
우지	15,861	19,224	26,910	25,897	25,188	26,458	23,951	-9.5%
바다가재	21,831	17,709	18,055	19,598	17,818	14,508	21,142	45.7%
우유조제품	13,440	12,736	14,825	19,432	815	-	-	-
파티클보드	1,765	3,288	7,131	11,349	7,261	9,957	12,204	22.6%
보리	6,797	12,149	7,385	9,945	12,181	9,547	10,821	13.3%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림축수산물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다. EU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이 약 3.3억불('10)로 세계 5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은 22억불('10)로 미국, 중국, ASEAN, 호주에 이어 5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들은 주로 한국과 EU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 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EU측의 관심사항인 EU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EU측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확보 및 다른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사례를 들어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위험평가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측은 EU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우선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측이 요청하는 육류 수출작업장 일괄 승인(pre-listing) 방식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요청시 해당 국가의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다른 작업장의 위생 관리 평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EU측은 동등성을 인정하여 EU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우리 측이 인정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 바, 우리 측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및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및 무역

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세계동물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양자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동구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 및 경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남미 국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홍기옥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의 농수산물 교역은 미국, 중국, 호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브라질을 위시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등 일부 중남미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대두, 옥수수, 오렌지, 닭고기를 중심으로 국내 수입시장의 상당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칠레와는 2004년 한 · 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3-15〉 한국의 대두 수입국 순위

(단위 : 톤, 천불, %)

구분 \ 연도	2009(A)			2010(B)			증감률(B/A)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합계	1,105,026	604,407	100.0	1,242,895	588,279	100.0	12.5	△2.7
미국	409,508	213,086	35.3	733,841	355,775	60.5	79.2	67.0
브라질	505,917	248,017	41.0	447,020	189,798	32.3	△11.6	△23.5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6〉 한국의 옥수수 수입국 순위

(단위 : 톤, 천불, %)

연도 / 구분	2009(A)			2010(B)			증감률(B/A)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합계	7,352,414	1,646,862	100.0	8,560,286	2,000,470	100.0	16.4	21.5
미국	5,929,698	1,324,371	80.4	7,281,961	1,684,067	84.2	22.8	27.2
브라질	730,003	165,059	10.0	288,626	73,255	3.7	△60.5	△55.6
헝가리	353,152	82,569	5.0	284,715	70,522	3.5	△19.4	△14.6
아르헨티나	168,058	33,795	2.1	265,341	59,947	3.0	57.9	77.4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7〉 한국의 오렌지 수입국 순위

(단위 : 톤, 천불, %)

연도 / 구분	2009(A)			2010(B)			증감률(B/A)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합계	95,321	123,266	100.0	136,602	174,088	100.0	43.3	41.2
미국	70,769	84,600	68.6	110,085	137,355	78.9	55.6	62.4
브라질	13,865	24,214	19.6	19,199	25,937	14.9	38.5	7.1
칠레	2,412	2,879	2.3	3,229	4,371	2.5	33.9	51.9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표 1-3-18〉 한국의 포도 수입국 순위

(단위 : 톤, 천불, %)

연도 / 구분	2009(A)			2010(B)			증감률(B/A)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합계	47,661	94,935	100.0	54,334	123,113	100.0	14.0	29.7
미국	30,609	60,615	63.8	36,616	86,195	70.0	19.6	42.2
브라질	12,977	26,933	28.4	15,770	33,471	27.2	21.5	24.3
스페인	2,646	4,994	5.3	1,407	1,828	1.5	△60.4	△63.4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1년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 · 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 · 감귤류 · 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블루베리 및 쇠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 · 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에 중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 · 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브라질에서 1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2008년 8월에는 서울에서 2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그리고 2010년 11월 브라질에서 3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윤숙/주무관 김윤희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 · 축산물 등 농산물수입허용, 검역협정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 대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 · 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 · 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및 축산물안전관리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 · 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농업 잠재력이 큰 콩고 민주공화국과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여('10년) 정부간 농업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2편
2010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제2장 농가 경영안정 · 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4장 녹색성장 및 미래 신 성장동력 확충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6장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제7장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8장 농업인 복지지원 및 농촌 지역개발 · 농업생산기반 조성

제1장 총 론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정주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한·EU FTA 정식서명, 호주, 페루 등과의 FTA로 인한 개방경제 추세가 확대되면서 농어업분야의 경쟁도 가속화되었다.

한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귀농, 농어촌 관광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농정에 미치는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매력적인 농림식품산업'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소득증대, 체질개선·미래준비, 안전식품·안전공급, 지역경제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도에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 및 농어가 경영안정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2007년 농림어업 생산액은 41.6조원이었으나 2010년 50.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는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 농어업분야 주요정책이 축산물, 과실류 등의 생산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비용절감 운동본부' 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어가에도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어업 재해대상 품목을 41개로 확대하고, 농기계 은행사업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식품산업육성기반 구축

농림수산식품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0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59억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식품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전통식품의 산업화, 천일염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 세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음식이 세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외식업계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증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194천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1.3%를 차지하여 최근 5년(2006~2010) 동안 30%에 달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쌀,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등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2009년 국산 쇠고기에 이어 수입산에도 이력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농어업분야 미래 준비

생명산업대전 개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등으로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농어업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명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농식품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 등 농식품모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준비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으로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계획(2010~2014)' 을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농어촌 발전전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보건 · 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등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규제개혁 가속화 및 국제협력 강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 식품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하는 등 농식품산업분야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0년 규제개혁 최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FAO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G-20 정상회의 등과 연계하여 한국적 전통 · 경관을 보유한 농어촌의 대표명소 20곳을 선정, 홍보함으로써 국격을 높였다.

제2장 농가 경영안정 · 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소득 증대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형식

❖ 추진배경 및 개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WTO · DDA 협상 논의, 한 · 미 FTA와 한 · EU FTA 타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요인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직불금이 쌀에 집중(84.3%, '10년 순 직불제 예산 대비)되어 품목 간 형평성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쌀 위주로 운영중인 직불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불제의 보전기준도 가격에서 소득으로 점차 변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비가 상승하여 농가의 당해년도 농업소득이 과거 농업소득(직전 5개년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농업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그 격차의 일정비율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6월 한 · 미 FTA로 인한 피해의 국내보완대책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발표한 이래로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여 농가별 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 10월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특히, 2010년에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1차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도상연습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총괄하고 신청인의 재배현황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의 일부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대상품목은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변동 폭이 큰 쌀, 콩, 고추, 사과, 포도, 감귤, 한우, 돼지, 계란 9개 품목으로 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각 도별로 1개 읍 · 면씩 총 9개 읍 · 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 농업경영체에 기등록된 농업인 중 현장점검 결과 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이 적합한 4,420 농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도상연습 결과 소득보전 대상품목은 기준 농업소득에 비하여 당해 농업소득이 감소한 쌀, 사과, 노지포도, 노지감귤 4개 품목이었으며 발동기준 100%, 보전비율 85% 기준으로 전체 대상농가 4,420호의 73%에 해당하는 3,238호에 총 21억원의 직불금이 산출되어 전산상 가상지급 되었다. 도상연습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상농가, 대상품목, 지급방식, 예산소요 등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쟁점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0년 동안 학계, 농협, 농진청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직불제 사례, 재해보험과 소득안정제의 연계발견 방향, 품목별 소득자료 산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시 소득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제는 '08년도에 「농업 ·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시행 근거를 마련('08.6.22 발효)하였고, '09년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영정보의 등록 및 확인, 자금지원 등의 제한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였다('09.10.2 시행).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07년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6월부터는 본격적인 등록사업을 시작하여 인적정보, 농지지번, 경지면적, 재배품목 또는 사육두수 등 총 53개 항목에 대해 2009.12월 말까지 일괄 등록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동안 '08년 통계청이 추산한 전국 121만 농가 가운데 94.8%인 115만 농가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2010년부터는 추진방향을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이미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한편, 그동안 등록하지 못한 경영체의 등록 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 이미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받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등록 정보를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10년도에는 17개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체에 한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등록 상황은 115만 농가가 등록함으로써 '09년 통계청이 추산한 119만 농가 가운데 96.6%에 해당하는 농가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농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미국 · 캐나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가소득신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농업인의 의식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가별 농업소득 산정방법과 필요한 소요인력 및 예산을 파악하고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해 기계획된 도상연습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 2차 도상연습에는 대상지역을 44개 읍 · 면으로 대폭 늘리고 대상품목을 10개 추가(감자, 보리, 배추, 마늘, 시설오이, 대파, 배, 육우, 번식우, 인삼)하여 도상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3년 이후에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김문갑

❖ 추진배경 및 개요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켜서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 나감에 따라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99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

인 농가는 43.2%에서 49.7%로 6.5%p(45천 가구) 증가되었고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29.1%에서 34.2%로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 10.7%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 농가가 경영하는 경지의 72.4%는 1.0ha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고령농의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WTO · 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여건하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토록 하는 대신 일정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 · 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09년도 1월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확대 · 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 · 밭 · 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다. 지급기간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 할 때와 마찬 가지로 75세 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

'10년도에는 당초 1만ha의 경영이양 신규 사업물량을 3천ha로 재조정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경영이양대상자인 96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하였으며 지방지 116회 광고게재, 안내문 33만매, 포스터 25천매,

리플릿 48만매 제작 ·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97~ '10년까지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경영이양 농업인 91.5천명에게 직불금 2,312억원(1인당 연간2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65천ha를 전업농 62.3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경우 연금, 의료, 복지 분야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보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업인에게는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11년도에는 경영이양직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 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농업인의 만족도 조사를 향후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잠재 고객 확보와 젊은 영농인에게 든든한 후원자로서 고령 농업인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미지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강경란

추진배경 및 개요

WTO 쌀 재협상(2004)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

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5년 이전에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2004년에 일시 시행한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 ·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여 통합 시행(2005년 7월 1일)하였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쌀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로 인한 쌀값지지와 쌀농가 소득에 기여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 대하여 벼 재배 여부나 쌀값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 597천원)을 매년말에 지급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2008년도 하반기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일부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부당수령사건실태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2008년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개선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05년부터 '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면서 그동안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쌀 직불금 신규진입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 으로 해야만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부재 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 면적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제한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아울러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 · 면 · 동에 농업인단체, 이 · 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부재 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 · 군 · 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을 최대 30일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당하게 신청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 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 · 도 또는 시 · 군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함으로써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소지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2010년도에는 '09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80kg당 142,360원으로 낮게 형성되어 변동직불금은 80kg당 12,028원, 고정직불금을 80kg당 11,486원을 지급함으로써 목표가격(173,083원/80kg) 대비 97.6%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였다.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구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2009년산	866	891	6,328	815	809	5,945	12,273
2008년산	1,097	1,013	7,118	–	–	–	7,118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와 제도개선이 2009년에 일단락되고, 2010년도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새로운 제도가 농업현장에 정착되어 쌀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었다, '11년에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농업인의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제도개선과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영태

추진배경 및 개요

2010.1.1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읍 · 면)의 면적은 전 국토의 89.7%에 달하지만 농어촌 거주인구는 전체인구의 19.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정한 농어촌 인구의 확보 없이는 농어촌지역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 사업은 영농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04 ~ '0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하인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읍 · 면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 · 면에 실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의 활력 증진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존의 사업대상 법정리 중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적용시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지역이 발생하여 동 사업의 대상 법정리를 '09년도 3,144개에서 3,137개(전국 읍 · 면 지역 15,292개 법정리 중 20.5%)로 조정하였으며, 356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0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지급단가가 변동 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꾸준하게 지급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10년부터는 밭 50만원/ha('09년 40만원), 초지 25만원/ha('09년 2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각각 25%씩 인상하였다.

2011년도에는 조건불리지역 선정의 근거가 되는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를 조사하여 기존의 법정리를 재검토하고, 지급단가, 지방비 부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운용 등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농가 경영 안정

1. 농지은행 활성화

농지과 사무관 신지영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개정(20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20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지유동화정보제공,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농지유동화정보제공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구축(www.fbo.or.kr)하여 농지매물 · 거래동향 · 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1월부터 농어촌종합포탈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10년 말 : 회원 수 227천명, 접속 6,186천 건(3,077건/일)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지은행이 비농가, 이농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 인간의 교환 · 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 · 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0년도에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751ha 1,507억원, 농지장기임대차 2,523ha 600억원, 농지교환 · 분합 8ha 10억원 등 총 4,282ha 2,117억원을 4,92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 3,413억원을 지원하여 158,869ha의 농지를 규모화 · 집단화시켰다.

〈표 2-2-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ha, 억원)

구분 \ 연도	합 계	199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면 적	158,869	125,222	10,427	7,855	5,863	5,220	4,282
금 액	63,413	47,839	4,341	3,400	3,204	2,512	2,11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전업농 70천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31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전업농 수는 1995년 13천 호에서 2010년 70천 호로 늘어나고, 호당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0년 5.2ha로 확대되었다.

* 호당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09) 5.0 → ('10) 5.2

이는 2009년 전체 벼 재배농가 평균 경영규모 1.12ha의 4.6배이다. 또한, 2010년 쌀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61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92천ha)의 약 40%로서 쌀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농지의 임대를 수탁받아 전업농 · 창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

농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수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으로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12,741농가에 8,127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0.6ha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2-2-3〉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단위: ha)

구분 \ 연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수	64,544	219	6,613	7,997	9,737	27,237	12,741
면 적	37,006	111	3,372	4,277	5,163	15,956	8,12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을 이용해 부채를 갚도록 한 후, 해당 농지를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다시 매입해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업인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은 물론, 농지 경매시 정상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낙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완화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회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0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부채 4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하였다. 또한, 매입대상을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기간을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환매가격을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당초 매입금액에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표 2-2-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분 \ 연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수	2,900	183	444	490	635	1,148
면 적	3,883	311	629	696	878	1,369
금 액	6,670	422	953	1,195	1,700	2,4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 · 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 창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용 규제 및 개발 제한으로 가격이 낮으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시가로 매입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 · 창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등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는 도입 첫해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495ha(750억원)를 매입하여 589농가에 465ha(농가당 0.8ha)를 임대해 주었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매입비축 농지는 벼 이외에 타작목을 재배하는 자에게 우선 임대하여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표 2-2-5〉 20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구 분	매입실적	임대실적
면 적	495	46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지은행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지규모화, 농지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사업 등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 유동성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해 2.5~4ha 규모의 쌀전업농을 중점 지원하여 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11년 사업목표를 14,000ha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및 수탁대상 농지 물색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농협)과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회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2011년 1,000ha의 농지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농지가격이 급락한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재해보험팀 사무관 윤승우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루사(2002)', '매미(2003)'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재해 발생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정책자금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비 ·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2-6〉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상품목수		6[1]	7 (떫은감 추가)	10 (밤 · 참다래 · 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파, 수박 추가)	20 (벼,고구마,옥수수, 마늘,매실 추가)	25 (대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419	29,174	32,538	45,884	49,102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81	51,618
	가입률(%)	23.4	24.5	26.5	28.5	31.4	36.0
지원 규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백만원)	49,371	50,783	49,280	49,063	53,351	67,732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5,877	5,171	7,274	3,383	8,734	23,303
	보험금(백만원)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90,330
	손해율(%)	43.5	36.6	110.4	45.0	105.8	104.6

주 : 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 · 배(2003), 복숭아 · 포도 · 단감 · 감귤(200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추진내용 및 성과

대상품목 확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 · 배 2개에서 2010년 현재 25개로 매년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사업초기 과수작물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보험대상을 벼 · 콩 · 고추 등 식량 · 채소작물 등으로 전 농작물로 다양화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 '10년 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대추
* 전국단위 본 사업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대상재해 확대

대상재해의 경우도 태풍 · 우박 · 동상해 등 특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 개발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벼 품목

의 경우에는 병충해의 일부(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위험방식에서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보험 가입률 제고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36,111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9년 26,388ha에서 30,094ha로 늘어 가입률 36.0%를 달성하였다. 특히, 사과 · 배의 경우 전국 대상 면적의 약 60% 이상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 · 배를 제외한 감귤 · 포도 · 복숭아 등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20% 이내로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이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과수작물 외에는 대부분의 작물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10년까지 74천 농가에 3,8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 · 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3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로 사업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을 개선 ·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범사업 품목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재해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 · 야생동물피해 · 화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재해농가 지원 확충

재해보험팀 사무관 송인달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이다. 실제로 매년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재해를 피하기 위한 여러 예방사업 및 예방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이러한 재해농가의 영농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이상기온, 일조량 부족, 태풍 곤파스 등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일조량 부족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해로서 재해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농촌진흥청, 기상청, 대학 등의 전문가 협의 결과 재해지원 필요성이 확인되어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신규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하였다.

저온 및 태풍피해는 예년에도 발생한 재해이나, 2010년에는 과수대목이 얼어서 고사하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냉해피해가 발생하였고, 제7호 태풍 곤파스는 대규모 낙과피해 및 벼 백수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복구비로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백수피해의 경우, 피해농가를 위해 백수벼 등외품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매입하였고, 조사료 활용시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재해복구비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전체 368개 지원항목 중 포도, 감귤, 대추, 떫은감, 복분자, 약용류 등 21개 품목단가를 인상하였고, 참다래, 호접란, 머루, 다래 등 16개 품목단가를 신설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업인은 1년 또는 다년간 피땀흘려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금전적 피

해와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 정신적 피해도 크게 받는다. 비록 재해복구비는 손실액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아니며, 복구비 또한 현실단가의 60% 수준으로 다소 부족하나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이뤄지게 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준 단가가 없거나 현실보다 적은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매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지원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년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피해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재해보험팀 사무관 윤승우

❖ 추진배경 및 개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10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14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10년에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였고, 보장범위확대, 대농업인 보험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전년 48.1% 대비 4.0p 증가한 52.1%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의 '전기위험담보 특약'의 경우 벼락에 의한 전기적 사고만을 보상하였

으나, 모든 전기적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에는 자연재해 · 화재 · 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47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돼지, 닭은 높은 반면 소는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상품을 개선하고, 재해 및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	7.2	6.9	7.1	8.3	8.1	7.8	6.7
돼지	48.2	57.2	66.7	63.2	65.0	77.0	74.8
말	2.1	4.9	6.7	7.2	7.9	8.6	6.3
닭	24.0	37.0	39.3	43.1	45.2	46.9	51.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5. 농 · 어업부문 세제지원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정아름

추진배경 및 개요

세제지원은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 · 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 · 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업 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능별 예산분류기준(13개 부문)에 따라 조세감면 실적을 분류했을 때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실적이 전체(301,396억원)의 18.7%(56,386억원)임. 이는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어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도 시행 중이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 조합원 예적금 증서, 융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 항목(국세 30여개, 지방세 20여개) 중 조세감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이 있다. 이들 감면 항목에 대한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8〉 농어업부문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잠정)
주요 항목	면세유	농 업	14,180	11,535	11,208	11,353
		어 업	7,542	6,021	7,522	7,005
		계	21,722	17,374	18,730	18,358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 업	9,228	10,793	12,108	11,675
		어 업	426	409	405	404
		계	9,654	11,202	12,513	12,079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농 업	802	957	1,129	1,014
		어 업	115	148	155	154
		계	917	1,105	1,284	1,61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7,737	9,992	18,779	17,134

자료 : 기획재정부(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년 3월부터이다. 2010년말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기계 37개 기종, 임업기계 10개 기종, 어업 부문 14개 부문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9〉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공급물량 (천kℓ)	농 업	2,478	1,976	1,898	1,923
	어 업	1,253	994	1,122	1,103
	소 계	3,731	2,970	3,020	3,026
공급액 (억원)	농 업	16,694	18,337	14,110	16,410
	어 업	6,355	7,898	6,723	7,743
	소 계	23,049	26,235	20,833	24,153
감면세액 (억원)	농 업	14,180	11,535	11,208	11,353
	어 업	7,542	6,021	7,522	7,005
	소 계	21,722	17,374	18,730	18,358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계 32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어업용 37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32종, 어업용 23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2-10〉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잠정)
비 료	1,485	1,120	1,800	1,548
농 약	986	1,133	1,310	1,250
농기계	1,004	980	958	1,019
사 료	5,442	7,250	7,300	7,500
축산기자재	311	310	740	358
계	9,228	10,793	12,108	11,675

자료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표 2-2-11〉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잠정)
농업용 필름	230	238	257	250
농업용 파이프	160	185	212	196
농업용 포장상자	300	341	336	350
과일봉지	52	38	38	41
농업용 부직포	2	36	53	46
농업용 배지	69	30	36	39
기타	102	89	197	92
계	915	957	1,129	1,014

자료 : 농협중앙회

〈표 2-2-12〉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잠정)
어업용 사료	112	94	95	103
로프	65	63	62	62
어선(20톤미만)	59	53	53	34
선외내연기관	29	30	29	40
어망	30	29	28	28
양식용약품	28	28	28	25
기타	203	112	110	112
계	426	409	405	404

자료 : 수협중앙회

〈표 2-2-13〉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잠정)
어상자	45	41	45	39
양어장용 필름	6	6	6	6
양어장용 파이프	6	6	6	5
어업용 발전기	21	17	16	15
어선 및 어업용 방오도료	–	24	25	24
약사법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	–	14	14	15
차광망	–	13	13	14
기타	37	27	30	36
계	115	148	155	154

자료 : 수협중앙회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국제 유가 ·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 산업을 1차 산업에서 3차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며, 녹색성장 정책의 확충, 우리 먹을거리의 세계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 규모화 된 법인 · (농)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0년 농식품부 정책연구 용역비로 '농 · 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제 당국과 농어업분야 조세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6.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제도 개선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추진배경 및 개요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요건 관련 농업용부채 기준을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고(특별재난지역은 1,200만원 → 700만원),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을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으

로 완화하였으며, 농지은행사업 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자격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원제외요건 관련 부부합산 연간 급여 총액기준을 2,900만원 이상에서 3,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대지 등)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당대출 예방 강화를 위해 지원제외대상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대출금 회수 등 제재 조치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2010년에 209농가에게 198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되는 등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423농가에게 4,160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통해 재해 ·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자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3%)으로 바꿔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2010년은 43억원)해 주었다. 향후 지원실적 등을 보아가면서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7.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농업이 규모화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이후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 중 이차보전대상 자금인 2001 · 2004년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 · 2006 · 2009년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에 대해 1,523억원을 이차보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129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31.8%)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이후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2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3.1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식량산업과 사무관 김규욱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12.6.30까

지는 전액 면제, 2012.12.31까지는 75%를 감면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과 관리체계 개선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공급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농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고유가 현상과 자원고갈 문제의 대두, 한미 FTA,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농업용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39개 기종, 어업용의 경우 어업용 선박 및 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상유종으로는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이다. 농림어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주행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17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302만*kl*(농업용 192만*kl*, 어업용 110만*kl*)로 2008년 297만*kl*, 2009년 305만*kl*와 비슷한 추세이며, 2010년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도 1조 8,169억원(농업용 1조 1,353억원, 어업용 6,816억원)으로 2008년 1조 7,556억원, 2009년 1조 8,730억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과 어선어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농 · 수 · 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물가안정과 국민가계 부담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계 및 어선을 가진 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은 농수산물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

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 취약한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환경보호측면, 도로비주행 등의 이유로 자국의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효과는 면세유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킴으로써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 사용량을 전량 공급하고,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농어업에 소요되는 유류는 충분히 공급하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은 적극 방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012년으로 규정된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9. 농기계 임대 활성화

식량산업과 사무관 서정호

❖ 추진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조장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

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 농업 중심의 농기계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밭 농업에 사용하는 소형작업기를 단기 임대하도록 하여 밭농사 기계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논 농업 중심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2010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인프라 구축에 국고 250억원을 지원하였고 농협중앙회는 561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농기계 1,780대를 구입하여 농작업 대행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농기계 구입비용 125억원을 국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기계를 농가에 장기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형태에서 지역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고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희중

❖ 추진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 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있고,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영농기반 확장을 통해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도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0년 말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였는데,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009년까지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이전 연도에 선정하고 다음 연도에 자금을 지원하여 선정과 지원간 시차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선정된 당해 연도에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0년 후계농업경영인은 1,559명을 선정하였다. 이중 남성이 1,350명(86.6%), 여성이 209명(13.4%)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3명(31.8%), 30대가 676명(43.4%), 40대가 387명(24.8%)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95명, 전북 287명, 전남 230명, 경기 177명, 충남 174명, 경남 161명 순이다.

〈표 2-2-14〉 2010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 명, %)

지역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559	177	67	93	174	287	230	295	161	24	51
(100%)	11.4	4.3	6.0	11.2	18.4	14.8	18.9	10.3	1.5	3.3

주) 기타 : 서울 1, 부산 8, 대구 12, 인천 10, 광주 11, 대전 5, 울산 4

●●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은 읍 ·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0년에는 지원대상자로 1,559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저리의 장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농산업인턴제도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며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농업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농업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에서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0년에는 농업인턴 34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창업농멘토(후견인)제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선도농가, 전문가와 협약을 맺어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및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0년도에는 131명을 선정하여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4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28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630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조7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3만 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우리 농업 ·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 · 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 ·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벤처 육성

경영인력과 사무관 홍승길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 기업이다. 농업벤처는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9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 · 시상한 바 있다.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 2006년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표 2-2-15〉 제9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최영기	10	금차(金茶) 개발
우 수	김수일	5	파손되기 쉬운 농산물의 택배포장재 개발
	정영학	5	당뇨환자를 위한 산양유 허브 요구르트
	최승국	5	초고압살균기를 이용한 비가열살균 생과일 주스
장 려	성인환	3	인삼열매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차기설	3	연근발효 효소
	이경욱	3	생식용 콩나물 재배 및 상품화
	이대섭	3	조사료 자동 급이기
	이원호	3	송이버섯 배양균을 이용한 차 개발
	정종수	3	항산화 물질 다량 함유 쌀 맥주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부터는 농업벤처업무를 식품산업정책과에서 기존의 농업벤처업무에 식품업무를 추가하여 농식품관련 창업지원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벤처 업무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3. 농어업법인 활성화

경영인력과 사무관 황규광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 · 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친환경 농어업, 농수산물의 안전성 요구 증가,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등의 근거규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총 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 · 합자회사형태의 농

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조항도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장 · 군수)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를 종전 비농업인 3/4이내에서 최대 9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말 현재, 농어업법인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농업법인 수는 6,537개로 전년대비 8.9% 증가, 어업법인수는 481개로 4.0% 감소하였고,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7.7천명,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9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5%,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6〉 농어업법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ha)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농업법인 수	6,003	6,537	8.9	어업법인 수	501	481	△4.0
종사자 수	35,392	37,681	6.5	종사자 수	2,793	2,866	2.6
판매액	57,901	72,796	25.7	판매액	2,935	3,994	36.1
법인당 경지면적	8.8	11.2	27.3	법인당 양식장면적	6.2	6.0	△3.2

자료 : 통계청, 2009년

또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7.7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규모 법인은 전체의 62.7% 수준이며,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은 39.8%, 유통판매는 21.5%, 가공판매는 17.4%로 나타났다. 판매액도 법인당 판매액은 14.9억원,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35.5%, 농업생산수입 29.6%, 가공업 24.4% 수준이며, 재정상태의 경우는 법인 당 자산은 15.2억원, 부채는 9.6억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73.9%로 전년(193.3%)보다 1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ha)

구분 \ 연도	2008 (A)	2009 (B)	증감 (B-A)	증감률 (B/A)
법인 수	6,003	6,537	534	8.9
종사자 수	35,392	37,681	2,289	6.5
판 매 액	57,901	72,796	14,895	25.7
경영 경지면적	13,801	19,211	5,410	39.2

자료 : 통계청, 2009년

어업법인의 경우도 법인당 종사자 수 7.8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64.0%이며, 사업유형과 판매액에서는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은 58.3%, 법인당 판매액은 10.8억원, 어업생산수입은 전체 판매액 중 40.8%를 차지하였다. 재정 상태는 법인당 자산 11.2억원, 부채 7.4억원, 자본대비 부채비율 196.3%로 전년대비 45%p 감소하였다.

〈표 2-2-18〉 어업법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ha)

구분 \ 연도	2008 (A)	2009 (B)	증감 (B-A)	증감률 (B/A)
법인 수	501	481	△20	△4.0
종사자 수	2,793	2,866	73	2.6
판 매 액	2,935	3,994	1,059	36.1
양식장 면적	1,368	1,342	△26	△1.9

자료 : 통계청, 2009년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 경영,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 경영을 압박시키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농식품모태펀드 등 창업 · 투자유치 활성화와 세제지원, 농어업법인에 대한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 · 군별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사후 관리 점검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조성해 나가는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한우, 양돈, 양식업 등 생산분야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유통분야,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산업, 바이오매스 에

너지화 등 에너지 절감 및 활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가능케 하고 외부자본에 의한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농어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경영인력과 서기관 박영근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추진배경 및 개요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어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정예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인 역량강화는 실습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도농가 실습장, 전국대표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을 확충하고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 및 소득 증대와 연계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농정 목표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하는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국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점검하고 '10년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예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특성화농고 및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농업교육포털서비스(AgriEDU) 확대 운영 등으로 교육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마이스터제도,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등의 도입과 농업교육 인적자원 지표 통계조사, 농업인능력 표준점검으로 교육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후계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업 전문인력육성을 위해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 수

산벤처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선도농가실습장 45개와 전국대표실습장 8곳을 지정하여 농업인 · 농대생 · 농고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고, 축산실습장, IT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교육장 등을 구축하여 교육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3개 캠퍼스에서 85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40학점을 이수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 · 경영 · 마케팅, 친환경 · 품목기술, 조직화 · 리더십 · 농촌, 소비자 · 청소년, 농업회계 · 경영장부, 비용절감,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37개 기관 53개 과정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여성농업인과 연계 1:1 맞춤 농업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 귀촌 희망자의 농업 · 농촌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총 18개 기관 2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8개 기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국외 시장개척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특성화 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2개 농고를 대상으로 교사국내외직무연수, 우수학생국외연수, 농고비전스쿨, 전국FFK전진대회, 농고멘토링사업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은 전국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및 체험, 현장실습교육(WPL), 인턴쉽, 학교별 연계수업, 우수학생 대상 국외연수 등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 · 농대과정, 해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 유형 특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평가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강의평가 / 모니터링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포털서비스

(AgriEDU)에 대한 웹기반 농업교육기반 확대, 서비스 보완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업교육분야 교육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교육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인증하기 위한 농업마이스터 시험제도 개발, 농업교육이 농업경영체 성공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연구, 교육기획단계에서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모델개발과 운영매뉴얼 개발연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운영을 위한 모델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준비를 위한 농업교육 학위취득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적용방안연구, 농업교육 관련 현황을 통계로 정리하여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인적자원지표 개발연구와 농업교육 전 · 후의 농업인 역량(능력표준)을 점검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4개 수산계대학에서 창업 · 경영 · 마케팅, 해양환경관리, 친환경 · 품목기술, 조직화 · 리더십, 비용절감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과 수산벤처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년부터 어한기를 활용, 어업인들에게 품목별 단기(2개월) 전문기술 교육과정인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을 운영하였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수산계고교 9개교를 대상으로 수산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수산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승선실습훈련, 현장실습훈련, 잠수자격취득훈련, 국제교류실습 등 공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해기사 및 잠수자격취득을 통해 취업률 향상 및 원양어선의 고용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교육훈련은 농어업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어 농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 운영으로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 · 영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 30% 이상의 교육생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략에 따라 성과와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농업교육 대상자 및 과정 확대 · 특화, 지역교육공동체를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체계 확립,

농어촌 지역사업과 연계하는 지역중심 상향식 교육운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과 능력 발전을 통해 농어촌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경영인력과 사무관 홍승길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경영의 상업화 · 규모화 · 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사업은 농식품부의 대규모 기업농 대상 민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의 농업인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와의 통합으로 2009년 사업부터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수산물 유통 · 가공업체, 어촌계를 사업대상에 추가하고 어업분야 컨설팅을 담당할 컨설팅업체 인증을 통해 어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어선어업은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양식어업은 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 이상, 육상축제식은 2ha 이상 등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중규모이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추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 후 인증기간 준수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간 경쟁 및 컨설팅 질의 향상을 유도하였다. 일부 서식 및 별표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하여 지침을 간소화하고 Agrix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평가점검단(농업인재개발원)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하였다. 컨설팅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컨설턴트, 컨설팅업체당 사업량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평가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산기술위주의 농어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점검평가

2010년 994개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수행단계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행계획이 불량한 415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컨설턴트 1명 자격정지, 컨설팅업체 4곳에 주의 조치, 60개 경영체의 부실한 컨설팅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다.

●● 컨설팅 후 농가소득 증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컨설팅 대상 농업경영체의 10%(150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25.7%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2-2-19〉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분 \ 연도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량(개소)	220	759	1,000	1,009	1,080	1,250	1,448	994
사업비(백만원)	1,710	5,586	8,000	8,640	8,640	9,750	11,200	10,080
국 고	671	1,676	4,000	4,400	4,400	5,000	5,600	5.0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평가점검단(농업인재개발원)이 '10년 사업을 평가해본 결과 컨설팅 점수는 71.63점, 컨설팅 만족도점수 81.45점으로 나타났다. '11년부터는 자부담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자율적 컨설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및

어업컨설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컨설팅주체(지자체, 컨설팅업체, 경영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6. 귀농 · 귀촌 종합대책 추진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희중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대비하여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 등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 발표하고 총 1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의 귀농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농업과 농촌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에서 창업자금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통하여 조기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식품산업 차원에서는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관점에서 주민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 · 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교육 실시,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농업 · 농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립적인 농업창업, 정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온 · 오프라인 귀농 · 귀촌 교육운영 내실화

귀농자가 귀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귀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결이네 귀농일기, 창업농업 길라잡이 등 온라인 교육과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수산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23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134명이 귀농교육을 이수하였다.

●● 귀농 · 귀촌종합센터 기능 강화

농협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 및 전용상담전화(1577-9597)를 설치하여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도록 귀농 · 귀촌 통합정보 시스템(www.returnfarm.co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농업창업 및 주거마련 자금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에게 2억원 한도내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는 4천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하여 농업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귀농정책이 정부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2009년의 귀농 · 귀촌종합센터 구축, 상담전화 설치 등 귀농 · 귀촌 추진체계의 구축과 귀농 지원 정책은 타 산업분야의 경영마인드를 보유한 우수 인력의 유입으로 지역 농산업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귀농 · 귀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귀농교육 확대, 귀농귀촌종합센터 시스템 보강 및 귀농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

유통정책과 주무관 정순일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DDA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 · 조직화 · 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 · 브랜드화 · 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 · 군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 · 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 · 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10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31개소) 및 전문조직(282개소) 등을 선정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18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 · 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활성화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 · 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 · 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 · 유통 · 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 · 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 · 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월)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 · 계열화를 통한 조직화 · 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 · 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월)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조직화 · 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 · 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접거래 활성화

유통정책과 주무관 정순일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

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 · 1식품 · 1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0년에는 41만명에 79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와 소비지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 · 1식품 · 1외식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소를 설치하여 대금결재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에는 B2B 개설 초년도부터 거래목표(1,000억원) 대비 초과달성(1,755억원)으로 농수산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지 · 생산지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

가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관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를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지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정례장터 개설을 확대하여 도 · 농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지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3.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조규표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낙후된 시설 · 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물류 및 유통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경매 부조리,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효율화)을 개선하고자 농안법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낙후된 시설 · 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물류 및 유통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09년부터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특히 품질 · 신선도 등 소비자 요구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매장, 매장의 저온화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3개의 공영도매시장 중 시설노후화 및 물류시설 부족 등의 정도가 심한 3개소(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

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10년 현재, 시설현대화 건설기본계획수립,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이다. 대전오정시장의 경우,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32,650㎡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우선시공분(임시판매장 조성 등)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광주각화시장의 경우, 당초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축소하여 '1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품질이 높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09.1.1부터 도입하였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09년부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09년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중인 농수산물에는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07년부터 도입된 전자거래와 함께 농수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부터 일정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 ·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 · 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운영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과부족 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서울 가락, 광주 각화, 대전 오정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중앙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우선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도매시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 경매가격 급등시 가격변동폭 완화를 위한 도매시장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 유통 효율화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경매와 정가 · 수의매매 방식을 동등하게 규정,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조직 신설, 경매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적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농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정삼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형 SSM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소포장 및 전처리 편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안전성, 편의성 및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지의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의 산지 유통에서 소비지 유통에 이르는 각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크게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비지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주로 생산자의 거래 교섭력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별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다품목 소량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량과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조직화,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동계산 매출액 100억 이상의 대형 산지조직 35개소와 공동계산 매출액 10억 이상의 중형 산지조직 145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생산량의 30% 수준이 산지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도매단계에서는 농산물의 수집, 분산 등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11개 도매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서울 가락시장, 광주 각화시장, 대전 오정시장 등 3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다양한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정례화된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산지조직과 기업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지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가야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11년에는 그 동안의 시장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안형덕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7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었다(2007년 1월 3일 공포).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액중 비중이 높고, 가격변동폭이 큰 농축산

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농업관측정보는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2010년 현재 총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류별로 채소 10개, 과일 6개, 과채 6개, 축산 6개, 곡물 3개 품목 등이다.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 조사를 2008년부터는 16회 실시하고, 패널수를 1,200명으로 확대하였다. 쌀 POS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 정보를 관측보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중국 뿐 만 아니라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총 6개국에 36명의 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월부터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곡물류 품목 추가 및 관련 중국통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2009년 12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2012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관측센터는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가의 생산, 유통, 수출 동향 뿐 만 아니라 농업 및 농산물 관련정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관측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정보 관측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보강하고 있고, 2008년에는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으며, 미국 미주리대학 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로 개별 품목의 품목별 수급모형(KREI-COMO)을 개발하였다. 한편, 농업관측의 고도화 및 정밀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 주산지 정보를 그래

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인공위성 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7월에는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타당성' 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충남 당진군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논벼 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논벼 작황조사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9월 29일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작황조사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국과 호주, 아시아(일본, 중국, 한국)의 활용사례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표 2-3-1〉 2010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양념채소류 (5개)	고추, 마늘, 양파, 파(대파, 쪽파) ,풋고추 (중기선행관측 : 양파, 파)	3 ~ 12월	1일
엽근채소류 (4개)	배추, 무, 당근, 양배추 (중기선행관측 : 배추, 무)	3 ~ 12월	〃
버섯관측	양송이, 느타리	9 ~ 12월	〃
과일류 (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5 ~ 12월	10일
과채류 (6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3 ~ 11월	〃
축산류 (6개)	한육우, 젖소, 산란계, 오리	2, 5, 8, 11월	25일
	육계, 돼지 (중기선행관측 : 육계, 돼지)	2 ~ 12월	〃
곡물류 (3개)	쌀, 콩, 감자	1, 5, 8, 11월 쌀 속보 9, 10월	15일

매월 수집 · 분석된 관측정보는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및 지역자문회의와 품목팀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측보(월보 · 분기보)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관측보는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지역모니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농업전문지, 인터넷, 농업관측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고 있다. 2010년에는 주산지 속보 22회를 포함하여 총 73회의 관측보를 제공하였다. 관측정보 제공면에서 기존 소극적인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관측정보 서비스로의 발전적 추진을 위

해 'e-농업관측'를 작성하여 매월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측의 핵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월 4,100여명에게 농업관측알림(휴대폰 SMS)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초(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주관 개최하는 농업전망대회는 한국농업부문 최대 행사로 명실상부한 위상이 정립되었다. 2010년 1월 개최된 13번째 대회에는 '녹색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대주제하에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등 1,80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내외 농업경제, 품목별 동향분석 및 장단기 전망 등 총 36개의 소주제가 발표되었다.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수요자 평가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농업인 및 농업관련기관 이용자 전체의 관측정보 이용률은 85%로 나타났다. 또한 67%가 관측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제공되는 농업관측정보에 대해 6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시범으로 실시한 「소비관측」을 더욱 확대하여 2010년부터 소비관측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매월 소비의향지수, 분기별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결과 등 소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농업관측정보는 단기 시장유통물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생산단계 규모조절 기능이 미흡하였다. 기존 관측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기작형의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수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기선행관측사업을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기선행관측을 통하여 출하기 가격을 예측하여 예측된 가격의 수준에 대하여 '경계'나 '주의'와 같은 조기예보지수도 산출하여 수급조절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하반기 양파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0년 1월부터 양파, 배추, 무, 대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기선행관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선행관측 대상품목에 대해 작형별 월별 수급모형이 구축 · 운영되고 경제 내외적인 변수들을 종합분석하여 조기예보지수를 개발 · 제공하고 있다. 조기예보지수는 정식 또는 입식 3~6개월 전에 제공되는 것으로 예측가격이 어느 단계에 있는 지를 제시한다. 조기예보지수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 · 제공된다. 중기선행관측은 시장 유통물량 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이 농축산물 시장 수급안정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측 대상품목은 2009년 29개에서 2010년에 생산자 및 정책적 수요 증대에 따라 버섯과 오리 2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버섯관측」은 양송이와 느타리를

분류하여 관측하고 「오리관측」은 육용오리 생산수수 및 사육수수, 가격동향과 전망 등을 관측체제 구축을 통해 9월호부터 관측보를 발간 · 배포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관측사업은 농축산물 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심도있는 현장분석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

식량정책과 사무관 노영호

추진배경 및 개요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부 내부는 물론, 농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증가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이 2000년에 2010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처음 설정하고, 이후 5년 단위로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온 것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말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농정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2007년 12월에 「농업 · 농촌발전 기본계획('08 ~ '13)」에 반영하여 발표하였다.

그 당시 설정한 2015년 목표치는 주식 54%, 전체곡물 25%, Cal 47%, 그리고 쌀 90%, 밀 1%, 채소류 85, 과실류 66, 육류 71% 등이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설정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협력하여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여 2008 ~ 2010년 기간 중 매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핵심 주식인 쌀을 100% 이상 자급하여 2008년도, 2010년도 국제 곡물가 상승 및 곡물수출 중단 등의 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제2의 녹색혁명사업을 추진하여 국산밀 생산이 2009년도 19천톤에서 2010년 39천톤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조사료도 정부의 지속적인 생산확대 정책과 민간의 증산노력이 결합되어 2007년 78.4%에서 2009년 84%으로 자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은 시설현대화, 가축질병 방역, 사육기술 제고 등을 추진하여 자급률을 유지하였고, 과실류는 우량묘목 생산, 노후과원 폐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목표치 66%에 비해 무려 21%나 높은 87.3%('09년)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비측면의 다양한 제도적 기반확충을 위해 국민 식생활 개선 및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09.11.28 시행)하였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10.2.4)하여 표시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였다.

한편, 곡물 위주로 된 식량자급률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급률이 실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국민이 오해하도록 자초하여 사료용 수요를 포함한 '곡물자급률' 을 대표적인 식량자급률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자급률 수준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식량자급률' 이 곡물위주 지표로 산출되어 채소, 과수,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칼로리 자급률' 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6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FTA 등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비관적인 전망하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있고, 낮은 식량자급 수준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최근 2008년과 2010년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곡물수급 및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면서 국내 식량자급률 관련 요구가 증가되어 왔다.

아울러,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이가 점차 좁혀져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

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급률 개선의 여지가 커지는 등의 국내외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2006년에 설정한 2015년도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10. 5~11월 '식량자급률 목표치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논의를 거쳐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2020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2. 쌀 공공비축제도 운영

식량정책과 사무관 강동윤

추진배경 및 개요

쌀이 부족한 90년대까지는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증산위주의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쌀의 고가 매입), 서민생활 안정(쌀의 저가 판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공급 과잉시대를 맞아 국제질서에 부합한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을 통해 쌀을 자율적으로 수급조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국내보조금 허용한도가 매년 감소하여 수매물량이 점차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 조절기능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은 정부 개입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소득문제는 재정지원(직불금)으로 보전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2-3-2〉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구 분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매입 목적	농가소득안정, 쌀수급조절, 안보용 비축	안보용 비축
매입 물량	국회동의	국무회의 의결(3년 주기 결정)
매입 가격	행정가격(생산비 감안)	시장가격(통계청 조사가격)

〈그림 2-3-1〉 양곡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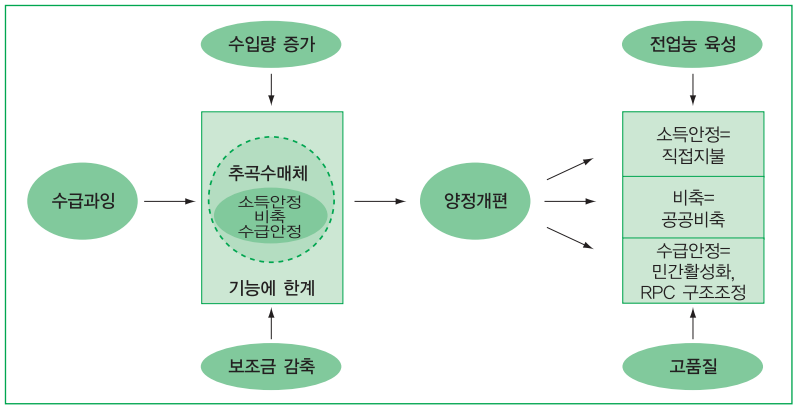

그에 따라, 현행 쌀 정책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 시가 매입 · 판매방식의 공공비축제 운영,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와 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 고급화 · 브랜드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비축물량은 FAO 권고량(연간 소비량의 17%)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

간 매입물량은 비축물량의 1/2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2-3-3〉 정부비축미 물량

- 1차('05~ '07년) : 864천톤('05년 576천톤, '06년 504, '07년 432)
- 2차('08~ '10년) : 720천톤('08년 400천톤, '09년 370, '10년 340)
- 3차('11~ '13년) : 720천톤('11년 340천톤, '12년 370, '13년 370)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 및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잠정 타결되어 ASEAN+3 장관회의 서명을 준비중에 있다.

〈표 2-3-4〉 국가별 쌀 약정 현황

(단위: 천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 3	787

❖ 평가 및 향후계획

공공비축제를 포함한 쌀 정책으로 '10년 기준 쌀의 자급률이 104%에 이르는 등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곡물의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공비축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 여건 속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특히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DDA/WTO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비축제 도입은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쌀의 유통과 수급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그와 함께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쌀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쌀의 품종과 생산된 년도, 쌀을 가공한 장소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양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장치를 두기 위해 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공공비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식량 안보를 위한 적정 재고(약 72만톤)를 확보할 뿐 아니라 공공비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조벼 물벼 구분 매입에 따른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비축미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기준 개선, 보관 창고 현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 ②생산 조정의 제도화, ③쌀 가공산업 육성, ④쌀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쌀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3. 비축수입농산물 관리

식량산업과 사무관 김 성

추진배경 및 개요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는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잇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작황의 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대로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농산물 가격도 작황부진으로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비축수입농산물 관리는 새롭게 주목 받게 되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에 상승에 따른 수급불

안, 식량위기 대응과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산물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관리는 역할과 중요성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표 2-3-5〉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톤, 불/톤)

연 도 / 구분(품목)	2010			2011		
	금 액	물 량	단 가	금 액	물 량	단 가
콩	233,306	210,000	1,111	213,402	224,995	948
팥	34,694	27,433	1,265	42,911	21,000	2,04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 추진내용 및 성과

1976년 「농안법」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78년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설치하여 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따라 국영무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변동 추이에 대하여 FAO, OECD, 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 농무성의 등의 자료를 통한 국제 식량 수급전망, 국가별 농업통계를 기초로 국제 곡물가격을 예측하여 비축수매를 추진하고 있고, 2009년 2월부터는 국제곡물정보관측기구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 · 운영하여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입선 다변화와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적기 구입 · 비축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비축사업은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비축수입농산물을 탄력적으로 조정 · 운영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국제적으로 기초적인 종자산업부터 농산물 생산, 유통에 이르기 까지 대외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의 식량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세계곡물 시장은 '08/ '09년을 정점으로 한발,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은 감소한 반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수요증가 등

으로 곡물수요 증가와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곡물가는 상승하고 수급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늘어나는 소비에 비해 생산 증가요인은 많지 않은 상황과 곡물가격 급등주기도 과거 10년에서 최근 3년으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쌀을 제외 주요곡물의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국제곡물가 급등시 혼란 우려가 높으며, 수출국의 수출금지 등 식량의 무기화 추세에 이어 식량자원의 투기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비축규모는 FAO 권고(유통재고)를 기준으로 국내 연간소비량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비축방법도 단순 현물매입에서 국제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아갈 계획이다.

향후 국민적 식량안보 확보와 국내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해외곡물 조달체계와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식량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농산물 산업의 상황에 적정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 논 소득기반 다양화

식량산업과 서기관 장대수

❖ 추진배경 및 개요

2008~2009년 연속적인 풍작,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확대 도입 등에 따라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쌀값의 하락과 함께 정부의 재고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종자개량, 재배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쌀의 공급 과잉이 구조화되었다. 한편 콩, 조사료 등은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면서 자급률 수준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의 공급 과잉구조 해소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논에 타작물재배 시범사업은 2009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논을 대상으로 벼 이외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0a당 300천원을 지원하였다. 총 3만ha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군에서 논 9,714ha에 타작물재배를 약정하였다.

〈표 2-3-6〉 시·도별, 품목별 타작물재배 약정현황

(단위: ha)

시 도	합계	콩	사료용 옥수수	총체 벼	채소류	고추	감자	특용 작물	잔디	약용 작물	기타
부 산	25.6	-	0.2	-	24.5	0.1	0.8	-	-	-	-
인 천	11.1	2.8	-	-	1.0	1.6	-	0.2	-	-	5.5
대 구	2.2	1.1	-	-	0.8	-	0.2	-	-	-	0.1
울 산	7.6	0.2	3.4	-	3.0	-	1.0	-	-	-	-
광 주	66.0	6.4	0.9	0.4	5.4	2.0	0.6	2.3	43.1	-	4.9
경 기	199.5	79.7	34.1	3.1	30.7	9.4	4.5	5.9	-	0.7	31.4
강 원	233.9	75.2	9.1	0.9	52.8	12.0	6.0	4.0	-	3.2	70.7
충 북	438.7	195.2	47.9	-	48.6	47.3	14.4	7.4	1.1	2.6	74.2
충 남	935.4	209.8	132.1	23.2	231.2	71.6	14.1	46.2	1.6	18.0	187.6
전 북	2,027.7	608.2	319.5	148.8	234.0	217.7	64.1	100.1	42.6	3.6	289.0
전 남	2,096.6	650.3	180.2	116.3	169.8	236.9	151.2	24.3	314.3	21.8	231.5
경 북	2,388.4	1,027.5	231.8	108.9	378.8	231.0	57.6	71.2	2.7	48.3	230.6
경 남	1,281.5	338.6	86.7	112.8	263.3	127.5	92.4	58.2	5.7	20.1	176.2
합 계	9,714.3	3,195.1	1,045.9	514.4	1,427.6	973.4	406.8	319.8	411.1	118.3	1,301.7
비율(%)	100.0	32.9	10.8	5.3	14.7	10.0	4.2	3.3	4.2	1.2	13.4

이 사업을 통해 9천여ha에 타작물을 재배하여 약 45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콩, 조사료 등의 생산을 확대하였고 정부의 논 타작물재배 시범사업과 연계한 논콩재배단지, 농촌관광테마파크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업경영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등의 모범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평가 및 향후계획

급격한 정부 쌀재고의 증가와 쌀값의 하락으로 긴급히 4월 22일에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계획에 사전 반영이 어려웠고 이미 영농철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목표면적인 3만ha의 32.4%인 9,714ha만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향의 조기 확정, 교육·홍보의 실시, 조사료

종자 공급 방안 마련 등과 함께 지역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와 다양한 정책사업 연계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5.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추진배경 및 개요

쌀 브랜드 수는 1,629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름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는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향후 예정된 쌀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인해 외국쌀과 직접 경쟁하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비지시장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되었지만, 산지의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쌀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RPC를 생산 및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RPC 역량강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07년부터 규모화된 RPC 중심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쌀 주산지 위주로 규모화된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여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년까지 34개소가 선정되어 육성되었으며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은 31%로 확대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공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30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과 농가에 대한 교육, 브랜드쌀의 홍보, RPC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 2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지원해 주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하여 RPC간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규모화를 유도하고 RPC간 과잉경쟁을 해소하여 경쟁력를 향상시키는 한편,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하여 균일한 동일 브랜드의 고품질 쌀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등 쌀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RPC의 효율적 설치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11년 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사용되는 단위기계 및 장비 27종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RPC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RPC의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4장 녹색성장 및 미래 신 성장 동력 확충

제1절 녹색성장 및 농식품분야 에너지 및 비용절감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녹색미래전략과 사무관 신우식

❖ 추진배경 및 개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은 농림어업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단기적으로는 가뭄 · 홍수 · 폭염 · 산불 · 산사태 등 농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의 재배적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 사막화 및 냉수성 어종의 어획량 감소를 초래한다.

농업환경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동 · 식물병충해 발생, 농작물의 품질저하, 수량 감소 등을 유발하여 농어업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육성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일본은 자국 내 온실가스 25%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3,256천TOE('06 에너지소비통계, 에너지관리공단)로 국내 총 에너지 소비(173,584천TOE)의 1.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농림어업의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油價)가 농어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점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반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1.4%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 평균 6.7%)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화학비료, 농약 등의 투입재를 다량 사용하는 환경 고(高)부하 형태로 발전해 왔다. 농약 사용량은 2008년에 13.2kg/ha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네덜란드의 8kg/ha보다 5kg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농어업의 환경부하 완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은 '08년 현재 3.6%로 미미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에너지 · 자원고갈, 환경 훼손 및 오염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중심에서 생태 비용의 내부화, 자원 효율성 최대화, 오염 영향의 최소화 등을 중시하는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 경제 · 기후 · 생태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즉, '저탄소 녹색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먹을거리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저탄소 ·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범국가적인 경제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09.2.16)가 출범하였다. 이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09.7.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 공포('10.4)되었다.

우리부는 이러한 녹색성장 국가정책 방향에 맞추어 3대전략, 9대 추진과제, 50개 실천 프로젝트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10.2)을 확정하였다.

〈표 2-4-1〉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비 전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 · 농산어촌		
목 표	• CO_2 배출량 : (05) 1,470만톤CO_2 → 국가 감축계획에 따라 설정 • 바이오에너지 공급비율 : (07) 6.6% → (13) 8.8 → (20) 15.7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7) 3.0% → (13) 10.0 → (20) 15.0		
3대전략	〈전략1〉 저투입 · 고효율 녹색산업화	〈전략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 관리	〈전략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9대 추진과제	〈전략 1〉 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② 녹색기술 · 장비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전략 2〉 ① 농산어촌 활력증진 ②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③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전략 3〉 ①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② 저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③ 녹색생활 실천 확산
실천 과제	50개 실천 프로젝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2010년

또한, 추진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격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 중 녹색성장 확산효과가 큰 정책 분야를 선정하여 '10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10. 4.16)

'10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연도별 시급성 및 파급성이 높은 정책들을 7대 핵심과제 및 2대 관리과제로 선정하였다. 확정된 과제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시켜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농어업 · 농어촌 녹색성장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녹색성장 우수사례집(6월) 및 홍보동영상(11월)을 제작 · 배포하고, 국제 산림과학전시회(8월) 및 Korea Food Expo(11월)와 연계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리실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녹색성장 특정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되었다.('10.12.6)

〈표 2-4-2〉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50대 실천과제와 '10년 주요 추진과제

50대 실천과제	'10년 주요 추진과제
1. 저투입 · 고효율 녹색산업화	
1-1.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1-1-1.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1-1-2.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충	
1-1-3. 목재펠릿 수요확대	2-2. 목재 펠릿 품질표시 의무제 도입 및 공급확대
1-1-4.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1-5.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2-3.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2. 녹색기술 · 장비 보급 확대	
1-2-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1-2-2.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1-2-3.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 향상	
1-2-4. 유용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1-2-5. 어선 유류비 절감	2-4 어선 LED 보급 확대
1-2-6. 소형 어선 전기시스템 개발	2-4 어선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1-2-7. 지하해수 개발	
1-2-8. 소수력 발전	
1-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4-1. 농림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세부 이행계획 마련
1-3-1.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3-1. 농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1-3-2.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1-3-3. 농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3-2.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
1-3-4. 해양예측, 어족자원 변화 관리강화	
1-3-5. 해외 농업정보 수집	7. 녹색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3-6. 동 · 식물 · 수산물 병해 관리	4-2 기후 적응형 식량생산 기술 개발
1-3-7. 농업경영체 정보화, 자동화	
1-3-8. 산림 재해예방 및 생태계 모니터링	
1-3-9. 농작물 재배보험 활성화	
1-3-10. 개도국 조림, 국제기구 유치 등 해외협력	7. 녹색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3-11. 북한 산림 및 공유하천 복구 지원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 관리	
2-1. 농산어촌 활력증진	1-2. 녹색실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전개
2-1-1. 체험 ·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	1-3. 산림치유 법제화 및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
2-1-2. 새만금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2-1-3.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1. 농촌 에너지 녹색마을 조성
2-1-4. 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1-5. 친환경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 · 보급	
2-1-6. 농업용수 관리강화	
2-1-7. 도농교류 활성화	1-1.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2-1-8. 팔도강산 금수강촌 만들기	
2-2. 탄소흡수 녹색공간 유지 · 확대	
2-2-1. 유휴토지 조림 및 도시녹화 확대	1-1.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2-2-2. 산림 생태계 보전강화(생태숲)	
2-2-3. 해양 생태계 보전강화(바다숲)	6-1. 해양 생태계 보전 강화
2-2-4. 생활원예 실용화	1-1.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2-3. 고부가 생명산업	
2-3-1. 신소재 기능성 작물개발	
2-3-2. 수산 바이오산업 육성	
2-3-3.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2-3-4. 형질전환 가축 개발	
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3-1.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3-1-1.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5.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 수립
3-1-2. 친환경 농자재 산업 육성	5.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 수립
3-1-3. 친환경 어구보급 확대	6-2.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3-1-4. 제2녹색혁명 추진	
3-2.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3-2-1.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3-2-2. 식품정보 제공 확대(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5.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 수립
3-2-3. 고부가 저탄소 식품기술개발	5.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 수립
3-2-4. 한식세계화	
3-2-5.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3-1. 농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3-3. 녹색 식문화 확산	
3-3-1. 녹색식생활 운동 확대	

자료 : '10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주요 추진계획, 2010년

평가 및 향후계획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산업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산업이

자 환경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는 특성은 환경 변화에 선제 ·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는 등 체계적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녹색성장 정책 및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 녹색생활 실천 확산,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농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녹색성장의 가치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원예경영과 서기관 박희수

추진배경 및 개요

2008년도 이후 세계경기회복 기대감, 중동지역 정정불안, 부존자원의 한계 인식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별로 무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10% 수준이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이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고유가 ·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 분야의 유류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면세유 중 67%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3〉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단위 : 천TOE)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9
총에너지소비량	75,107	121,962	149,852	170,854	182,066
농림어업에너지 소비량	1,813(2.4%)	3,224(2.6)	4,069(2.7)	3,385(2.0)	3,035(1.7)
석유제품	1,687(3.7%)	2,934(3.5)	3,600(3.9)	2,755(2.9)	2,244(2.3)
전력	125(1.5%)	290(2.1)	456(2.2)	603(2.1)	786(2.3)

주 1) ( )안은 국가총소비량 대비 비중, 2010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 TOE는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물리적 단위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막시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목재펠릿난방기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 · 지원하는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을 통해 유류의존도를 70%까지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장비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등의 시설장비를 시설원예농가에 보급 · 지원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냉난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농업용 화석에너지(특히 면세유) 사용 절감과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난방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 장비를 보급했다. 2010년에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실적은 사업비 1,701억원을 투자하여 1,098ha에 시설 · 장비를 설치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증가률 7.8%를 달성하였다.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증가률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증가 면적/시설원예 가온면적(14,000ha)) × 100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용 면세유의 67%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면적을 2020년까지 가온면적의 30%수준인 4,453ha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은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첫해로써 지열냉난방시설은 사업비 896억원을 투자하여 85ha에 시설을 설치하였고, 목재펠릿난방기는 196억원을 투자하여 138ha에 대하여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 시설원예 에너지 다변화 추진

2010년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 사업의 시설현대화분야에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면세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계측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원예분야에 한정되어있던 사업대상을 수산과 축산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 ·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화석 에너지의 유한성과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 지속되는 등 농어업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농어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수산과 축산분야를 포함하는 농어업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발, 에너지절감시설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R&D 투자규모 확대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3.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방역관리과 사무관 하욱원

❖ 추진배경 및 개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등 자원화 및 정화방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09년에 754억원에서 2010년 791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7) 424억원 → ('08) 664 → ('09) 754 → ('10) 79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개정

그 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9)」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규칙(2007.11)」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액비부숙기간(6개월 → 4개월), 액비살포 의무면적(돼지 : 640㎡ → 260㎡) 및 주거지로 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100m)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0.11.8) 하였으며, 앞으로 액비의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액비살포 가능 지역에 골프장·임야를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

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4억원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3,28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액비저장조 878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33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7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5개소 → ('08)19 → ('09)39 → ('10)56 → ('11P)70

●●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액비살포비 등 사업비를 차등지원 하는 등 자원화조직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미래 신 성장동력 확충

1. 농협 개혁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최봉순, 사무관 박중신 · 변혜중 · 홍인기 · 정아름

❖ 추진배경 및 개요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 · 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 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 · 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이어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질적인 농협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 · 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 · 공포(2009. 6. 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 · 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 12)하고,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 ·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 · 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중

앙회,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OBS, 한국경제, KTV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이낙연 위원장 외 다수 실시), 조합장 ·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에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이어 2009.12.26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언론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 · 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향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 구성, 하위법령 마련, 자산 실사 등 실무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까지는 조직 · 인력 재설계, 법인 설립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시 개정안 통과 후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녹색미래전략과 서기관 김남웅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량 · 기초원료를 제공하는 농업의 기본역할이 세계적인 기후변화, 인구증가, 자원경쟁의 심화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영역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생산중심의 농식품분야에도 2 · 3차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되어 고수익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농식품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투융자가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자본에 의한 농림수산분야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재정위주의 투융자는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인프라 구축에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민간의 투자시장 형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민간금융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10년에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게 되었다.

〈 그림 2-4-1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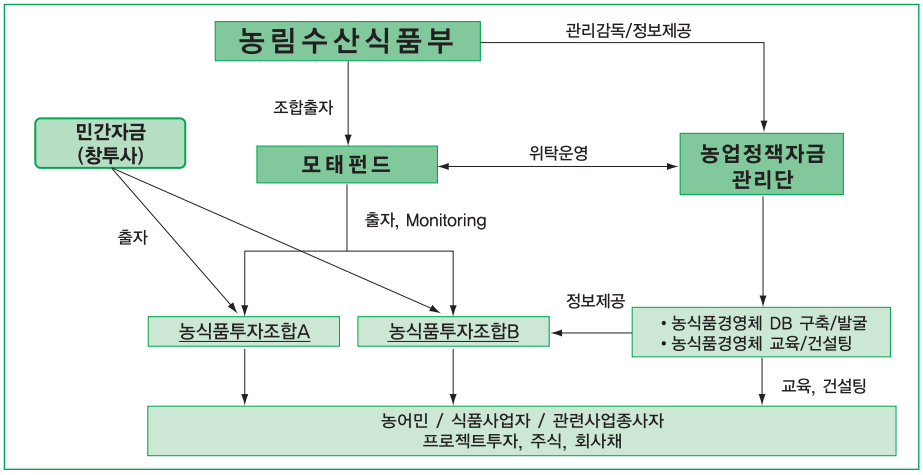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09년 8월 '농어업펀드 조성 · 운용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고, '10년 5월에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을 제정 ·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10년 6월에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0년 9월에는 정부에서 597억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0.3억원을 출자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결성되었으며 '11년에는 정부에서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누적규모 1,097억원의 모태펀

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통해 지난 '10년부터 1,087억을 출자 하여 총 11개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였고 '11년 7월 현재 9개(농림수산식품일반 1, 농림축산업 3, 식품산업 2, 수산업 1, 프로젝트사업 2)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결성규모는 1,970억원(정부출자 927억원, 민간출자 1,043억원)에 이르고 있다. 활발한 투자조합 결성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현재 각 조합별로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를 검토 중으로 3/4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2-4-4〉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사업연도	펀드형태	투자분야	운용사	펀드 결성규모			조합결성
				정부	민간	총계	
2010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 일반	그린부산창업투자	90	110	200	2011.3
		농림축산업	아주아이비투자	100	100	200	2011.3
		식품산업	미시간벤처캐피탈	100	150	250	2011.3
		수산업	캐피탈원	100	100	200	2011.7
	사모투자전문 회사(PEF)	프로젝트사업	현대증권/ 동양인베스트먼트(공동)	157	163	320	2011.3
	계			547	623	1,170	
2011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아시아인베스트먼트	100	100	200	2011.7
			컴퍼니케이파트너스	100	100	200	2011.6
		식품산업	나우아이비캐피탈	80	120	200	2011.7
			수시출자	80	80	160	–
		수산업	수시출자	80	80	160	–
		프로젝트사업	미래에셋벤처투자	100	100	200	2011.7
	계			540	580	1,120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모태펀드사업은 시행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9개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1,043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2개 조합(식품산업 및 수산업 분야)을 수시출자를 통해 추가 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결성된 조합의 농식품경영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 경영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은 단순히 민간분야의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선진투자 및 경영기법을 농어업에 접목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 축소 및 융자확대라는 투융자 운용방향의 변화가 농업금융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방지 · 완화하는 새로운 농업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농식품모태펀드는 기후변화, 식량자원의 무기화 등 변화하는 국제여건과 농어업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타 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식품모태펀드가 제3의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였던 농업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자 수익성이 높은 유망한 민간투자 분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및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조정래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분야 금융시장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이 진출을 꺼리는 등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정책금융은 농업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주로 농 · 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농협 등을 통하여 주로 지원하여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4-5〉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0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농 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촌공사	시중은행
정부자금	농특회계	18,337	14,876	3,461	–	–	–
	재특회계	11,324	11,924	–	–	–	–
	소 계(a)	30,261	26,800	3,461	–	–	–
	농안기금	31,297	23,635	215	7,447	–	–
	농지기금	29,792	73	–	–	29,719	–
	축발기금	14,601	12,808	–	–	–	1,793
	FTA기금	4,113	2,465	–	5	1,643	–
	소 계(b)	79,803	38,981	215	7,452	31,362	1,793
	계(A=a+b)	110,064	65,781	3,676	7,452	31,362	1,793
차관자금(B)		84	84	–	–	–	–
민간자금(이차보전)	정책자금	82,379	80,684	1,595	–	–	100
	부채대책자금	39,610	39,141	469	–	–	–
	계(C)	121,989	119,825	2,064	–	–	–
합 계(A+B+C)		232,137	185,690	5,740	7,452	31,362	1,893

자료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농특회계, 공자기금, 이차보전 민간자금), 산림조합 신용사업부(농특회계, 이차보전 민간자금), 유통정책과(농안기금), 농지과(농지기금), 축산정책과(축발기금), 농업정책과(FTA기금)

추진내용 및 성과

정책자금 시중은행 취급 확대

2004년 8월부터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축발기금의 모든 융자사업과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2008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신규후계농 및 창업농 · 후계농추가지원자금을, 2010년도에는 농촌주택정비사업, 재해복구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융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자금을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모태펀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지역별 · 품목별 · 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종합자금제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Pool)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2-4-6〉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종합자금	1,251	8,233	9,567	10,202	12,049	11,380	13,371
농축산경영자금	43,484	31,984	30,856	29,201	28,023	27,566	26,63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생산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 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2005년 4,000억원 → 2006년 5,780억원 → 2007년 7,357억원 → 2008년 6,952억원 → 2009년 9,095억원 → 2010년 1,200억원)하는 한편, 농 · 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 → 0.3%) 및 일선조합의 신규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 → 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운용배수가 안정화(2006년 96.0배 → 2007년 23.8배 → 2008년 14.6배 → 2009년 6.6배 → 2010년 4.3배)되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업인등에 대한 신규보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자금 취급을 시중은행에 개방하였음에도 기준금리의 차이, 회계검사 의무화, 대손보전 제외 등으로 인해 취급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요경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요경비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소액 대출에 대하여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 자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농림수산식품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서정아

추진배경 및 개요

OECD는 2030년경 세계 경제가 IT경제에서 바이오경제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BT분야의 핵심 산업은 농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구제역 · AI(인수공통전염병) 확산, 식품안전 등의 현안과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 부존자원 고갈 등 글로벌 이슈에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식품산업)중 하나로 선진 각국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의 잠재력을 기술개발로 뒷받침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먹거리 생산을 중심으로 한 1차 생산관련 기술개발에 정부지원을 집중(2009년 농림수산식품 R&D 예산 중 38% 투자) 해 왔으나 최근 그 비율을 낮추고(2010년 34%)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2 · 3차 산업 가공 · 유통기술개발 및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전년 대비 2011년 60% 증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R&D는 산업의 특성 상 농림수산현장에서의 기술지도보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기관(농촌진흥청 · 산림청)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농림수산식품 R&D 총 예산 중 약 60%)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산 · 학 · 연 민간에 대한 R&D지원이 취약하나 향후 민간투자영역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의 2011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2011년 시행계획은 방향성 있는 농식품 R&D를 추진하고자 쌀소비촉진, 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응 등 현안대응 R&D에 753억원을 투자하며, 기후변화 대응, 생명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등 미래 주요 이슈대응에 3,333억원을 투자하고, 식량안보 및 유전자원 보존 확보 등의 국가 주도의 기반연구에 8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2010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편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 4월 출범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하여 제2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후 국가 R&D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중복성 및 투자효율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기획조정분과를 신설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한 생산기반 · 안전유통 · 종자생명 · 녹색자원환경 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였다. 향후 기술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여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 R&D 평가를 주관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 기술전문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부 · 청 의견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반영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주관 농림수산식품 R&D 평가 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성과중심의 R&D 사업평가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술적 ·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므로, 기존 국가 R&D 평가와 같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정책부합성, 유사 ·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체계 평가를 통한 정책 및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R&D 추진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단위사업평가와 기술분야평가를 추진하였다.

금년도 단위사업평가 대상은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기획,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확산에 대해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ARC)' 등 4개 사업으로 분리·개편하였다. 기술분야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의 바이오산업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등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과제 발굴에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단위사업평가를 확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농촌진흥청의 '원예시험연구사업'과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분야평가는 신규로 기획 중인 'Golden Seed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종자산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차년도 투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R&D 투자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미래유망 및 현장수요 부합형 신규사업 발굴·기획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술수요·정책수요 및 산업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부 주관으로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R&D 사업을 기획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로 제출하였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통해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추진중인 '유전체 연구사업' 및 '지능형센서기반 물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요부처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녹색인증제도 시행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의 통합고시를 마련하여 녹색인증제를 시행(2010년 4월)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2010년 8월)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시함으로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2010년 4월)하였고, 동 평가기관을 통해 2010년 첫해의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 인증·확인 건수는 총 16건으로 녹색기술 13건 인증, 녹색전문기업 3건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녹색인증제 시행 이후 인증수요 부족 등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녹색인

증제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인증대상 확대, 기술수준 구체화 및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로 한번 더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녹색 인증 · 확인 목표는 전년 대비 40% 높은 25건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타부처와 차별화된 서비스(농업종합자금융자사업, 체계화된 홍보시스템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 운영

국내외 R&D 환경변화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예산사업의 체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2011년부터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 등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단위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미래 연구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연구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단장, 예타사업자문위원회, 기획총괄팀, 기획분과 등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2010년 9월)하였으며,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의 2011년 사업 대상과제 발굴과 기획을 지원하고, 생명산업 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 연구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 · 산업화 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 DB 구축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결과와 성과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부 · 청의 R&D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기존 NTIS 관리항목에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사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 DB 구축에 착수, 2011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 DB의 구축으로 농림수산식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의 적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개별 과제 진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 내용 · 공고 · 실적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관별 R&D 기획 및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기관 간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연구자 입장에서도 기관별 연구과제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여 관심분야 연구동향 파악이 쉬워지므로 민간 차원의 연구계획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 R&D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총괄 조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R&D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목표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우수 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활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 단체 · 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논의할 장을 마련하고, 방사능 · 구제역 · AI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정확한 과학적 논거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5. 종자산업 육성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상집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영세한 종자업체들이 첨단화 · 규모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과 장비구축에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갖춘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지역 54ha를 연구단지 부지로 선정하여 조성 중에 있다. 또한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수는 2010.12월말 현재 950개로 종업원 10인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4-7〉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단위: 개)

구분 / 연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기타
2002	485	8	93	188	58	100	18	20
2004	571	16	117	210	78	104	20	26
20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20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20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20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2010	950	35	197	283	152	130	30	139

한편,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종자유통제도 등 실체법적 규정과 품종보호와 관련한 절차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전부개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안)」으로 분리한다. 「종자산업법」전부개정안에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포함되며, 「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안은 품종보호대상작물의 모든 식물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제정된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 · 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정책효과와는 별도로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0.12월말 현재 종자수출액은 25백만불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종

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 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0.12월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3,385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8〉 2010년 작물별 품종보호 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 작물	국내						외국				계					
	계	개인	업계	지자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업계	국가	계	개인	업계	지자체	국가	기타
화훼류	958	195	63	311	379	10	972	12	960	0	1,930	207	1,023	311	379	10
식량작물	604	15	20	44	485	40	2	0	2	0	606	15	22	44	485	40
채소류	505	14	380	26	64	21	2	0	2	0	507	14	382	26	64	21
과수류	148	60	18	9	58	3	1	0	1	0	149	60	19	9	58	3
특용작물	126	1	7	9	106	3	1	0	1	0	127	1	8	9	106	3
버섯류	46	12	4	18	11	1	2	1	1	0	48	13	5	18	11	1
사료작물	18	0	0	0	18	0	0	0	0	0	18	0	0	0	18	0
계	2,405	297	492	417	1,121	78	980	13	967	0	3,385	310	1,459	417	1,121	78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중인 농업유전자원은 291천점('10년말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용형질 특성평가는 15%('09년) 수준에서 18%('10년)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8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자산업법을 분리 제 · 개정하여 품종보호대상작물의 모든 식물 확대에 대비하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 활용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중인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생명자원 통합

DB' 를 구축하여 생명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6. 곤충산업 육성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연숙

추진배경 및 개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충, 그리고 학습 · 애완 · 관광상품용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의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2-4-9〉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원)

활용분야	대상 곤충 종류	시장 규모(추정)	
		2009년	2015년
학습 · 애완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적곤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에, 풍뎅이유충, 거미 등	-	700
합 계		1,570	2,9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0년.

추진내용 및 성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의 산업화 트렌드를 배경으로 곤충산업을 육성 ·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의 정서함양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 2월 4일에 공포함과 더불어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법률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제1회 생명산업대전 개최를 통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2010년 6월 17일부터 19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생명산업대전' 행사를 통해 '기존의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산업' 이 '곤충 등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인 미래 첨단산업' 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제시와 산업화의 발전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4-2〉 제1회 생명산업대전 곤충산업 체험관

●●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수립 · 발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에 '2015년까지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570억원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으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 · 수집 · 보존 및 표본 자료 DB구축, 곤충의 가치 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등과 같이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곤충농가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지원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곤충생산단지와 곤충체험학습시설을 현대화 · 규모화 하는 등 곤충농가 및 곤충산업체를 육성 · 지원하고자 한다.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 사업지원' 및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 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곤충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관련 대학 · 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운영하고, 곤충산업육성 교육과정을 농업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의 교육기관에 개설할 계획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곤충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미개발 유용 곤충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 정책인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현재 굼벵이와 같은 곤충자원은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데, 이러한 곤충자원에 대한 약리성 및 독성 등 안전성 시험에 대한 기획 연구를 실시하고 곤충자원을 이용한 식품소재로서 산업화의 길을 개척하여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 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화의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7. 농지제도 개선

농지과 사무관 안종락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임차농의 안정적 영농 보장을 위한 농지임대차규정 보완 등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2009년 농지법 개정 후속조치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 고시를 완료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농업계 내 · 외의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2010년 11월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 국토연구원, 언론계 등 농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12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폐지, 임대차할인제도 · 임대차기간, 임차료 상한 등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제도 보완 등이다.

또한, 2009년에 개정 · 시행된 농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 고시를 완

료하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읍 · 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 · 군수가 고시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 고시가 완료된 총 면적은 111천ha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 ·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소유 · 임대차를 자유롭게 했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허용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폐지,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규정 신설 등 2010년도에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2011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 하반기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등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 WTO DDA 협상대응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김수일

DDA 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 추진경과('01~'05)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을 출범시켰다.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일정을 정하였다.

동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내지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는 등 중간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1996년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

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실질적 결렬 원인이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농업 분야에서의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함에 따른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4년 들어 협상 진전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고, 집중적인 논의 끝에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2004년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각 분야별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홍콩 각료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핵심쟁점들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홍콩 각료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정한 것이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말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EU와 미국, 수출국들간 입장 대립이 극심하였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홍콩 각료회의 이후 협상 추진경과('06~'10)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들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주요국 및 주요 그룹 간 입장차가 매우 컸으며,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각국의 입장변화가 없다며 협상 진전을 위해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후 2006년 7월에 개최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DDA 협상

의 교착상황에 우려를 같이하고 1개월 이내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장관들은 제네바에서 향후 협상방향을 논의하였으며 7월말 회동하여 3대 핵심쟁점인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의 추가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과 국내보조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는 EU, 인도, 브라질, 일본 등의 입장 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DDA 협상 일시중단을 선언하였고, 협상 재개시까지 각국이 입장을 재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별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라미 사무총장은 11월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소집, 각 협상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DDA협상 전반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협상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주요국 · 주요 그룹 간 탐색전, 주요 그룹 내 기술적 협의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주요국 각료들은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는 DDA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심도깊게 진행되었고 농업협상분야에 있어서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이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4월 및 5월에 의장문서를 2차례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 EU, 인도, 브라질 주요 4개국은 6월의 장관급 회동을 통해 농업부문을 포함한 그 간의 논의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4개국 합의 결렬의 주원인은 농업분야보다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문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7월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동 초안은 타결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상당부분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세부원칙 배포 이후 하반기 DDA 협상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그룹 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 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 개수 등 정치적으로 결정될 핵심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TRQ 증량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과 그 동안 논의가 미흡하였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제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의제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

2008년은 2월 팔코너 농업의장이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한 이래 5월에는 2차, 7월에는 3차 수

정안이 배포되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수정안이 배포된 7월에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부원칙이 타결될 전망도 보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팔코너 농업의장은 7월 각료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등 주요국들의 국내 일정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도 DDA 협상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으며,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하여 DDA 협상의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지는 않았다.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DDA 협상팀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9월초 인도에서 개최된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국들이 하반기 DDA 협상진행과 2010년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 합의하였고,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DDA 협상타결을 위해 통상장관들이 2010년 초 협상진행을 점검하고 차기정상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협상이 활기를 띠어 농업의장 주재로 이행계획서 작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10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0월 이후 주요 쟁점인 민감품목, TRQ 신설, 관세상한, 관세단순화, SSM(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등에 대해 각국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2010년에도 실무차원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고, SSM 등 주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는 DDA 협상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각 협상그룹별 협상현황과 주요쟁점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5월에는 SSM 논의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문서회람이 있었고, 양허표 작성 및 국내보조와 수출경쟁분야의 각국 제안이 있었다.

한편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2011년이 협상타결을 위한 기회이므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쟁점의제가 많아 2011년까지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 한 · 미 FTA 비준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유진오

추진배경 및 개요

한 · 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에는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있었고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 협상이 개최되어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타결하였고 현재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다. 한 · 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한 · 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 · 개정한 후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 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 · 미 FTA 국회 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외통위는 한 · 미 FTA 찬반 양측 전문가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008년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농어촌 지원 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008년 2월 19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 · 미 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

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1월 30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12월 3일 추가협상을 타결하였다. 농어업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냉동목살에 대한 양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현재 2007년 4월 타결된 기존 협상의 비준동의안 및 2010년 12월 타결된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대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향후, 한 · 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한미 FTA 반대 시민단체 또는 국회에서 제기하는 협상결과 및 국내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농어민들에게는 내실있는 국내 보완대책 수립 및 홍보를 통하여 농어민 불안감을 완화시켜 국회 비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 · 미 FTA 이행에 관련된 24개 법률에 대해 제 ·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미 2개 법률이 처리되었고 농식품부 소관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을 포함한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제 ·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3. 한 · EU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박상희

추진배경 및 개요

한 · EU FTA는 27개국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의 FTA로, 교역 · 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 분야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또한 충실히 마련한다는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한 · EU FTA는 여덟 차례 공식협상('07.5~ '09.3)과 고위급협의 이후 대통령 유럽 순방을 계기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한 · 스웨덴 정상회담('09.7)에서 실질적 타결 후 정식서명('10.10)이 완료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실질적 타결('09.7) 및 가서명('09.10) 후, 협정문에 대한 EU측의 22개국 언어 번역 작업, 양측의 내부 법률 검토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식서명('10.10)이 이루어졌다. 정식서명 이후 국내 관련 국책연구 기관 합동. 한 · 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10.10)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 EU FTA 보완대책을 발표('10.11)하였다.

한 · EU FTA 보완대책은 EU와의 FTA 추진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농수산분야에서는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향후 10년간('11~ '20) 2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협상과정에서 EU측이 한 · 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한 데 대해 교역현황 등을 감안, 한 · 미 FTA와 차별화하는데 노력하여 돼지고기 양허기간 · 양허방식, 낙농품(저율관세할당 TRQ) 등에서 한 · 미 FTA 결과보다 보수적 양허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협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한 · EU FTA는 2011년 상반기 양측의 의회 비준 절차를 걸쳐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정발효를 위한 절차 이행 및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사전 준비할 계획이다.

4. 한 · 페루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강봉규

❖ 추진배경 및 개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시 톨레도(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추진을 제안한 이후 2008년 5월 민간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2008년 11월 APEC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한 · 페루 FTA는 양국 간 교역규모 및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풍부한 에너지 · 광물자원 보유량과 남미 시장으로의 다각적인 진출 필요성 및 시장 선점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3월 협상을 시작하여 각각 공식협상 5회, 소규모회의 3회, 통상장관회담 3회를 개최하였으며, '10.8.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후 '10.11.15일 가서명하였다. 우리측은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노력하였다. 전체 농산물중 쌀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인삼류, 사과, 감귤 등 89개 주요 세번은 현행관세를 유지하였으며, 수산물은 냉동민어, 냉동명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세번에 대해 10년으로 장기화하였다.

특히 페루의 관심품목인 오징어는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어업 · 양식업 분야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 · 페루 FTA 발효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하였으며, 수산물은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수산물은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활용하되, 추가대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5. 한 · 콜롬비아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방문진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 콜롬비아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 · 콜롬비아 FTA는 특히 중 · 남미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풍부한 에너지,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동연구('09.3~8월)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09.10월)를 거쳐 '09.11.18일 한 · 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여 추진 중에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09.12월 1차 협상이후 '10.8월 현재 4차례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등의 상품양허, 협정문 등 각 분야별 협상을 추진 중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콜롬비아는 커피, 쇠고기 등 일부 육류, 열대과일, 화훼류 등이 있어 비교 우위에 있어 동 품목의 우리측 개방확대에 대해 공세적 입장이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민감 농수산물의 양허제외, 개방확대 품목의 관세철폐 장기화 등에 역점을 두어 협상을 추진하였다.

향후 협상에서는 콜롬비아측의 공세 품목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양허안 타결을 모색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시장불안 최소화를 위해 농수산물의 안전장치 확보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6. 한 · 호주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강봉규

추진배경 및 개요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시작에 합의한 이후 2008년 10월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간 사전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양국 정상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 · 호주 FTA 협상은 호주의 여타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불리해진 호주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서비스 · 투자 분야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기대이익이 낮고 개방수준에 따라 FTA로 인한 영향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5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10년 11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2차례의 소규모 회의를 가졌다. 호주는 협상 시작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EU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 여건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주측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 및 구조, 관세율 구조 등이 미국, EU와 차이가 큰 만큼 동일한 양허는 불가하며, 또한 상대국마다 관심이 있는 품목이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양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기대이익 불균형이 심한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서의 기대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개발 협력, 식량안보 관련 조항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협력'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공산품 분야에서는 호주가 수세적 입장인 반면,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두 분야에서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협상 진전 속도는 양국간 이익 균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이익균형도 양국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품목에 대해 한 · 미 FTA의 수준의 양허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7. 한 · 뉴질랜드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박상희

추진배경 및 개요

한 · 뉴질랜드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등 전자제품 수출 확대 및 자원, 방송 공동제작, 인력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한 이후 2008년 9월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간 사전 예비협의를 개최하였고, 2009년 3월 양국 정상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 후 4차례의 협상('09.6~ '10.5)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뉴질랜드는 협상 시작부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원칙임을 주장해 온 바, 4차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 여건을 동등하게 하는 수준의 농수산물 양허를 강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역 규모 및 교역 구조, 관세율 구조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국과의 동일한 양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구조 및 관세율 구조의 차이로 인해 FTA 기대이익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서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농수산 분야에서의 인력 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식량안보 등을 포함하는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나, 뉴질랜드측은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기초한 포괄적 FTA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에서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양국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일부 분과(환경, 경쟁 등)의 경우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농수산 분야와 관련된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위생검역, 농림수산협력 등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향후 협

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 한 · 인도 CEP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유진오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인도의 정치 · 경제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와 경제협력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2006년 2월에는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6년 3월 1차 협상 이후 열다섯 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을 논의하여,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실질 타결되었다. 한 · 인도 CEPA 협상은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등 전자제품 수출 확대 및 서비스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는 기대이익이 낮고, 인도가 농산물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 농산물 교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한 · 인도 CEPA는 열다섯 차례 협상('06.3~'08.9) 중 제12차 협상에서 차관급 협상을 통해 실질 타결하였으며, 4차례 법률 검토를 거쳐 협상 발효('10.1)되었다. 한 · 인도 CEPA에서 농수산물은 주요 품목의 민감성 반영을 위해 기 체결된 FTA에 비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하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쌀, 육류, 과채류, 양념류 등 민감품목 포함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등 민감유형에 분류하였고, 사료용 박류, 종자류 등 수입이 필요하거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 또는 즉시철폐 유형에 분류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한 · 인도 CEPA에서 대부분의 민감한 품목은 양허 제외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체결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인도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

분 수입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무역창출효과 보다는 수입전환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생 · 검역, 원산지, 투자 · 서비스 분야도 우리 측 의견을 대부분 반영시켜 위생 관련 안전성 확보, 우회수입 방지 등도 제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업 잠재력이 커 향후 한 · 인도 CEPA 이행 시 추가 양허 요구 등에 신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강화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지난 해 11월 우리 정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GNI(국민총소득) 대비 2010년 0.12%에서 2015년 0.2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농업 · 농촌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관련 기술전수,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아 및 빈곤 감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 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가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첫째, 개도국 농업 · 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기여로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FTA 협상 측면 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 등을 위해 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 7억원, 2007년 10억원, 2008년 17억원, 2009년에 27억원, 2010년에는 40억원을 지원하여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베트남에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 한 · 몽골 농업협력사업,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컨설팅 등 19건의 협력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원국가로는 몽골,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부탄, 라오스, 모잠비크,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CIS지역 국가, SEARCA 회원국 등이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기존까지 주로 실시했던 소규모의 개도국 농업관련 종사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인적자원 개발 사업 이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인적자원에 물적자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사업(기획협력사업)을 콩고, 모잠비크, 캄보디아 필리핀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ODA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시스템으로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및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매년 확대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전담하여 전략수립,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기관으로서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개도국 농업 · 농촌발전을 위한 우리의 지원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추진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편으로 아직은 양적 · 질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기획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 개도국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의 총괄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등을 적극 운영해 갈 계획이다.

더불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09.11월 가입), '10년도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농업 · 농촌발전을 통한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글로벌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외농업개발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이행우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1,400~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하는 구조적인 곡물수입국으로 국내 경지면적이 174만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는 식량자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 안정적으로 곡물의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동 사업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 · 정보 제공 및 외교적 지원 등의 측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 및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우리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출유망국가의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및 진출희망기업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2009~2010년) 60억원을 집행하였고, 융자사업은 해외농업 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과 부대시설 및 건조 · 저장 · 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420억원을 7개 국가에 진출한 18개 기업에 융자 지원하였다.

보조사업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은 해외농업 진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농업투자여건 정보 제공과 민간기업의 관심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환경조사사업을 비롯하여 해외농업개발 포탈(www.oads.or.kr) 고도화 및 운영,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융자지원

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 증가 등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5-1〉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2010년)

구 분	추진실적	성 과
해외농업 환경조사	- 정책조사 : '97~ '10년 22국가 조사 - 맞춤형조사 : '08~ '10년 21 기업 지원	- OADS 정보제공 - 보고서 배부 : 46기관 1,200부
OADS운영	- 포털구축 및 고도화 추진	- 해외농업투자여건 등 정보제공 - 해외농업 전문가 등록 : 176명 -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효율성 제고
컨설팅	- 3개 기업 7개 분야 지원	-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전문인력 양성교육	- '09년 44명, 해외현지교육 2주 - '10년 40명, 해외현지교육 4주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전문교육 수요가 많음
해외인턴	- '10년 2명	-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기업채용)
물류조사	- '09년 CIS 4개 국가 - '10년 동남아 5개국, 브리질, 연해주	- 곡물 물류여건, 비용 등 정보 제공
워크숍	- 상 · 하반기 각 1회 실시	-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관기관 등 의견 및 만족도 조사

●● 융자사업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은 민간기업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 시설(농장형) 및 건조 · 저장 · 가공(유통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금리 연 2.0%,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2010년도에는 10개 기업에 210억원(농장형 8개 기업 16,350백만원, 유통형 2개 기업 4,650백만원)을 지원하여 46,188톤의 곡물을 확보(직접생산 41,197톤, 수집 · 유통 4,991톤)하였다.

〈표 2-5-2〉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실적 및 성과(2010년)

유형	국가	기업 수	대상작물	'10년도 실적	비 고
6개국		10개 기업		생산 · 유통량 : 46,188톤	
농장형	6개국	8개 기업		면적 : 4,312ha 생산량 : 41,197톤	
	러시아 (연해주)	2	콩, 옥수수, 귀리 등	3,300ha 3,085톤	
	브라질	1	콩	200ha 400톤	
	캄보디아	2	카사바	530ha 20,150톤	
	인도네시아	1	옥수수, 카사바	217ha 17,202톤	
	뉴질랜드	1	옥수수	-	
	필리핀	1	옥수수	65ha 360톤	
유통형	2개국	2개 기업		유통량 : 4,991톤	
	러시아	1	밀	922톤	
	캄보디아	1	옥수수, 카사바	4,069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농업중심복합산업단지(MIC : Multi-Industry Cluster)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민간-공공 합동진출을 통해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토지, 제도상 문제점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해외농업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는 해외농업 진출기업에 대한 융자금액의 상환기간 연장 등 융자지원 조건을 완화(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고, 새로 제정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2012.1.15 시행)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투자)과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이 체계적으로 연계 ·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OECD 활동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최수아

OECD 농업 · 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무역 합동작업반회의, 농업환경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 · 평가,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무역 쟁점에 대한 연구 · 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 평가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 ·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 · 소비 · 무역 · 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을 발간하고 있다.

2010년에 발간된 주요 연례보고서인 「2009~2018 농업전망」과 「2010년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과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발간 주요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2010년에는 '2009～2018 세계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을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 차원에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로서, FAO의 품목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에 전 세계에 걸쳐 퍼졌던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량시장의 미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후 식량가격은 상당히 하락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몰락과 경제위기는 세계 식량시장과 농업생산에 더욱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거시경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품목별 가격전망에 있어서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대상 기간 동안 1997~2006년 수준의 평균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전의 시장 전망에서 보였던 수준보다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경상가격과 실질 곡물가격은 1997~2006년 기간 동안에 관측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즈, 탈지분유, 버터, 쌀, 밀은 2007~2008년의 수취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평균가격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 10년 간은 1997~2006년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 수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경상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가가 배럴당 100불 정도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곡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20%에서 30%까지 상승할 것이지만 축산물 가격은 10% 정도 보다 낮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0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09년 생산자지지 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로 측정된 OECD 회원국들의 농업지원 총액은 2,530억불(1,820억유로)로 추정된다. 이는 총 농가수입액의 22%에 해당하며, 2008년의 21%에서 소폭 상승하여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지원 수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품목 가격이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러한 동향이 반전된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세는 둔화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 압력이 둔화되었는데, 특히 낙농과 육류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8년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공급이 증가했으나, 이와 동시에 식량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품목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여건(Economic fundamental)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책 측면의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었다.

2009년에는 이전에 합의된 개혁을 실행에 옮긴 국가도 있었고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임시 정책

을 시행한 국가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 개혁이 시행된 국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호주의 경우, 자국의 천연자원 환경문제 관리자금 조달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인 '국가 보전(Caring for our Country)' 정책을 계속 이행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주로 위기관리와 관련된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정책 개발은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건전성 평가 등 개혁 정책의 실행과 낙농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쌀 생산에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일본), 농가 소득 지원(한국)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늘렸다. 캐나다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소득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미국은 가격 기반의 경기 대응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스위스의 경우 추가적인 시장 지원 축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직접지불금을 확대한 반면, 우유 할당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잠재적으로 왜곡 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의 지원 정책 비율 및 그 지원 수준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지원 비율은 여전히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 연계 지원(국경 보호 조치 포함)과 가변 투입재 요소의 자율적 사용을 기준으로 한 지원이 2007~2009년 OECD 총 생산자 지지추정치(PSE)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국가들은 지원 수준 감축과 비연계 지원 정책 실행을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뒤처지는 양상을 보였다. 2007~2009년, OECD 국가들의 생산자 지원 수준(생산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뉴질랜드 1% 미만, 호주 4%, 미국 9%, 멕시코 12%, 캐나다 17%, 유럽연합 23%, 터키 34%, 일본 47%, 한국 52%, 아이슬란드 53%, 스위스 58%, 노르웨이 61%. 지원 구조 역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지원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잠재적으로 가장 왜곡된 형태의 정책비율은 일본과 한국이 약 90%, 아이슬란드 약 70%,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약 50%를 차지했다.

OECD 국가들의 농업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추이는 품목 생산과 지원의 비연계화가 진행된다는 점, 세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이 종종 토지 등 영농 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것이 품목 생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총 지원 비율은 1995년 이전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던 것이 2007~2009년에는 생산자 지지추정치(PSE)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환경 보전 · 천연자원야생동물 보호와 같은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생산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조건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조건과 연계된 형태의 지원은 1986~1988년 동안에는 OECD 전체 생산자 지지추정치(PSE)의 4%를 차지한 반면, 2007~2009년 동안에는 그 비율이 3분

의 1로 증가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 미국, 스위스의 경우 이러한 조건부 지원의 비율이 전체 지원 중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 인프라, 검역 및 제어, 마케팅, 홍보 활동 등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생산자 지지추정치, 소비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출 등 농업 부문에 대한 총 지원액은 2007~2009년 3,750억불(2,670억유로)로 추정된다. 이는 OECD GDP의 0.9%에 해당하며, 1986~1988년의 2.3%로부터 하락한 수준이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전체 경제 대비 농업 지원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농업 부문을 포함하여, 'WTO 도하 개발 의제' 하의 다자간 무역 협상은 지속적인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난 지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 무역 협정이나 지역 차원의 무역 협정은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정, 비관세 장벽 이슈 등을 다루는 반면, 민감한 농산물의 자율적 교역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2008 OECD 회원국 농업정책 평가' 에서는 세계경제위기와 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 정책에 다시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원의 다양한 소득 지원에 대한 근거가 축소되었고, 특히 저개발국가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한편, 2008년 말 가격이 하락하면서부터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증산 능력에 시장 불안정성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식량 및 농업 정책에 대해 신선하고도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 · 농업 · 수산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 · 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 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2012년 동안에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식품정책 설계, 시장과 정책 중기 전망, 농업무역 자유화라는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 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

석작업(무역자유화의 유익한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효과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 을 주제로 OECD 농업각료회의가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되었다. 향후 20년간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의 합치가 있었고,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합의된 정책원칙을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분야(농정시장,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시장 분야에서는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구조 변화 분석, 농가위험관리, 농업분야 민간자본 투자, 농식품 녹색성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제51차 농정시장작업반('10.5.17~20) 회의에서는 2009~2018 농업전망, 2010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 미국 · EU · 터키의 농정개혁평가, 농산물시장의 구조적 변화, 농가위험관리, 정책평가모형(PEM : Policy Evaluation Model) 개선, 농업과 개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제52차 농정시장작업반('10.11.15~17) 회의에서는 OECD 국가와 신흥국의 실질 농업보조 평가 보고서, 정책평가모형(PEM : Policy Evaluation Model) 등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승인하고 캐나다 PSE대상 품목 확대에 합의하였으며, 품목가격안정 국제협약, 농업민간투자,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1년에는 가격변동성과 농산물시장 관계의 분석 등 주요 진행 보고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농업공급체인에서의 PSE 측정방안, 세계식량안보 등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농업무역 분야에서는 제63차 및 제64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비관세 조치 분석 사례연구, 비관세 조치 분석 관련 추가 연구계획, 가공농산물 무역 변화양상 분석 보고서와 지역무역협정 중 농업분야 분석보고서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수입관련 규제 최적방안, 수출제한 관련 기초 자료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제30차 및 제31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농업과 수자원, 기후변화 완화 · 적응 관련 농민 행태와 관리기법 등에 대한 토론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작물보험과 농가 인센티브 관련 연구계획서 등을 논의하였다.

4. FAO 활동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종민

추진배경 및 개요

FAO는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기아와 영양부족이 없는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영양,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정보 수집 · 분석 및 보급, 기술원조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45년 10월 26일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설립총회에서 「FAO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14일 FAO 제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고 유엔총회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FAO는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2010년 현재 191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1개 준회원국(페로 제도)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의결기구(governing body)로는 총회, 이사회, 8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재정, 헌장 및 법률, 품목, 수산, 산림, 농업위원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 5개의 지역총회(아시아 · 태평양, 아프리카, 근동, 남미 · 카리브, 유럽)가 있다. 총회는 매 홀수년도에, 지역총회는 매 짝수년도에 개최하며,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다. 이사회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연속하여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FAO 사무국에는 2010년 현재 총 3,069명(본부 1,675명, 분권화된 지역사무소 1,3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전문직이 1,434명, 일반직이 1,635명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직원은 2명(본부 1, 아태지역사무소 1)이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정규예산, Net Appropriation)과 자발적 기금(Extra-budgetary)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별 정규분담금 비율은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UN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FAO 총회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2010~11년의 분담금 비율은 2.184%이며, 이는 191개 회원국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정규예산은 총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자발기금은 정규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예산 지원, 현지프로그램, 기술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FAO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 · 운영절차의 효율성 제고, 직원역량 제고, 본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 대내외적 협력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개혁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4년 제127차 이사회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FAO 조직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이 독립적으로 FAO 운영실태를 평가(IEE : Independent External

Evaluation)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05~2007년 기간 중 IEE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는 '성장을 동반한 개혁' 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즉각행동계획(IPA : Immediate Plan of Action)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8년 제35차 특별총회에서는 세부적인 개혁조치사항을 담은 즉각행동계획(IPA) 5개년 계획(2009~2013)을 승인하고, 개혁작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에는 2차례에 걸쳐 FAO 이사회(제139차 : 5.17~5.21, 제140차 : 11.29~ 12.3)가 개최되었고, 2010년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경주에서 제30차 아시아 · 태평양지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농업위원회, 산림위원회, 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30차 FAO 아시아 · 태평양 지역총회(경주, 2010.9.27~10.1)

FAO는 5개의 지역총회(아시아 · 태평양, 아프리카, 근동, 남미 · 카리브, 유럽)가 있으며, 매 2년(짝수년)마다 개최된다. 지역총회는 지역내 회원국들의 식량 및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등을 논의하며, 논의 결과는 사업 · 예산 관련내용은 프로그램 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책 및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30차 아 · 태지역 총회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금번 아 · 태지역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1966년 제8차 지역총회가 개최된 이후 44년만에 개최된 행사이다. 금번 회의에는 아 · 태지역 28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서 429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고위급 회의(9.27~29)와 각료급 회의(9.30~10.1)로 구분하여 개최되었다. 금번 지역총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 지역사무소 등 분권화된 사무소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화 하며, 분권화된 사무소가 FAO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개혁에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함 ③ 전 세계 기아 인구중 2/3에 달하는 인구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FAO가 이 지역에 대한 인적 · 재정적 지원을 배려할 것을 권고함 ④ 부다페스트, 방콕, 산티아고 등 3개 지역에 있는 공유서비스센터(SSC : Shared Services Center)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SSC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각료급 회의 개회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부족 문제를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였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FAO 아 · 태지역총회 의장 역할을 하였으며, FAO 사무총장 및 아 · 태지역 농업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하면서 식량안보 및 농업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FAO 이사회 참석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연속해서 FAO 이사국에 진출하여 FAO 운영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식량 및 농어업관련 우리나라 입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제139차 이사회(5.17~21)와 제140차 이사회(11.29~12.3)가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식량안보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헌장 및 법률문제 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농업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기술위원회, 각 지역총회 논의결과가 보고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FAO 개혁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제139차 이사회에서는 FAO 내부에 '물(水)자원 플랫폼' 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설치방안은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140차 이사회에서는 2011년 6월25일~7월2일 기간 중 개최될 제37차 총회의 전체 토의(General Debate) 주제를 '농업 · 농촌개발에 있어 여성역할의 중요성(The Vital Role of Women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FAO 사무국은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식량안보와 가격변동성에 관련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FAO가 G20에서 논의한 이슈에 대해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G20의 요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한 제30차 아 · 태지역 총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인도는 이번 아 · 태지역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이 70년대 시작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쌀이 잉여생산될 정도로 발전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역내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FAO는 19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UN기구로서, 세계 식량 및 농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중 하나이다.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FAO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아 · 태지역 총회 의장국, 이사국 지위로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식량 및 농업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제30차 FAO 아 · 태 지역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등 국격을 확인하고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의 짧은 기간 내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성공과정과 우리의 농업 · 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FAO 사무총장과 많은 국가들이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농업기술교류, 성공 know-how를 공유할 것을 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식량 및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FAO 분담금 규모, 인구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FAO에 근무할 적정인원은 15~20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FAO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직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기술협력 및 know-how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ODA를 확대하는 한편, FAO 등 각종 국제기구 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FAO 등 국제기구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농업 육성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및 인증표시제 확대

1.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김평전

추진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소비 중 외식 소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2008년 7월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 · 공포(2010.2.4)하고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법령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종전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된던 것을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적용하였고,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종전에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에 원산지 표시를 하되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만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여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종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되었으나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 2010년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868개 품목
- 국산 농산물 202, 국산 가공품 259,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161
- 국산 수산물(원양산 포함) 189, 수산물 가공품 39, 수입 수산물 및 가공품 18
- 음식점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 추진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언론매체와 홍보책자 및 전단지 등의 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1,100명) 및 단속전문가로 구성된 '원산지 기동단속반' (전국 60개반)을 활용하여 조직적 ·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사례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명예감시원(24,000명) 및 음식점 자율지도원(1,400명)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감시 · 지도 강화로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도 원산지표시의 이행율이 음식점은 98%로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09년 96.8%보다 1.2% 상승 하였으며, 일반유통 농산물 및 가공품은 97.7%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제는 도입한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일반유통 농산물 및 가공품이 1994년 62.2%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난히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시행이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2-6-1〉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안전한 먹을거리 취식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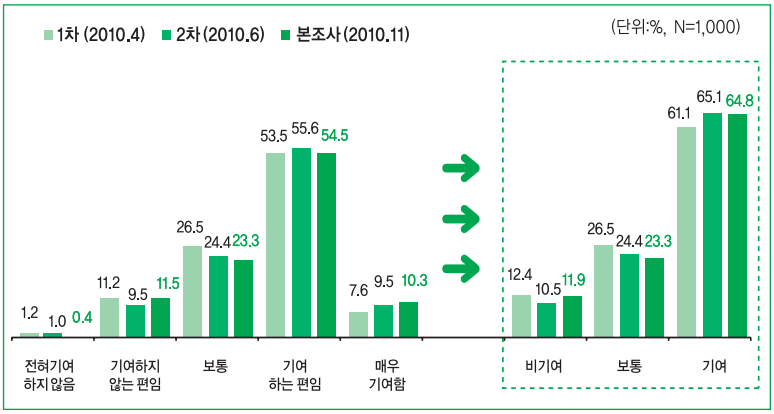

자료: Research & Research,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10년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단속공무원의 확대는 물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식품 안전성검사 확대

안전위생과 사무관 최정미

추진배경 및 개요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 유통 · 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초 안전성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생산 · 유통 · 판매되는 농산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 · 용수 · 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 · 용수 · 자재 등

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 · 사용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농산물 258개 품목을 대상으로 65,932건 검사하여 계획(64,000건) 대비 3.0% 초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60,975건, 중금속 3,131건, 병원성미생물 300건, 곰팡이 독소 305건, 방사선조사 및 핵종 160건,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40건, 이물(기생충란) 200건 등을 조사하였고, 농지 · 용수 · 자재에 대해서도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452건 조사하였다. 2010년 안전성 검사 결과 1,447건의 농산물이 부적합한(2.2%)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발(2건), 폐기(303건), 용도전환(9건), 출하연기 등(1,133건)으로 조치하였다. 2010년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률이 '09년도 2.4%에서 '10년 2.2%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생산 · 저장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 · 판매단계에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도입하여(30,395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유해물질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분석능력이 우수한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11개소) 운영하였으며, 분석실(24개소)의 정도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조사물량과 조사대상 분야를 72,000건(전년 계획대비 13.0% 증)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잔류조사(54품목, 16,000건)를 추진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을 확대, 첨단 분석장비 확충 및 분석인력 교육 · 훈련 강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안전성 조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확대('09년 10품목 → '11년 24개 품목 → '12년 전품목)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안전위생과 서기관 김일환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 · 안심 농산물 생산 · 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 · 유통관련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중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 · 유통 핀매를 희망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출장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 · 용수 ·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지원 등이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 권장 23)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표2-6-2〉과 같이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

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지하철 광고, 차량랩핑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09년도에 대상 품목을 종전 110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자 중 행상 · 노점상 등 단순판매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제도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 · 축 · 수산물의 이력추적 조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의 이력관리번호(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력등록 성과는 〈표2-6-2〉과 같다.

〈표 2-6-2〉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기관(개소)	21	31	38	43	45
GAP관리시설(개소)	190	316	417	484	565
인증 농가수(호)	3,659	16,796	25,158	28,562	34,421
인증 면적(㎡)	4,535	24,754	36,322	40,081	46,701
생산 계획량(톤)	101,354	331,421	419,842	434,047	509,931
농산물이력등록 농가수	8,808	30,557	48,214	70,612	88,21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학교 · 군납 · 대량급식소 등의 안전 · 안심농산물 소비확대 추세와 2010년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부족 등으로 GAP인증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GAP인증기관 · GAP관리시설 · GAP인증심사인력의 내실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컨설팅, 표준화된 재배 방법의 보급,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그룹 조직 육성,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선진적인 보완, GLOBAL GAP와의 관계설정 등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가 등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한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경영체에 생산정보 대행입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력관리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GMO 표시제도 및 안전관리

검역정책과 사무관 지일구

추진배경 및 개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2008년 3월부터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2008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입 및 생산되는 모든 농림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입 · 생산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2-6-1〉 농림수산용 LMO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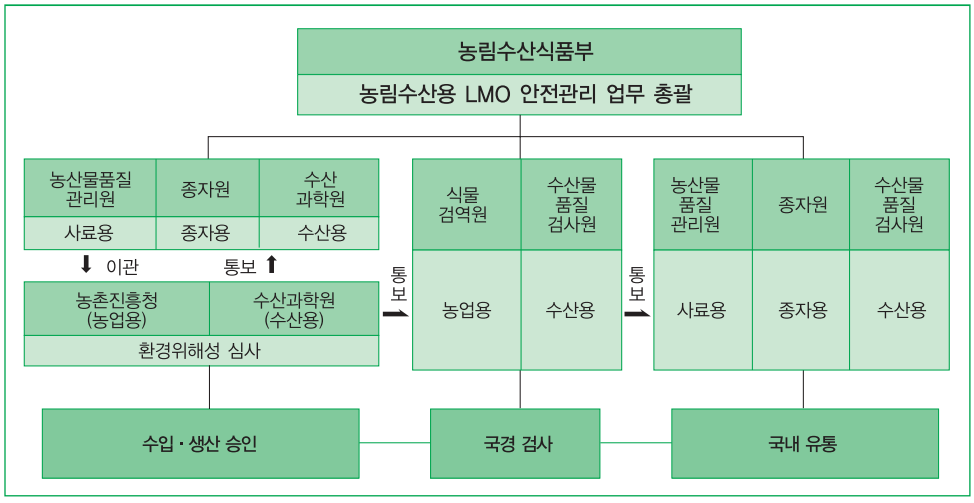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6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과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함으로써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콩나물,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도 제도도입 당시의 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미꾸라지에서 관상용 유전자변형 어류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8개반 64명)하여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료공장 주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한국조리사회중앙회, YMCA 등 7,880명)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64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35건을 적발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는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용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료용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항구, 사료공장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소비자안전정책과 사무관 이성도

추진배경 및 개요

식품의 이물질 검출사건과 신종 유해물질 등장, 국제교류 확대로 인한 해외 질병 · 병충해 유입 등으로 식품관련 사고는 점차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민소득 증대와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과 관련하여 위험 또는 위해 정보에 대해 신속 · 정확하게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품안전정보의 전달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에 걸쳐 농 · 축 · 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및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09년 8월 분리운영되었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AGROS)과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FSIS)의 통합 사이트(www.foodsafety.go.kr)가 구축되어 농 · 축 · 수산물 분야의 안전 및 위험요소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방향

일방적인 농식품 위험정보의 제공에서 대국민 안전 · 건강한 식생활 정보까지 영역 확대로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며, 농식품안전 정책수립 및 대국민 안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학계, 업계 등 수요자 그룹에 맞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수요자 중심 맞춤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대국민 대표 농식품안전정보 제공창구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 안전 분야 특정 이슈를 소비자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국내 · 외 정보수집 및 관리 체계 정비**

국내 관련 기관 생성정보 및 관련 이슈를 실시간 수집체계로 강화하고, 해외 현지 정보제공자 운영을 확대하여 해외 정보 수집을 확대하여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수집 정보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단을 운영하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농식품안전 정보연계 및 대응체계 강화

농식품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대응 체계 강화로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회수조치 및 사고처리에 요구되는 농식품안전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

수요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색기반 서비스로의 개편 및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확산을 위한 소셜서비스(SNS) 서비스 연계 ·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추진성과

• 국내 · 외 농식품안전정보 제작 및 · 배포

자체 수집 및 외부 기관 연계, 해외정보제공자를 통해 총 4,900건의 국내 · 외 농식품안전 · 위험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농식품안전백과 및 전문동향 정보 등 총 4종의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 · 제공하였다. 관련기관 및 일반인 대상 농식품안전 웹진, 이메일서비스(농식품안전 뉴스, 농식품안전 동향) 매체를 제작하여 배포(총 250회)하였다.

• 정보관리 및 제공체계 강화

정보생산기관 담당자, 소비자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 전문가 들과의 협의체인 정보관리협의회 및 실무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9개 분야(화학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동물질병 등)의 정보심의단을 구성 · 운영하여 제공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 사업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앙언론지 및 전문지 광고를 총 2회 게재하였으며, Foodsafety 서비스 홍보물 및 관련 자료집(총 2종)을 제작 배포하였다.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기별 특성과 이슈에 맞춰 주요 키워드 20개를 선정하여 온라인 키워드 홍보 및 정기 이벤트를 운영하여 1,000여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였다. 웹표준화 및 웹접근성 강화로 UWA(User Web Aaddaccessibility,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고도화

농식품안전 관련 국내 · 외 정보 수집체계 및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검색체계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기관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도록 웹크롤러와 DB Agent를 설치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고, 기존 EAI 방식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검색기반으로 연계방식을 변경하였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

통합검색서비스(www.foodsafety.go.kr) 구축 및 농식품안전 · 식생활 백과 DB(약 1,600종)를 구축하여 정보 활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확산 및 교류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한 농식품안전 온라인 e-포럼을 운영(총 8회, 210명 참여)하였다. 국가정보자원개발 공유체계 구축사업(농림분야 공동과제), 국가대표포털(Korea.go.kr)과의 로그인 및 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해 서비스 활용기반을 강화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식품안전과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정책기획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산된 정책부서의 통합을 추진하여 2009년 4월 소비안전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수집 · 공개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소비자안전정책과 사무관 이성도

추진배경 및 개요

농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및 업계의 이해 · 수용수준에 대한 격차가 커서 상호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간 지속적인 정보교류 운영으로 신속한 농식품사고에 대한 긴급정보대응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을 구현하고자 한다.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방향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 · 위험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이해수준 향상을 통한 신뢰도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쌍방향 의견교환에 따른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 **농식품위험정보교류 활성화**

소비자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 도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국내외 식품문제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대 국민 알권리 보장 확대에 따른 농식품안전 관리정책 교육/홍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식품 소비와 여론의 주축으로 성장할 청소년 대상 농식품안전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제 농식품 생산 · 유통 · 검역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현장 및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회를 제공하며, 농식품 소비의 구매 주도권을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한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체계**

농 · 축 · 수산물 분야별로 분산된 위험관리 정보 및 대응체계를 정부 중심의 농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로 점검 ·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소비안전정책과를 대표 창구로 효율적인 사전예방 · 긴급대응 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성과

- **소비자단체 주관 농식품안전정책설명회 운영**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등 10개의 소비자 단체와 정보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농식품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식품안전정책설명 및 교육 · 홍보 사업을 실시하였다.

• 이해그룹별 위험정보교류 활성화 사업

각 이해그룹 대상별로 소비자 단체 실무진 정기교류회, 안전 관련기관 연찬회, 학교급식 관련자 대상 교육, 농식품안전 국제심포지엄,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농식품안전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운영하였다.

'09년 농식품안전백서, 농식품안전 미디어 가이드북 먹을거리를 사랑하는 기자들이 풀어쓴 식품안전이야기, 농식품안전 캘린더, 농식품안전 웹툰 자료집 제작 및 배포 등 관련 자료집을 제작 · 배포하였다.

• 농식품안전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생, 인터넷 주도층, 일반인 각 대상별 농식품 안전 현장체험학습을 총 58회(총 1,700 여명 참여)를 개최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 긴급정보대응체계 구축

긴급상황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책을 위한 전파 SMS 알림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식품안전사고 및 이슈(조류독감, 식중독 등)에 대한 긴급정보 대응을 위한 국내 · 외 조치 및 정책 동향을 수집 및 공유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 내 분산된 안전성평가 정보기능의 일원화와 정확한 인식공유를 위해 쌍방향 소통 활성화 및 위기대응 리스크 전략을 마련하여 식품사고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그간 추진해 온 농식품소비안전정책 현황 파악 및 향후 방안을 모색하여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류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사전예방적 농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7. 쇠고기 이력제 추진

방역관리과 사무관 손경자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 가공 ·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 · 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 · 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 · 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 · 가공 · 판매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 제도정비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 ·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부착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지역축협 등 137개소를 지정 · 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

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10년에는 위생 · 방역상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을 위해「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 등 신고기한 및 포장처리실적 전산 의무신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사업의 조기정착 추진

2009년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유통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사육 · 유통단계 이력관리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DNA동일성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쇠고기 이력제도는 조기에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고, 이력제 전산시스템 성능이 낮아 다양한 정보제공, 전산 접속 속도 향상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 등록정보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력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성능개선, 스마트폰, RFID 등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축척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축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할 계획이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지원 · 개발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제2절 축산 질병예방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1. 가축질병 방역강화

방역총괄과 서기관 조옥현 · 오순민, 사무관 이기중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 · 일본 등에 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국가 방역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국경검역을 통해 수입건초는 소독 및 검사 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 · 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 · 설치 선 · 기내방송 · 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단계별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10년도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국가 재난 차원의 방역체계를 가동하였다.

예찰요원을 동원한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축 신고를 위한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산업연수생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 강화와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국내 방역을 추진하였다. 특히,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근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 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 · 매몰조치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로 발생된 이후 2004년 3월 20일(102일간)까지 19건, 2006년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되어 2007년 3월 6일(104일간)까지 7건,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5월 12일(42일간)까지 33건이 발생하여 3차례에 걸쳐 총 59건이 발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야생조류의 이동시기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가금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11월~2월 기간동안 운영해 오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08년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철새 · 텃새 · 닭 · 오리) 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가동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 야생조류에서 유래없는 총 20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도 일부 농가의 축사 소독 미실시, 폐사축 발생시 신고 지연 등 방역의식 결여, 살처분 대상 농장주들이 보상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금농장에서 발생 및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AI 발생은 상시방역을 통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을 사전 경고하여도 농가, 운반차량, 분뇨처리 · 사료 · 동물용의약품 등 관련업체, 도축장 및 지자체에서 일관성 있게 철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AI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방역을 통한 사전 조기검색 강화로 조기검색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율적 소독 실시 등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돼지열병은 2001년 12월 1

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 · 서구, 경기 김포 · 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 · 도, 26개 시 · 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 을 수립('09.1.9)하여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100% 실시, 검사물량 확대(연간 540만두)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BSE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SE 검사 체계를 단순 검사두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여 2008년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였고 BSE의 국내 발생에 대비 머리 ·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하였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브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을 확충,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2006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446명('09년 151명, '10년 149명, '11년 146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시 · 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등록제 확대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의무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검역정책과 사무관 장재홍

추진배경 및 개요

201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국내 축산업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악성가축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시 사회 ·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경에서부터 철저한 검역조치를 통해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해 신고 · 소독조치 등을 의무화하였고, 불법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집중투입 및 X-ray 검색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수입축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 각종 유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국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수입되도록 해외에서 위생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 ·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1월 경기도 포천, 4월 인천 강화군, 10월 경북 안동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10. 5월부터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 · 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 등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재 발생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악

성가축전염병의 유입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축질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한 휴대품 검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전염병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건초에 대한 소독 및 실험실 검사,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 · 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검색을 강화하고, 신발 소독 실시, 외국인 연수생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기 이전에 해당국가에 대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입허용 절차는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 · 고시 및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이 수입되면 계류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에 입고되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표 2-6-3〉 수출입 동 · 축산물 검역 · 검사 추진 현황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물	수출	마리	13,848	192,177	6,729	255,299	6,721	217,523	6,956	33,241,930	7,488	45,734,947
		군	-	-	-	-	1	12	-	-	-	-
	수입	마리	6,778	1,079,829	7,608	1,085,087	7,377	1,175,977	7,186	1,318,808	8,320	1,216,782
		군	2	19	9	436	-	150	1	100	2	70
	계	마리	20,626	1,272,006	14,337	1,340,386	14,098	1,393,500	14,142	34,560,738	15,808	46,951,729
		군	2	19	9	436	3	162	1	100	2	70
축산물	수출	톤	10,458	130,372	10,215	144,266	11,457	149,795	12,385	144,042	11,251	146,692
		천개	73	1	118	6	182	692	209	1,974	139	1,122
	수입	톤	149,507	1,896,605	126,107	2,025,954	127,596	2,048,973	128,761	1,937,033	144,450	2,125,598
		천개	248	741	293	764	318	663	367	717	464	2,823
	계	톤	159,965	2,026,977	136,322	2,170,219	139,053	2,198,768	141,146	2,081,075	155,701	2,272,290
		천개	321	742	411	770	500	1,355	576	2,691	603	3,945

평가 및 향후계획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경검역통합관리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추진토록 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투입과 X-ray 검색을 강화하겠으며,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국경검역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위생정보에 대한 수집 · 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입위험분석절차 실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출 단계부터 수출국내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를 통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도착시 철저한 수입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안전위생과 사무관 강대진

추진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 ·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축산물에 관한 위해평가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위해평가 관련 기능을 보다 명확히 부여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위해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 ·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였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률 감소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으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축산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교육 ·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2011.7.1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였다. 한편, 사육단계 HACCP 적용으로 항생제의 사용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사육단계의 HACCP 적용이 대폭 확대('09년 1,079개 농가 → '10년 2,187개 농가)되었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BSE 우려를 감안하여 '09년 11월부터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 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HACCP 적용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축 · 가공단계의 위생수준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검사는 잔류물질 120천건, 미생물 110천건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율을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식용란의 유통 · 판매 주체에 대해 법적 영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고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산물 취급업소 등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편성, 수시로 위생감시를 실시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축산물의 위생 · 안전성에 관한 정책은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일관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심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사육 단계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HACCP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생산단계의 HACCP 적용 확대 및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HACCP 활성화 등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4. 동물보호 · 복지 추진체계 확립

동물방역과 사무관 안유영

추진배경 및 개요

EU와 OIE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 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 · 복지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며, '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동물실험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EU에서는 개 · 고양이 가죽제품의 수입이 '07년부터 금지되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은 '09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다. OIE에서는 '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 · 해상 · 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 9개 분야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축사시설 · 사양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및 독신 세대 증가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문화 미성숙 등으로 유실 · 유기동물 발생량과 동물학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험동물은 한해 약 100여만마리가 사용되나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동물 실험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축산업은 규모화 등으로 선진화를 이루었으나 좁은 국토 여건 등으로 밀집사육 등이 일반화되어 동물복지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과 국내 축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제 · 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 ·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 적정한 사육 · 관리, 동물학대의 금지, 동물의 도살방법, 벌칙 등이 대폭 강화 ·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2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 등 동물보호 · 복지 증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2010년에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고 필요한 제도를 신설 · 정비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의 규정이 개정 · 신설되었다.

국내실정에 적합한 농장동물복지기준 및 인증제도 미비로 동물복지형 사육방식 등을 축산농가에 도입 · 확산시키기고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을 증진시키며,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소비기반 확대 등을 위해 2010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3월에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 T/F를 구성하였고, 8월에 인증기준안을 개발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는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를 추진하였다. 동물판매업자 교육세부실시요령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고시)을 2009.3월에 개정하였으며,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해 2009년에 광주, 경기, 제주에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 인천 등 5개소에 5.4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캠페인, 동물보호 · 복지 국제컨퍼런스, 농장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축산농가, 일반인, 동물보호단체 회원, 공무원, 학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교육 · 홍보를 추진하여 동물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보호법 실효성 증대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젖소 · 육계 · 돼지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동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일반인,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캠페인, TV · 신문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 홍보할 계획이다.

제3절 친환경 농업 육성

1.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임기창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농업환경 유지 ·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원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대 · 소규모지구 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 · 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 10% 제고 및 농약 · 화학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방안 농업 · 농촌종합대책을 수립('04.2)하여 농업환경개선과 경종 · 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에는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3개 지역(완

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고, 2007년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토양 · 생산 · 인증 · 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 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09년까지 991개소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29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 ·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 · 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 · 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 ·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6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0년에는 광역단지조성 신규 7개소와 2년차 사업 11개소에 620억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의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시 · 군 단위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 이상)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0년 말까지 1,02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1년에는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28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총 1,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10년까지 27개소를 선정 ·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친환경 비료 지원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윤식

추진배경 및 개요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여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보조를 감축 · 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6-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08년 기준)

순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순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1	아이슬란드	2,525	16	폴란드	124
2	네덜란드	577	17	이탈리아	118
3	아일랜드	461	18	헝가리	118
4	일본	361	19	그리스	115
5	벨기에	326	20	포르투갈	113
6	뉴질랜드	309	21	슬로바키아	110
7	영국	287	22	미국	109
8	한국('09)	267	23	스페인	95
9	오스트리아	223	24	스웨덴	89
10	스위스	211	25	터키	76
11	독일	209	26	캐나다	67
12	프랑스	191	27	멕시코	63
13	노르웨이	191	28	덴마크	28
14	체코	141	29	호주	45
15	핀란드	134			

* 자료출처 : OECD Environmental Data Conpendium (2008)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2-6-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물 량	2,600	700	1,200	1,350	2,000	2,100	2,500
금 액	910	245	420	473	1,160	1,218	1,450

평가 및 향후계획

맞춤형비료 사용결과 효과분석 및 신규비종 설계 등으로 화학비료 사용량감축을 추진하고,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29천ha를 대상으로 501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를 대상으로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를 대상으로 34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논 49천ha, 밭 44천ha 등 총 93천ha를 대상으로 116천 농가에게 37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6-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 억원, ha, 천호)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급액	141	208	287	345	376
면적	34,896	53,682	76,352	90,132	93,318
농가수	46	69	97	112	116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11.3%(194,006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10년에는 12.0%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2001년 대비 60여배 증가하였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도 중에 원활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이행점검 마감 및 소요예산 신청기한을 10.15일까지로 전년보다 15일 앞당겼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0년 382kg/ha에서 2010년 232kg/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85천ha에 3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급면적이 2010년 보다 8천ha 정도 감소한 이유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대상이 1/3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직불금 지급단가는 2003년도에 설정된 것으로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내용으

로 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편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친환경농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생협 등),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건전한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0억원을 조성하였다. 2010년에는 15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0억원, 2007년 200억원,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3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 ~ '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105㎡, 건축연면적 25,927㎡(지하1층, 지상2층)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년 4월에 착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내 친환경농수산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생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에 건립중인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2012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제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동물방역과 사무관 안유영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및 경종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2009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하는 것이다. 사업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 · 판매하는 농가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한육우 · 젖소 · 돼지 · 산란계 · 육계 등 4개 축종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농가당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0백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7〉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단가

구 분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유 기	170,000원/마리	50원/L	16,000원/마리	10원/개	2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10원/L	6,000원/마리	1원/개	6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감액, 토종닭은 육계의 30%증액 지급

2009년도에는 예산 1,000백만원 중 58농가에 74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226농가에 예산 3,000백만원 중 2,715백만원이 집행되었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확대 유도 및 축종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토종닭, 오리, 오리알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8〉 2011년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단가

구 분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30% 증액)	오리	오리알
유 기	170,000원/마리	50원/L	16,000원/마리	10원/개	200원/마리	400원/마리	20원/개
무항생제	65,000원/마리	10원/L	6,000원/마리	1원/개	60원/마리	120원/마리	2원/개

제7장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병우

❖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 및 이를 응용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웰빙, LOHAS 강화, 노령화, 세계화 및 지역화 동시 진행, 환경친화 추구, 기술 융합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 식당 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스페인의 '엘불리(El-bulli)' 레스토랑은 1년중 6개월만 영업하고 6개월은 연구에만 몰두하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고부가 식품기술 개발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식품원료 및 소재, 식품가공, 식품유통과 서비스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 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 식품산업 진흥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을 발표되었고, 동 대책에서 식품R&D 투자 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유망분야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고부가 식품산업' 이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에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 품목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표 2-7-1〉 분야별 17개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고부가 식품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 · 소프트웨어, MICE · 관광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이에 따라,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국민 신뢰에 기반한 안심 식품산업, 첨단과학과 접목된 고부가 식품산업,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2009년 6월 '식품산업 R&D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고부가가치 식품 및 식품 소재, 융 · 복합 식품기술, 식품 안전성 확보, 전통 · 발효식품 산업화 등 4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분야 145개 과제 183억원을 분리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단위사업 평가결과, 사업의 목적은 상위계획, 정책방향과 연관성이 높으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전반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10년 완료된 과제중 대표성과 3개에 대해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천연조미소재 4.46, 1-MPC 신선도 연장물질 발생장치 3.01, 마이크로버블 세척기 5.35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및 향후계획

식품산업 진흥,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11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선진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18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수요자의 규모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촉진 및 제품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전통 ·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식품산업진흥과 서기관 이재갑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품의 소비형태는 기술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품질 외에 편의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중요시되면서 유기식품(organic food),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웰빙 식품을 찾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의 전통발효식품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품질 개선 · 제품개발 등에 투자가 미흡하였고 각종 통계자료 · 연구실적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수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발효기술 응용을 통한 다양한 고부가 전통발효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업체 중심의 생산 기반을 산업화 · 현대화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 · 기능규명 · R&D 투자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 · 마케팅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도 189억원을 편성하고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김치의 세계화 및 김치산업육성을 위해 김치 R&D, 브랜드 · 홍보, 체

험 · 교육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를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전통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 등 기초인프라 확충

전통발효식품업체 대부분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생산시설을 신축 · 증축 · 증설 ·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9년도 92억원, 2010년도에는 134억원을 지원하였다. 전통발효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업체 매출액 신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본다.

●● 전통발효식품 세계 명품화 지원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적인 정보 · 통계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전문지 기획기사연재, TV다큐 제작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영양학적 · 기능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전시 · 체험 · 시식 행사 및 전통식품업체 소비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전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식품명인의 해외 선진지 연수, 연찬회 및 우수제품 판촉전 실시 등 식품명인 활성화 및 판매 · 유통망 구축 등 판로확대도 추진하였다.

●●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구축 지원

규모화 및 계열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순창군 장류밸리단지에 65개 업체의 공동생산 · 유통 · 저장 · 마케팅 등을 위한 전통절임류 세계화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지하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164㎡ 총사업비 100억원(국고보조 50억원)의 3개년 사업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HACCP 기준에 맞는 종합가공시설 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절임원료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의 전문적 연구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화 · 세계화를 촉진할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고 같은해 7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광주광역시로 세계 김치연구소 건립 입지를 선정하였다. 8월에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추진단' 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세계 김치연구소 출범 준비를 거쳐 1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승인을 받고 2010년 3월 10일 세계 김치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세계 김치연구소 개소와 함께 청사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김치 등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홍보, 마케팅, 체험 등의 다목적 기능과 관련 연구의 종합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전통식품산업의 발전과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과학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유산균을 활용한 치매예방, 항바이러스 등 고부가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하는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연구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은 중소업체 중심의 생산기반 현대화 및 품질개선, 홍보 ·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또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은 김치의 세계화 · 명품화 및 전통적인 미생물 발효산업 현대화를 통해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세계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우리의 우수한 발효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에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전통식품 및 식품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품평회 · 전시회 · 시음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통발효식품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의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치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 · 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천일염산업 육성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정동기

추진배경 및 개요

천일염은 2008년 3월 '식품'으로 인정되기까지 지난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왔고, 이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위생 기반이 취약하였고 산업 측면에서는 육성 정책도 소홀하였다. 2008년 2월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족, 2009년 3월 천일염 관리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소금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다른 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성분이 낮고[6], 항암효과가 있는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성분 · 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까지 식품이 아닌 광물로 취급받아 산업적 발전 기반이 미흡하였다. 향후 이러한 우수성을 잘 살려 산업화 · 과학화해 나갈 경우 세계 명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우선, 천일염의 생산시설 노후화 및 위생시설 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해주, 소금창고, 산지종합처리장 등 시설현대화, 포장재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등을 위해 '10년도 87억원을 지원하고, 원산지 단속 등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인프라 확충

염전생산에 필수요소인 해주와 소금창고의 신축 · 증축 · 개보수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의 70%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33억원을 지원하였다.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지원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 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6) 염화나트륨 함량 : (한국산) 82.5% 〈 (프랑스 게랑드산) 89.89% 〈 (중국산) 88.47%

절감 할 수 있도록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 Salt Processing Complex)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있는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자재로 대폭 교체함으로써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 예산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추진

천일염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천일염 포럼을 2010년 2월 창립하였고, 동 포럼을 통한 국제세미나, 소금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현장방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소금산업육성 대책을 2011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천일염 시장에 식품대기업이 진출하여 천일염의 포장재, 디자인 개선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천일염의 우수성이 임상실험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어 천일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염전시설의 현대화 및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한 기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천일염의 이력관리제, 품질인증제 등을 시행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상품개발, 마켓팅 · 홍보 및 공동브랜드 관리, 천일염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확대, 관광산업과 연계 등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4. 전통주산업 육성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박성기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술 산업은 그동안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제조, 수출입,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친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미흡하였다.

2010년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으로 약 8조원 규모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는

전체 술 시장의 10%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한식 세계화와 함께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해 2009년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10년에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한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2010년 2월 4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되고,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0년 8월5일부로 시행령 · 시행규칙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동 법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류제조업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술 품질인증 및 품평회,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술 품질인증제 및 원산지표시제 실시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 8월 5일 품질인증대상 품목(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및 품질인증 마크를 고시하였다. 2010년 10월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였다. 향후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 ·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하는 술 제조원료 원산지표시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R&D 및 품질고급화

전통주 전용 누룩 개발 및 고품질화로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전통누룩 289점과 곡류 177점를 이용하여 개발한 우수 누룩곰팡이와 대표 곡류를 접합시켜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용 전용누룩 17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막걸리 품질고급화를 위해 국내 재배중인 쌀품종을 대상으로 품종별로 양조시 제품특성 조사결과를 발표, 업계 및 소비자에게 품종별 제품 정보제공으로 제조

및 구매 선택폭 확대를 통한 막걸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막걸리 품질 표준화 및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연구과제도 추진 중이다. 또한 경영 및 기술애로가 있는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명품주를 선발·육성하고자 '201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10.9.30~10.2)'를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각 시·도 예비심사를 거친 7개 부문 10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여 7개 부문별(생막걸리, 살균막걸리,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입상된 제품은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유통업체 및 해외바이어 등에 배포하고 국내 각종 행사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 전통주 홍보·판매행사 추진

막걸리 등 전통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막걸리 표준잔 개발·보급, 16강 대표막걸리 선발대회('10.5.10) 및 판촉행사, G20 성공기원 막걸리·한식페스티벌('10.6.12~13), '2010 햅쌀막걸리 출시' 홍보전('10.11.18~11.21) 및 대형마트 판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판매행사를 실시하였다.

●● 건전한 술문화 조성

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정립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10개교 약 5,000명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술문화조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술 전문가 등으로 교육단을 구성하고 우리술의 정의·역사, 제조방법, 음식과 술의 관계 등 '우리 술 우리문화' 분야와 술과 우리 몸과의 관계, 술에 대한 올바른 태도형성, 음주피해 예방교육 등 '나를 지키는 책임있는 음주' 분야에 대해 교육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품질인증제도 등을 통해 우리술 다양화 및 고급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술산업진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강화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해 전통주 기반조성 및 품질고급화,

우리술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병우/사무관 임현규

추진배경 및 개요

2008.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 식품산업 진흥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농어업의 문제를 식품을 매개로 해결하려는 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써,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10년에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의 개편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발표 등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 · 학 · 연 · 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 산업인 농어업을 2 · 3차 산업으로 연계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을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현재까지 총 54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0.4월에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즉, 단순 생산, 유통 중심의 사업란은 배제하고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어업을 2 · 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산업은 IT · BT · 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종자 · 제약 · 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 · 공 · 상 융합형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0.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 · 공 · 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을 수립,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농 · 공 · 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육성, 창업에 따른 직간접 일자리 5,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금융 지원 강화, R&D 투자 강화, 창업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유형 〉

- 공동출자형 :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 · 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특히, 2010.7.29일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농 · 공 · 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 을 구성하였다. 동 지원단은 산하에 5개 실무지원팀(총괄 조정, 창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금융개편 지원, 마케팅 지원)을 설치하고 융합형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4개 사업단에 총 1,03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이전보다 매출액이 3,782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향후에는 사업단의 성과 평가, 사업관리 강화 및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수립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융합형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우수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성병화

추진배경 및 개요

농림수산식품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농림수산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규모는 2009년 현재 약 4.9조 불로 IT 시장(3.5조)의 1.4배, 자동차 시장(1.6조)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인구증가 및 신흥개발국 성장에 따라 2020년에는 6.4조 불로 성장 예상되며 이중 아태지역이 40%를 차지할 전망이다.(Datamonitor, 2009년)

국내 식품시장 또한 2009년 현재 131조원 규모로서 전년대비 8.9%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식품매출액 1조원 이상 업체도 2007년 8개에서 2010년 15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으로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사업체로 R&D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케팅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업체가 약 85%를 차지하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30~65%(국가과학위원회), 매출액 대비 R&D 투자규모는 0.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식품산업을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으로,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hub)」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홍암리 일원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여 145개 식품기업과 10개의 식품연구소를 유치,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식품연구소, 식품관련 대학, 지역농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535억원(국비 1,616, 지방비 634, 민자 3,285)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9만㎡의 부지에 3대 핵심 R&D센터 등 6개 H/W를 구축하고 R&D와 인력양성 등 4대 기업지원 S/W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표 2-7-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주요경과

□ 한 · 미 FTA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포함('07.6)
□ 제1차 균형발전 정책 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 방향' VIP 보고('07.11.27)
  ○ 신규사업 추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북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07.12.17)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08년 사업추진계획 대통령 업무보고('08.3.18)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정책연구('08.7~12월, 산업연구원)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08.10.7)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발표('08. 12.26)
  ○ 식품전문 산업단지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최종 선정
□ 정부의 신성장동력 과제(고부가 식품산업)에 포함('09.1.13)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대통령 보고('09.1.29)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
◈ R&D 중심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특성화 추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09.11.6)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0년 사업추진계획 대통령 업무보고('09.12.30)
□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예비 사업시행자로 LH공사를 지정('10. 1, 국토부)
  ○ LH공사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 착수('10.12)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1년 사업추진계획 대통령 업무보고('10.12.27)

◈ '12년 단지착공을 목표로 절차 추진, 식품기업 · 연구소의 투자유치 활동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체계 구축

2008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7.15)

2009년에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09.11월)와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대 영향평가(환경 · 재해 · 교통)를 거치고, 201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1.25)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 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산단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분야는 LH공사에 산업단지개발 계획수립을 착수토록 조치(1.18, 국토부)하였고, 이에 LH공사는 산업단지개발계획 계획수립을 착수(12월)하여 '11년내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2012년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2013년 말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0년에는 해외 식품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해 제반 활동을 수행할 전문투자유치기관으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유럽 담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미 · 중국 · 기타 담당), 이토추증권사(일본 담당) 3개 기관을 투자에이전시로 선정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14회(각 7회)개최, 35건의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하고 권역별 기업 DB를 구축하였다.

〈표 2-7-3〉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요추진활동

□ 기업 유치 활동

○ (투자유치) 국내외 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 설명
- 투자유치 설명회 총 14회 개최(국내 7회, 해외 7회)
  * ('09) 국내 4회, 해외 3회, ('10) 국내 3회, 해외 4회(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 (네트워크 구축) 국내0104외 식품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 유치대상 기업 CEO 등과 교류기반 구축
  * 홍보 브로셔 배부(600부) 및 장관님 서한 발송(1,000부)
- (해외) 해외자문관 14명(일본4, 중국1, 유럽7, 북미2) 위촉, 투자 에이전시 3개 기관 선정 · 운영
  * 4개 권역에 3개 투자에이전시를 선정, 권역별 기업 DB 구축 중
  · 유럽(EUCCK), 북미 · 중국(KOTRA), 일본(이토츠증권)

□ 홍보활동

○ 국가식품클러스터 CI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익산시 왕궁면 클러스터 입지 예정지 인근에 2층 규모(377.5㎡)로 홍보관 건립('10.5.8)
- TV, 옥외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 홍보 CF : KBS등 3개 공중파 방송에서 4개월간 방영
  * 홍보동영상 : 국내외 박람회 등에서 20여회 홍보
  * 다큐멘터리 : MBC, JTV 방영(전북도 자체 추진)
  * 광화문, 한국일보 전광판 등에 옥외광고 중('10.6~ '11.1)
  * 공항, 지하철, 도심전광판 등에 광고를 위한 홍보 문안 개발('10.8~'12)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4개국)판 홍보 브로셔를 제작 하여 국내외 식품기업 및 협회 등에 배포(6천부)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식품산업 분야 산 · 관 · 학의 집적과 긴밀하고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R&D 상용화를 실현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앵커기업과 세계적 연구소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투자유치 타깃기업과 연구소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립 후 투자에이전시와 투자유치단을 통해 국내외 투자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특히, 국내외 주요 입주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투자에이전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입주의향 기업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적극적인 투자 상담과 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다. 사업주체인 농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앵커기업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중견기업은 지자체(전북도 · 익산시)에서 담당하여 투자유치 협약을 집중 체결한다.

옥외광고, 사이버홍보관 구축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국제식품 심포지엄 참가를 통해 국내외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심포지엄 등을 국내에서 개최하여 해외 유명 식품석학과 기업CEO 등을 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해간다.

LH공사의 산업단지 계획수립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공사,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선진국 수준의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신에너지 · IT 등이 접목된 미래형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진입로, 폐수종말처리장 등) 구축에 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주 · 교통여건 등이 최상의 산업단지가 되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을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경험을 가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추진하고 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관련 관계기관회의를 통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7. 식생활 교육 추진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영구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 연간 18조원, 처리비용 약 6천억원('05년)
* 비만 등 성인병 치료비 지급액 : 1조8천억원('07년)

이에 2008.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의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 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 · 홍보 강화' 를 제시하였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09.4월)되고 공포('09. 5월)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 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7-4〉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내용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 · 학교 ·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 · 도 및 시 · 군 · 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생활 교육 위원회**
-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 시 · 도 및 시 · 군 · 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 **식생활 조사 · 연구**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등에 관한 조사 · 연구

□ **식생활 지침 개발 · 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 · 보급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 · 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 · 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를 구성('10.2월)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및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10.4.2) 심의를 거쳐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 · 학교 · 지역 등에서의 실천방안, 농어업인과 소비자 교류촉진, 체험활동 활성화,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는 '5개년('10-'14)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을 수립('10.4월)하였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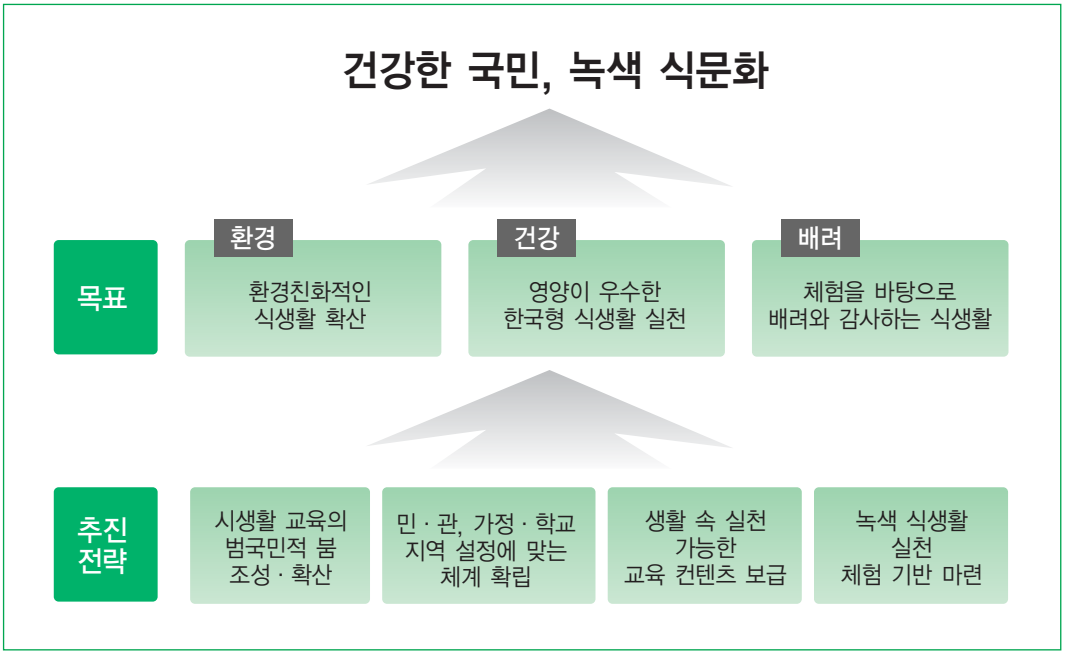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10년도에는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였다. 녹색식생활교육 다큐멘터리(KBS 과학카페 4부작) 및 공익캠페인(지상파 · 케이블 TV, 라디오 등) 전개, 홍보물(리후릿, 포스터)을 제작 · 배포하였으며, 가정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문제점 인식 및 개선 의지를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식생활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교재(18만부) 및 가정식생활수첩(100만부)를 제작 · 보급하는 등 활용 가능한 식생활교육 컨텐츠를 개발 · 보급하였다.

또한,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녹색식생활 및 전통음식 체험을 위해 방과후 교실(101개 학교 3천명)과 농어촌 체험(139개 학교 15천명)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 공원 내에 식생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녹색식생활 어린이 체험관' 3개소를 서울, 대구, 광주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의 구성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으로 수립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0~'14)' 은 '환경' , '건강' , '배려' 를 핵심 가치로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을 개념을 재정립, 기존 영양적 균형 중심의 식생활 교육에서 환경과 배려까지 고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문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는 교육 · 체험기회 확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강화, 식생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여, 지난 2년간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민간 주도의 식생활 운동을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수출진흥팀 사무관 김상진

추진배경 및 개요

농식품 수출은 DDA · FTA 등 글로벌 개방화 환경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농정시책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하에서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 농식품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규격 표준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 동향을 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가격 상승, 구제역 발생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고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 농림축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4,082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돼지고기, 신선 과실 등 일부 수출이 감소한 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세를 띄었다. 또한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으로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는 그 동안 수출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수출농업인의 마인드 향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의 성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 수출농업의 발전방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표 2-7-5〉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 연도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A)	2010(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 합계	1,579.9	2,085.0	2,221.5	2,304.4	2,531.8	2,954.5	3,298.1	4,081.8	23.8
신선 농림 축산물	521.0	549.7	608.2	535.5	597.1	675.0	739.0	873.8	18.2
가공 농림 축산물	1,058.9	1,535.3	1,613.3	1,768.9	1,934.7	2,279.5	2,558	3,208.0	25.4

〈표 2-7-6〉 농림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 연도	1997	2006	2007	2008	2009(A)	2010(B)	증감률(B/A)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2,304.4	2,531.8	2,954.5	3,298.1	4,081.8	23.8
신선 농림축산물	615.7	535.5	597.1	675.0	739.3	873.8	18.2
김치	39.7	70.3	75.3	85.3	89.4	98.4	10.1
돼지고기	242.3	23.9	25.6	17.7	11.6	0.8	△93.1
채소	38.4	133.6	121.1	148.6	161.5	178.4	10.5
화훼	5.3	40.4	58.1	76.2	77.2	103.1	33.5
가공 농림축산물	1,143.5	1,768.9	1,934.7	2,279.5	2,558.8	3208.0	25.4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은 2008년에 마련된 농식품 수출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며 선진국형 수출 기반 조성, 수출 성장 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품목별 수출선도조직(19개)을 육성하여 생산 · 수출 전문경영체로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해 수출 농산물의 규격화 · 표준화를 유도하고,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 특히,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였다. 또한, WTO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보조금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413억원)하고 수출인프라사업을 강화하여 특히, 해외 냉장 · 냉동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물류기반구축 지원을 시범 운영하였다. 한편, 국내외 수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6개국 10개 해외 aT센터 또는 사무소에서 입수되는 수출관련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Korea Agriculture Trade Information, http://www.kati.net)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 수출성장동력 확충

해외시장에서의 동일 품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16개) 육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 간의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농식품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상품별 시장개척 진행단계에 따라 상품현지화, 시장개척, 시장정착 등 상품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수출 유망상품을 발굴, 지원하여 미래 수출주도품목으로 육성을 추진하였다.

●● 해외 마케팅

2010년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0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 102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다변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은 정체 상태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의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 식문화와 결부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져가는 정책이다.

향후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개별 수출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임영조 · 문지인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7]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8]" 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4월에 '한식을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만든다' 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세계화 5대 전략[9]」을 마련하여 국내와 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10]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 · 세계화 추진계획(안)' 을 수립하고, 2009년4월7일 한식세계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 참여적 한식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총 36명이 참여하는 민 · 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 2009년 5월4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세계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한식세계화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무국 역할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식세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

7)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등의 전통문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8)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food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2002.)

9) 5대 전략 : ①인프라 구축 ②R&D 확대 ③인력양성 ④기업투자 활성화 ⑤식문화 홍보

10) 9대 중점과제 : (국내) ①법 · 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②한식 요리명장 양성 ③스타 한식당 육성 ④한식 체험 기회 확대 (해외) ⑤한식 세계화 R&D 확대 ⑥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⑦한식 이미지 제고 ⑧한식 문화 알리기 ⑨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한식세계화는 현재 초기 실행 단계로서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 한식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2010년에 뉴욕, LA, 동경, 오사카, 상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등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한식당협의체 9개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종사자 교육, 한식당 맛지도 제작, 홈페이지 구축, 메뉴판 교체 및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다. G20 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시 한식 오 · 만찬 제공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결과를 한식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한식의 고혈압 및 복부비만 개선 효과 등 규명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 · 홍보를 통한 한식의 이미지 개선 및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해 일본 동경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9년에 이어 '한식 스타쉐프 양성과정' (4개소 107명)과 '향토음식 전문가과정' (9개소 210명) 등 단기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2개교와 고교 1개교를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로 지정하였으며,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10개 도시, 2,637명)도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인 국내 외식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법(안)」이 2009년 10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10년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2010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시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외식산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 외식업지구 및 외식업자 지정 · 육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식재료 중 국산 식재료를 30% 이상 사용하는 외식 · 식재료 공급 업체에 공동조리시설(CK : Central Kitchen) 설치 및 기존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정책자금으로 7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한솔영농조합법인 등 3개 기업이 CK 신축 및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13개소의 외식 · 전처리업체에 37억원의 국산 식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충 및 농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의 본격적인 한식세계화 활동에 맞추어 언론 등에서도 한식세계화 필요성, 가능성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한식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국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92%가 한식세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80%가 실현가능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다. 이를 통해 국내 한식 기업의 해외진출 및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식 기업의 경우 2008년 27개 업체, 109개 점포에서 2010년 10월 기준 30개 업체, 170개 점포로 증가하였다. 농식품 수출액도 2008년 45억불에서 2010년 59억불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퓨처브랜드가 발표한 2009년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고급 레스토랑 분야는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음식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식에 대한 선호도는 2009년 9%에서 2011년 상반기 31%로 높아졌다.

2011년에는 초기 붐 조성과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 현지 한식당 협의체를 통해 한식당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서 본격적인 한식의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 한류의 중심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비빔밥, 갈비, 불고기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진출 외식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경영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현지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식조리 특성화학교'를 4개소로 늘리고, 해외 요리학교 한식강좌도 동남아 지역 요리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홍보대행사를 통해 해외에 한식의 맛과 멋을 홍보하고 K-pop 등 한류와 연계한 한식 홍보를 통해 한식의 해외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은 「외식산업진흥법」의 시행이 예정되고 있어 그동안 외식산업의 규모,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국가 발전의 기여도와는 달리 음식업의 위생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식품위생법」으로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극복하고 외식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이 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 주요 전략별 추진과제를 포함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8장 농업인 복지지원 및 농촌지역개발 · 농업생산기반 조성

제1절 농업인 복지지원

1.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

농어촌정책과 사무관 김보람

추진배경 및 개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월)하고, 특별법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추진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미흡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였다.

〈표 2-8-1〉 도시 · 농어촌 공공서비스 비교

(단위 : 개소)

구 분	도 시	농어촌
약국 현황('10)	19,159(시지역)	1,937(군지역)
복식수업 학급 비율('08)	1.7%	28.6%
상수도 보급률('09)	99.3%(동지역)	61.8%(면지역)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08.12월)와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09.12월)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8개 분야(①주거, ②교통, ③교육, ④보건의료, ⑤복지, ⑥응급, ⑦문화여가, ⑧정보통신) 31개 항목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었다.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부 문	항 목	세부내용
주거 (5)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3)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 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5)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낙도 · 벽지에 헬기 ·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독서	읍 · 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0.7.23)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과 운용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행실태 결과를 분석 · 평가하여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안('10.6월)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방안을 마련('10.12월)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 ·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농어촌정책과 사무관 김보람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 영세성, 계절제 근무 및 여성이 다수인 경제활동인력의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으로 도입('09.12월)되었고, 향후 농어촌 영향평가로 제도명을 변경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3월중에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6월에 작성하였다.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범적용을 거쳐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방안을 마련('10.12월)하였다. 운용방안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도별로 1개 이상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각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지침에 따라 직접 평가하도록 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9개 부처 및 9개 도에서는 각각 자체 선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농어촌 영향평가를 적용해 보고,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에서 선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부처 및 지자체, 전문연구기관의 정책개선방안이 포함된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립 · 추진 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품질 향상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박종완

추진배경 및 개요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 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연금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율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표 2-8-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 천세대, 억원)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고 지원율	8	18	28	28	28	28	28
월평균 지원세대	606	603	521	504	484	457	435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340	666 (95.8%↑)	1,339 (68.4%↑)	1,431 (6.9%↑)	1,559 (8.9%↑)	1,559 (-)	1,626 (4.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을 통해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0년 현재 월 평균 230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8-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분 \ 연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지원금액 (월/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는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 액	221	605	673	731	793	888	940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평가 및 향후 계획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 · 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 · 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

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기여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협업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지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박종완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UR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융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후부터(2011년부터 거치기간 연장 1년→2년) 1학기 분 융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

하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10년도에는 정부가 505억원을 출연하여 31,093명을 대상으로 1,012억원(상환금 재융자액 포함)을 융자 지원하였다.

〈표 2-8-6〉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 연도	출연금	융자현황	
		인원수	금액(재융자액 포함)
1994	8,000	1,724	1,712
1995	22,000	19,177	19,089
1996	20,000	19,301	19,252
1997	12,400	19,936	19,849
1998	15,100	19,563	19,396
1999	17,300	20,123	19,579
2000	30,550	20,650	20,476
2001	18,000	18,017	25,023
2002	15,000	15,911	23,764
2003	4,000	19,649	36,698
2004	2,100	26,424	60,652
2005	12,733	25,206	63,702
2006	48,288	24,964	67,664
2007	44,097	26,333	76,942
2008	41,260	26,721	83,843
2009	47,500	28,962	92,916
2010	50,521	31,093	101,218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 · 통신대 및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학자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수혜범위

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 여성 · 취약농가 지원 확대

농어촌사회과 서기관 박경아, 사무관 박종완

추진배경 및 개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어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도입 되었다.

영농 · 가사도우미 지원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 실시 후,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 ·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설미이용(자가 보육)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 41천명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다. 시설이용 아동 22천명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시설미이용 아동의 경우는 19천명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료 단가의 35%를 지원하였다.

〈표 2-8-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액(국비)	146억원	192억원	316억원	430억원	494억원	419억원	316억원
지원인원 · 시설 · 시설미이용	27천명	30천명	56천명 33천명 23천명	57천명 35천명 22천명	66천명 40천명 26천명	53천명 29천명 24천명	41천명 22천명 19천명
지원비율 · 시설 · 시설미이용	50%	50%	50% 25%	70% 35%	70% 35%	70% 35%	70% 35%

* 지원액은 국고(50%)기준이며, 지방비 부담도 50%임

●● 영농 · 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52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10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다. 2010년도에는 13천 농가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 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0천 농가에 11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2-8-8〉 농어업인 영농, 가사도우미 지원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2008	28	5,792	13	4,732	16	1,060
2009	31	5,992	12	4,732	19	1,260
2010	33	6,520	13	5,460	20	1,060

평가 및 향후계획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어업인 자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보육료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주관)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율을 확대하고 있어, 농어업인 자녀의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과 통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어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보육시설 진입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 · 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일수 증가, 대상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

6.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재해보험팀 사무관 윤승우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락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 보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등에서 배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 개선

2010년도에는 농업인안전공제 사망시 보상수준을 2008년도 45백만원에서 최고 60백만원으로 확대였다. 주요 상품 개선 사항으로는 일(열)사병 사망 기본계약을 신설하고,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유사한 장제비 지원 특약을 운용하여 농작업 재해이외에 일반 사망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개별약정 계약방식에서 2009년부터는 개별 및 단체계약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단체일괄 가입시 일선영업점 및 농업인 모두에게 물적·시간적 비용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다.

사업 홍보 강화 및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공제가입 농업인 증가

농업인에 대한 농민신문 및 지역언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 행사시에 공제 상품을 적극 알려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 국고지원은 2009년도 278억원보다 15.6%(43억원) 증가한 322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의 공제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매년 농업

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791천명 대비 1.8%인 14천명이 증가한 805천명으로 나타났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인안전공제는 19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까지 3,097억원의 장해 · 사망 공제금 및 치료 · 입원비 지원으로 재해농업인 또는 유족의 생계비 일정 부분을 보전하고,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8-9〉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 연도	합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량 (계약건수)	10,418	6,658	658	742	764	791	805
지급공제금	3,097	1,345	201	284	367	403	497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중앙회 전산자료

한편, 농업인은 재해 · 안전사고에 대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별도의 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 에 따라 안전공제 보상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재 60백만원에서 2014년까지 10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수준 상향 등으로 가입률을 2014년까지 60%수준으로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7. 농지연금 도입

농지과 사무관 정재원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업소득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은 안정적 노후를 보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농지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지연금(농촌형역모기지) 제도도입이 결정되었다. 200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지연금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2009년 1월에는 「농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 농촌고령인구 비중 : ('90) 11.6% → ('09) 34.2, 전국 고령화율 : 10.6%
* 65세 이상 농가 594천 가구 중 연금 미 수급농가 : 45.7%(272천농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며 소유농지 총면적이 30,000㎡이하인 농업인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3~8월에 농지연금 모형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월지급금 결정을 위한 기초변수인 기대이율, 농지가격상승률, 사망확률 등의 적정수준을 도출하여 농지연금 시행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8-10〉 농지연금 모형결정

기대이율	농지가격상승률	사망확률	가입비	위험부담금
5.11%	2.85%	2008년 생명표	2.0%	0.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5~11월에는 농지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월지급금 지급, 담보농지 및 채권관리 등에 대한 농지연금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월에는 농지연금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립하였고 농지연금 가이드북을 발행·배부하였다. 또한 실무전문가 토론회(7월) 및 전문가 협의회(9월)를 개최하여 농지연금 모형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2010년 하반기에는 농지연금의 국민적 관심유도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운영하여 농지연금 사업을 안내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에는 농지연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모형설계, 관리시스템 개발 등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1년도에는 농지연금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고령농업인과 자녀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설 · 추석 명절 집중홍보,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연금사업 사후관리 및 가입자 설문조사 등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농촌 통합형 지역개발

1. 농어촌 종합개발

지역개발과 서기관 전경구

추진배경 및 개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 · 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 · 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 · 효율화 · 자율화를 위한 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정책방향

-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추진
- 유사, 중복사업 통 · 폐합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텐티브 강화
-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신(新)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추진
- 유사, 중복사업 통 · 폐합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텐티브 강화
-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초광역권은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 · 접경지역벨트, 내륙벨트 등 5개 권역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은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동남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권으로 개발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초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 · 군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금으로 지원)은 기초생활권 163개 시 · 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28개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접경도서지역 15개 시 ·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 · 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표 2-8-1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 · 군

구분	해당 시 · 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합천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 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첫째, 소도읍육성을 포함하는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어촌종합개발을 포함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셋째,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하는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 넷째,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 기계화경작로,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 개발촉진지구,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신활력지역을 포함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2-8-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유형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기존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제외한 소득사업은 가급적 지양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는 기존에 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로 통합하여 시행
권역단위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지역 역량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사업기간 : 사업규모에 따라 3년~5년 · 30억미만(3년간), 30억이상~50억미만(4년간), 50억이상(5년간)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통합 시행 (복합형=농촌형+어촌형+산촌형)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신규마을 조성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사업부지 100% 확보, 마을정비조합 구성, 입주예정자 80%이상 확보한 지역에 한함	·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기존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형태임
	기존마을 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 기존마을정비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형태임

유형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기존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 지원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 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기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이 해당
	농업생산 기반조성	○ 지원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시설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의 농업기반 지원시설이 해당

〈표 2-8-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 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휀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소득증대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소득기반	농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 ·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태 · 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 · 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사무장 양성, 마을리더 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 · 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 · 도, 시 · 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 · 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 · 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 · 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 · 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에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 · 군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 ·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1차 계획 : '10 ~ '14년)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120개 시 · 군 989개 내역사업에 9,736억원을 지원하여 11,464인의 신규인구유입 효과 등을 얻었다.

〈표 2-8-14〉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 · 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973,649	35,762	61,878	86,716	116,632	122,185	215,892	173,740	144,314	16,5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예산설명서, 2010년

❖ 평가 및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각 시 · 군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대상 선정 및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 · 폐합으로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시적인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자원 및 특산물

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 공간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시 · 군은 포괄보조사업 추진 체계구축이 미흡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 및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1년에는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원자(지자체, 지역주민 등) 과정교육 등을 개설하여 지역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운기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1976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총 8,000동(사업비 4,000억원)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융자 · 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 · 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

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표 2-8-15〉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세대,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지원물량	5,600	6,000	7,000	8,000
세대당 융자한도액	40	40	40	50
융자재원	224,000	240,000	280,000	400,000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으로 개발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8,000동의 물량 중 2,500동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의 경제적인 주거문화 정착 및 농어촌 미래주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생활형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추가 개발하여 2012년에 보급할 계획이다.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지역개발과 서기관 전경구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 우리 농어촌 산업은 승계농업인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젊은이들의 전입이 없으면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 농업 중심의 농어촌사회가 해체될 우려가 있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창업후계농 육성을 추진 중이나, 지역연고와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육 · 의료, 문화, 복지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자는 많으나, 경제적 여건, 친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아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연두업무계획 보고 시 농어업 인력 확보대책 일환으로 도시의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에 유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거 · 자녀교육 · 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실무 작업단을 구성, 내부 토론회, 지자체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 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5개소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2008년 10월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 · 군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현지실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09년 1월에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세부설계 및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대상 선정은 기숙형 고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의료 · 문화 · 복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선정하였으며, 개소 당 100~200세대 규모의 전원형 단독주택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형태로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조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농가소득 1,500백만원)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25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귀농인 등이다.

〈표 2-8-16〉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단위: 세대)

구 분	계	충북 단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사업규모	700	100	100	100	200	2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9년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은 5개 지구 700세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 · 군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의하여 부지조성, 도로, 상 · 하수도, 전기 · 통신, 공원 · 녹지, 커뮤니티시설, 공동주차장 등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

설에 대해 국고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표 2-8-1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율

(단위: %)

구 분	계	보 조		국고융자
		국 비	지방비	
마을기반시설	100	70	30	-
임대주택	100	40	-	60
분양주택	100	-	-	100

* 표준사업비 한도내 지원

2009년까지 시 ·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입주자 모집 · 선정 및 주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농어촌 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2,085백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지구 700세대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0,31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지구 700세대의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장성 및 단양 2개 지구의 공사를 착수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소득증대 및 농어촌의 생태 ·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웰빙 추구로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전체 인구의 15.2%)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귀농 · 귀촌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은 도시민들의 귀농 정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 과밀화 및 실업 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 뉴타운 53개소 조성 시 약 6,300세대 20천명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위주의 고령 · 영세 농어업인 중심의 농촌인력구조는 2 · 3차 산업 융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젊은 농업경영주로의 세대교체가 가능해진다.

향후,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지자체, 지역개발 전문가, 귀농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 추진여부 및 방향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4. 농업 · 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서봉열 · 최재웅

추진배경 및 개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통신망 구축, PC 보급, 정보화 교육 등의 정보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농어업 · 농어촌 정보화 추진 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인터넷 망의 접근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 · 농간 정보 격차로 인해 농어업 · 농어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어업인을 육성함은 물론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영농 과학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목표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고도화 나갈 필요가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업 · 농어촌 정보화사업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춰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 시황 · 전망 정보, 해외 농어업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

도시 소비자 또는 타 산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수단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정보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 · 면 지역농협, 농업계 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총 70만명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도에는 농업계대학 및 정보화선도자에 의존한 단발적인 농가 방문교육은 축소하고, 경영효율화와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품목별 ·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였다. 컴퓨터 사용법 등 기초적

수준의 정보화교육은 이를 기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실제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 · 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고품질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전담제(e-Tutor)와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교육자의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농업인 정보화역량진단시스템을 심화 · 개선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전후 정보화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8-18〉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온라인 교육	6,842	7,814	7,859	7,761	11,090
기초교육(컴퓨터 · 인터넷활용)	7,047	5,289	6,901	3,210	–
중급교육(농업정보활용)	4,008	4,019	–	–	–
경영 · 회계 S/W	2,139	2,591	2,795	2,504	–
품목 · 분야별 전문교육	359	604	751	1,024	1,750
농업정보 119대학	10,044	10,044	10,836	2,537	–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512	542	255	–	–
정보화선도자	29,858	32,608	35,068	34,563	29,409
총 계	60,809	63,511	64,465	51,599	42,24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

●●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1999년부터 농업 ·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도 · 농간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농림수산정보망(옥답, www.okdab.com)을 구축 · 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농수산물 가격유통정보, 시황 · 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농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도 · 농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였으며, 2010년부터 농식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 경영 · 사회 · 문화 관련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옥답은 1999년 구축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말 현재 회원수 282천명, 일평균 방문자수 17천여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72개 유관기관의 one-stop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를 위한 70여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옥답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 · 농촌 대표 웹사이트(웹 분석사이트 랭키닷컴, 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 2010년말 기준)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농어업 · 농어촌 대표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2-8-19〉 농림수산정보망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회원수	218,323	239,726	257,646	269,113	281,985
연계기관 수	-	51	65	72	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농수산사업의 신청 · 집행 · 사후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행정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사업이다. 2010년까지 6차에 걸쳐 50여개의 농수산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 중에 있다. 2010년에는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관리, 시설채소 온실현황 조사 등을 비롯한 과수 · 농업 통계분야 3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농업경영체 중심의 사업신청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연계 기능확대, 농기계보유현황 및 쌀직불제 사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농수산사업의 이용자와 정보화 요구증가에 대비하여 정보자원을 일부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쌀소득, 친환경, 조건불리 등 직불제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신청을 차단하고, 농림사업간 DB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5년간 총 5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격분석 서비스 등 정보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하고, SNS · 스마트폰 등 급변하는 IT환경에 부응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개인별 정보화역량 측정을 통한 수준별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에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농어업인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각 농림사업과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주요 농림사업별 공통 · 유사정보 등을 재편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5.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지원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김춘기 · 최원

추진배경 및 개요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확대, 베이비부머(babyboomer) 시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 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 ·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 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10년까지 516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516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여건 개선

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 · 보급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을 수립하여 마을리더 ·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 · 중 · 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멘토(mentor)제도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9개 교육과정에 3,525명을 교육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0년까지 350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에 79개 마을(2009년 5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어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101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 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0년에는 8,783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615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시대의 은퇴, 1사1촌운동 확산 등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가 소득증대 등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

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 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10년에 74개(총 516)조성하였고, 2011년에는 55개(총 571)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 · 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1년 3,045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신설 ·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생활 · 체험기 공모,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어업 · 농어촌 및 자연환경을 배울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초 ·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1사1촌 운동' 수록을 추진 중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계획」을 2010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6.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이동흥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 · 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 · 2 · 3차 산업을 연계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으로 통 · 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계획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0년에 시 · 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포괄보조사업군내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편성 ·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당 3년이내에 총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 · 장비 등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 · 컨설팅, 디자인 · 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 · 학 · 관 · 연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8-20〉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분 \ 연도	계	2007	2008	2009	2010	비 고
사업량(개소)	109	19	30	30	30	* 목표: 2013까지 200개소
예산(억원)	763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 ( )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지원액.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 · 도 자율편성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시 · 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도에는 2,356억원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 2 · 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 · 특산품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농어촌 체험 · 휴양서비스 및 도 · 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분야와 S/W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8-21〉 2010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분야	계	농수산물 생산 · 유통 기반구축	농수산물제조 · 가공지원	체험 · 전시 지원	농어촌체험 · 관광지원	농공단지 조성지원
예산(억원)	2,356	1,035	396	10	392	523

평가 및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 ·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소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13개 개별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하였으나, 아직 기존 사업의 물리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대상을 성격에 따라 ① 농수산물 생산 · 유통기반구축 지원, ② 농수산물 제조 · 가공지원, ③ 체험 · 전시지원, ④ 농어촌 체험 · 관광지원, 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등 5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내용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 · 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내용과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단편적, 1회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구조를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7.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최국일

추진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 · 개발 · 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 · 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 권한은 시 · 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2-8-22〉 부처별 농공단지 지원현황

부처명	지원내용	관련법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 16개소, 계속사업 36개소 등 52개소에 5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 말 현재 347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0년 말 현재 5,80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356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 · 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30천여 명, 생산액 43조 7.613억원(업체평균 87.3억원), 연간 수출액 115억87백만불(231만불) 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 단지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개발보다는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 · 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단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농업생산기반 조성

1. 대구획 경지정리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 · 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시 · 도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000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0년 봄 마무리까지 국고 2조 2,636억원, 지방비 7,206억원 등 2조 9,842억원을 투자하여 116.2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2-8-2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16.2	68.5	3.8	70.8	49.6
사업비(억원)	46,886	29,842	63.6	1,059	65.9	15,98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

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 · 도 자율편성사업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고, 2010년까지 2조 933억원을 투입하여 1차 목표면적 110천ha 중 89.5천ha를 완료하였다.

〈표 2-8-24〉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10	89.5	81.4	5.7	86.5	14.8
사업비(억원)	25,794	20,933	81.2	968	84.9	3,89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 · 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 · 군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0년까지 1조 8,414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2.3천km를 완료하였다.

〈표 2-8-25〉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2.3	63.7	1.2	67.1	11.5
사업비(억원)	29,689	18,414	62.0	1,001	65.4	10,27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평가 및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조래청

추진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까지 3조 5,386억원을 투입하여 149.4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 기후 여건과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88천ha에서 232.5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2-8-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232.5	149.4	64.3	4.1	66.0	79.0
사업비(억원)	75,610	35,386	46.8	1,801	49.2	38,42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 · 배수갑문 등 3,490지구(국가관리 206지구, 지방관리 3,284지구)를 대상으로 개 ·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1,521지구를 완료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기상여건 변화와 논에서의 작목 다양화에 따라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밭(원예)작물 배수개선 시범사업(4지구)의 중간평가 등을 통해 재해대비 배수개선 설계기준 변경(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구축 · 보전할 것이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조래청

추진배경 및 개요

저수지, 양 · 배수장, 용 · 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대하여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2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69,324	17,569	7,467	18,114	2,696	23,478
30년 이상	38,867	16,585	2,647	14,618	2243	2774
30년 미만	30,457	984	4,820	3,496	453	20,70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0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추진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410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80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가리가 어려운 흙수로 505㎞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2-8-2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지구)

구 분		총계획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이후
사업비		109,323	48,971	4,000	56,352
사업량	수 원 공	4,330	2,090	80	2,160
	수로정비	15.9천㎞	5.4천㎞	0.5천㎞	10천㎞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 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업기반과 서기관 박병태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 · 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저수지 · 양수장 등의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를 준공위주로 추진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면적은 1,010천ha로 농업용수개발에 의하여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806천ha(79.8%)이고, 비수리답(천수답) 면적은 204천ha이다. 또한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04천ha(49.9%)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8-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구분 \ 연도	단위	2000	2003	2006	2009
답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806
	(B/A)%	76.6	77.9	79.2	79.8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04
	(C/A)%	36.6	39.0	44.1	49.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 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67개 지구에 1,900억원을 투입하여 1개지구 0.3천ha를 준공하였고, 2011년도에는 66개 지구에 1,729억원을 투입하여 0.1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2-8-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0년까지	2011년 계획	2012년 이후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량(천ha)	107.5	61.3	0.1	46.1
	추진율(%)	100	57.0	57.1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국고 13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국고 152억원을 투입하여 0.5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1〉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0년까지	2011년 계획	2012년 이후
소 규 모	사업량(천ha)	11.0	1.2	0.5	9.3
	추진율(%)	100	10.9	15.5	

●●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 · 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국고 619억원을 투입하여 1.4천ha를 준공하였고, 2011년에는 국고 628억원을 투입하여 1.0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0년 까지	2011년 계획	2012년 이후
지표수 보강	사업량(천ha)	31.8	27.9	1.0	2.9
	추진율(%)	100	87.7	90.8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정도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0%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20%정도여서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 · 환경용수 등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농촌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광 · 레져,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으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부가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수가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21세기에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다각화되고 새롭게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연간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양한 용수 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되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대단위농업개발 및 간척

4대강새만금과 서기관 김동권 /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형주

추진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대부분 단일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한 지구 내에서 동시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이 국가사업을 위탁 · 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2-8-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구 분	지 구 명	개 발 유 형	재 원
육지부 (4)	금강II, 미호천II 홍보, 영산강IV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 특 회 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III–1 영산강III–2 화옹,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 · 화옹,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III–1, 영산강III–2	농 지 관 리 기 금

추진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도입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293천ha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15지구 162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II지구 등 9지구 131천ha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지구에는 2010년까지 총 5조 9,087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정리 11,03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000ha 조성하여 한해 · 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마무리됨에 따라 도로를 개통하여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33.9km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네스월드레코드)을 받아 우리의 간척 기술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방수제공사 착수를 통해

내부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5월에「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고시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도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반영하였다.

〈표 2-8-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 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5지구)			161,667		1,376,806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 ~ '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 ~ '77	37,657
영 산 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 ~ '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74 ~ '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74 ~ '79	12,521
창 녕	경 남	창녕	2,269	'75 ~ '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 ~ '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 ~ '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 ~ '84	23,029
미호천(Ⅰ)	충 북	음성, 진천	11,554	'77 ~ '89	104,871
논 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78 ~ '90	94,035
금 강(Ⅰ)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 ~ '90	101,000
삽 교 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75 ~ '94	235,546
대 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80 ~ '96	185,630
영 산 강(Ⅱ)	전 남	목포, 나주	20,700	'76 ~ '98	354,472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도에는 금강Ⅱ지구 등 시행중 9지구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715억원, 농지관리기금 1,981억원 등 총 2,696억원을 투입하여 간척농지 895ha, 경지재정리 200ha 등을 부분준공하고, 가뭄상습지역 2,819ha에 대한 용수개발을 신규착수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2010년도에 착수한 방수제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입주할 농업용지도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아울러 방조제 및 그 주변에 조성된 다기능 부지를 민간자본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표 2-8-3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 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시도	시군			
계(5지구)				72,608		79,072
영산강Ⅲ-1		전 남	영암 · 해남	13,160	'95 ~ '15(21)	6,255
영산강Ⅲ-2		경 남	해남	7,840	'97 ~ '14(18)	4,069
화 옹		경 기	화성	6,212	'91 ~ '16(26)	9,035
시화(대송)		경 기	안산,화성	4,396	'98 ~ '12(14)	4,291
새만금	(외곽)	전 북	부안,김제,군산	41,000	'91 ~ '10(20)	29,490
	(내부)	전 북	부안,김제,군산	-	'09 ~ '20(12)	25,932

한편,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착수한지 14~22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구별 여건변동 등을 반영한 적정 투자계획 재검토, 잔여 사업량 등을 고려한 미착공공구 추진계획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사업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설계변경 억제 등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 하면서 지구별 부분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준공 간척지 또는 준공후 미처분된 간척지는 기존의 벼농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축산 · 원예 등 다양한 농업적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고소득 대규모 농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3편
2010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2장 국내 · 국제 수산물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1. 어가인구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2010년 전국의 어가호수는 65,775호로 2009년도의 69,379호보다 3,604호(5.2%)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171,191명으로 2009년도의 183,710명보다 12,519명(6.8%)이 감소하였다

〈표 3-1-1〉 어가호수와 인구

(단위 : 호, 명,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2009
어 가 호 수	77,001	73,934	71,046	69,379	65,775	94.8
어 가 인 구	211,610	201,512	192,341	183,710	171,191	93.2
· 여 성 인 구 (구성비)	105,270 (49.7)	100,527 (49.9)	96,485 (50.2)	92,136 (50.2)	85,601 (50.0)	92.9 –
호당평균어가인구	2.75	2.73	2.71	2.65	2.60	98.1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2009년 어업종사자는 2008년도에 비해 2.8% 감소된 115,532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60,790명(52.6%), 여자가 54,742명(47.4)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43.1%, 50대가 32.8%, 40대가 17.1%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 · 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2008
종 사 자		130,589	128,048	122,916	118,879	115,532	97.2
성별	남 자	70,307 (53.8)	68,244 (53.3)	65,520 (53.3)	63,037 (53.0)	60,790 (52.6)	96.4 –
	여 자	60,282 (46.2)	59,803 (46.7)	57,396 (46.7)	55,843 (47.0)	154,742 (47.4)	98.0 –
연령별	30세 미만	2,456 (1.9)	3,044 (2.4)	2,407 (2.0)	1,964 (1.7)	2,068 (1.8)	105.3 –
	30~39세	9,684 (7.4)	8,396 (6.6)	7,698 (6.8)	7,010 (53.8)	6,120 (53.8)	87.3 –
	40~49세	31,067 (23.8)	29,250 (22.8)	26,543 (21.6)	23,630 (19.9)	19,689 (17.0)	83.3 –
	50~59세	40,084 (30.7)	40,580 (31.7)	38,877 (31.6)	38,506 (32.4)	37,901 (32.8)	98.4 –
	60세 이상	47,298 (36.2)	46,778 (36.5)	47,393 (38.5)	47,769 (40.2)	49,753 (43.1)	104.2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표 3-1-3〉 전업 · 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77,001	73,934	71,046	69,379	65,775	94.8
전 업	23,932 (31.1)	22,407 (30.3)	20,938 (29.5)	20,923 (30.2)	19,323 (29.4)	92.4 –
겸 업	53,068 (68.9)	51,527 (69.7)	50.062 (70.5)	48,455 (69.8)	46,452 (70.6)	95.9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총 어업가구	77,001	73,934	71,046	69,379	65,775	94.8
· 어선 사용가구	36,088 (46.9)	34,691 (46.9)	32,481 (45.7)	30,569 (44.1)	29,062 (44.2)	95.1 –
· 어선비 사용가구	16,294 (22.0)	15,896 (21.5)	16,464 (23.2)	14,218 (23.4)	19,327 (29.4)	135.9 –
· 양식 어업가구	23,989 (31.2)	23,356 (31.6)	22,101 (31.1)	22,592 (32.5)	17,386 (26.4)	76.9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2. 어업 총생산

어업정책과 사무관 조성대

2010년도 어업 총 생산량은 3,112천톤으로 전년 3,182천톤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어업 총생산액은 7.2% 증가한 7조 4,25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1-5〉 어업 생산량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348	2,514	2,714	3,363	3,182	3,112	△70	△2.2
연 근 해	1,425	1,189	1,097	1,286	1,227	1,134	△93	△7.6
양 식	996	653	1,041	1,382	1,313	1,355	42	3.2
내 수 면	29	21	24	29	30	31	1	3.3
원 양	897	651	552	666	612	592	△20	△3.3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1년

〈표 3-1-6〉 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09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7,963	40,664	50,493	63,550	69,242	74,257	5,015	7.2
연 근 해	24,794	23,295	27,060	32,297	36,404	39,117	2,713	7.5
양 식	6,481	6,839	13,484	15,225	18,463	18,156	△307	△1.7
내 수 면	1,429	1,234	1,757	2,753	2,738	3,338	600	21.9
원 양	5,260	9,257	8,192	13,274	11,638	13,645	2,007	17.2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1년

〈표 3-1-7〉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분 \ 연도	2009	2010	2009대비 증감률
국내총생산(GDP)	1,065,037	1,172,803	10.1
국내총부가가치(GVA)	958,836	1,057,012	10.2
농림어업	26,615	27,019	1.5
어 업	3,280	2,603	△20.6
농림어업 GDP 구성비	0.31	0.22	-
농림어업 GVA 구성비	0.34	0.25	-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3. 어선등록 현황

어업정책과 사무관 심상겸

2010년 어선등록 현황은 76,974척에 600,622톤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739척(1.0%)이 감소하였고, 톤수는 5,850톤(1.0%)이 증가하였다. 전체 어선 중 동력어선은 74,669척으로 97%, 톤수는 598,365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이 65.9%, 양식어선이 22.9%, 내수면어선이 3.9%, 원양어선이 0.5%, 기타가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3-1-8〉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 연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척 수	95,890	90,735	80,766	77,713	76,974	99.0
	· 동 력	89,294	87,554	78,280	75,247	74,669	99.2
	· 무동력	6,596	3,181	2,486	2,466	2,305	93.5
	톤 수	923,099	700,810	621,337	594,772	600,622	101.0
	· 동 력	917,963	697,956	619,098	592,445	598,365	101.0
	· 무동력	5,136	2,854	2,239	2,327	2,257	97.0
연 근 해	척 수	68,629	64,579	57,177	50,757	50,757	94.3
	톤 수	397,868	322,811	280,708	249,695	249,695	97.0
양 식	척 수	20,359	18,244	17,104	17,786	17,594	98.9
	톤 수	28,516	27,131	28,270	31,077	32,845	105.7
내 수 면	척 수	3,664	4,164	4,040	3,824	2,973	77.7
	톤 수	2,874	3,518	3,728	2,874	2,149	74.8
원 양	척 수	597	493	448	370	379	102.4
	톤 수	349,4202	257,614	242,666	188,174	199,859	106.2
기 타	척 수	2,641	3,255	1,997	1,934	5,271	272.5
	톤 수	144,421	89,736	65,965	115,255	116,074	100.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1년

선질(船質) 별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어선척수의 82.2%, 목선이 15.3%, 강선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톤수의 32.5%, 목선이 3.1%, 강선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 연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척 수	95,890	90,735	80,766	77,713	76,974	99.0
	톤 수	923,090	700,810	621,337	594,772	600,622	101.0
목 선	척 수	40,057	22,281	14,565	12,647	11,788	93.2
	톤 수	112,413	49,697	29,867	21,112	18,849	89.3
강 선	척 수	3,455	2,623	2,123	1,916	1,865	97.3
	톤 수	656,261	445,359	394,698	382,006	386,117	101.1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52,378	65,831	64,078	63,107	63,279	100.3
	톤 수	154,425	205,754	196,722	191,688	194,954	101.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1년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7.6%로서 전체 톤수의 19.2%를,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각각 10.4%, 16.0%를,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 각각 2.0%, 64.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0〉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연도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10		2010/2009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합 계	95,890	923,099	90,735	700,810	80,766	621,337	77,713	594,772	76,974	600,622	99.0	101.0
1톤 미만	37,542	23,620	30,962	20,069	27,118	17,874	25,855	17,141	24,454	16,331	94.6	95.3
1~5톤 미만	44,794	107,263	47,253	111,344	43,484	99,972	42,371	97,681	42,957	98,768	101.4	101.1
5~50톤 미만	10,797	138,130	10,607	123,424	8,461	102,865	7,922	95,660	8,032	96,234	101.4	100.6
50~100톤 미만	1,584	120,489	1,024	75,783	900	65,838	800	58,301	778	56,877	97.3	97.6
100~200톤 미만	518	73,551	346	50,640	311	45,347	273	40,072	263	38,853	96.3	97.0
200톤 이상	655	460,046	543	319,550	492	289,441	492	285,917	490	293,559	99.6	102.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1년

4. 이용어장

연근해어장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 · 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라어장' 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어장' 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 · 중 · 일 3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 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 · 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 · 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 · 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 · 중 · 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 · 중 · 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원양어장

원양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험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 ·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고,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수산관리기구가 2009년 말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12개가 설립되었다.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등 2개가 설립준비 중이며,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가 신설 중에 있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식어장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의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에서 1970년대에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전복 등 고소득어 - 패류양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고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쉥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최근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 되었다.

〈표 3-1-11〉 품목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124,668	130,890	132,416	136,083	139,871	141,015	100.8
어 류	1,822 (1.5)	1,986 (1.5)	1,962 (1.5)	1,988 (1.5)	1,965 (1.4)	1,790 (1.3)	91.1
패 류	48,194 (38.7)	49,550 (37.9)	49,261 (37.2)	49,169 (36.1)	49,538 (35.4)	49,988 (35.4)	100.9
해 조 류	69,502 (55.7)	74,757 (57.1)	76,183 (57.5)	79,504 (58.4)	81,601 (58.3)	82,019 (85.2)	100.5
기 타 수산동물	5,150 (4.1)	4,597 (3.5)	5,010 (3.8)	5,422 (4.0)	6,767 (4.8)	7,218 (5.1)	106.7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1년

2010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4만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은 1.4천ha이다.

〈표 3-1-12〉 종류별 · 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2,017	1,971	1,735	1,641	1,382	1,416	102.5
육상수조식양식 (어류 · 패류 등)	299 (14.8)	268 (13.6)	276 (15.9)	271 (16.5)	261 (18.9)	256 (18.1)	98.1
축제식양식 (어류 · 새우 등)	1,718 (85.2)	1,703 (86.1)	1,459 (84.1)	1,370 (83.5)	1,121 (81.1)	1,160 (81.9)	103.5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1년

201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적조,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면의 개발제한, 수출용 패류의 지정해역 및 그 인근해역에 대해 어장개발 관리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김, 어류, 굴, 등 적정한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에 대하여는 어장면적을 (5% 이상 20% 이하) 축소 조정하여 관리하였다.

향후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관측을 통하여 적정하게 수급관리를 하되, 그 동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해 왔던 9개 품종(김, 어류, 전복, 굴, 우렁쉥이, 미더덕, 홍합, 미역, 피조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 선별적으로 신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서해 5도(인천시 옹진군)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복, 김 등 모든 양식품종에 대해 신규어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는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201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장개발을 이행할 계획이다.

5. 어업경영체

연안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2010년 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95,545개로서 2009년도의 193,296개보다 2,249개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각 58,091건 및 6,540건으로 전년에 비해 3,297건과 359건이 감소한 것으로 허가어선 감척사업, 어선대체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허어업은 3,594건으로 전년에 비해 3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어장이용관리계획에 따라서 마을어업의 면허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기인한 것이다. 연안어업중 어선어업 경영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신규 어업허가 억제정책과 1994년부터 추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반해 면허어업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신고어업은 총 127,320건으로 전년대비 5,867건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어업자원증대에 의한 증가보다는 어업피해보상 등과 연관하여 맨손어업인의 신고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고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업여부에 대해서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 영세한 실정으로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가속화로 인한 수입수산물의 증가에 따른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의한 어업자원변동 및 수산자원 회복정도 등 어업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3〉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148,232	153,570	150,111	150,365	178,219	193,296	195,545	101.2
허가	소 계	89,760	88,394	83,334	79,202	73,798	68,287	64,631	94.6
	연안어업	81,468	80,518	75,723	71,756	66,660	61,388	58,091	94.6
	구획어업	8,292	7,876	7,611	7,446	7,138	6,899	6,540	94.8
면허	소 계	2,926	3,279	3,279	3,390	3,437	3,556	3,594	101.1
	마을어업	2,447	2,726	2,726	2,835	2,897	3,020	3,058	101.3
	정치망어업	479	553	553	555	540	536	536	100.0
신고	소 계	55,546	61,897	63,498	67,773	100,984	121,453	127,320	104.8
	맨손어업	49,954	56,384	57,561	61,631	94,768	114,557	120,200	104.9
	나잠어업	5,506	5,507	5,900	63,090	6,144	6,825	6,952	101.9
	투망어업	86	42	37	52	72	71	168	236.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1년

근해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근해어업 경영체는 2010년도에 3,276개로서, 전년도3,406개보다 4%가 감소(130개)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2003년 및 2007년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근해통발 · 근해형망 · 근해연승 등이 6% 이상씩 감소하였다.

〈표 3-1-14〉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4,246	4,061	3,957	3,406	3,276	96.2
대형기저	91	83	92	82	81	98.8
중형기저	96	94	94	90	90	100.0
근해트롤	97	99	99	91	91	102.2
근해선망	84	82	79	74	72	97.3
근해채낚기	985	915	896	720	699	97.1
기선권현망	83	79	80	78	77	98.7
근해자망	912	873	838	736	707	96.1
근해안강망	274	262	259	247	238	96.4
잠수기	236	236	235	236	236	100.0
근해통발	421	401	389	331	310	93.7
근해형망	136	138	129	101	94	93.1
근해연승	753	743	709	575	536	93.2
근해봉수망	67	51	53	40	40	100.0
근해자리돔들망	11	5	5	5	5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1년

양식어업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최근 중규모(1ha 이상 3ha 미만)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가수가 크게 줄고, 3ha 이상 대규모 양식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815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259(12.8%), 김 938(9.4%), 새고막 913(9.3%), 피조개 803(8.1%), 바지락 619건, 어류 530건, 미역 446건, 우렁쉥이 · 복합양식 기타 4,307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총 3,613건으로 해상종묘생산어업이 927건, 육상양식어업 1,329건(육상수조식양식 999건, 축제식양식 330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357건이다

〈표 3-1-15〉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9,110	9,297	9,352	9,555	9,709	9,815	101.1
김	944	971	948	960	939	938	99.9
굴	1,215	1,186	1,182	1,211	1,247	1,259	101.0
피 조 개	862	868	857	848	832	803	96.5
새 고 막	876	845	850	862	875	913	104.3
바 지 락	631	614	633	606	602	619	102.8
미 역	499	495	455	451	432	446	103.2
어 류	570	574	560	553	568	530	93.3
우 렁 쉥 이	473	503	494	506	521	466	89.4
기 타	3,040	3,241	3,373	3,558	3,693	3,841	10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1년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 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다.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경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다. 반면에 어류와 전복 · 진주조개 · 우렁쉥이 · 새우 · 가리비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1-16〉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124,668	130,890	131,439	136,083	139,867	141,015	100.8
어촌계 및 수협	100,208	106,649	108,242	111,800	115,166	116,550	101.2
개인 및 협업	24,460	24,241	23,197	24,283	24,701	24,465	99.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1년

향후 WTO DDA, FTA 체결에 따른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 · 소규모 개인 양식업을 대규모 양식으로 유도하고, 기존의 저가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고부가가치의 품종양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양어업

2010년도 원양어업 경영체는 전년도 95개사보다 5개사가 감소한 90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보면 2척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59개사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선 353척중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참치연승 · 참치선망은 92%, 해외트롤어선의 95% 이상이 21년 이상 노후 선박이다. 업종별로는 참치어선이 179척으로 51%를 차지하고, 해외트롤어선이 97척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해역별로는 태평양수역에 197척, 대서양수역에 128척, 인도양수역에 28척이 진출하고 있다

〈표 3-1-17〉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단위 : 개, 척)

구분 \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36	82	157	139	112	109	110	106	95	90
선 박 수	278	750	810	535	410	392	387	380	362	3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1년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어가 경제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1. 어가소득

2010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5,696천원으로 전년(33,945천원)에 비해 5.2%(1,751천원) 증가하였다. 어업소득은 2.4% 증가하였고, 어업외 소득은 7.1% 증가하였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46.5%로 전년에 비해 1.3% 감소하였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111.1%, 도시가계 소득의 74.2% 수준이다.

〈표 3-1-18〉 어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어 가 소 득	30,006	30,668	31,176	33,945	35,696	105.2
경 상 소 득	24,692	25,868	26,344	30,213	31,729	105.0
어 업 소 득	11,603	11,975	13,801	16,220	16,607	102.4
어 업 외 소 득	10,361	10,981	10,120	11,136	11,931	107.1
이 전 소 득	2,728	2,913	2,423	2,857	3,191	111.7
비 경 상 소 득	5,315	4,799	4,831	3,732	3,968	106.3
농 가 소 득	32,303	31,967	30,523	30,814	32,121	104.2
도시가계소득	41,321	44,105	46,737	46,664	48,092	103.1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표 3-1-19〉 어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어 업 소 득	11,603	11,975	13,801	16,220	16,607	102.4
어 업 총 수 입	25,910	26,535	33,457	35,350	37,682	106.6
어 업 경 영 비	14,307	14,560	19,656	19,129	21,076	110.2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표 3-1-20〉 어업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어 업 외 소 득	10,361	10,981	10,120	11,136	11,931	107.1
겸 업 소 득	5,082	5,689	4,860	5,189	5,755	110.9
사 업 외 소 득	5,279	5,292	5,260	5,946	6,176	103.9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2. 어가 가계지출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2010년도 어가 가계지출은 28,70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0%(1,635천원) 증가하였다. 이 중 소비지출이 21,982천원으로 전년(20,656천원)에 비해 6.4%(1,326천 원) 증가하였고, 비 소비지출이 6,719천원으로 전년(6,409천원)에 비해 4.8%(310천원) 증가하였다.

〈표 3-1-21〉 어가 가계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가 계 지 출	23,885	22,963	25,405	27,065	28,700	106.0
소 비 지 출	18,156	18,263	20,051	20,656	21,982	106.4
비 소 비 지 출	5,729	4,700	5,354	6,409	6,719	104.8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3. 어가자산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2010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258,872천원으로 전년(257,095천원)에 비해 0.7%(1,777천원)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은 4.2%(7,738천원) 감소하였고, 유동자산은 13.4%(9,516천원) 증가하였다.

〈표 3-1-22〉 어가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어 가 자 산	209,644	225,992	221,066	257,095	258,872	100.7
고정자산[1] (구성비)	147,247 (70.2)	153,483 (67.9)	161.720 (73.2)	186,102 (72.4)	178,364 (68.9)	98.5 –
고정자산[2] (구성비)	62,369 (29.8)	72,509 (32.1)	59,346 (26.8)	70,992 (27.6)	80,508 (31.1)	113.4 –

주 : 1)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 · 기구 · 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4. 어가부채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2010년도 어가부채는 가구당 35,64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0.6%(224천원) 감소하였다. 이중 어업용 부채는 18,27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0% 감소하였으며, 어업용 이외 부채는 17,363천원으로 3.2% 증가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어가부채/당좌자산 비율은 48.5%로 전년(56.3%)에 비해 7.8%p 개선되었다.

〈표 3-1-23〉 어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어 가 부 채(A)	34,422	34,407	33,587	35,864	35,640	99.4
어 업 용 부 채 (구성비)	17,275 (50.2)	16,690 (48.5)	18,207 (54.2)	19,038 (53.1)	18,277 (51.3)	96.0 –
어업용 이외 부채 (구성비)	17,148 (49.8)	17,717 (51.5)	15,380 (45.8)	16,826 (46.9)	17,363 (48.7)	103.2 –
당 좌 자 산(B)	53,865	64,341	52,782	63,648	73,560	115.6
단기상환능력[(A/B)X100]	63.9	53.5	63.6	56.3	48.5	7.8%p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제2장 국내 · 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

어업정책과 사무관 조성대

2010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09년(3,182천톤)보다 2.2%(70천톤) 감소된 3,112천톤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은 고등어,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이 저수온 현상으로 연근해어장에 유입되는 양이 줄고 태풍 등 기상악화로 전년에 비해 어획실적이 7.6% 감소하였으나, 천해양식어업은 김 · 미역 등 해조류의 작황 양호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하였다.

반면, 2010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금액은 전년(6조 9,242억원)보다 7.2% 증가한 7조 4,2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보다 낮은 수온 유지에 따른 양식 어류의 생산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장에서의 멸치 어획량 증가와 오징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가격 상승, 원양 어장(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타 추가 확보(황다랑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3-2-1〉 어업별 생산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 연도	2005		2009		2010		증감(2010/2009)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합 계	2,714	50,493	3,182	69,242	3,112	74,257	△2.2	7.2
연근해어업	1,097	27,060	1,227	36,404	1,134	39,117	△7.6	7.5
양 식 어 업	1,041	13,484	1,313	18,463	1,355	18,156	3.2	△1.7
원 양 어 업	522	8,192	612	11,638	592	13,645	△3.3	△17.2
내수면어업	24	1,757	30	2,738	31	3,338	3.3	21.9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1년

2. 연근해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2010년도 연근해어업(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1,134천톤으로 2009년도 (1,227천톤)보다 7.6% 감소하였으나, 생산금액은 3조 9,117억원으로 전년(3조 6,404억원)보다 오히려 7.5% 증가하였다.

부류별로 보면, 어류가 736천톤으로 전년(796천톤)에 비해 7.5%, 패류는 80천톤으로 전년(90천톤)에 비해 11.1%, 연체동물은 188천톤으로 전년(223천톤)에 비해 15.7%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갑각류는 108천톤으로 전년(100천톤)에 비해 8.0%(8천톤), 해조류는 13천톤으로 전년(11천톤)에 비해 18.2%(2천톤)가 각각 증가하였다.

〈표 3-2-2〉 부류별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 (2010/2009)
합 계	1,109	1,152	1,286	1,227	1,134	△7.6
어 류	715	762	878	796	736	△7.5
패 류	80	74	82	90	80	△11.1
갑 각 류	74	85	88	100	108	8.0
연 체 동 물	220	206	216	223	188	△15.7
해 조 류	14	18	14	11	13	18.2
기타 수산동물	6	7	8	7	8	14.3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1년

주요 어종별로 보면, 고등어(94천톤, 46.2%), 오징어(159천톤, 15.9%), 갈치(59천톤, 30.8%), 청어(25천톤, 33.3%), 참조기(32천톤, 6.2%)는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멸치(250천톤, 22.5%), 젓새우(19천톤, 38.0%), 꽃게(33천톤, 6.1%)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 (2010/2009)
멸 치 류	265.3	221.1	261.5	203.7	249.6	22.5
고 등 어 류	101.4	143.8	190.5	175.3	94.3	△46.2
갈 치	63.7	66	72.3	85.5	59.2	△30.8
강 달 이 류	19.4	13.8	11	12.1	5.0	△58.7
전 갱 이 류	23.2	19.1	22.8	22.1	19.3	△12.7
참 조 기	21.4	34.2	33.2	34	31.9	△6.2
삼 치 류	36.5	42.2	40.8	36.8	35.8	△2.7
청 어	12.5	28.3	45.5	37.5	25.0	△33.3
오 징 어 류	197.1	174.5	186.2	189.2	159.1	△15.9
문 어	7.9	12	11.8	15.4	10.8	△29.9
붉 은 대 게	23.9	25.4	28.3	30	30.7	2.3
젓 새 우	7.8	12.6	14.9	18.9	18.9	38.0
꽃 게	6.9	13.6	17.8	33.2	33.2	6.1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1년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4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흑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 · 정어리 · 전갱이 · 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선망어업은 2005년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 달간의 자체휴어기를 2009년에도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고등어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2009년(241,052톤)에 비해 33.5% 감소한 160,409톤을 생산하였다.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 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으로 구분되며, 제주근해와 서해중부해역에서 주로 갈치 · 가자미 · 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특히,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멸치 어획량이 2009년(1,700톤)에 비해 109.8%(3,560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2010년 전체 생산량은 64,327톤으로 2009년(63,737톤)보다 0.9% 소폭 증가하였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 · 가자미 · 도루묵 · 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과 서 · 남해에서 가자미 · 아귀 · 강달이 · 새우 · 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생산량은 멸치, 삼치, 가지미, 갈치 등의 어획량 증가로 2009년(36,922톤)보다 10.6% 증가한 40,844톤을 생산하였다.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 · 갈치 · 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 · 서 · 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어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 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 · 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의 2010년도 오징어의 생산량은 41,677톤으로 2009년(54,862톤)보다 24.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갈치의 생산량은 2,169톤으로 전년(3,107톤)에 비해 30.2%(1,006톤) 감소하였다. 2010년도 근해채낚기어업의 전체 어획량은 46,147톤으로 2009년(60,478톤)보다 23.7% 감소하였다.

연근해안강망어업

연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 · 조기 · 멸치 · 병어 · 아귀 · 꽃게 · 젓새우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생산량은 까나리, 참조기 등의 어획량 증가로 2009년(74,197톤)보다 5.8% 증가한 78,492톤을 생산하였다.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 2척을 비롯하여 어탐선 · 가공선 · 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생산량은 멸치 어획량이 크게 증가(32,957톤)하여 2009년(116,464톤)보다 35.4% 증가한 157,720톤을 생산하였다.

연근해자망어업

연근해자망어업은 동 · 서 · 남해에서 조기 · 멸치 · 가자미 · 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 생산량은 참조기 · 대구 · 꽃게 등의 어획 감소로 2009년(135,038톤)보다 2.7% 감소한 131,451톤을 생산하였다.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60~140톤급 어선으로 서 ·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 · 갈치 · 병어 · 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 · 가자미 · 도루묵 · 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해구 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 어획량은 87,086톤으로 전년(99,528톤)보다 12.5% 감소하였고, 2010년도 근해트롤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99,620톤으로 2009년(119,578톤)보다 16.7% 감소하였다.

연근해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근해장어통발, 연근해통발(어류 · 게류 · 고둥류), 근해문어단지로 구분된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붕장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08년도부터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근해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

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 · 일, 한 · 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2010년도에는 73,622톤을 생산하여 2009년(70,930톤)보다 3.8% 증가하였다.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으로 갈치 · 옥돔 · 아귀 · 복어 · 가자미 · 장어 · 볼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그물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대구, 홍어, 넙치 등의 어획량 감소로 2009년(16,614톤)보다 8.0% 감소한 15,277톤을 생산하였다.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 (2010/2009)
합 계	1,108,815	1,152,299	1,284,890	1,226,966	1,133,721	-7.6
대형선망	146,839	194,093	234,525	241,052	160,409	-33.5
대형기선저인망	95,971	76,290	65,159	63,737	64,327	0.9
중형기선저인망	23,790	28,996	34,979	36,922	40,844	10.6
근해채낚기	66,082	62,657	61,343	60,478	46,147	-23.7
안강망	74,496	72,553	76,278	74,197	78,492	5.8
권현망	142,618	108,934	150,394	116,464	157,720	35.4
자망	102,874	114,025	117,473	135,038	131,451	-2.7
근해트롤	108,386	99,009	106,219	119,578	99,620	-16.7
통발어업	63,533	75,043	68,727	70,930	73,622	3.8
연승어업	16,472	16,975	24,510	16,614	15,277	-8.0
마을 · 구획어업	77,447	87,470	100,664	82,237	76,445	-7.0
기타	199,307	216,254	244,619	209,719	189,367	-9.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어업생산통계, 2011년

3. 양식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어 국내 수산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예년보다 낮은 수온유지와 태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로 어류(넙치 · 조피볼락 · 돔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해조류(김 · 미역 등)는 양식작황 호조로 수확량이 늘어 전년도에 비해 3.2%가 증가한 1,355천톤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의 경우, 사육량의 감소와 저수온에 의한 성장지연, 태풍(곤파스)에 의한 시설물 파손 및 유실에 의한 출하가능 물량의 감소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어종별 생산량은 넙치가 40,825톤으로 51.1%를 차지하며, 조피볼락(우럭)은 20,918톤(26.1%) 생산되었다. 패류양식의 경우, 굴, 바지락 등의 생산량 증가로 2010년도에는 전년도 327천톤보다 8.9%(29천톤) 증가한 356천톤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굴이 268천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75.3%를 점유하였으며, 그 외 홍합(54천톤), 바지락(23천톤), 전복(6천톤)의 순서를 보였다.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1,385,804	1,381,003	1,313,355	1,355,000	103.2
어 류	소 계	97,663	99,006	109,516	80,110	73.1
	넙 치	41,171	46,432	54,674	40,925	74.9
	조피볼락	35,564	32,992	33,020	20,918	63.3
	기 타	20,928	19,582	21,822	18,267	83.7
패 류	소 계	478,646	343,704	326,544	355,699	108.9
	굴	321,276	249,976	240,911	267,776	111.2
	홍 합	98,121	67,442	55,035	54,440	98.9
	바 지 락	18,819	15,541	17,905	23,430	130.9
	전 복	4,350	5,146	6,207	6,228	100.3
	피 조 개	3,015	1,903	1,714	1,560	91.0
	기 타	37,415	3,696	4,772	2,265	47.5
해 조 류	소 계	792,953	921,024	858,659	901,672	105.0
	미 역	309,049	381,076	309,155	393,616	127.3
	다 시 마	250,049	285,221	306,183	241,322	78.8
	김	210,956	224,242	211,444	235,534	111.4
	기 타	22,851	30,485	31,877	31,200	97.3
기타수산 동물[1]		16,542	17,269	18,636	17,519	94.0

주 : 1)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쉥이, 오만둥이, 미더덕, 흰다리새우 등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1년

미역과 김 · 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2009년도(859천톤) 대비 5.0%(43천톤)가 증가한 902천톤을 생산하였다. 이 중 미역이 394천톤으로 44%를 차지하였고, 다시마는 27%인 241천톤, 김이 26%인 236천톤을 생산하였다. 기타 톳 · 파래 · 청각 등은 전년도 31.9천톤보다 2.7% 감소한 31.2천톤이 생산되었다. 한편, 기타 수산동물 양식은 우렁쉥이 · 오만둥이 · 미더덕 · 흰다리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전년(18.6천톤) 대비 6% 감소한 17.5천톤이 생산되었다.

4. 내수면어업

자원환경과 서기관 임남철

2010년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년도 30천톤에 비해 3.3%가 증가한 31천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 생산량이 10천톤 수준으로 전체의 33.1%, 양식어업 생산량은 21천톤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하였다. 특히 뱀장어는 현대식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24,843	26,760	29,180	30,071	30,982
어로어업	7,139	5,803	11,098	11,707	10,256
가물치	14	28	46	42	50
메기	214	149	232	218	88
미꾸라지	0	0	0	0	3
뱀장어	46	40	96	145	119
붕어	1,051	1,295	2,447	2,561	2,655
송어류	0	0	31	0	0
잉어	961	825	1,379	1,777	1,802
피라미	46	47	113	156	227
패류(재첩 등)	1,171	829	1,068	1,393	1,510
기타	3,636	2,590	5,686	5.415	3,802
양식어업	17,704	20,957	18,082	18,364	20,726
가물치	287	285	187	259	233
민물돔	272	798	388	336	251
뱀장어	7,966	10,557	6,480	6,621	7,902
잉어	320	269	492	224	200
향어	706	800	1,028	929	1,169
송어류	1,878	2,882	2,780	2,737	2,652
기타	6,275	5,366	6,727	7,258	8,319

자료 : 통계청 2010 어업생산통계, 2011년

5. 원양어업

원양정책과 사무관 구도형

1957년 참치 연승어선 지남호가 인도양에 출어하여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선단 규모 810척, 생산량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어선 척수와 생산량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생산량 감소는 전 세계적인 자원량[1] 감소 이외에도 국제수산기구 규제 및 연안국 입어조건의 강화 등에 기인한다.

2010년 원양어업 총 생산량은 592천톤으로 전년 612천톤 대비 3.2%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원양산 오징어의 최대 어장인 대서양 포클랜드와 페루 공해 수역에서의 생산량

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어종별로는 참치류가 320천톤(54.0%)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오징어 65천톤(11.1%), 명태 47천톤(7.9%), 꽁치 21천톤(3.6%) 등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어종의 생산 비율이 높았다.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8	2009	20010/2009
계	639,249	712,832	666,182	611,950	592,116	96.8
참 치 류	295,440	300,268	286,889	327,181	319,712	97.7
명 태	26,269	20,109	27,980	38,996	46,794	120.0
오 징 어	170,211	223,338	181,780	84,652	65,416	77.2
꽁 치	12,009	16,976	29,591	22,001	21,360	97.1
기 타	135,320	152,141	139,942	139,120	138,834	99.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원양산업통계연보, 2011년

제2절 국내수산물 수출 · 수입

1. 수 출

수출진흥팀 사무관 김상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불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 후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불로 감소한 이래 2008년까지는 11억불~14억불 내외의 정체를 보여 왔으나, 2010년도에는 17억불을 초과 달성하였다. 2010년도에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참치, 넙치, 김 등 주력품목의 수출호조에 기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600개 어획 대상 어종중 7%는 이미 고갈, 17%는 남획, 52%는 더 이상 어획량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141천톤이 증가(22%)하였고, 금액도 287백만불 증가(19%)하였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0.4%로 전년과 동일하다.

〈표 3-2-8〉 수산물 총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010/2009
국가총수출	371,489	419,083	361,200	466,383	129.1
수 산 물 (수출점유율(%))	1,226 (0.3)	1,455 (0.3)	1,511 (0.4)	1,798 (0.4)	119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1년

품목별 수출현황

2010년도 활어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넙치, 붕장어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8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신선냉장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9년 대비 10.5% 증가한 192백만불을 수출하였다. 또한 수출주력 품목인 냉동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 새우살, 전갱이 등의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9년 대비 19.7% 증가한 1,074백만불을 차지하였다.

〈표 3-2-9〉 품목별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0/200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비율)	금액(비율)
합 계	613,82	1,454,635	652,214	1,511,230	792,045	1,798,162	121.4	119.0
활 어	5,961	64,516	6,686	71,624	6,471	85,641	96.8	119.6
신선 · 냉장	27,139	151,525	30,744	174,345	30,129	192,678	98.0	110.5
냉 동	462,341	873,682	499,151	897,662	608,826	1,074,204	122.0	119.7
기 타	118,382	364,912	115,633	367,599	146,619	445,639	126.8	12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11년

국가별 수출현황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7.8%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09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제2위의 수출대상 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수출이 소폭 증가(10.3%)하여 제3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일본, 중국,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태국, 필리핀, 프랑스,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총 111개국이며, 국가별 비중은 일본 47.8%, 중국 12.9%, 미국 7.9%, 태국 7.1%, 뉴질랜드 4.0% 등으로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0〉 국가별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1,225,832	1,454,635	1,511,230	1,798,162	119.0
일 본	572,908	687,471	734,134	859,483	117.1
미 국	98,876	114,799	128,885	142,166	110.3
중 국	156,565	193,461	145,711	231,223	158.7
태 국	87,678	122,943	127,733	126,824	99.3
뉴 질 랜 드	68,293	60,623	70,461	71,915	102.1
스 페 인	58,655	40,474	41,437	55,491	133.9
대 만	17,540	18,734	18,208	22,314	122.6
홍 콩	11,331	9,546	12,963	27,980	215.8
이 탈 리 아	25,346	25,247	23,231	34,331	147.8
러 시 아	11,072	7,069	4,666	6,203	132.9
캐 나 다	7,065	8,848	11,818	15,383	130.2
멕 시 코	6,336	11,937	1,353	5,831	431.0
인도네시아	9,011	11,080	13,551	9,284	68.5
베 트 남	8,812	19,320	22,407	32,009	142.9
기 타	86,344	123,083	154,672	157,725	102.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2008년부터 소금이 수산물로 분류됨)

〈표 3-2-11〉 어종별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1,225,832	1,454,635	1,511,230	1,798,162	119.0
참 치	275,153	293,189	314,373	374,354	119.1
김	59,728	75,313	81,507	105,197	129.1
굴	40,145	46,260	42,247	66,057	156.4
넙 치	44,154	43,369	51,812	70,657	136.4
오 징 어	123,768	126,536	108,052	114,762	106.2
캐비아(대용)	13,097	16,691	24,526	30,397	123.9
붕 장 어	37,938	44,168	39,382	42,105	106.9
게 살	37,275	43,484	41,986	43,054	102.5
톳	24,525	36,379	28,904	29,662	102.5
미 역	17,667	20,584	16,811	19,039	113.3
한 천	10,784	10,261	8,004	9,279	115.9
바 지 락	12,662	19,219	34,763	42,960	123.6
전 복	15,040	20,997	33,751	36,820	109.1
삼 치	26,869	45,464	45,361	54,635	119.7
피 조 개	13,998	15,103	11,832	14,067	118.9
새 우	8,340	11,407	12,072	10,120	83.8
이 빨 고 기	13,471	15,808	23,437	28,505	121.6
전 갱 이	12,946	29,242	21,117	24,825	117.6
돔	21,250	14,155	17,551	20,242	115.3
새꼬리민태	13,281	16,689	13,967	20,624	147.7
기 타	408,741	510,317	539,775	640,841	118.7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 수 입

원양정책과 사무관 윤자영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증가, 1997년도 수입자유화의 영향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를 기점으로 수산물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이래 최근 7년간 연평균 182백만불씩 수입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0년도에는 국내경기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9.4%(563백만불) 늘어난 3,458백만불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국가 전체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율은 큰 변화없이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12〉 수산물 총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총 수 입	356,845	435,274	323,084	425,212	131.6
수 산 물 (수입점유율(%))	3,056 (0.9)	3,097 (0.7)	2,895 (0.9)	3,458 (0.8)	119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품목별 수입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0%를 점유하는 냉동품은 대체로 증가경향을 보여 왔으며,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2,084백만불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활어는 전년대비 46.2% 증가한 251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신선 · 냉장 수산물도 6.2% 증가하였다.

제품유형별 수입액 점유율을 보면, 냉동품(60%), 기타수산물(11%), 신선 · 냉장(9%), 조제품(8%), 활어(7%), 건조(3%) 등의 순이다.

〈표 3-2-13〉 품목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3,056,368	3,097,450	2,895,495	3,458,400	119.4
활 어	224,675	285,320	171,377	250,683	146.2
신선 · 냉장	408,278	313,504	284,904	302,771	106.2
냉 동	1,872,942	1,827,640	1,788,739	2,084,306	116.5
기 타	550,473	670,986	650,475	820,640	126.1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국가별 수입현황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31.7%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러시아, 베트남, 일본 순이다. 2010년도 국가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대만에서 각각 28.3%, 13.7%, 15.9%, 23.3%, 2.2%, 18.5%, 8.9% 증가하였다.

〈표 3-2-14〉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3,056,368	3,097,450	2,895,495	3,458,400	93.53
중 국	1,070,862	1,018,678	854,256	1,096,264	128.3
러 시 아	423,392	384,434	435,537	495,267	113.7
일 본	273,477	224,990	195,063	226,204	115.9
베 트 남	267,964	305,841	305,151	376,338	123.3
미 국	144,242	140,273	123,453	126,179	102.2
태 국	149,270	113,910	85,141	100,957	118.5
대 만	83,342	85,479	88,136	96,041	108.9
칠 레	80,050	77,369	81,407	76,957	94.5
캐 나 다	52,544	46,431	47,045	52,950	112.5
노 르 웨 이	61,615	53,401	69,571	97,108	139.5
페 루	37,416	46,316	40,259	41,514	103.1
인도네시아	55,280	76,445	67,470	63,970	94.8
인 도	21,497	24,524	32,693	48,581	148.6
필 리 핀	21,729	19,429	15,222	17,430	114.5
영 국	21,543	21,705	18,227	18,937	103.9
기 타	292,145	458,225	436,864	493,703	113.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국가별 수입액 점유율은 중국(31.7%)에 이어, 러시아 14.3%, 베트남 10.9%, 일본 6.54%, 미국 3.64%로 상위 5개국의 수입액 합계가 약 67.0%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66.0%에 비해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3-2-15〉 어종별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합 계	3,056,368	3,097,450	2,895,495	3,458,400	119.4
명 태	363,836	326,488	330,383	416,233	125.9
생 태	246,759	211,255	188,273	217,184	115.3
조 기	164,644	143,654	110,780	150,927	136.2
갈 치	109,767	89,813	98,202	107,986	109.9
오 징 어	86,192	75,751	62,822	90,063	143.3
꽃 게	82,249	66,222	54,269	45,626	84.1
낙 지	125,526	128,506	118,480	154,129	130.1
어 란	70,231	49,811	63,429	67,606	106.5
아 귀	77,425	74,740	57,597	82,664	143.5
새 우 살	83,003	87,033	94,293	106,037	112.5
참 치	93,633	115,294	111,307	89,278	80.2
돔	58,464	66,558	50,008	46,800	93.6
연 어	71,509	63,693	67,317	68,917	102.4
문 어	6,191	4,362	9,339	9,556	102.3
게	49,033	39,243	41,791	40,384	96.6
캐 비 아	34,483	25,638	14,934	19,003	127.2
고 등 어	56,609	34,663	45,431	72,910	160.4
꽁 치	36,509	36,517	46,431	46,178	99.9
쥐 치	38,113	37,963	41,912	42,168	100.6
대 게	42,888	33,627	29,702	23,213	78.2
기 타	1,159,304	1,386,619	1,259,028	1,600,863	127.2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1. 수 급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2010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동향은 수입 증가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1.0% 증가한 5,993천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3,639천톤을 소비하였고, 1,751천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603 톤은 2011년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1,134천톤, 천해양식어업 1,371천톤, 원양어업에서 590천톤 등 3,126천톤이 생산되었다. 국내소비는 10.6%로 감소했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339천톤과 전년도 재고량 528천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3-2-16〉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	생산	2,519	2,714	3,032	3,275	3,360	3,182	3,126
	수입	2,477	2,557	2,646	2,604	2,135	2,186	2,339
	전년재고	573	531	512	575	618	567	528
합계		5,569	5,802	6,190	6,454	6,113	5,935	5,993
수요	국내소비	3,922	4,169	4,568	4,625	4,280	4,071	3,639
	수출	1,116	1,121	1,047	1,211	1,266	1,336	1,751
	차년이월	531	512	575	618	567	528	60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소 비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2009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49.8kg으로, 전년보다 9.3% 감소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44.9	48.9	49.5	56.6	56.5	54.9	49.8
어 패 류	38.5	41.1	39.9	42.1	42.1	39.1	35.4
해 조 류	6.4	7.8	9.6	13.0	14.4	15.8	14.4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0년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46.11	46.66	45.43	48.14	48.46	46.71	46.45
축 산 물	27.54	26.61	26.29	27.39	28.59	28.30	29.93
어 패 류 (점유율)	18.57 (40.3)	20.05 (43.0)	19.14 (42.1)	20.57 (43.1)	19.86 (41.0)	18.41 (39.4)	16.52 (35.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0년

3. 가 격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2010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 해면어업 등의 조업부진으로 전반적으로 부진세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생산자물가(도매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 대중성 해면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소비자물가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수산식품 소비자물가	100.0	100.8	100.9	106.4	118.8	132.2
신선어개류	100.0	100.1	100.4	106.7	121.2	134.5
해조류	100.0	109.6	110.1	106.8	–	–

주 : 기준년도(2005년) 대비 등락률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2011년

2010년도 수산식품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등의 경우, 생산부진 및 소비확대로 전년대비 각각 7.7%, 12.3%, 16.1%, 33.9%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1. 어 황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강수경

해역별

2010년 초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 50m 수층의 수온은 평년에 비하여 0.06~1.35℃ 낮게 나타났다. 동해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저수온의 영향으로 9월 중순까지는 평년비 저조하였으나, 어군의 남하회유가 시작되는 9월 하순 이후 동해안에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평년수준의 어황을 회복하였다. 봄철 북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하는 꽁치유자망어업은 거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년비 저조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한편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대구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남해에서는 대형선망, 멸치어업, 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다. 대형선망의

어황은 남해안의 저수온 현상으로 고등어 어군의 내유량이 감소하여 평년비 저조하였다. 멸치어업은 멸치유자망의 경우 평년비 순조로웠으며, 기선권현망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형트롤은 살오징어, 갈치류 및 멸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평년비 다소 저조한 어황을 기록하였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유자망, 저인망어업이 참조기, 갈치,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다소 저조하였다.

어종별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봄과 여름철에는 남해와 제주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나, 가을철에는 서해 및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다. 저수온현상으로 고등어 어군의 북상이 늦어지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8월까지의 어획량은 평년비 51%로 저조하였다. 이후 남하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져 어획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고등어의 어황은 평년비 저조하였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및 유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 및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최근 낮은 자원량으로 인해 어획이 저조하였던 말쥐치는 2009년 가을 이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어황도 평년비 순조로웠다.

갈치는 상반기에는 평년수준의 어황을 유지하였으나, 가을 이후에는 어획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평년비 저조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참조기는 봄철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웠으나, 6월 이후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비 저조하였으나,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도루묵은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명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살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및 서해 일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주로 봄철에 동해 연안에서 어획되는 꽁치의 어황은 평년비 저조하였다.

2. 자원동향

연근해 어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이재봉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10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소라,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등 11종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붉은대게, 꽃게, 참홍어의 자원동향은 최근 증가경향에, 키조개, 개조개, 대게의 자원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었으며, 고등어, 전갱이, 제주소라, 오징어, 도루묵은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종별 자원수준은 고등어와 오징어는 높은 자원수준에 있으며, 키조개, 개조개, 도루묵, 참홍어는 낮은 자원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양 어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두남

원양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6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회의 및 관련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국제옵서버 31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10년에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총 16척 16명이 승선 조사하였으며, 이 중 의무 승선조사는 남빙양 저연승 3척 및 트롤 2척, 남서대서양 저연승 2척 및 트롤 1척, 북태평양

트롤 2척, 대서양 연승 1척이었다. 과학 승선조사는 인도양에서 저연승 1척, 남동대서양에서 트롤 1척 및 기니아 근해에서 트롤 1척을 이용하여 각각 어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다랑어관련 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연승조사 2건을 실시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의 분석으로 어업대상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연안어장의 오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심정희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 외해와의 해수교환이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해안은 수심이 낮으며 반폐쇄적인 내만들이 산재하고 있어 해수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생산성이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양식어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 서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은 대규모 임해공업단지와 도시가 위치하여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조간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생산성 역시 높은 해역이나,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상 담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지속적인 연안개발로 해양환경의 변화가 큰 해역이다. 2010년 조사한 해수 중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수질) 상태를 평가하였다.

동해 연안은 영일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해양환경기준 I등급(COD기준, 1㎎/L 이하) 수준의 양호한 수질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항만 중에서는 속초 청초항에서 해역수질기준 III등급(COD기준, 2㎎/L이상~4㎎/L이하)을 나타내어 지속적인 오염 감시가 필요하다.

남해 연안은 비교적 서쪽에 위치하는 고흥연안부터 진도연안에 이르는 해역에서 해양환경기준 I등급을 나타낸 반면, 동쪽에 위치하는 낙동강하구부터 여자만에 이르는 해역은 대체적으로 해양환경기준 II등급(COD기준, 1㎎/L이상~2㎎/L이하)을 나타내었다. 부산 신항, 마산항, 거제 옥포항

등이 위치하는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 해역은 해양환경기준 III등급 수준을 나타내어 지속적인 오염 감시와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연안 중 함평연안에서 신안연안에 이르는 남쪽해역은 해양환경기준 I등급의 양호한 수질 상태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공단 등이 많이 위치하는 북부해역(인천연안~군산연안)은 해양환경기준 II등급을 나타내었다. 도시 및 산업화시설이 밀집한 시화호, 보령항, 평택항, 목포항 등은 해양환경기준 III등급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해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연안은 전해역에서 해양환경기준 I등급 수준의 양호한 수질 상태를 나타내었다.

해저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빈산소 수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진해만, 마산만, 행암만과 환경관리 해역인 부산, 시화호, 광양만, 그리고 천수만 등의 해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g.d,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다. 그 외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조 발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임월애

2010년 적조발생은 총 21건으로 무해성 18건,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1건, 챠토넬라(*Chattonella antiqua*) 2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이후 여름철에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대규모 규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9월 17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505~1,030 cells/ml로 3일간 발생하고 9월 20일 완전 소멸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 중 가장 단기간 국지적으로 발생한 기록이다.

2010년도 여름철에 코클로디니움 유영세포는 남해안 전해역에서 낮은 밀도로 출현하였으나 대증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7월의 집중강우와 8~9월의 낮은 일조량으로 인해 평년에 비해 7월 저수온과 8월 저염분이 발생되어 코클로디니움 밀도증가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파리의 대량 출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윤원득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는 2010년에 소량 관찰(6개체/10,000m^2)되었으며, 수산업의 피해도 2009년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안성 저독성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aurita*)는 2009년과 비슷한 양이 출현하였으며, 시화호, 새만금호, 마산만에서 2010년 5월부터 대량 출현하여 8월말까지 지속하였다. 새만금호의 내측에서 발생한 보름달물해파리의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에 유생 및 유체의 구제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약 531톤의 해파리를 수거, 처리하였다.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1. 세계 수산물 생산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08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59,113천톤으로, 2007년도의 156,372천톤보다 2,741천톤(1.8%)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57,826천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Indonesia)는 전년보다 9.0% 증가한 8,794천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7,583천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페루, 필리핀, 미국, 칠레, 베트남, 태국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도의 3,275천톤보다 76천톤(2.3%)이 증가한 3,351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0〉 세계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톤, %)

순 위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2007년
1	중 국	52,466	54,265	56,161	57,826	103.0
2	인도네시아	6,841	7,308	8,064	8,794	109.0
3	인 도	6,658	7,014	7,308	7,583	103.7
4	페 루	9,419	7,049	7,261	7,419	102.1
5	일 본	5,750	5,684	5,596	5,541	99.0
6	필 리 핀	4,168	4,414	4,717	4,968	105.3
7	미 국	5,474	5,377	5,296	4,855	91.6
8	칠 레	5,452	5,303	4,996	4,809	96.2
9	베 트 남	3,397	3,664	4,316	4,584	106.2
10	태 국	4,119	4,106	3,859	3,831	99.2
:	:	:	:	:	:	
12	**대 한 민 국**	**2,714**	**3,068**	**3,275**	**3,351**	**102.3**
세계 총 생산량		151,149	152,261	156,372	159,113	101,7
비 율	한국 / 세계	1.8%	2.0%	2.1%	2.1%	

자료 : FAO, Fishstat Plus(Total Fishery Production 1950-2008)

2. 세계 수산물 교역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8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101,983백만불로 2007년도 수출액 93,574백만불에 비해 8.9%가 증가하였다. 나라별 수출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9.3% 증가한 10,114백만불로 1위, 노르웨이가 6,936백만불로 2위, 태국이 6,532백만불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88백만불 보다 18.2%가 증가한 1,286백만불로 25위에 머물렀다.

〈표 3-2-21〉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불, %)

순 위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2007년
1	중 국	8,968	9,250	10,114	109.3
2	노 르 웨 이	5,503	6,228	6,936	110.3
3	태 국	5,266	5,708	6,532	114.4
4	덴 마 크	3,986	4,128	4,601	111.4
5	베 트 남	3,372	3,783	4,550	120.2
6	미 국	4,143	4,436	4,463	100.6
7	칠 레	3,556	3,677	3,930	106.8
8	캐 나 다	3,659	3,711	3,706	99.8
9	스 페 인	2,848	3,230	3,465	107.2
10	네 덜 란 드	2,811	3,280	3,394	103.4
11	러 시 아	2,120	2,363	2,618	110.8
12	인도네시아	1,957	2,100	2,473	117.7
13	독 일	1,821	2,275	2,471	108.6
14	페 루	1,770	1,962	2,422	123.4
15	영 국	1,940	2,201	2,119	96.2
16	아이슬란드	1,811	2,028	2,089	103.0
17	프 랑 스	1,672	1,926	2,011	104.4
18	스 웨 덴	1,594	1,711	1,948	113.8
19	에 콰 도 르	1,335	1,399	1,754	92.3
20	일 본	1,410	1,662	1,698	102.1
:	:	:	:	:	:
25	**대 한 민 국**	**939**	**1,088**	**1,286**	**118.2**
세계 총 생산량		86,086	93,574	101,983	108.9
비 율	한국 / 세계	1.0	1.1	1.2	

자료 : FAO, Fishstat Plus(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8)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107,127백만불로서 전년에 비하여 9.2%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14,947백만불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여 1위, 미국이 14,135백만불로 2위, 스페인이 7,101백만불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3,090백만불에서 2008년에는 2,928백만불로 6.3% 감소하여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2〉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불, %)

순 위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2007년
1	일 본	13,970	13,184	14,947	113.3
2	미 국	13,271	13,631	14,135	103.7
3	스 페 인	6,359	6,980	7,101	101.7
4	프 랑 스	5,069	5,366	5,835	108.7
5	이 탈 리 아	4,716	5,143	5,453	106.0
6	중 국	4,125	4,511	5,143	114.0
7	독 일	3,738	4,278	4,501	105.2
8	영 국	3,713	4,140	4,220	101.9
9	덴 마 크	2,838	2,887	3,110	107.7
10	**대 한 민 국**	**2,752**	**3,090**	**2,928**	**94.7**
11	네 덜 란 드	2,283	2,614	2,919	111.6
12	스 웨 덴	2,027	2,530	2,764	109.2
총 수입량		90,051	98,038	107,127	109.2
비 율	한국 / 세계	3.0%	3.1%	2.7%	

자료 : FAO, Fishstat Plus(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8)

제4편
2010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4장 수산업 · 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살기 좋은 어촌 개발
제6장 수산물 생산 · 관리 · 공급체계 개선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

제1장 총 론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태훈

서 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 · 일 어업협정」 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 · 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 · 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 · 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출범한 WTO DDA 협상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7% 수준인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도 DDA 협상결과 약 6%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EU,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와 맞물려 수산물 관세는 더욱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배출 경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탄소 감축 의무가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업은 어선을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유류소비가 많아 탄소경감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

러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그 간 매립 · 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 등에 힘입어 2006년도부터 300백만톤 수준을 회복하여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온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고수온 피해 등으로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반면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 · 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 · 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 · 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新수산 정책 추진

2008.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부처 출범을 계기로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9년도에는 '新수산 정책' 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산이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단이 유사한 농업과 통합되고 식품산업도 보강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족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를 총괄하는 통합부처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농업과 잘 조화되고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수산발전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간의 수산정책이 어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어업인의 고질적인 민원제기가 반복되는 등 어업인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수산행정이 미흡한 데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실사구시의 수산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0년도의 '新수산 정책' 은 기존의 수산정책에 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자율 · 자립 · 자강이라는 3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자율과 어업인, 어촌경영체 및 수협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립과 수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자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어업인의 희망과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철저한 현장 위주의 정책이다.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느끼는 고충이 어떤 것인지,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셋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6대 전략과제 및 3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포럼과 전문가 미팅 등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시행된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에 '30대 프로젝트' 를 반영하여 新수산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농어업 농어촌 비전 2020' 과 연계하여 수산분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1년도에는 新수산 정책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미래 수산업의 생존을 위해 수출과 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차세대 新수산 성장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황, 사무관 이병웅 · 주두만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산업 여건은 동북아 EEZ 체제 개편으로 한 · 일, 한 · 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전통적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과잉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사업 노력에 힘입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수산자원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잉어획이 계속될 경우에는 회복세가 둔화되고 수산자원의 감소도 우려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정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회복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조성, 자원회복 및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 · 어종별 과학적인 조사 · 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 · 지자체 · 어업인 · 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대상자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회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 · 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 · 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수산자원회복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 · 공포(2009.4.22, 시행일 2010.4.23)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0.4.23.)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5.31.)을 제정하였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특),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하고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을 추가하고, 2009년도에는 갯장어(남해), 갈치(남해) 등 2종을 추가하여 총 12종으로 대상어종을 확대하였다.

한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 · 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 · 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10년도 TAC 사업은 고등어 · 전갱이 · 붉은대게 · 개조개 · 키조개 · 제주소라 · 대게 · 꽃

게 · 오징어 · 도루묵 · 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17천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약 1,124여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였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 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배분량의 할당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 도에서 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까지 판매장소를 117개소로 확대하였고,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 · 도에는 TAC 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 제도의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할 계획이다.

〈표 4-2-1〉 2010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 상 업 종	대상어종	TAC	비 고
합 계		417,30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69,000	'10. 1. 1~'10. 12. 31
	전 갱 이	20,000	〃
근 해 통 발	붉은대게	31,000	〃
근해통발 · 근해자망	대 게	1,300	'09. 11. 1~'10. 5. 31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2,100	'10. 1. 1~'10. 12. 31
	키 조 개	2,700	〃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1,500	'09. 9. 1~'10. 5. 31.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 게	8,000	'10. 1. 1~'10. 12. 31
대형선망 · 동해구트롤 대형트롤 · 근해채낚기	오 징 어	180,000	'10. 1. 1~'10. 12. 31
동해구기저 · 동해구트롤	도 루 묵	1,500	'10. 1. 1~'10. 12. 31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	참 홍 어	200	'10. 1. 1~'10. 12. 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견실시공의 정착, 해역별 · 어종별 ·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동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탄소 저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조류를 녹색성장의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표 4-2-2〉 시 · 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 ha)

구분 \ 연도	1971~2009	2010	누 계
합 계	206,500	6,170	212,670
부 산	2,658	72	2,730
인 천	10,551	200	10,751
울 산	2,370	56	2,426
경 기	4,681	192	4,873
강 원	23,084	200	23,284
충 남	17,347	300	17,647
전 북	14,365	800	15,165
전 남	42,673	900	43,573
경 북	23,128	1,340	24,468
경 남	35,886	200	36,086
제 주	29,757	1,910	31,66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사업비 32,833백만원을 투입하여 약 6,170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약 10,518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 · 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갯녹음(백화) 발생어장에 국비 15,000백만원을 투입하여 250ha의 바다 숲(해중림 포함)을 조성하였다.

●●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종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였으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2009년부터 56종(해면43종, 내수면 13종)으로 품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1단계('07～'09/ 넙치 등 4종)로 실시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결과 넙치 2.61배, 전복 2.97배, 볼락 3.8배, 다슬기 1.6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는 '10~'12까지 계획으로 감성돔, 강도다리, 꽃게, 해삼을 대상으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종묘방류 효과조사 및 대상 품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바다목장 조성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완공되었고, 2001년도 추진한 여수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 완공예정이다. 2013년까지 3개소(울진, 태안, 제주)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 레저를 접목한 해역별 테마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작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하여 2010년에는 179억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되는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10년부터 체험관 건립 설계, 수중해양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12년 완공계획이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연안 시 · 군 · 구 68개소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50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 까지) 20개소, 2단계(2012~2020년까지) 30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2009년 12개소에서 2010년 태안, 서천, 진도, 영덕, 울산 등 5개소가 추가되어 총 17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연안 해역에서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

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 · 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 · 발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 · 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 ·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 ·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으로 출범할 예정(2011.1.1)인 '수산자원사업단' 에서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고 연구 · 개발 · 보급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유어산업 육성

자원환경과 사무관 유원상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 선용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레저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 레저산업인 낚시 역시 그 향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약 573만명(민물낚시 378만명, 바다낚시 195만명)으로 추정되는 낚시 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 산업으로서 낚시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낚시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더불어 낚시 산업으로 인한 위험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로 인한 어획량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산자원 고갈 우려

〈표 4-2-3〉 국내 낚시 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1년에 한두 번	1년에 서너 번	1년에 대여섯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자료 : 한국수산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년

가 대두되고 있다. 쓰다 남은 납추,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낚시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다 꾸준히 낚시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2-4〉 낚시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단위 : 천톤, %)

구 분	추정인구수 (천명)	평균출조횟수/년	총출조횟수 (천회)	1회당조획량 (kg)	조획량 (톤)
잠재낚시인구	3,222	3.5	11,277	2.2	24,809
일반낚시인구	2,097	25	52,425		115,335
전문낚시인구	411	100	41,100		90,420
총 낚 시 인 구	5,730	128.5	104,802		230,564

자료 : 한국수산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년

❖ 추진내용 및 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연계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2011.3월 예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였다.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낚시터업의 허가 · 등록 제도의 도입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2.9월 시행예정)은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 및 낚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낚시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 내수면산업 육성

자원환경과 서기관 임남철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추세에 있다. 점차 양식수산물의 양식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낚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표 4-2-5〉 낚시어업권 현황

(단위 :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허 가	522	498	492
신 고	175	211	264
합 계	697	709	75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추진내용 및 성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 ·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시설 지원, 토종종묘보급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 · 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위하고자 2010년도에 5개도 15개 시 · 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소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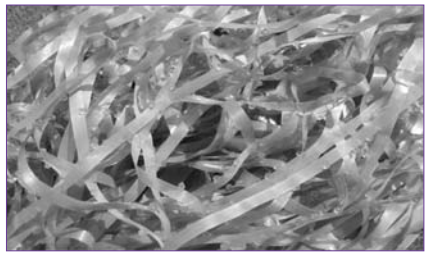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지원

회 · 매운탕 등 1차 소비에 한정된 내수면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훈제, 분말, 죽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민물고기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어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품산업 육성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충청남도 논산에 메기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기존에 운영중인 가공공장의 가동상황을 보아가며 뱀장어 등의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토종종묘보급사업 추진

수입산 종묘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어류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가격우위를 점하고 양식어가에 저렴한 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식 어류의 안정된 가격과 생산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민물고기를 접하고 어업인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우선 미꾸라지 종묘생산을 위한 개발을 시작으로 참게, 붕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물고기를 키우면서 친환경

농업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2-2〉 논 생태 양식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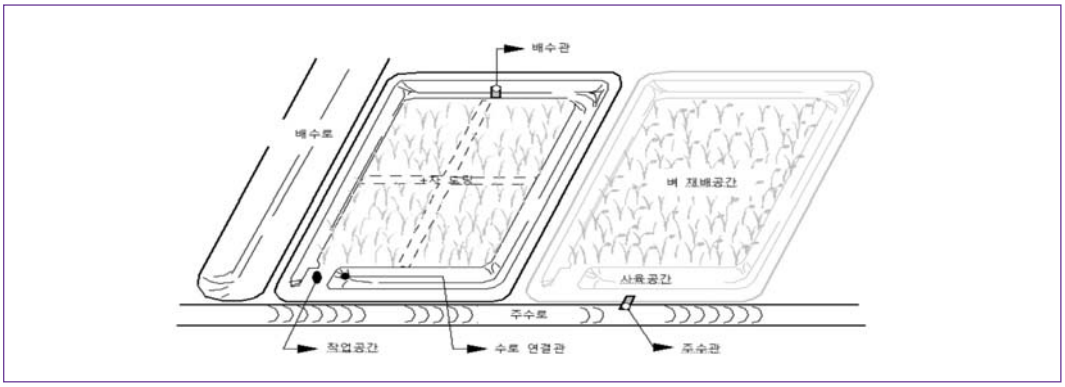

2007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강 · 하천의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내수면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수면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더 고품질의 양식어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민물고기의 멸종위기까지 초래하였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선호한 민물고기 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보양식인 민물고기 명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웅

추진배경 및 개요

연안생태계 및 수산생물의 산란 ·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1975년부터 경남 · 전남 · 충남 등 10개 만(21개 시 · 군) 4,204㎢(육지부 1,243, 해면부 2,625)에 해면과 인접한 육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30여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06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2010년 말 현재 육지부 중 70.3%인 875㎢를 해제하였다.

〈표 4-2-6〉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현황(2010년)

(단위 : ㎢)

구 분	계	해 수 면			내수면
		계	육지	해면	
지 정	4,185	3,849	1,263	2,586	336
존 치	3,231	2,895	1,236	2,526	33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완화, 국가 · 지자체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 및 관리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존 개발위주의 정책방향이 환경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자원환경과 사무관 서영일

추진배경 및 개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정적 어업생산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시범사업 당시 63개소였으며,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시행 10년차인 2011년 4월 현재 참여공동체수가 893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 · 심화 단계로 도약하였다.

〈표 4-2-7〉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단위: 개소,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공동체(개소)	659	758	863
마 을 어 업	341	391	438
양 식 어 업	78	80	85
어 선 어 업	115	135	156
복 합 어 업	102	124	143
내 수 면 어 업	23	28	41
참여어업인(명)	50,728	56,100	60,90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191개소에 232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 공동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관리어업 분쟁 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 · 지역 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여 2010년까지 27건의 분쟁을 해결, 자율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공동체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 만의 지도 ·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컨설턴트(10명)로 하여금 공동체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지도자협의회 활동(2회),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들의 리더쉽 함양을 위한 권역별 광역워크숍(6회),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 교육, 우수공동체 견학 및 미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유럽 및 일본)의 어촌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근 2개년('08~'09)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28백만원, 2009년 1,183백만원으로 소득이 매년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자원 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가, 일정크기 이상 채포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및 공동판매 등으로 어가소득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바다 낚시터, 체험어장 운영 및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축제 행사 등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어업외 소득도 증대하였다.

〈표 4-2-8〉 2011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863	21	40	18	29	71	16	74	41	258	87	163	45
육성사업	지원수	1,222	31	45	30	39	137	22	95	84	329	131	203	76
	사업비	1,452.9	33.4	53.2	30.3	47.9	152.5	15.8	136.1	106.8	398.6	168.1	234.1	76.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평가 및 향후계획

정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참여어업인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분쟁도 스스로 조정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숙단계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마을어업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인의 약 4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선어업이나 복합어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을 전체어촌계의 60%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정책과 사무관 류민석

❖ 추진배경 및 개요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 · 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조 5,337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6,642척을 감척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6%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 · 식물의 주산란 · 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감척사업으로 연안

어선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5,253억원을 투입하여 14,066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641억원을 투입하여 1,268척을 감척하였다. 또 한 · 중 · 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척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근해어선척수 : ('00) 68,629척 → ('10) 50,757척으로 26.1% 감소
* 자원량 (만톤) : ('90)835 → ('94)801 → ('00)768 → ('05)783 → ('10)851
* 어획량 (만톤) : ('90)154 → ('94)149 → ('00)119 → ('05)110 → ('10)113

척당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척당 생산량이 17.3M/T이었으나 2010년에는 22.4M/T으로 29.5% 증가하였으며, 척당 어로수입은 2000년도 3,39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7,712만원으로 127.5%로 대폭 증가하였다.

* 척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척당 생 산 량 : ('00) 17.3M/T → ('10) 22.4M/T
  · 척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원 → ('10) 77.1백만원

평가 및 향후계획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5,337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6,642척을 감척하였으며, 감척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척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구조개선 참여 촉진 및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6.29)함에 따라 어선감척, 어업종류의 통합 · 변경, 어선현대화사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소요

(단위 : 척, 백만원)

구 분	등록척수('10) (A)	적정어선척수	감척대상 어선현황		
			척수(B)	예상비용	비율(B/A)
합 계	47,521	39,903	7,618	4,741	16.0
연안어선	44,646	37,562	7,084	2,904	15.9
근해어선	2,875	2,341	534	1,837	18.6

주 : 적정 감척 척수 : 연구용역(연안 '10년, 근해 '07년) 이전 실제 감척수 + 연구용역 이후 필요 감척수, 구획어업 등 3,236척 제외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어업정책과 사무관 장묘인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선척수는 약 78천여척이다. 이 중 자망 · 통발어업의 어선척수는 전체어선의 36%인 28천여척으로 연중 조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30,000여 톤의 어구를 소비하고 있다. 자망 · 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 · 산란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3-1〉 유실된 통발 · 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이에 폐어구 · 폐어망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에서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소요되는 나일론 재질의 어구 대신에 수중에서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표 4-3-2〉 유실률이 높은 어업별 평균 어구사용량

구 분	통 발[1]	자 망[2]	안강망	정치성어망
어선척수	7,573	17,859	809	4,936
어구사용량 (척당)	26,505천개 (3,500개)	178,590㎞ (10㎞)	4,045통 (5통)	4,936통 (1통)

주 : 1) 통발은 척당 연간 250~500개 유실(약 2~4백만 개) 어구사용량의 7~14%
2) 자망은 척당 연간 40~60폭1) 유실(약 1,900톤, 서울~부산 100회 왕복거리)

❖ 추진내용 및 성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기존 나일론 어구대신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어구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어업인들의 친환경 의식 제고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2007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 대게자망어업 6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3억원을 지원하여 대게자망, 붕장어통발어업 212척, 2009년도에는 39억원을 지원하여 대게 · 꽃게 · 조기자망, 붕장어 · 연안통발어업 253척, 2010년도에는 40억원을 지원하여 대게 · 꽃게 · 조기 · 대게자망어업 319척으로 생분해성어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체제 구축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인 참여율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대상어종별 생분해성 어구 12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폭 : 자망의 수량단위(보통 높이 2m, 완성된 길이 70m, 무게 2㎞)

〈표 4-3-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척, 개수)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친환경어구 시범사업 투자계획	20	43	39	40	43	43
친환경어구 사용 척수	60	200	250	300	350	350
친환경어구 시범사업 지원시도	1	2	5	5	6	7

평가 및 향후계획

생분해성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자망과 대등하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산생물의 산란 · 서식장 보호 및 유령어업 발생 저감으로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수중에서 완전 분해되므로 폐어구 수거 및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분해성 대게자망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근해어업 총조사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 연안에는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법도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 해역별 다양한 해양환경에 따라서 현행법으로 적정한 어업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간, 업종 간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산자원이용과 관련한 어업별 건의도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현실이다. 이에 연근해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선감척, 자율관리, 총어획허용량제도(TAC),

수산자원회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어업자원과 어업경영 실태파악 등을 위한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지난 1997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1997년 1차보고서, 2004년 2차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후에는 「수산업법」제75조로 이관하여 동 법률에 따라 2010년도에 제3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매 5년마다 동 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총조사는 변화하는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사용어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근해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어업실태와 자원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업구조개선 등의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23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시도별 · 어선규모별 · 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 조업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 · 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조성, 생식소 숙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의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시하여 어업생산을 위한 정책과 어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연근해어업 총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후,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TAC(총허용어획량) 적용, 어업구조 개선(감척사업 등) 등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주요 어종별 어획강도 및 어획수준에 따라 허가정수를 재설정하고, 동 조사의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AC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어업의 어구 · 어법의 발달에 따른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어업현안 발생(자원량 증감 논란 등)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한 · 일, 한 · 중 어업협정, FTA · DDA체결 등 국제 어업관련 협상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어업정책방향 설정의 근간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4.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 이세오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 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률 저감방안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코자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별 · 해역별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기후변화대비 탄소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실태파악 및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는 낭장망, 연안개량안강망, 기선권현망, 통발, 자망, 정치망어업 혼획 등 어업실태조사와 해역별 · 업종별 혼획, 치어포획, 어획물 해상투기 실태조사,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 국제어업 정책동향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조사를 토대로 자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 · 서 · 남해 지리적 어장환경과 특성이 다양하고 지역여건과 해역특성에 따라 어구와 어법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제도에 의해 운용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성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 · 구획 · 마을 · 정치망 어업을 대상으로 지역 및 해양환경 특성에 맞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이후 어업분쟁 및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이양을 통해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 지자체, 관련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면밀한 연구검토를 추진하였고, 동 연구결과에 대해 수산업법 제88조에 근거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안건으로 상정('10. 12월)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최종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어업제도개선협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심의를 통해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와 생태계보호를 위해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화되어 선진국은 1990년대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협약하고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높은 10개국에 포함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아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탄소배출 실태를 2010년부터 조사를 통해 이행준비에 돌입하여 2013년까지 어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은 2012년까지 연구조사를 추진하여 치어 · 혼획율 저감을 위한 어구 · 어법을 개발하고, 어구 · 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관련업체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어업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및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 실태파악 및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5.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업 41개 업종 약 54천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수산자원의 선점을 둘러싼 어업경쟁으로 업종 간,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해역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 간 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 동 · 서해어업관리단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동해 '09.10.13, 서해 '09.11.3)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그림 4-3-2〉 어업 분쟁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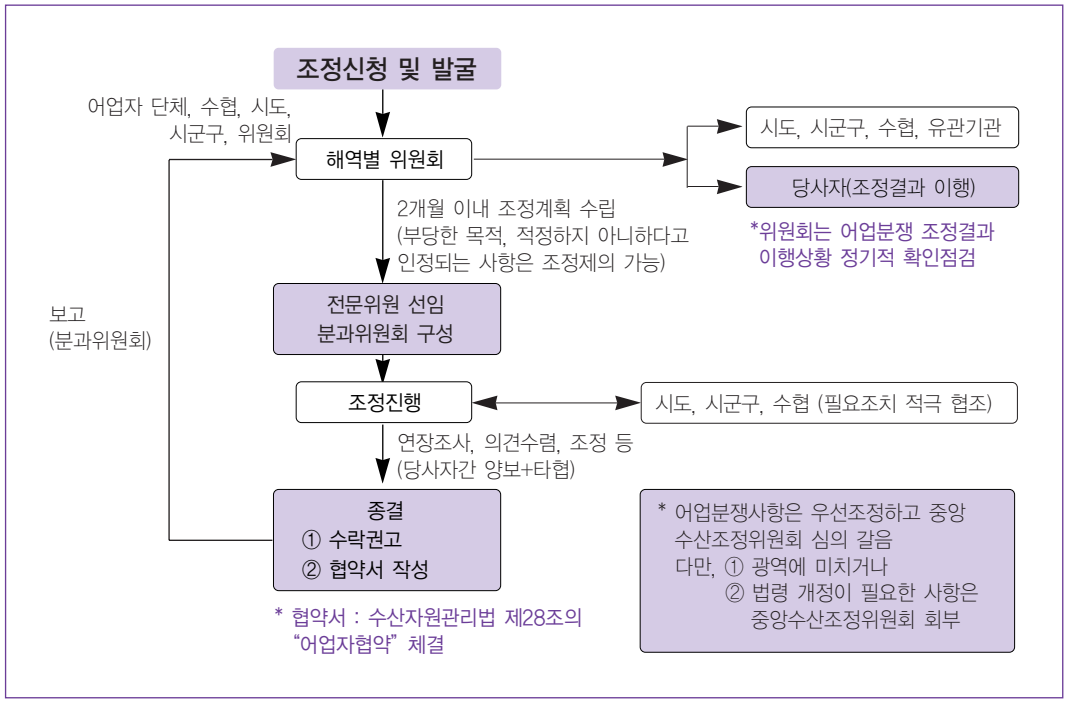

2009년도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분과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해 2건은 조정완료, 3건은 종결처리 되었고, 나머지 5건은 계속적으로 조정중에 있다.

●● 효율적인 분쟁조정 노력 경주

조정중인 분쟁안건의 조정방향 설정 및 Know-how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 원활한 어업분쟁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훈령 개정 3회, 본 위원회 5회, 분과위원회 10회, 현장방문 간담회 30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진도해역 새우조망어업과 자망어업자간 조업구역 분쟁' 및 '태안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과제에 대해 분쟁조정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11개 시 · 도 담당공무원, 수협,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장교육 실시 및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출범 초기인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홍보 및 분쟁조정 안건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은 해역별로 발생되고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없이 설치되어 조정결과를 담보할 권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내실화를 통해 효과적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2절 어업질서 확립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지도안전과 사무관 하두식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적으로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유가 및 어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업종간 지역간 조업경쟁과 자원남획형, 선형 · 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 · 일간은 조업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한 · 중 간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 입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어패류 산란기와 성육기인 5, 10월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일선 지자체 및 수협에 배포하고,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하여 불법어업예방 공익광고 캠페인과 다큐멘터리 등을 송출 · 방영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단속을 강화하고, 한 · 중 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정부로 하여금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어업교섭 시 조업조건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표 4-3-4〉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 척)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3,015	3,773	4,449	4,868	5,085
대형기저	48	113	60	167	35
중형기저	30	7	41	10	30
소형기저	61	42	18	9	39
잠 수 기	73	67	120	154	80
기선형망	194	203	136	261	91
기 타	2,609	3,341	4,074	4,267	4,810

〈표 4-3-5〉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 척)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522	494	432	381	370
영해침범	23	26	12	27	31
특정금지구역침범	38	47	32	34	52
무 허 가	133	70	76	91	91
조업조건위반	328	351	312	229	196

평가 및 향후계획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형태가 기업화 · 흉포화되고, 허가어선의 불법어업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간 · 업종간 조업분쟁,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와 생계형 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 또한, 일본 EEZ에서의 우리어선에 대한 일측 대응이 강화되고, 우리 EEZ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EEZ에서의 우리어선 안전관리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선진 어업질서 구축과 지도단속 내실화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지도안전과 사무관 전길권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단속 및 우리 EEZ내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하여 1966년부터 1999년까지 517억원을 투입 20척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나 1994.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9.1월 한 · 일 어업협정 및 2001.6월 한 · 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관할수역이 영해에서 EEZ까지 광역화됨에 따라 관할수역은 88천㎢에서 361천㎢로 4.1배, 활동거리는 1,143마일에서 1,952마일로 809마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어업지도선을 2009년 20척 수준에서 38척까지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2002~2003년에 감척된 트롤어선 5척(139톤)을 인수하여 55억원을 투입, 국가 어업지도선으로 개조하여 활용하였다. 또 2002~2006년까지 730억원을 투입하여 500톤급 8척 확충, 2007~2008년 113억원 투입, 500톤급 노후지도선 1척 대체,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지도선으로 전환하여 34척까지 증척하였다. 2010년도에는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를 위하여 219억원을 투입, 500톤급 1척을 준공하고 1,000톤급 1척을 착공하여 어업지도선 안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 현재 국가어업지도선은 100~2,000톤급 34척으로 노후대체와 신규확충을 추진하여 EEZ 해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EZ 해역관리를 위해서는 EEZ수역 24척, 중간수역 12척, 제주도 주변수역 2척 총 38척이 필요하나 선령 25년 이상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가 시급하여 우선 노후대체 완료 후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1년에 1척, 2012년에 1척을 대체하여 2012년까지 노후어업지도선 대체를 완료하고 2013년에 1척, 2014년에 2척, 2015년에 1척을 건조하여 38척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지도안전과 사무관 하두식

추진배경 및 개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이후 이들 어선의 재진입 방지와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업인의 자율 어업질서 참여 유도를 위해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7.8.14 도입하였으나 신고대상이 소형기저 및 공조조업 등으로 제한되어 신고실적이 저조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어선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하여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매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고대상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10.4)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동 제도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주요 항포구 및 어업인들

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게시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일제 정비하여 709척을 재지정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개별적인 포상기회도 마련하였다.

한편, 불법어업 근절 우수 어촌계 · 단체를 선정(최우수, 우수, 모범 등급으로 구분)하여 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장려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및 선진 어업질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3-6〉 2010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현황

구분	어촌계(단체)	대표자	선정결과
인천(1)	삼목 어선주협회(인천시)	장영문	모범
강원(2)	안인어촌계(강릉시)	이원규	〃
	속초시 연승연합회(속초시)	차상철	〃
전북(1)	어청도어촌계(군산시)	이종관	〃
전남(2)	곡지어촌계(무안군)	김재환	우수
	하도어촌계(고흥군)	김재원	모범
경남(2)	초양어촌계(사천시)	박영환	우수
	창도어촌계(거제시)	이용조	모범
제주(2)	서귀포 어선주협회(서귀포시)	홍주방	최우수
	한림 어선주협회(제주시)	김상문	모범

* 선정기준 : 시 · 도지사 추천 → 현장실사 → 심의 · 의결 → 선정

평가 및 향후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시행,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의 불법어업 합동단속 자율적인 참여,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 등을 통한 어업인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활용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어업질서 확립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지도안전과 사무관 전길권

추진배경 및 개요

기관사고 등 설비관련 해난사고 증가로 2008년 464척에서 2009년 519척으로 11.8%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를 수반한 충돌 · 침몰 등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2008년 37명에서 2009년 6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9년도 해난사고 원인은 운항과실이 196척(38%), 57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표류(기관고장 등) 359건(69%), 충돌(견시소홀) 83건(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0 연근해어선안전조업지도대책」을 수립하여 해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생활화, 해황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현장 안전교육 및 어선검사 강화 등 안전조업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기상특보 방송 강화, 매월 1일은 어선안전의 날로 정하여 안전조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해난사고는 둔화되었으나 충돌사고 증가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11년도에도 「연근해어선안전조업지도대책」에 충돌 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어선 해난사고 감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표 4-3-7〉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구분 / 연도	계	기상 악화	선박불량				운항과실				
			소계	기관고장	조타기, 스크류	기타	소계	어망, 로프감김	운항부주의	원인미상	기타
2009	519척 (63명)	9 (2)	314 (4)	248 (2)	40 (–)	26 (2)	196 (57)	70 (–)	98 (22)	2 (2)	26 (33)
2010	485척 (71명)	6 (9)	282 (9)	211 (–)	35 (–)	36 (9)	197 (53)	75 (–)	98 (20)	1 (1)	23 (32)

* ( )은 인명피해

〈표 4-3-8〉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구분 / 연도	계	표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전복	침수
2009	519척 (63명)	359 (2)	83 (21)	21 (3)	25 (2)	9 (20)	11 (15)	11 (–)
2010	485척 (71명)	327 (–)	82 (20)	21 (1)	30 (9)	3 (10)	14 (31)	8 (–)

* ( )은 인명피해

제4장 수산업 · 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1절 수산업 경영지원

1.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수산정책과 서기관 전성래

❖ 추진배경 및 개요

수협은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자생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 적용('14년부터) 등 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과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수협의 경영구조 개편과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4)된 후 2010. 4월 공포(시행 '10.10.13)되었다.

개정 수협법의 내용은 중앙회의 경우 회장 비상임화와 연임을 제한하면서 교류협력 사업 등 상징적 대외적 역할에 전념토록 하되 실질적인 경영권을 배제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임원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인

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이사의 경영평가 및 해임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기능강화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중앙회 공적자금을 출자에서 출연의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중앙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일선수협이 중앙회에 배당권만 가지는 우선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선조합의 경우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영개선이행약정(MOU) 목표를 2회 연속 미 이행한 조합장은 비상임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정상조합은 현행 선출방법(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상임이사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상임이사 자격을 종전에는 비조합원만이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여 상임이사 자격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수협 등 금융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채무 연체자와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였다.

●● 중앙회 경영혁신 추진

수협 자체 개혁운동인 新수협운동을 추진하여 중앙회 인력 · 조직 감축 및 부실사업장 폐쇄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라 지도경제부문 중복기능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자사업인 바다마트 사업을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에 이관하였다. 아울러, 신용사업부문에서는 건전여신 · 저원가성예금 · 비이자 이익의 지속 증대, 고객관리역량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2009년 당기순이익 330억원, 예수금 10조 3,731억원, 대출금 13조 1,204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419억원, 예수금 11조 3,019억원, 대출금 14조 1,914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3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 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39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4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제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목표 등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

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 부실수협 구조조정 추진

2010년도 제2차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3개 부실조합 중 삼척수협은 순자본비율 및 결손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부실채권비율 감축 및 신용사업 수익 발생 등이 전제될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므로 강력한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경영개선목표 미달성시 조건부 합병 명령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흥군수협은 미처리결손금 과다로 자체 정상화는 어려우나 순자본비율 등이 소폭 개선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 경영지도역(2명) 파견으로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 중이므로 통폐합을 유보하고, 부실채권 감축 등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되 2010년말 경영평가 결과 목표 미달성시 합리적 경영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상호금융사업 미취급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채권부실화 위험이 상존하여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나 중앙회에서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강도높은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였다.

●●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일선수협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9년 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17개 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다.

2010년도 17개 조합에 총 148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2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11개 조합 임직원 204명(부실책임액 578억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는 인력 · 조직 축소 등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수협은 순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등에 대해 지정 · 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별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잠식 해소 및 확충을 위한 자본적정성 목표, 무수익 채권 감축을 위한 자산건전성 목표, 자본 고정화 방지를 위한 유동성 목표, 장기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익성 목표를 신설하여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 부여하였으며, 경영개선목표 이행률에 따라 추후 견책, 감봉, 상임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로 대다수 조합의 MOU가 해지됨에 따라 MOU 해지 조합 중 MOU 약정상의 순자본비율 목표 미달 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 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계획 목표를 별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 수산보전제도 추진

어업교섭과 사무관 권오정

도입배경 및 개요

농업분야 직불제의 도입('97) 이후 어업인 소득보전 대책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가시화 등으로 어업인들의 직불제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WTO DDA 보조금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수산분야 금지보조금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직불제 확대를 위한 대외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WTO DDA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어가소득 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업 등 타 분야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산보전제도를 발굴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보전제도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어항정비, 유통시설 확충, 기반정비 등에 투입해도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WTO DDA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

한 보조금을 발굴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으로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성' 보조금을 수산보전제도라는 형태로 개발하되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직불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의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및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기자재(고밀도 부표) 사용 및 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을 위하여 군산, 신안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고령어가 은퇴 보전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1〉 2010년 수산보전제도 관련 예산 및 주요 성과

사 업 명	'10년 예산	사업 성과
고밀도 부표 보급	1,665백만원	115만개 보급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6,800백만원	465어가(557㏊, 12,41톤)
생분해성 어구 지원	2,810백만원	310척
고령어가 은퇴 보전제	49백만원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보전, 어장환경관리 및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산보전제중 고밀도 부표 보급,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및 생분해성 어구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보전제는 조직통합 후 농업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추진중이며, 향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고령어가 은퇴 보전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수산정책과 사무관 강거영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 경영자금 중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어업경영을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산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영어자금의 총 운영규모는 1조 9,050억원으로,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7,850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1,200억원이 공급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운용 실적은 5,756억원으로 전년도 실적 5,996억원 대비 4.0%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산업 경영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2010년도 어업생산액은 지난해 대비 7.1% 증가하였다.

〈표 4-4-2〉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2010/2009)
합 계	5,049,321	5,285,860	5,751,945	6,345,058	6,924,249	7,425,685	7.2
연근해어업	2,705,955	2,751,251	2,939,109	3,222,256	3,640,437	3,911,681	7.5
천 해 양 식	1,348,407	1,443,169	1,599,542	1,520,122	1,846,311	1,815,645	△1.7
원 양 어 업	819,232	891,031	990,205	1,327,395	1,163,751	1,364,524	17.2
내수면어업	175,727	200,409	223,089	275,285	273,750	333,834	21.9

자료 : 통계청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전체 공급자금 1조 9,050억원 중 1,000억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에 대한 북측의 피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어업인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21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525억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9,544억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3,981억원을 공급하

였으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에 대한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4-4-3〉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 요 액		41,199	41,299	41,685	44,223	46,837
공 급 액		15,050	15,050	15,050	19,050	19,050
공 급 률		(37)	(37)	(36)	(43)	(41)
연근해	소 요 액	36,088	36,364	36,668	39,210	40,973
	공 급 액	14,250	14,250	14,250	17,850	17,850
	공 급 률	(40)	(39)	(39)	(46)	(44)
원 양	소 요 액	5,111	4,935	5,017	5,013	5,864
	공 급 액	800	800	800	1,200	1,200
	공 급 률	(16)	(16)	(16)	(24)	(21)
재원별	재정자금	5,636	5,636	5,636	5,636	5,525
	수협자금	4,433	4,433	4,433	8,433	9,544
	상호금융	4,981	4,981	4,981	4,981	3,9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수산발전기금의 조달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장기 융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로 정기상환 융자원금이 일부 회수되면서 융자원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수입이 확대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여유자금 회수액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정부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폐업지원금, 소득보전직불금, 품목별경쟁력 강화 등 FTA피해 지원을 위해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기금운용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도 계획 5,617억원 보다 다소 감소한 5,139억원으로 융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90.9 %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수산물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품목별경쟁력강화 및 직접피해지원, 유통가공시설개선, 산지 및 소비지유통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등 수산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4-4〉 2010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적(B)	증△감	
	당초	변경(A)		(B-A)	%
합 계	565,132	565,132	575,580	10,448	101.8
• 경상사업	50,080	50,080	40,380	△9,700	80.6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2,300	2,180	△120	94.8
–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10,600	7,420	7,420	–	100.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자치단체보조)	3,000	6,180	6,180	–	100.0
– 비축사업	10,800	10,800	9,319	△1,481	86.3
– 출하조절	3,781	3,781	3,781	–	100.0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13,000	13,000	11,500	△1,500	88.5
– 생계소득및안정	99	99	–	△99	–
– 소득보전직불금	1,500	1,500	–	△1,500	–
– 폐업지원금	5,000	5,000	–	△5,000	–
• 융자사업	463,790	463,790	459,085	△4,705	99.0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1,875	11,875	11,875	–	100.0
– 양식어업지원	7,699	7,699	7,699	–	100.0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16,376	16,376	16,376	–	100.0
–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3,000	3,000	–	△3,000	–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1,000	1,000	–	△1,000	–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700	–	△700	–
– 수산물수매지원	110,440	110,440	110,440	–	100.0
– 우수수산물지원	134,000	134,000	134,000	–	100.0
–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29,600	29,600	29,600	–	100.0
– 해외수산시설지원	1,600	1,600	1,600	–	100.0
– 산지 및 소비지유통개선	147,500	147,500	147,495	△5	100.0
• 기금운영비	1,513	1,513	1,243	△270	82.2
• 여유자금 운영 등	49,749	49,749	74,872	25,123	150.5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정책은 WTO DDA 협상,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어업경영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 및

정책자금 연체율 감소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정책자금을 통한 수산업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수산업 경영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어업활동 지원

수산개발과 사무관 양진문

1. 어업보험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 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34,899명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7,233척에 대하여 48,7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4-4-5〉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2009
어선원보험료							
인 원(명)	36,431	36,846	35,815	37,116	37,283	34,899	94
보 조 액(백만원)	7,958	8,573	9,829	11,968	15,612	21,491	138
어선보험료							
척 수(척)	4,925	5,015	5,397	5,704	6,518	7,233	111
보 조 액(백만원)	1,491	2,007	2,615	3,897	6,002	9,139	152
위탁운영사업비							
보 조 액(백만원)	5,502	7,420	7,683	10,675	12,153	18,145	14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가입률 제고 추진

소형어선의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가입 전산안내장 165,000부, 캠페인 안내장 25,000부, 포스터 1,000매, 어선원보험 법령요약 및 보상절차 안내서 5,000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계약안내를 위한 안내서 19,000부, 만화로 알아보는 어재보험 안내서 5,000부를 제작 · 배부하였다. 또 어업무선방송을 연중실시(연 500회)하는 한편 수산전문지 및 정책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실시는 물론, 정책보험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정책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어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강화하였다.

●● 어선사고예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지정 선박수리소 173개소, 지정병원 478개소를 확보하여 운영중이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어업인 지원 및 제도개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2010년 어선원보험의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원의 기초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 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과거 3개년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요율조정요인(용역결과 어선원보험 전체평균 1.3% 인상, 어선보험 전체평균 3% 인상)을 반영하여 어선원보험은 일괄 2% 인상, 어선보험은 손해율 높은 50톤미만 어선원은 5% 인상, 손해율 낮은 50톤이상 어선은 동결함으로써 일부 톤급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수지균형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써 2010. 1. 1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계약에 대하여 코리안리(주)와 특약(50% 비례재보험)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위험분산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8차년도로서 가입증대, 체납보험료 감축 등 정책보험사업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여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증대 캠페인을 통한 보험사업 확대, 체납보험료 감축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재해율이 높은 어업의 재해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재해보험팀 사무관 윤승우

추진배경 및 개요

자연재해 및 질병(재해에 기인한 질병)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집중호우, 이상기후, 질병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양식어가의 보험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대상품목 확대

2008년 7월 '넙치' 1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연차적 대상품목 확대 계획에 따라 2010년에는 넙치(본사업), 전복(시범사업) 2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10년에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80%를 지속 지원하였고, 보장범위확대, 대어업인 보험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가입률을 전년 13.8% 대비 7.3%p 증가한 21.1%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납입방법, 자기부담금 등 완화를 추진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에는 자연재해 특히 태풍 덴무, 곤파스 등의 영향으로 2.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본사업인 넙치(본사업)에 한하고 전복(시범사업)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상 재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 상품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4-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넙 치	5.3	13.8	21.1
전 복	–	–	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사무관 김주성

추진 배경 및 개요

2007.12.7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예인줄 절단으로 3천톤급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으로 입항대기 중이던 유조선(Hebei Spirit호)과 충돌해 12,547*kl*(10,9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3개 도(충남, 전남 · 북의 11개 시 · 군)에 걸쳐 대규모 유류 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 사고 경위는 2009년도 연차보고서에 수록한 바 있다.

추진 내용 및 성과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위해 우리 부는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유류

오염보상기금(IOPC Fund[2])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신속 · 정당한 배 ·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 유류오염 피해어장의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류 오염피해지역의 오염정도 확인 및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태안 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3차년도 연구가 2010년도 농특회계 예산 7억원을 투입해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유류오염 피해어장에 대한 어장환경개선 및 복원을 위한 '어장환경복원계획(2010~2019년 1,577억원)' 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2010년도 소요예산 216억원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및 홍보 등에 우리 부에서 19억원을 직접 집행하였고, 피해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97억원을 배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마을어장 개선사업, 조업장 개선사업, 채묘어장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 오염손해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선박의 규모별로 제한하고 있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09.5.8 신고 종료된 '선주 책임제한 채권' 현황을 보면 총 126천여 건에 3조 5,40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산분야가 110천여 건(전체 신고의 88%)에 1조 8,800여억원(53%)이 차지하였다.

〈표 4-4-7〉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현황(2009년)

(단위 : 건, 억원)

구분 \ 연도		계	비율(%)	수 산	비율(%)	비수산	비율(%)
선주 책임제한 채권	건 수	126,313	100	110,558	88	15,755	12
	신고액	35,444	100	18,816	53	16,628	47

주) 채권신고 후 수정 · 변경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건수 및 신고액 변동이 있음

2) IOPC Fund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표 4-4-8〉 수산분야 세부업종별 신고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양 식	어 선	맨손어업	기 타
합 계	건 수	110,558 (100%)	6,509 (5.9)	8,974 (8.1)	88,632 (80.2)	6,443 (5.8)
	신고액	18,816 (100%)	4,431 (23.6)	3,012 (16.0)	8,208 (43.6)	3,165 (16.8)
충 남	건 수	57,687	2,970	5,046	47,019	2,652
	신고액	13,141	3,290	2,338	5,150	2,363
전 남	건 수	29,042	2,867	1,897	21,523	2,758
	신고액	3,371	613	244	1,847	667
전 북	건 수	22,953	410	1,924	19,907	712
	신고액	2,165	491	405	1,187	82
기 타	건 수	1,476	262	110	183	321
	신고액	139	36	25	24	54

●●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지원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피해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273억원('07년 100, '08년 120, '09년 53)을 배정하여 2010년 말까지 누계기준 24,875백만원을 공급(연리 3%, 1년,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하였고, 2010년 말 현재 특별영어자금을 지원받은 피해 어업인 가운데는 89억원을 상환하였으며, 159억원이 지원중이다. 피해 발생일 현재 이미 사용 중인 일반영어자금 75,982백만원(누계기준)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상환기일 연장 및 이자를 감면(연리 3%)하였다.

●●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 · 보상 청구 및 사정 동향

2010.10월 제49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액을 최대 4,385억원으로 추정(향후 변동 예상)하였다. 한편, 유류 오염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해 IOPC Fund 서울사무소인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에 접수된 청구 및 사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2009.5.8 종료된 '선주책임제한채권' 신고를 마치고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손해 배 · 보상 청구가 저조하였으나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4-9〉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0년 기준)

(단위:건, 억원)

구 분		클레임접수 (a)	피 해 사 정				지 급
			계 (b)	b/a(%)	인 정	반 려	
수 산	건 수	10,677	2,293	21.5	354	1,939	189
	금 액	15,824			214	–	100
방제, 예방조치	건 수	297	232	78.1	204	28	173
	금 액	3,704			904		858
관 광	건 수	10,138	5,083	50.1	1,674	3,409	1,626
	금 액	2,543			181		177
재 산 손 해	건 수	22	16	72.7	12	4	7
	금 액	3,042			4.4		4
환경손해, 연구	건 수	1	–	–	–	–	–
	금 액	22					–
기 타	건 수	7,012	2,052	29.3	25	2,027	13
	금 액	1,850			0.76		0.55
계	건 수	28,147	9,676	34.4	2,269	7,407	2,008
	금 액	23,973	–		1,305	–	1,139

〈표 4-4-10〉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접수, 사정 및 지급 추이

(단위 : 건, 억원)

구 분	기준일	피 해 접 수		피 해 사 정				지 급	
		건수	금액	계	인정	금액	반려	건수	금액
계	'10. 6월말	20,364	20,146	6,581	1,874	1,152	4,707	1,742	1,078
	'10.12월말	28,147	23,973	9,676	2,269	1,305	7,407	2,008	1,139
어획어업	'10. 6월말	940	9,798	7	3	7	4	–	–
	'10.12월말	1,076	9,896	10	7	98	3	–	–
양식어업	'10. 6월말	6,156	5,251	749	196	101	553	165	97
	'10.12월말	9,601	5,928	2,283	347	116	1,936	189	100
비수산	'10. 6월말	13,268	5,096	5,825	1,675	1,044	4,150	1,577	981
	'10.12월말	17,470	8,149	7,383	1,915	1,090	5,468	1,819	1,040

※ 기준일의 누계 기준임

●● 맨손어업 피해 배(보)상 지원활동

정부는 수산분야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자의 약 80%가 맨손어업(88천여 건)임을 감안하여 IOPC Fund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발생일 이전부터 신고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33,889명(업무 편의상 Ⅰ그룹)과 어업 신고필증이 없으나 IOPC Fund와 합의된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21,696명(Ⅱ그룹) 및 33,180명(Ⅲ그룹)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터뷰를 통해 피해내용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IOPC Fund측 국내 조사업체인 협성 검정은 2010년말 현재 50,963명(57.4%, Ⅰ그룹 30,686, Ⅱ그룹 20,187, Ⅲ그룹 90)에 대해 피해 사정을 위한 피해어업인 면담조사를 마쳤다. 이는 다른 피해어업인과 동일하게 맨손어업자도 정당한 배 ·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IOPC Fund측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위 기준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IOPC Fund 서울사무소에 청구할 경우 피해사정을 통해 손해가 인정되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피해지역 지원사항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축산발전기금 및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력 승마대회 개최 지원」으로 1.5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특별적립금 0.7억원)」 등으로 피해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 IOPC Fund측과 수산분야 각종 회의 추진

● 비공식 및 양자회의

수산분야 손해청구에 따른 IOPC Fund측의 피해사정은 '한국정부의 어업활동 자제 및 재개 조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2010년도에 총 2차례의 비공식 및 양자회의를 가졌다. 6.23~7.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8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그 간 핵심 논쟁사항이었던 어업 등 1월말까지만 인정된 업종과 지역의 조업제한 인정기간을 일괄적으로 1개월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4.6~4.13까지 주요 발언국인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을 방문하여 각국 IOPC 각국 대표단을 면담하여 우리정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된 어업 및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해조 조치('08.4.18~'08.9.3)하였음을 적극 설명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에 따른 최대 피해는 수산분야에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한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2010년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2차례 참석하였다.

IOPC Fund 제48차 집행위원회(6.28~6.30), 제49차 집행위원회(10.18~10.22)에 참석하여 유류오염사고 후 한국정부의 조치 및 지원사항을 설명하는 등 한국정부가 취한 조업자제 기간과 IOPC Fund 사무국이 제시한 기간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IOPC Fund 서울사무소와 정례회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피해 배·보상업무 등을 위해 IOPC Fund측은 서울사무소(HSC)를 개설하고, 피해 배·보상과 관련되는 각종 현안사항의 해소와 의견교환을 위해 한국정부측과 3~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2008년 7월에 첫 회의를 가졌다. 양측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에 총 6회(2009년에도 10회)의 회의를 통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대부금 관련사항, 맨손어업 피해청구의 신속한 접수·처리, 그룹청구 건에 대한 신속한 사정 촉구, 전남지역 김양식장 피해배상 진행경과 확인, 서산지역 굴양식시설 철거비 처리 및 수산분야 조업자제 관련 양자협의를 촉구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하는 등 양측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평가 및 향후 계획

2010년에 모든 유류 오염피해지역을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속 관찰하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3]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 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IOPC Fund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피해어업인 배·보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유류 오염피해지역 지원사업

유류 오염피해 「어장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3)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 8명(별도정원 5, 비별도정원 3)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 고시에 반영하였다. 우리 부 어장환경복원계획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신규 예산으로 총 1,577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 투입하여 피해어장 복원프로그램 개발과 어장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정부는 3개년 목표로 실시 중인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서해연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안 인근의 주요 양식장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인 2010년에는 7억원으로 환경조사, 갯벌 생태조사, 태안어장 수산자원 밀도 변동조사 및 굴 · 바지락에 대한 양식품종별 복원시험사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어장환경복원계획에 의거, 추가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사업부서를 통해 유류 오염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간접 지원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7.12월부터 지원된 특별영어자금(연리 3%, 2년 상환)의 상환기일 연장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배 · 보상 진행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정부는 유류 오염사고에 관한 보상주체인 IOPC Fund측과 각종 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배 · 보상을 지속 촉구하고, 특히 2011년도는 3월, 7월, 10월에 개최 예정인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신속한 보상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피해민 대표 등도 총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토록 하여 피해 배 · 보상 활동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배 ·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해 어업인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사무국과 IOPC Fund 집행위원회 주요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어업인의 정당한 배 ·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당하고 신속한 피해 배 ·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물의 수입증대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은 향후 DDA WTO 협상 및 FTA 협정 등으로 인해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분야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어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직접지불제의 대상에 어업인들도 포함하여 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 어업인 소득보전대책으로 ① ('99)해양폐기물 정화(폐어구 수거) 지원 ② ('04)친환경배합사료 지원 ③ ('07)생분해성어구 지원 ④ ('09)친환경부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보조금 성격의 기타 직불성 사업으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수산직불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산분야는 WTO 일반보조금 협정에 포함되어 있어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는 농산물만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 출범이후 1997년부터 경영이양, 쌀 직불제등을 도입하였고 직불제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의 2개 유형으로 통합 · 개편 추진 중에 있다.

〈표 4-4-11〉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농업분야 직불금 (1조 4,944억)	경영안정(6,201억)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구조조정(999억)	경영이양직불, 폐업지원
	공익형소득안정(7,744억)	쌀고정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수산분야 직불금 (65억)	FTA피해보전직불(15억)	
	FTA폐업지원직불(50억)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공익형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도입을 목표로 345개 도서, 461개 어촌계, 2만7천 가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연구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접지불금)에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념 검토와 어업활동 및 생활상에 있어 조건불리성 실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200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실태조사 및 DB구축 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실태조사 결과 DB구축 및 어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도입목적, 정책적 활용가능성, 등록대상, 등록방법, 등록내용, 등록절차, 관리체계 등을 연구하였다.

•• 어업경영체등록제 법적근거 마련

어업경영체 등록추진에 필요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4.1), 시행령('09.10.8), 시행규칙('09.12.9)을 제정하여 어업경영체등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부터는 육지생활중심권에서 50㎞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 거주하는 4,415가구에 가구당 약 50만원씩을 지급하여 어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며, 앞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8㎞이상 떨어진 2만7천가구로 점차 확대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제와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도입 등 수산분야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살기 좋은 어촌 개발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1. 어업인 후계자 육성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추진배경 및 개요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 · 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시 · 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 · 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어업인 후계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50백만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7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 1인당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10년까지 18,750명에게 총 469,74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10년도에 240억원(504명)을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5-1〉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단위: 천명)

구분 \ 연도	합 계		2009까지		201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8,750	469,741	18,246	445,799	504	23,942
일반후계자('81부터)	15,753	307,677	15,413	294,875	340	12,802
전업경영인('92부터)	2,850	148,309	2,727	141,199	123	7,110
선도경영인('95부터)	147	13,755	106	9,725	41	4,03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후계인력 유도를 위해 전업경영인의 경우, 대상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집행대상사업을 당초 양식어업, 어선어업, 가공분야에서 유통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도 정착자금지원(2억원/인) 및 주택구입비(4천만원/인)를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2.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화 · 개방화로 수산업의 위축과 함께 어촌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진입과 함께 양질의 후계인력 양성에 한계에 직면, 2008년부터 어촌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 구축방안의 하나로 수산계 고등학교(전국 9개교)에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지원해 오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에도 수산전문 신규진입인력 양성 및 전문계고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산계고등학교(9개교)에 취업 · 창업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공통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산업잠수, 현장산업체 근무 등) 13억원, 학교자체프로그램(현장체험, 해외연수, 수상레저프로그램 등) 9억원을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해기사양성과정인 종합승선실습훈련을 통해 5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운 원양업계의 3등 항해사 및 기관사로 취업 ·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을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산업잠수, 산업체 현장교육, 해외인턴 · 연수 등) 확대 개발 · 지원할 계획이며, 수산계고교 학생 중 수산분야 정착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 · 육성하여 창업과 취업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승선예비역 제도 확대, 산업체별 취업설명회를 통한 취업알선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인력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추진배경 및 개요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와 어촌지역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촌의 기능적 변화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제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 · 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어촌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촌개발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리더 육성사례와 시사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어촌개발리더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개발리더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낙후된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조직인 어촌사랑주부모임을 활성화시켜 사회 ·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인력개발원에 「어촌관광산업 지도자 과정」,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의 3개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하여 지역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촌지역개발리더사업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단지의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등 어촌지역의 개발을 선도할 핵심적 리더에 대한 전문능력을 강화 · 육성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에서 약 40명을 선발, 학습단위별로 4개 세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 세부교육 프로그램 구성 : 리더동기화, 실천리더, 혁신리더, 리더양성워크숍

●● 여성어업인육성사업

'어촌사랑 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는 1989년 제1회 한일 어촌부인 생활체험 발표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2월에 강화 등 5개 수협을 '시범 부인부' 로 결성하였다. 2004년에는 '수협부녀회' 가 '어촌사랑 주부모임' 으로 변경이 되는 등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어촌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향후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회 ·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권익 신장 및 역량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어촌관광가이드과정

어촌계장, 이장, 어촌관광리더 · 가이드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관리기법 및 특색 있는 어촌만들기 아이디어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

어촌계장, 어촌계임직원 공무원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권역별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과정

여성어업인의 경우, 어촌여성들의 실정상 집체교육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교육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당초) 집합교육 2회 129명 → (변경) 현장교육 4회 249명

❖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의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모델로 효율적인 어촌지역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개발과 개발 후 시설운영 과정에서도 살기 좋은 어촌만들기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수산개발과 사무관 윤영호

추진배경 및 개요

2004.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05.4)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5-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농식품부 (수협 위탁)	2004년~ 계속	-	연근해 어선 원등	국비 13% ~71%	어선주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자체	1994년~ 2013	8,795억원	230개권역	국비70%, 지방비3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자체	2006년~ 계속	-	전국 항,포구 2,286개소	국비80%, 지방비20%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정화사업	지자체	'86~계속	-	약 68만ha	국비 80% 지방비10% 자부담10%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물 수거 · 처리, 바닥갈이, 객토 등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수산인력 개발원, 지자체등	2006년~ 계속	125억원	어촌지역 정보화수준 100%	국비 100%	원격영상시스템 지원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2013	731억원	112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지자체	2004년~ 2013	1,040억원	18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타, 주차장, 해안산책로 등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분야 7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은 2010년도 어선원보험을 34,899명이 가입하여 전년(33,674명) 보다 3.6%상향 달성하였고,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디지털 어촌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부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표 4-5-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2010년)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	실 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12.2%	13.1%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비 지원액	179억원	179억원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82대	82대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추진 진척도	6,730ha	7,722ha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5,000명	5,820명
어촌체험마을 조성	마을조성수	7개	7개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사업비 지원액	61억원	61억원

평가 및 향후계획

그 동안 수산분야 7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별로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 투자와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 · 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사업간 연계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수산개발과 사무관 윤영호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 2013년도	8,795억원	230개권역	국비 70%, 지방비3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95억원 중 2010년까지 6,531억원(국고지원 3,814억원)을 투자하여 173개 권역은 완공하고 25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75%)중에 있다.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구분 \ 연도		2007까지	2008	2009	2010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 업 량	152(24)	8(12)	10(13)	3(16)
	사 업 비	562,062	38,653	25,831	26,457

* ( )내는 계속 지원대상 권역수임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 · 중 · 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어촌을 생산과 휴양이 가능한 「어촌복합생활공간」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수산개발과 사무관 윤영호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들의 소득 및 주 40시간 근무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외 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 하고자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험 · 휴양 · 관광 등의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의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민간보조 (어촌어항협회 등)	2005년 ~계속	– 억원	어촌체험마을 106개소, 어촌계 1,978개소, 자매결연체결 772개소	민간보조 국비100%, 지자체 국비 50%	홍보, 사무장 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추진내용 및 성과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시와 어촌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컨설팅 제공, 도시-어촌교류촉진 및 어촌전통문화재현(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오프라인 및 대중화된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등 어촌체험마을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1인1촌 컨설팅 추진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요인 해소, 마을에 적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1인1촌 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포상금 지급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및 여타 마을에 우수 운영기법 제공으로 체험마을 운영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2010년에는 '어촌상징조형물 건립', '바다콘서트 등 축제지원', '전국 해안선 자전거 1만리 길 화보집 발간', '이달의 어촌 포스터 제작',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바다와 어촌체험 학습서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 등 다양한 형태의 어촌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경우 체험객 수에 있어 2009년 705천명에서 2010년 783천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소득도 2009년 160억원에서 2010년 179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7〉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9	2010	증(△)감(2010/2009)	비율
체험운영 수	87	93	6	6.9%
방문객(천명)	5,902	5,022	△880	△14.9%
이용객(천명)	705	783	78	11.1%
직접소득	15,968	17,895	1,927	12.1%
간접소득	28,643	33,419	4,776	16.7%

* 직접소득은 체험이용료, 민박, 식사, 수산물판매에 한정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관광 S/W 지원강화로 국민들이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을 찾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형태의 '전국 해안선 자전거 대행진', '외국인 초청행사',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창작', '초·중등학생 체험학교 개설·운영', '체험마을별 QR코드 제작·보급', '바다관광 해설사 육성', '어촌문화 발굴 등 축제 행사 지원' 등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어촌관광을 Boom-up할 계획이다.

4. 어항시설 확충

수산개발과 사무관 배길중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8〉 어항지정 현황

(2009.12월말 기준)

구 분		항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 고
법정항	국가어항	10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 비 100%	
	지방어항	285	시·도지사	국 비 80% 지방비 20%	
	어촌정주어항	576	시장·군수·구청장	국 비 80% 지방비 20%	
비법정항	소규모항	1,316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육지 546개항 도서 709개항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추진내용 및 성과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총사업비 38,467억원 중 2010년까지 총사업비의 72.9%에 해당하는 28,024억원을 투입하여 92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4.4%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34개 항에 1,496억원을 투입하여 그 중 전남 신안 우이도항, 완도 보옥항을 완공하였다.

〈표 4-5-9〉 시 · 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09	3	5	2	1	14	8	6	31	14	19	6
완공항	92	2	5	2	–	13	5	5	27	13	15	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지방어항

시 · 도지사가 지정 · 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09년 말 현재 284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972~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2004년까지 농특회계,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40개 항에 646억원(국비 517억원, 지방비 129억원)을 투입하여 2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5개 항 중 160개 항이 완공(완공율 56.1%)되었다.

〈표 4-5-10〉 시 · 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5	13	15	4	5	14	29	12	91	23	61	18
완공항	160	10	10	4	5	7	18	4	43	11	38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어촌정주어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 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09년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5-11〉 시 · 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76	5	31	9	9	24	15	6	81	8	342	46
완공항	142	1	10	7	5	9	–	–	–	–	11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평가 및 향후계획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바, 2010년도에는 이들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34개항에 1,496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어항 40개항에 646억원(지방비 129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어항시설 투자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5. 어촌·어항 관광개발

수산개발과 사무관 윤영호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 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강구 및 어업외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 자원화를 통해 어업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2001~2013년	731억원	112개소	국비50%, 지방비50%	마을안내소, 샤워장, 진입로, 화장실 등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	지자체	2004~2013년	1,040억원	18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타,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조성(총사업비 731억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 고창 하전 등 전국 105개소에 702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4-5-13〉 시 · 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 지역	총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까지	105	2	5	9	9	9	5	31	8	18	9
2011	2	–	–	–	–	–	–	–	2	–	–
2012 이후	5	–	–	1	–	2	1	–	–	–	1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어촌관광모델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 · 문화 · 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 · 주거 ·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어촌 · 어항 복합공광형, 어촌관광단지형 등 2종의 시범사업으로 어촌관광 모델개발 18개소 선정,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0년도까지 기본설계용역 17개소를 완료하고 73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9개소 완료, 9개소 진행중)에 대한 시설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표 4-5-1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별 \ 연도		목표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12	87	8	7	3	2	5
	사업비	73,110	57,822	5,988	4,300	2,100	1,400	1,500
어촌관광 모델개발	사업량	18	2(8)	1(11)	2(8)	4(6)	2(3)	7
	사업비	104,025	33,319	15,964	14,268	10,088	5,668	24,718

* ( )은 계속사업

〈표 4-5-15〉 어촌관광모델개발 사업내용

구 분	어촌 · 어항복합공간형(Ⅰ모델)	어촌관광단지형(Ⅱ모델)
개 념	• 기존어항 · 어촌 + 관광기능	• 기존어촌 + 관광기능
사업기간	• 6개년(2004~2013)	• 6개년(2004~20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지자체
대상지역	•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 연안에 국가어항이 없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어촌
사업 대상지	• 7개소(20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11개소(20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규모	• 7개소 1,089억원 – 개소 당 150억원 – 기본 · 실시설계비 29억원	• 11개소 702억원 – 개소 당 60억원 – 기본설계 · 홍보비등 36억원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어촌어항관광개발을 통해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은 2013년까지 계획된 Ⅰ단계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조기완료하고 Ⅱ단계 추진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개발함과 더불어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관리중심으로 개선하며, 어촌관광모델개발도 2013년까지 18개소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형태의 연안지역별 맞춤형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6. 어촌 · 어항 관광 기반 조성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상기

추진배경 및 개요

기존의 어항은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의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우리의 어촌은 WTO DDA, FTA 협상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및 보조금 제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어촌지원 방안 강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어촌소득으로 연계할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어업외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관광 대중화를 위해 「가고 싶은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 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을 수립하고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어항을 수산업 기반시설로써의 역할 및 어항기능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제공,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함으로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대처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대포, 격포 등 13개소의 다기능어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818억원을 투자하여 7개항을 완공하고 5개항을 지원 중에 있다.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연도	목표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사업량	13	2(6)	3(10)	5(9)	7(7)	9(4)	12(1)
사업비	244,950	62,196	51,305	30,758	37,567	25,546	37,578

* ( )은 계속사업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구 분	어촌 · 어항복합공간형	다기능종합어항형
개 념	기존어항 · 어촌 + 관광기능	기존어항 + 관광기능
대상지역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배후에 어촌이 없어 연계가 곤란한 국가 · 지방어항
사업규모	• 7개소('04.12.15선정) – 어유정항(인천 강화군) – 정 자 항(울산 북구) – 강 릉 항(강원 강릉) – 마 량 항(전남 강진) – 양 포 항(경북 포항) – 맥전포항(경북 고성) – 모슬포항(제주 남제주)	• 6개소('04.10.25선정) – 대변항(부산 기장) – 대포항(강원 속초) – 홍원항(충남 서천) – 국동항(전남 여수) – 격포항(전북 부안) – 지세포항(경남 거제)
사업기간	'04~'13(10개년)	'04~'13(10개년)
사 업 비	(항당) 100억원	(항당) 500억원(민자 200억원 포함)

평가 및 향후계획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다기능어항개발은 기존의 국가어항 개발과는 달리 정부투자 이외에 민간투자부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부투자부문도 기본시설 외에 친수공간 및 조경시설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국가어항건설사업에 대한 심층평가(KDI 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 1998년 이후 수산업기반시설 위주의 국가어항개발이 어촌계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기능어항개발이라는 어항개발방식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13개항에 대한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6장 수산물 생산 · 관리 · 공급체계 개선

제1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계 강화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종모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 소득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량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어장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주요 수산물 생산 60개 해역에 대한 등급설정을 위한 위생조사 · 평가가 마무리되고, 주요 생산해역 등급화 고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 공급을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 적용을 추진하여 7개소에서 등록이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 8월 전 품목으로 시행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 12월 현재 16개 품목(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에 대해 1,10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4-6-1〉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2010년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생 산	가 공	유 통	판 매
참여업체	1,100	158	78	19	845

〈표 4-6-2〉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단위 : 개)

어종명	넙 치	송 어
양식장 소재지	제주시 2, 서귀포시 2, 완도 1	상주 1, 청원 1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이력제의 홍보활동 강화로 참여율이 제고되고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생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의식변화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등의 재래 상거래 시장에서는 수산물 이력제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산물 이력제의 전통 시장 내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의 접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수산물 이력제 저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양식장 HACCP 보급사업은 HACCP 등록과 등록업체의 매출과의 비연계성, 등록에 따른 관리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수요 신청이 낮은 편이다. 앞으로 사업관리 방식변경 등 사업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HACCP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해역 등급화 설정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급별 어장관리, 기관별 및 이해관계 단체별 역할 부여 등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출 · 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종모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물 수입의 자유화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 · 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부산 냉동공장 및 창고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적수산물의 유치물량이 2007년 15만톤이었으나 2009년에는 11만톤까지 감소하고, 해외 바이어까지 부산 감천항을 대체할 물류기지를 물색하는 등 수산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환적수산물의 적극적 유치 및 EU 수입위생조건 충족을 위해 환적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신종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액체질량분석기 등 44종 107대의 최신 정밀분석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정밀검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독 · 항생물질 · 어류질병 등 24개 분야 74명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정밀분석 검사원간의 신뢰성 오차범위 축소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 · 지원간의 표준화 유지를 위해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정기숙련도 향상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적수산물 수출검사 체계마련을 위해 감천항내 지정 하역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하역, 보관, 선적에 이르는 단계별 위생관리 매뉴얼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환적수산물 처리방식에 따라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010년 5월부터 환적수산물에 대한 위생증명서 발급을 시행하므로 위생증명서 구비요건과 관련한 교역장애 문제를 해소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확대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적수산물 수출검사 체계마련으로 환적수산물 유치물량의 안정

적 확보로 감천항의 수산물 허브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 현재 36개 항목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검사를 2011년까지 44개 항목까지 확대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 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수산물 안전관련 협의회를 통해 기준 · 규격 설정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교역 국가(러시아, 대만 등)와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위생약정 체결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불법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수산물 부정통관을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판별 DB구축을 추진하여 국내 유통 투명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수출 · 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검역정책과 사무관 장귀표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동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 시행(2008.12.22)되었다. 이에 따른 수산동식물 검역대상은 종전의 이식용에서 식용, 관상용, 시험 · 연구조사용으로 확대되는 등 국경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에 인천, 부산, 통영, 강릉 등 주요 수산물 수입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각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 유전자분석장비 등 31종 191대의 최신 검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TV,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검역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등재 수산동물전염병 등 수입위험분석 대상 질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산동물 검역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호주 등 OIE 표준실험실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 수산물 검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관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민원신청부터 검역결과 통보까지 온라인화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계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2009년도 이후 169명의 수산동물검역관을 확보하고 국경검역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 자동분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수산동물국경검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도에는 관세청 등 유사 업무기관 간 업무협조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을 위해 검역장비를 일선에 배치하는 등 여행자 휴대물품 검역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위험분석 실시요령 세부지침 마련 등 수입위험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수산동물 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제2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1. 친환경 양식 생산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개발 및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환경친화적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하는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연안어장의 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상남도(2006년부터), 전라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 경상북도(2009년부터)에서 민 · 관 합동으로 총 6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개(전남, 제주)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 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외해양식어업 6개소(참다랑어 4개소, 일반어류 2개소)를 개발하고 참치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10년도에 55,628백만원(일반회계 9,742, 농특회계 30,268, 광특회계 4,039, 수발기금 11,579)을 지원하였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6,300백만원, 친환경양식 기반시설구축지원 15,400백만원, 기타 수산물 위생관리 등 30,268백만원이었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시설 1,000백만원,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250백만원, 적조방제사업 1,030백만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959백만원 등 4,039백만원이었다.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지원 7,699백만원, 생계소득 및 안정자금 99백만원, 출하조절 3,781백만원 등 11,5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서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1년도에는 친환경 양식산업의 육성 및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70,959백만원(일반회계 4,990, 농특회계 22,300, 광특회계 3,859, 에특회계 28,400, 수발기금 11,410)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5,040백만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원 8,820백만원, 기타 지하해수 조사사업 등 22,300백만원이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시설 620백만원, 양식어장자동화시설 750백만원, 적조방제사업 770백만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919백만원 등 3,85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특회계 사업내

용은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에 28,4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지원에 7,629백만원, 출하조절 3,781백만원 등 11,41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양식산업과 서기관 이찬복

❖ 추진배경 및 개요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은 WTO 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의 경우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농안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가격, 유통, 수·출입, 해외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자조금사업은 수산물 수급동향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유도하는 한편, 수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양식수산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7개 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전복, 송어, 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관측 내용을 보면 시설, 입식(채묘), 양성, 출하, 사료, 소비, 수출입 등의 물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정보는 연간 14만부가 발간되는 관측월보를 통해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매월 제공되고 있으며, 양식어업동향도 연간 1만부를 발간·배포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그리고 생산자 5개 단체에 대한 자조금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율적 출하조절과 홍보활동, 품질향상 및 판촉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의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2010년도에는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에서 3,781백만원(관측사업 2,040백만원, 자조금지원 사업 1,74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해 양식장의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효과적인 정비단속을 위해 2009년도부터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김, 어류, 전복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왔는데, 일선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자율적인 정비노력이 돋보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시장개척, 소비촉진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주요 양식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 ·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DB, DW)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중장기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관측 및 해외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자조금사업 참여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지원 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양식어장 환경 개선

자원환경과 사무관 강희정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입지적인 특징은 어장 설치 · 관리의 용이성, 태풍 등의 자연재해 예방성, 풍부한 먹이생물 등에 의해 주로 반 폐쇄성만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

를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해역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원과 양식어장 자가오염부하량 증대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WTO DDA 체제 출범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 · 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을 위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장환경의 보전 ·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53억원을 투입하여 6,420ha에 대해 퇴적물 수거 · 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 · 정비를 추진하였다.

〈표 4-6-3〉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누계)

연 도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어장정화 누계면적(ha)	14,756	60,164	177,844	346,502	456,934	502,226

또한, 전국 연안 양식해역의 어장환경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양식어장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연차별 · 지역별로 전국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남해안(득량만, 완도 · 도암만 등)의 어류 · 전복 · 바지락 · 다시마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수질환경, 퇴적물 환경, 양식생물 생태, 어장환경 수용력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안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부표(스티로폼)는 값싼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으로 태풍 · 파도에 쉽게 파손되고 쓰레기 수거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등 8개 연안 시 · 도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83억원(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을 투입하여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제품(고밀도 등) 120만개를 양식어장에 교체 · 보급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해안에서 대량 양식되는 굴의 박신(굴 까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친환경 비료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연안환경의 2차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신규로 굴패각 친환경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패각 14만여 톤의 친환경처리를 위하여 28억원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을 투입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양식어장 환경개선 정책은 어업인의 어장청소 등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 · 보전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하절기 지속적인 적조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환경개선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어장환경실태조사를 통하여 연안환경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장관리의 근거법인 「어장관리법」개정을 추진하여 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3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붕현

추진배경 및 개요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수산식품의 소비도 증가하여 조리가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고급화 · 다양화 · 건강지향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으로서 수산물 가공업계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WTO DDA 체제 출범 및 FTA 확대 등 국내 · 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수산가공품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보급 및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 · 안전 확보는 물론, 수

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국내 수산물 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68개소, 205억원), 수산물처리 · 저장시설(1개소, 15억원), 젓갈타운 조성(3개소, 56.4억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1개소, 2.5억원)등 총 73개소에 대해 국고 278억96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소비자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해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건립('10년도 10억원 '08~'11년),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조성('10년도 23.6억원 '09~'13년),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관연구센터건립('10년도11.5억원 '09~'10년),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건립('10년도 2.5억원 '10~'12년), 여수수산물종합센터조성('10년도 20억원 '09~'12년),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10년도 10억원 '09~ '12년) 및 영광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10년도 10억원 '09~ '12년) 등 총 7개소에 94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을 지난해 10개(종전 7개)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0년 말 현재 친환경 수산물을 약 4,500톤 출하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기장미역, 장흥키조개, 완도넙치 등 9개 품목을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4-6-4〉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품목

(단위 : 개, 톤)

구 분		인 증 실 적			비 고
		2009년	2010년	2009년 대비 증(△)감	
인증건수	수산물[1]	2	15	13	
	수산가공품[2]	–	6	6	
인증업체	수산물	2	15	13	
	수산가공품	–	6	6	
인증품목	수산물	1	3	2	굴, 김, 미역, 톳
	수산가공품	–	3	3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출하실적	수산물	–	4,446	4,446	김 3,849톤, 미역 597톤
	수산가공품	–	–	–	

주 : 1) 수산물(양식)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2) 수산가공품 :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표 4-6-5〉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 록 자
제1호	'09. 2. 25	보성벌교꼬막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제8호	'10. 8. 20	완도김	완도김영어조합법인
제9호	'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 · 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수브랜드 육성 ·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 ·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현행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일원화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와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수산정책과 서기관 박승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하여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 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사매매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안전한 대금결제와 영세어업인의 가격 교섭력 부족 및 생산통계 부정확 등의 문제점 노정으로 공공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과거의 생산자 위주 유통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업인의 판로기반을 늘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물유통의 주요 기능인 위판장 건립은 196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도매시장의 패류 및 선어의 실질경매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직수탁하는 출하자에게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실질 경매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2005년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관

심도가 높아지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주 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졌으나, 산지위판장의 시설노후화 등으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전환되는 산지 위판장에서의 위생적인 유통처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새로운 유통시설인 먹거리 · 볼거리 ·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유통시설인 Sea-Food Town 조성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0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으로 27개소 15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수산물위판장 건립(16개소, 60억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4개소, 20억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4개소, 44억원) 및 전복일류화상품기지개발 등 기타 유통시설(3개소, 27억원) 건립 사업비로 지원되어 출하중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특히, 수산시장(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하여 1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보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취가 제고 및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유통시설에서의 수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유통시설 개선과 부족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에는 냉동고등어 · 냉동명태 · 냉동갈치 등 4개 품목 3,948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냉동고등어 · 냉동오징어 생산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매하지 못하였고, 냉동명태, 냉동갈치는 계획대비 각각 102.4%, 83.6% 수매하여 물가대책에 활용하는 등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부터 수매품목에 갈치를 추가하는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품목도 확대하였다.

〈표 4-6-6〉 2010년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비율)	금 액(비율)
합 계	3,948	10,800	3,654	9,319	92.6	86.3
냉동 고등어	353	1,500		943		62.9
냉동 오징어		150		113		75.3
마른오징어		150		134		89.3
냉동 명태	3,443	7,000	3,527	6,618	102.4	94.5
냉동 갈치	152	2,000	127	1,511	83.6	75.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평가 및 향후계획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상승기조 속에서도 설,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비축물량 방출로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정부비축 예산의 축소에 따라 비축물량 감소로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방출시기, 방출방법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출방법 측면에서 예전에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방출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B2B(온라인 도매시장)로도 판매함으로써 방출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특히 평가할 만하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용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B2B, 직판시스템 등 방출방법 개선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4. 민간 가격안정사업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추진배경 및 개요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상승기조 속에서도 설,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비축물량 방출로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정부비축 예산의 축소에 따라 비축물량 감소로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방출시기, 방출방법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출방법 측면에서 예전에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방출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B2B(온라인 도매시장)로도 판매함으로써 방출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특히 평가할 만하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용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B2B, 직판시스템 등 방출방법 개선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에는 민간 가격안정사업으로 1,104억원을 지원하여 오징어 · 명태 · 조기 · 갈치 · 김 등 316천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수매 지원사업에 1,020억원을 지원하여 250천톤을 수매하였고, 유통보관 지원사업에 84억원을 지원하여 66천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지 수산물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판장과 소비지에서의 수산물의 집하 · 분산 역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주에게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위 · 공판장출하촉진자금 1,000억원과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50억원 등 총 1,070억원을 지원하여 총 1,736천톤(위판장 거래량 1,031천톤, 도매시장거래량 412천톤)의 수산물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물가안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가격안정사업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유물량의 설 · 추석 등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중 방출은 물가대책 수단으로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매 및 방출을 민간자율기능에 맡김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수매 및 방출이 더딘 면도 일부 있었다.

수산물 수매지원사업의 산지가격안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산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고, 물가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금리부여, 새로운 소비지 가격안정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

제1절 국제협상 강화

1. WTO 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안치국 · 남현수

추진배경 및 개요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협상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1년 협상 출범 당시에 비해 주요 개도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으므로, 이들 국가가 변화된 지위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11월 DDA 출범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도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규범 협상분야의 Valles Galmes 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장안에 대하여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등 수산자원 보호 주장국들은 의장안을 적극 지지하였고, 중국 · 인도 중심의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 · 일본 · 대만 · EU 등은 의장안의 기본골격에 반대하고 금지보조금의 범위 축소를 주장함에 따라 의장은 의장안 초안을 일단 유보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6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어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회원국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010년부터는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도국 특별대우, 유류보조, 공해어업보조금 금지,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 등의 핵심쟁점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장안에 대응하여 면세유 등 운영비, 항만인프라 지원, 가격 보조, 소득 보조 등을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2010년 9월에 제출하였다.

●●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8년 12월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 적용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인하 신축성(관세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4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태국, 중국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반 이후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조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이에 자발적 참여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NAMA 협상의 주요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보조금

그동안 수산보조금 협상은 각 협상그룹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큰 진전이 없었다. 2010. 9월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안서는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규범의장안을 수정하여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대폭축소 함으로써 의장안 중심의 논의를 저지하였고, 유류보조, 소규모 어업, 소득지지 등 핵심 논점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률적 금지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금지보조금 최소화라는 우리나라의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DDA 협상결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협상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WTO DDA 협상대책단」을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협상전략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왔으며, 농림수산식품부로 직제개편 후에는 WTO/FTA 협상포럼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산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도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DDA 타결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입

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호주 등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는 개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이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협상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수산보조금 지원의 틀을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어업구조조정, 고효율 연료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협상에서는 신축성 확보에 전력할 계획이다. DDA 협상체계상 수산물 관세는 공산품 관세와 같이 논의된다.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는 공산품 수출 확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협상을 펼쳐는 동시에 취약한 수산분야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는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률 적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 신축성이 부여될 경우 관세감축폭이 작아져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수산물 무세화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예정이다.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방문진

추진배경 및 개요

WTO DDA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지속적인 확산추세이다. 2010년도 기준으로 약 489개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에 통보되었고 그 중 297개가 발효된 것으로 WTO에 통보되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WTO 출범(1985년) 이후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무역 중 지역 협정 내 무역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0월 현재 한 · 페루 FTA 타결로 미국, EU, 아세안 등 FTA 발효 또는 타결중인 국가가 46개국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인도(CEPA)와의 FTA 협정이 발효되었고,

한 · EU FTA는 금년 10월 정식서명을 하여 한미 FTA와 함께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터키, GCC(걸프협력회의) 등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 중심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메르쿠스르(MERCOSUR), 러시아 등과는 협상 준비 중에 있고,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어 본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한 · 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 확대의 길을 열었다.

한 · EU FTA는 2007년 5월 협상 출범 이후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0년 10월 6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수산분야 협상은 우리측의 민감품목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 수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오징어, 민어, 명태, 고등어 등 생산자가 많거나 대 EU 수입이 많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측 수출이 많은 다랑어류, 대구, 바지락 등 대 EU 수출액의 95%에 대해서는 EU측 관세(11%)를 3년 내 조기철폐토록 함으로써 유럽대륙에 우리수산물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 · 페루 FTA는 2009년 3월 협상개시 이후 2010년 8월 타결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페루와의 협상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의 상당수(품목수 기준 16.6%)를 양허제외, 10년 이상 장기철폐, 현행관세 유지 등으로 합의하였다. 한 · 페루간에는 농수산물 교역규모가 작고, 주요 민감품목이 장기철폐 또는 현행관세 유지 등으로 합의되어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및 향후계획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근

고유가 및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증가시 국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FTA는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시장의 60%를 점유하는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쿼터(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어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추진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3.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국제기구과 사무관 하종수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획에 가장 중요한 어장을 갖고 있는 PNA 8국이 OPEC과 같은 국제적인 자원카르텔 구축을 위한 '코로르선언' (Koror Declaration)을 채택('10.2.25, 팔라우)하여 PNA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는 조업권 부여 제외 및 향후 중서부 태평양내 조업척수 감축시 우선 감축대상임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적으로 자국 자원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연안국과 조업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요 어장 확보를 위하여 PNA 국가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이를 위해 한 · 일, 한 · 중, 한 · 러 어업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할당량를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한 · 중 · 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

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 당국자를 초청, 수산과학 · 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 발전시킴과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600백만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업의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경제협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8개국(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나우루, 솔로몬 아일랜드, 투발루, 팔라우)과의 경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참치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해양수산과학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양식기술 및 해양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해 오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평가 및 향후 계획

그간의 연안국 협력을 위한 물자공여사업은 연안국 요청 위주로 진행하여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자원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안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연안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물자공여 사업 대상품목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선원 교육을 위한 선원학교 실습기자재 및 양식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어선원으로 양성된 현지인을 우리 원양어선에 고용하여 연안국의 고용창출에 일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소국들임을 감안,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서국 공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여 추진하고, 현재 알제리에서 추진중인 새우양식 기술전수 및 양식장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아프리카 연안국으로 확대하여 기아해소 및 단백질 공급을 위한 수산양식기술 지원을 추진(세네갈, 튀니지 등)해 나갈 것이다. 남미의 주요 연안국에 대해서는 국부(國富) 창출을 위한 수산기술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표 4-7-1〉 양국 간 수산협력 약정 체결현황

국 가 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6개국
노 르 웨 이	수산부	'02.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 트 남	수산부	'02.4.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9.1	수산 · 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알 제 리	수산어로자원부	'07.10.22	수산 · 양식업의 공동개발 등
우 루 과 이	농축수산부	'08.9.2	수산분야 정보교환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기구과 서기관 권현욱, 사무관 김기환 · 방종화

추진배경 및 개요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의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각 국의 책임있는 어업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상업 어종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1/105)」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2008년,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Guideline)을 발간했으며,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의 저층어업 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UN은 2006년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총회「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4/72)」를 통해 FAO 지침에 근거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였다. 2009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2011년 유엔 차원의 결의 이행평가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

이다. 저층어업 규제 이외에도 상어 등 부수 어획종 보호,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생물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전 세계의 참치자원은 5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이 5개 기구에 다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다랑어는 더욱 집중적으로 남획되고 있어 어획쿼터량 축소, 어업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 국제 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중인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 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 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협상과 북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

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사무국 유치를 위하여 미국, 러시아, 대만, 중국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그동안 비준을 미루어온 유엔공해어업협정을 2008년 2월 1일자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 가입한 16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관련 국제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도에는 6개 지역수산관리기구(5개 참치관리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기구) 관할 수역에서 전체 원양생산량 592천톤의 54%인 320천톤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역에서는 참치 296천톤(원양생산량의 50%, 참치생산량 320천톤의 93%)을 어획하였다. 특히, 2008.12월 부산에서 제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참석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참치어장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UN, OECD, FAO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관련해서는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2008)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2010, 부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고, 동 회의를 계기로 한 · FAO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FAO 산하 아 · 태 수산위원회(APFIC) 의장으로서 제72차 APFIC 집행이사회(2009, 서울), 제3차 지역자문포럼 및 제31차 총회(2010, 제주)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역내 능력배양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OECD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부의장국으로서 수산자원회복, 기후변화, 양식 부문 등 주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OECD 기후변화 워크숍(2010, 부산)을 개최해 향후 수산부문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표 4-7-2〉와 같다.

〈표 4-7-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2010년 12월 기준)

번호	기 구 명	본 부 (설립일)	가입일	회 원 국	주 요 활 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88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4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5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 · 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콕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48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6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네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 쿠 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 중	앙골라 등 6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2005.12	미국, 일본 등 16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8	아 · 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 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약정 (SIOFA)	미 정 설립준비	가입 추진 중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21	북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NWPRFMO)	일 본(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 중	러시아, 일본, 미국 등 7개국	북태평양 저층생태계 관리 등
22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뉴 지(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 중	EC, 중국 등 약 25개국	남태평양 비참치어종관리 및 잠정조치 채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5. 한 · 일 어업협정

어업교섭과 서기관 정동근

추진배경 및 개요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쟁적으로 선포하면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EEZ로 확대되었다. 한 · 일 양국은 1996년 각각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한 · 일 양국의 관련 수역인 동 · 남해 및 제주 남부수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의 EEZ가 중첩되고 EEZ 기점에 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EEZ 경계획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 15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35해리 이내의 EEZ를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은 2개의 중간수역으로 하여 EEZ 경계획정이 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의 신 한 · 일어업협정을 체결('98.11) · 발효('99.1)하였고, 매년 다음 연도의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에 관해 협의 · 결정하는 한 · 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한 · 일 양국은 2010년 2월 12일 한국에서 「제12차 한 · 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를 90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입어규모

2010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00톤이고, 총 입어척수는 900척으로 전년보다 40척 감소하였으나 1척당 어획할당량은 전년(64톤/척)보다 높은 수준(67톤/척)으로 확보하였다.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우리 연승, 중형기저, 선망 등을 비롯한 주력업종의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제안하였으나, 우리 측은 새

로운 조업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여 2009.12.31까지 타결이 어렵게 되자 해를 넘기는 협상을 하여 2010.2.18에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조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우리 어선의 지속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해 2010.4.15까지 2009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2010년도의 조업일지 교체를 위해 조업 중 귀항하거나 조업 중인 어선에 2010년도 조업일지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어획할당량은 2,080톤으로 하되, 향후 3년간('09~'11) 유지하고 주년 어기를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조정하였다.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11년도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 · 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2010년 중에 개최하고, 또한 양국 어선 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 · 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0년도 한 · 일 양국 EEZ내 총어획량은 우리나라가 22,982톤으로 할당량 대비 38.3%, 일본은 12,467톤으로 할당량 대비 20.8%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1.8배 더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척수는 우리나라가 588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65.3%, 일본은 122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13.5%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4.8배 더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은 다양한 업종에 의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3〉 2010년 한 · 일 EEZ 입어실적

구 분	합의사항		실 적		대 비(%)	
	할당량(A)	입어척수(B)	어획량(C)	조업척수(D)	C/A	D/B
한 국(a)	60,000톤	900척	22,982톤	588척	38.3	65.3
일 본(b)	60,000톤	900척	12,467톤	122척	20.7	20.3
대비%(a/b)	100	100	184.3	481.9	-	-

어종별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등어류, 꽁치, 살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어류가 약 10,683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5.7%를 차지하였다.

〈표 4-7-4〉 2010년 한 · 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단위 : 톤)

구 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한국(A) (%)	22,982 (100)	5,678 (24.7)	1,143 (5.0)	5,958 (25.9)	3,804 (16.6)	602 (2.6)	5.0 (0.0)	1,770 (7.7)	71 (0.3)	3,951 (17.2)
일본(B) (%)	12,467 (100)	–	202 (1.6)	10,683 (85.7)	10 (0.0)	14 (0.1)	27 (0.22)	1.0 (0.0)	12 (0.1)	1,518 (12.2)
A – B	10,515	5,678	941	–4,725	3,794	588	–22	1,769	59	2,43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그리고 어종별로 어획할당량에 대한 소진실적을 보면, 우리 측은 꽁치,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류, 살오징어 등 다양하게 어획하고 있으며, 특히 꽁치, 갈치는 80%이상 소진한 반면, 일본 측은 주어종인 고등어류는 28.2%에 그쳤다.

〈표 4-7-5〉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톤)

구 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기 타
할당(A)	60,000	7,000	3,500	23,385	8,750	1,100	220	2,080	13,965
어획(B)	22,982	5,678	1,143	5,958	3,804	602	5.0	1,770	3,591
B/A(%)	38.3	81.1	32.6	25.4	43.5	54.7	2.3	85.1	28.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표 4-7-6〉 일본어선의 한국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할당(A)	60,000	3,000	37,814	3,150	40	78	50	50	15,818
어획(B)	12,467	202	10,683	10	14	27	1.0	12	1,518
B/A(%)	20.7	6.7	28.2	0.3	35	34.6	0	24	9.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도 어획할당량은 2009년도와 동일한 60,000톤이고, 총 허가척수는 900척으로 2009년보다 40척 감소하였으나 1척당 어획할당량은 증대됨으로써 조업실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매년 자국 어업인과의 조업분쟁, 자국수역의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연승, 중형기저, 선망 등 주력업종의 조업조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원활하고 경제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한 · 중 어업협정

어업교섭과 서기관 김학기

추진배경 및 개요

한 · 중 어업협정은 1992년 8월 한 · 중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 간 최대 현안사항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2월부터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여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8.11.11일 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가서명 후인 1999년 3월 중국의 양자강 주변수역에 연중 조업금지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우리 어선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 · 중 어업협정 발효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되면서 국내적으로는 한 · 중 어업협정 조기발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기발효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를 어업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권을 협정발효 이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2000.8.3일 정식 서명하였다.

정식서명 이후 양국의 EEZ 상호 입어규모와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측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1.4.5일 양국 수산당국 차관급 회담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2001.6.30일 한 · 중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한 · 중 어업협정의 발효로 한 · 일 어업협정('99년 1월 발효)과 중 · 일 어업협정('00년 6월 발효)에 이어 한 · 중 · 일 3개국 간의 양자 간 어업협정이 완성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94년 발효된 UN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었다.

〈표 4-7-7〉 한 · 중 · 일 어업협정 개요

구분	어업협정 가서명	어업협정 정식서명	어업협정 발효	협정 유효기간	협정 효력상실
한 · 중	1998.11.11	2000. 8. 3	2001. 6.30	5년	1년 전 서면통보
한 · 일	1998.10. 9	1998.11.28	1999. 1.22	3년	통지 후 6개월 이후
중 · 일	1997.11	1997.11.11	2000. 6. 1	5년	6개월 전 서면통보

●●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및 어업실태 파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입어교섭 추진

한 · 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에는 조업실태 전수조사('99.4~11월), 어업무선국 조업위치보고자료 D/B화('99.4~'00.10월), 수협 위판 및 어획량 분석조사('99.1~6월) 등을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중국 측 수역 조업실태와 전 어업인에 대한 입어희망 조사 실시('00.2~4월)와 어업인 검증작업('00.5~7월)을 거쳐서 입어교섭(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어선의 우리수역에서의 정확한 조업실태 파악과 중국 통계의 검증을 위하여 중국 어업실태 현지조사 실시('99.10월),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주요 항구내 긴급피항 척수 조사('99년),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통한 매일 관측('99.7월) 및 위성영상사진 판독 실시('00.2월)는 물론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으로부터 매일 중국어선의 동태파악('00.3월)을 실시하였다.

●● 한 · 중 어업협정 체결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우리 어업인 피해 방지

1980년대 후반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중국어선의 무질서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문제 대두와 양국 어업인과의 빈번한 조업분쟁 발생 등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한 · 중 어업협정 체결로 이러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 중국어선 조업척수 감축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확보로 우리어선 조업활동 지원

한 · 중 어업협정의 발효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그 동안 우리수역에서 무차별하게 남획하였던 중국어선의 조업척수를 협정 전 12,000여척에서 2011년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1,700척으로 대폭 감축하여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특정해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금지 및 중 · 일 잠정조치수역 상부수역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EEZ 경계획정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 어선의 어획증대 및 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EEZ 자원관리방안 마련 및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의 남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어종별 · 업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을 촉구하여 2010년부터 우선적으로 선망어업에서 어획하는 고등어에 대해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시범실시하고, 한 · 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를 각자 실시하되, 상호 전문가를 파견하게 되었다. 또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폭력저항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입어자격을 취소하고 단속 · 정선명령 위반어선도 30일간 어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 · 중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자원보호,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EEZ내 중국어선의 조업실적에 비해 중국 EEZ내 우리 어선의 조업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입어규모에 있어서 등량 · 등척이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한 · 중 잠정조치수역의 공동자원조사 실시 및 어종별 · 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등 과학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어업인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산하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어종별 · 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추진 및 어업지도단속실무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7. 한 · 러 어업협정

원양정책과 사무관 조성남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1989년부터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91.10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조업형태는 정부 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으나, 2001년부터 민간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였고, 이마저 2003년부터 없어짐에 따라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합작사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조업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산물 불법 어획 및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2009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IUU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러시아수역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

협정발효 초기에는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로 구분하고 정부쿼터는 어종교환과 상업쿼터로 구분되고, 민간쿼터는 직접어로, 공동어로,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2년의 경우 명태, 대구저연승 게통발 등 3개 업종이 정부 또는 민간협력에 의해 109천톤 정도 어획되었고, 이와 별도로 오호츠크 공해에서 206천톤 등 총 319천톤 정도 어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호츠크 공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993.4.25부터 조업을 자제하였고, 게통발어선은 러시아연방 대륙붕법 공포('95.11.30)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통발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간 협력에 의한 명태쿼터(상업쿼터) 확보는 1993년 150천톤으로 최고의 물량을 확보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0천톤까지 감소하였으나 러시아 측과 IUU어업 방지협정 체결 및 이행,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 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 추진으로 명태쿼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47천톤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쿼터에 의한 명태조업은 직접어로 분야는 매년 19천톤~164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러시아가 2001년부터 불법 어획 및 교역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옥션)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마저 2002년부터 중단함에 따라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종료되었고, 공동어로도 매년 17~58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합작사업은 협정체결 초기부터 1~2개 업체가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쿼터에 의한 직접조업 및 공동어로가 불가능해진 어선들이 합작형태로 협력방법을 전환하여 최근에는 14개사 24척이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표 4-7-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2	2001	2002	2004	2007	2009	2011
계	187	200	25	20	21	39	47
정부쿼터	100	35	25	20	21	39	47
민간쿼터	87	165	–	–	–	–	–

●●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추진

러시아는 제7차('97년)부터 제11차('01년) 한 · 러어업위원회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의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자료를 2003년 1/4분기부터 러시아 측에 제공하였다.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러시아수역 명태 민간조업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특별쿼터 배정을 요청('02.5)한데에 대하여 러시아 측은 동 문제는 러시아 수산물 교역정보 제공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2003.1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4. 9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13차('03)부터 제17차('07) 한 · 러어업위원회에서 양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협의하였으며, 제18차 한 · 러어업위원회('08)에서 양측은 2009년 1/4분

기 중에 동 협정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 5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후 2009.12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9차 한 · 러어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협정의 이행 점검과 미비점 보완 · 발전을 위해 매년 1~2회 실무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활성화 추진

우리나라는 '03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3차 한 · 러어업위원회에서 한 · 러 수산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 측이 한국에 명태쿼터를 향후 10년간 매년 5만톤씩 제공할 경우 한국 측은 매년 5백만불씩 10년간 러시아 극동에 냉동창고 · 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2008.9월 러시아에서 개최한 한 · 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를 과거(4만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진출과 한 · 러 수산물 불법 수출방지 협정의 조기체결을 희망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차 한 · 러어업위원회('09)에서 양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 가공공장, 어선 건조 및 수리소 투자진출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하였다.

2010년 4월 및 9월 2차에 걸쳐 블라디보스톡에서 실무회의 및 민간교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2월 명태업계(북양트롤위원회)와 러시아 Ecarma社간 수산물 냉동창고 및 수산가공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고, 750만불을 투자하여 사할린에 2,0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건설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러시아 경제수역은 우리 명태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이므로 안정적인 조업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2009.12월 IUU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0.7월부터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통합고시를 제정 고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0차 한 · 러 어업위원회('10.12)에서 2011년도 명태쿼터 40,000톤을 비롯한 꽁치 7,500톤, 오징어 10,000톤, 대구 4,450톤, 기타 2,016톤 등 총 63,966톤도 확보하였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등 한 · 러 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IUU어업 방지

협정」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러시아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8.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어업교섭과 사무관 박영기

추진배경 및 개요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입어하여 조업하는데 대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남북 수산당국은 서해 평화정착 및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졌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정부에서는 5. 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그동안 남북당국 간 추진키로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실정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남북 당국 간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5.7)에서 남북수산실무회담 개최 문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05.7)에서 ① 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이용, ②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협력, ③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추진, ④ 우량품종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 제3국 어장 공동진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북한의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07.11) 및 제7

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07.12)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현재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제1차 서해평화특별지대추진위원회('07.12)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07.12)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①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협력, ② 수산물 생산 · 가공 · 우량품종개발 · 양식분야 협력, ③ 수산물 유통분야 협력을 재차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해수역 입어는 '08년 중에 실시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4-7-9〉 남북수산협력 사업 주요 추진경과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5. 6. 24 ~ 6. 24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
2005. 7. 9 ~ 7. 12	제10차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7.25~27)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05. 7. 25 ~ 7. 27	제1차 남북수산 협력실무협의회	서해상 공동어로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 및 합의서 채택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 결렬
2006. 6. 3 ~ 6.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 · 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으며, 남북은 4.18~21일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
2007. 5. 8 ~ 5. 10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2007. 7. 24 ~ 7. 26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없이 종료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2007. 10. 2 ~ 10. 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적극 활성화 등 2007남북정상선언문 채택
2007. 12. 4 ~ 12. 6	제1차 남북경제 협력공동위원회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 협의 추진
2007. 12. 14 ~ 12. 15	제1차 남북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08년 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수산물 생산 · 가공 ·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협력을 위해 '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합의
2007. 12. 28 ~ 12. 29	제1차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공동어로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어로구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추진, 공동어로 실시방안 및 수산협력방안의 협의를 위해 '08년 상반기 공동어로협력분과위 개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그러나, 2008년도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북핵문제 및 2010년도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5. 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수산협력사업도 중단된 실정이다. 5. 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북한산 수산물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중국 현지 실태조사 및 위장반입 차단 점검 등 범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남북 수산협력사업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등 남북관계라는 업무 특수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에는 호혜적인 남북 수산협력 사업으로써 2007년에 합의한 수산협력사업 중 「우리어선의 동해북측수역 입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상호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실용적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하여 KMI 등에 남북수산협력방안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북 수산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2절 해외 수산자원 확보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원양정책과 사무관 구도형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의 가속화, 일본 · 중국 · 대만 등과의 조업 경쟁 심화, 국제규제

강화 및 생산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우리 원양어업은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명예수산관 제도 운영, 원양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관련 통계의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어업생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1,100톤 급 참치 선망어선 1척의 대체 건조를 완료하였고, 2,000천 톤 급 1척 및 1,100톤 급 1척 등 2척에 대한 대체 건조에 착수하는 등 원양어선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동시에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쳐 원양 참치 선망어선의 선형 설계도를 제작 · 보급함으로써 원양 선망어선의 건조비용 절감, 국내 어선 건조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해 원양산업의 통계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였다.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원양산업 총 조사' 에 대비하여, '원양산업 총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는 해외 수산투자를 촉진 ·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수산투자 정보시스템' 을 새로이 구축하였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투발루 등 17개국의 원양 · 수산 정책, 경제현황 및 외국인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뒤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요 연안국의 입어정책, 조업 여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원양선사에 대한 해외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8개국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 8명을 명예수산관으로 위촉하여 활용 중이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업 조건은 강화되고, 원양 생산기반은 노후화 되는 등 원양산업의 제반 여건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명예수산관 및 해외 수산투자 정보시스템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 착수한 원양어선 2척의 대체건조를 완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조업 경쟁국과 수산 선진국은 입어권 확보 및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수산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11년도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산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융자 지원(2개소)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현황, 종사자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원양산업 총 조사를 실시하여 원양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원양정책과 사무관 조성남

❖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어장의 개발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연구기관, 원양업체 등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19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150여개 연안국 중 130여 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어장은 날로 좁아져 새로운 어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 · 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1957년 지남호에 의해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 시험조업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어장 개발의 효시이며, 동 시험조업의 성공으로 원양어업 해외어장 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모아, 인도양 등 다랑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캄차카, 러시아수역, 베링공해, 북해도 등 명태어장 개발,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 오징어 어장개발, 북태평양 꽁치어장 개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해외어장개발 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여 해외어장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온 꽁치봉수망어선의 조업쿼터 확보 어려움이 대두되자 2002년 북태평양 서경어장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조업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어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남태평양 동부공해 전갱이어장을 개발하여 상업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척이 9천톤을 어획하고 있다. 이후

에도 2004년에는 북태평양 중부 돔어장 개발, 2010년 FAO 47해구의 이빨고기 어장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는 FAO 51해구에 대한 이빨고기 어장에 대해, FAO 47해구에 대한 남방돗돔 및 알폰시노 어장에 대해, 대서양 중부 돔류 어장에 대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7-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 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소요예산
'01~'02	과학원(탐구1호)	트 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02.8~10	연수원(갈매기)	봉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꽁 치	3
'03.4~6	연수원(갈매기)	봉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꽁 치	4
'03.4~6	연수원(갈매기)	봉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꽁 치	3
'03.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04.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05.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원양,근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05.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06.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06.12~'07.5	상업어선 2척	연 승	47해구 공해	메 로	10
'07.9~'08.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미드웨이	참 치	9
'07.7~8	상업어선 2척	트 롤	중부베링	명 태	6
'08.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6.5
'08.9~11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09.7~9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4.3
'09.6~9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3.2
'09.8~11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7
'10.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SAEFO	전갱이류	4
'10.3~'11.2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5.2
'10.3~6	상업어선 1척	트 롤	기니아 EEZ	돔류	4.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수역(183억원 투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6개 수역에서 상업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새로운 어장에서 25척이 조업하여 23천톤을 생산, 380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부터 정부주도로 추진된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으로 매년 꽁치, 전갱이 등 23,000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매년 280억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조업실적을 미리 쌓아 놓아 계속 설립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도에는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대서양 중부(FAO 41 · 47해구)에 대해 한치, 빨강오징어 어장 및 SEAFO수역의 남방돗돔, 알폰시노 어장 등 2개 수역에 대한 신 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원양정책과 서기관 정상윤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업체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어업의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 으로 명칭 변경)' 을 신설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를 보면 2010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2,68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1,200)을 지원하여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으로 해외어장에서 지속적인 조업과 주요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원양업체의 경영개선 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양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지원을 위해 2011년에는 2,68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외어장의 개발 및 수산자원의 확보,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원양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추진배경 및 개요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선 179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164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92%에 이르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 참치어업은 횟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주로 태평양 중서부수역에서 연간 약 30만여 톤을 생산하여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51%를 점하고 있는 수출주력업종이다.

추진내용 및 성과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와 2006, 2009년도에 선망어선 1척씩 총 3척을 건조하였고, 2010년도에도 선망어선 2척을 건조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총 7척의 참치 연승어선의 중고선 도입자금도 융자 지원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 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1년도에는 참치선망어선 2척(소

요예산 296억원)의 완공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5. 수산물 수출 진흥

수출진흥팀 사무관 김상진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아시아권의 소비 증가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등의 여건 하에 놓여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 시켜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580억원을 투 · 융자하여 수출확대방안을 수립 ·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원을 저리로 145개 업체에 융자하여 833백만불의 우수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8회, 로드쇼 3회, 판촉전 2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계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계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광고 등을 위하여 4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67대의 기기 구입비 6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2012년까지 1,390억원을 투자목표로 2010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 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수출은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반영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 총수출은 58.8억불이며 이중 수산식품 수출은 농림수산식품 전체 수출금액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1년부터는 중화권·아세안 등 급증하는 수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6.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원양정책과 사무관 윤자영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 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

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 · 시행해 왔으며 2010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 ·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내용 및 성과

한 · 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한 · 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102억원(2010년도)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 관리 · 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 입되는 수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도 수산물 수입은 3,458백만불로 전년도 2,895백만불 대비 19.4%(563백만불)가 증가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금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 조사를 확대하여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 화 : (02)500-1709
디자인 및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